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655-0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 연구

2010. 12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2

- 연구 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이정희(중앙대)
- 연구원 : 황성혁(세종대)
조영상(중앙대)
구자성(경희대)
박인선(중앙대)
- 보조연구원 : 임진철(중앙대)
주아름(중앙대)
원희연(중앙대)
- 자문위원 : 김성민(우송대)
오원택(푸드원텍)

목 차



요 약 본 _ i

I. 서 론 _ 1

- 1. 연구 필요성 및 배경 3
-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4
- 3.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의 기대효과 7

II. 해외 클러스터지원센터의 사례조사 _ 9

- 1. 해외 사례 분석 11
- 2. 해외사례가 FOODPOLIS에 주는 시사점 39

III. 국내 클러스터지원센터 사례조사 _ 45

- 1. 국내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운영현황 47
- 2. 국내사례가 FOODPOLIS 지원센터에 주는 시사점 70

IV.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_ 73

-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단계적 활동방안 75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주요사업(안)	90
--------------------------------	----

V.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방안 _ 143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및 관리 주체 검토	145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구성	190
3.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보수체계	208
4.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예산	216

VI.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방안

: 3대 R&D 센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_ 221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3대 R&D 센터와의 관계	223
2. Pilot Plant, 임대형공장의 운영방안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의 운영 방안 ...	228
3. 산학연 협의회 구축 및 운영 방안	238

VII. 각종 시설의 기획 및 관리 _ 243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지원시설물의 효율적 배치방안	245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원시설물의 관리 방안	252
3. 6대 H/W 지원시설물 외의 추가 필요 지원 시설물 검토 및 제시	256

VIII.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대외 협력방안 _ 271

1.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개발	273
2.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방안	284
3.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홍보방안	292

부 록 _ 297

참 고 문 헌 _ 315

표 목 차

〈표 2-1〉 고베 의료산업클러스터	18
〈표 2-2〉 지바현 산업진흥센터의 주요 업무영역	19
〈표 2-3〉 지바현 기업유치 관련 기구	20
〈표 2-4〉 지바 식품산업 클러스터	23
〈표 2-5〉 Food Valley 클러스터	27
〈표 2-6〉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 조직 구성	28
〈표 2-7〉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32
〈표 2-8〉 ERVET 클러스터	38
〈표 2-9〉 해외 주요 클러스터 현황	38
〈표 3-1〉 지방자치단체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현황	48
〈표 3-2〉 산업단지 클러스터 추진사업의 하부사업	53
〈표 3-3〉 산업단지 지원기능 고도화 사업	53
〈표 3-4〉 특구법 및 대덕특구육성종합계획상 주어진 주요 역할과 기능	57
〈표 3-5〉 특구연구개발사업과 공공기술 발굴활용의 주요 사업내용	59
〈표 3-6〉 커넥트 프로그램과 하이업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내용	60
〈표 3-7〉 벤처아카데미 교육내용	60
〈표 3-8〉 인력연계사업 교육내용	61
〈표 3-9〉 지식기반 기술사업화서비스와 해외협력 및 투자유치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61
〈표 3-10〉 오송단지 연도별 추진활동	64
〈표 4-1〉 지원센터 사업구분 및 내용	77

〈표 4-2〉 2010년 설립준비단계 실행업무	80
〈표 4-3〉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초기단계(I) 실행업무	81
〈표 4-4〉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초기단계(II) 실행업무	83
〈표 4-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형성단계 실행업무	84
〈표 4-6〉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향후발전단계 실행업무	87
〈표 4-7〉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 11조 추가 항목 예시 안	98
〈표 4-8〉 농식품 가공·유통 6대 세부 핵심기술	101
〈표 4-9〉 연구 성격별 기본전략	102
〈표 4-10〉 성과확산 방식	103
〈표 4-11〉 식품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	112
〈표 4-12〉 식품인적자원 개발 방안의 장·단점 비교	113
〈표 4-13〉 단기 인력양성 프로그램	115
〈표 4-14〉 중·장기 인력양성 프로그램	120
〈표 4-15〉 참여 가능한 식품박람회 및 컨벤션	132
〈표 4-16〉 포괄적 지원업무	138
〈표 4-17〉 H/W 관리주체에 따른 장점과 단점	141
〈표 5-1〉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조직형태 비교	150
〈표 5-2〉 출연금과 보조금 비교	155
〈표 5-3〉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157
〈표 5-4〉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사회 구성안	184
〈표 5-5〉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의 업무 분장 ..	189
〈표 5-6〉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191
〈표 5-7〉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I)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191
〈표 5-8〉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I)에 따른 지원센터 조직구성 대안	192
〈표 5-9〉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I) 조직구성 대안 장단점 비교	192
〈표 5-10〉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I)에서 지원센터 조직도 대안	193
〈표 5-11〉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I) 지원센터 조직도 대안의 장·단점	193
〈표 5-12〉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I) 지원센터 인원구성	194
〈표 5-13〉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I) 지원센터 담당업무 분장	195
〈표 5-14〉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단계(II)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198
〈표 5-15〉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단계(II)에 따른 지원센터의 인원구성	199
〈표 5-16〉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단계(II)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분장	199

〈표 5-17〉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201
〈표 5-18〉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인원구성	202
〈표 5-19〉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분장	202
〈표 5-20〉 국가식품클러스터 향후 발전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분장	206
〈표 5-21〉 국가식품클러스터 향후 발전 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인원구성	207
〈표 5-22〉 2009년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	209
〈표 5-23〉 2009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	209
〈표 5-24〉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현황	210
〈표 5-25〉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전무이사의 연봉현황 (2010년)	212
〈표 5-26〉 직급별 기본연봉 기준표	213
〈표 5-27〉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성과포인트 예시	213
〈표 5-28〉 기관장 성과 지급률 예시	214
〈표 5-29〉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추정 소요 예산	216
〈표 6-1〉 지원센터의 부설 R&D기관 형태로 관계 설정	224
〈표 6-2〉 임대형 가공공장 입주업체 평가기준	230
〈표 6-3〉 파일럿플랜트의 지원센터관리와 아웃소싱의 장단점 비교	233
〈표 6-4〉 파일럿 플랜트의 일반식품 범용 장비	234
〈표 6-5〉 전략 품목별 식품군 파일럿 플랜트 범용기기	235
〈표 6-6〉 정기포럼 참여가능 산학연	239
〈표 6-7〉 학습동아리 중심의 네트워킹 구축방안	241
〈표 7-1〉 H/W 시설의 기능 및 역할	246
〈표 7-2〉 배치방안별 비교	251
〈표 7-3〉 하드웨어 시설물 관리의 직접관리와 아웃소싱의 장단점 비교	255
〈표 7-4〉 공동집배송센터 기본 시설	258
〈표 7-5〉 식품전처리시설의 주요기능	260
〈표 7-6〉 식품전처리 시설의 설비	261
〈표 7-7〉 식품전처리시설 투자 및 운영주체	262
〈표 7-8〉 창업보육센터 단계별 지원내용	267
〈표 8-1〉 지역농업클러스터와 연계방안	276
〈표 8-2〉 기업유치 프로세스	281



그림 목 차

[그림 2-1] 재단법인 첨단의료진흥센터 조직도	11
[그림 2-2] 고베시와 클러스터 관련 기구의 관계	13
[그림 2-3] 고베 의료산업단지클러스터 추진센터 역할	13
[그림 2-4] 푸드밸리 재단의 역할	24
[그림 2-5] 구성원 별 자본 구성	34
[그림 2-6] 에르벳의 조직도	34
[그림 3-1]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	49
[그림 3-2] 특구관리 본부의 역할 및 기능 프로세스	57
[그림 3-3] 대덕연구개발특구 주요사업	58
[그림 3-4] 지원주체별 지원업무	67
[그림 4-1] 지원센터 6대 사업내용	76
[그림 4-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78
[그림 4-3] 2010년 설립준비단계 업무	80
[그림 4-4] 초기단계(I)의 실행업무	81
[그림 4-5] 초기단계(II) 실행업무	82
[그림 4-6] 형성단계 실행업무	84
[그림 4-7] 향후발전단계 실행업무	85
[그림 4-8] 향후발전 단계 업무	86
[그림 4-9] 글로벌 도약단계 업무	88

[그림 4-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단계별 목표 및 활동	89
[그림 4-1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식품특화기술개발의 역할	91
[그림 4-12]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안	93
[그림 4-13] 협업화 기술개발사업	93
[그림 4-14] 협업화 주체별 업무프로세스	95
[그림 4-15]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도의 수시 현장애로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	97
[그림 4-16] 수시 현장애로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 프로세스	98
[그림 4-17] IPET의 특화기술개발 프로세스	99
[그림 4-18] 성과확산 프로세스	105
[그림 4-19] 식품특화기술개발 매뉴얼	106
[그림 4-20] 인적개발사업 구분	109
[그림 4-21] 주체별 인적자원개발 업무 프로세스	110
[그림 4-22] 한국폴리텍대학을 통한 식품 전문 기능인력 양성 프로세스 예	116
[그림 4-23] 식품대학원 인력양성 방안	118
[그림 4-24] 식품 학연협동연구과정 업무 개념	119
[그림 4-25] 미니클러스터 사업 개념도	121
[그림 4-26] 미니클러스터 업무프로세스	123
[그림 4-27] 공동사업화 지원사업의 개념	124
[그림 4-28] 공동사업화 업무 프로세스	125
[그림 4-29] 네트워킹 시 주체별 역할과 업무	127
[그림 4-30] 효율적인 네트워킹 사업방안	128
[그림 4-31] 식품창업 경진대회	129
[그림 4-32]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130
[그림 4-33] 문제해결 멘토 지원 업무 프로세스	133
[그림 4-34] 주체별 개별기업 브랜드 개발사업 업무 프로세스	135
[그림 4-35] 통합브랜드 구축 프로세스	136
[그림 4-36] 주체별 기업체 홍보지원 업무 프로세스	138
[그림 4-37] 효율적인 포괄적 지원 사업방안	139
[그림 5-1]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능한 관리주체	158
[그림 5-2]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정의 흐름	160
[그림 5-3]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정에 따른 지원센터 업무 분장 ...	160

[그림 5-4]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사회 구성안	184
[그림 5-5]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단계(II)에서 지원센터 조직도	198
[그림 5-6]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조직도성	202
[그림 5-7] 국가식품클러스터 향후 발전단계에서 지원센터 조직도	205
[그림 6-1] R&D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입주기업의 관리비용과 지원센터의 R&D 센터 운영·관리비용간의 역학관계 및 관계설정	225
[그림 6-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부설 복지센터의 조직도	227
[그림 6-3]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복지센터와의 관계	228
[그림 6-4] 임대형 가공공장의 단계별 운영방안	231
[그림 6-5]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파일럿 플랜트 월별 이용률 현황	232
[그림 6-6] 산학연 네트워킹 메뉴얼	241
[그림 7-1] 6대 H/W 지원시설물의 효율적 배치의 목표	246
[그림 7-2] 일렬형 배치	249
[그림 7-3] 방사형 배치	249
[그림 7-4] 일체형 배치방안	249
[그림 7-5] 기능별 수평 집중형 배치	250
[그림 7-6] 기능별 수직 집중형 배치	251
[그림 7-7] 공동집배송 시설 운영방안	259
[그림 7-8] 창업보육센터 설립방안 및 운영방안	265
[그림 8-1]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허브	273
[그림 8-2] 식품기업과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연계방안	275
[그림 8-3] 국가식품클러스터 미니클러스터와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연계방안	276
[그림 8-4] 성공적인 기업유치 방안	279
[그림 8-5]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사항	287
[그림 8-6] MOU를 통한 해외기업 유치 Process	290
[그림 8-7] 단계별 홍보 계획	293

【 서 론 】

1. 연구 필요성 및 배경

가. 연구 필요성

- 식품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과 클러스터 내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협력체계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임.
- 세계 주요 선진국은 정책적으로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 식품산업의 발전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획,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총괄 지휘하는 기관이 필요. 즉,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단계에서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이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클러스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견인 역할을 담당 함.
-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센터의 운영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그 역할과 기능 정립은 지원센터 운영의 기초가 될 것임. 따라서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관리 총괄, 조율 및 통합 기능을 통한 실질적인 클러스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 기본계획 수립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가. 연구 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 유사 사례 연구

- 해외 주요 클러스터 사례를 기반으로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연구
- 국내 클러스터(한국산업단지공단, 대덕연구개발특구단지 등) 지원센터 사례 조사
- 국내외 클러스터 지원센터 또는 유사기관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연구

- 「식품산업진흥법」 12조의2(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명시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내용을 위주로 연구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 수립
- 단계별 사업목표 설정과 추진활동 제시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의 수행방안
- 식품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방안 수립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위한 네트워킹 방안 수립
- 입주기업의 마케팅 및 컨설팅, 그리고 기술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 수립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행 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방안 연구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법적 성격 구분 : 타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최적의 설립 방안(특수 법인/공공기관) 도출, 각각의 장·단점 분석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업무 범위 : 타 유사 기관사례를 검토하여 조직 구성 및 업무 범위, 직급별 연봉 지급 기준 제시
- 정관 작성 및 이사회 구성(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 3대 R&D 센터와의 관계 설정
- 범용 시험생산공장과 임대형공장의 운영 방안
- 2015년까지 연도별 필요 예산

- (가칭)산학연합의회 구축 및 운영 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각종 시설의 기획, 설계, 유지, 보수 관련 연구

- 지원센터 등 6대 H/W 지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배치방안 수립
- 지원센터 등 6대 H/W 지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
- 6대 H/W 지원시설물 이외 추가 필요 지원 시설물 검토 및 제시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대외 협력, 홍보사업 관련 연구

- 수익사업 모델 발굴
- 세계적인 연구소 등과의 협력방안(MOU 체결방안), 연계사업 방안
-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대내외 홍보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나. 연구 방법

-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 전문가 자문
-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국내외 클러스터 현지 방문 조사

3.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의 기대효과

가. 기업 및 R&D 기관의 성공적 유치

-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의 긍정적 이미지구축은 해외 및 국내 식품관련업체 유치 활동에 기여하며 그 위상은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직결됨.
- 해외 클러스터와 MOU 체결은 해외 식품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고 해외기업 유치활동에도 기여함.

나. 국가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입주 기업 및 3대 R&D센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유기적 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입주 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
- 공동 마케팅 및 공동 브랜드 권장을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식품업체의 해외 진출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도모함.
- 입주업체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효과의 창출이 가능하며 각 관계사의 생산성을 개선
- 입주업체의 정기적인 미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함.

다. 동북아 식품시장의 성공적인 FOODPOLIS로 정착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립은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구축하는 FOODPOLIS의 조기 정착을 주도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구성에 따른 조직 단위별 업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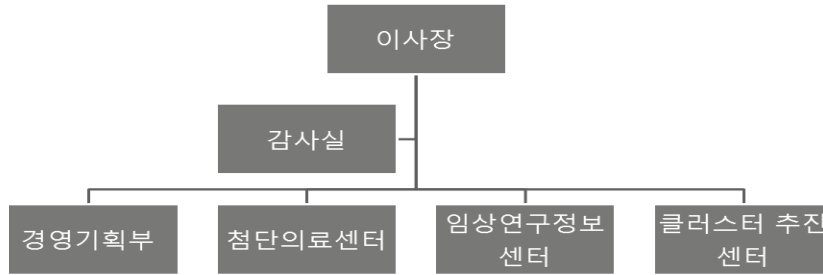
【 해외 클러스터지원센터의 사례조사 】

1. 해외 사례 분석

가. 고베의료산업클러스터

1) 클러스터 운영 주체 : 첨단의료진흥센터 내 클러스터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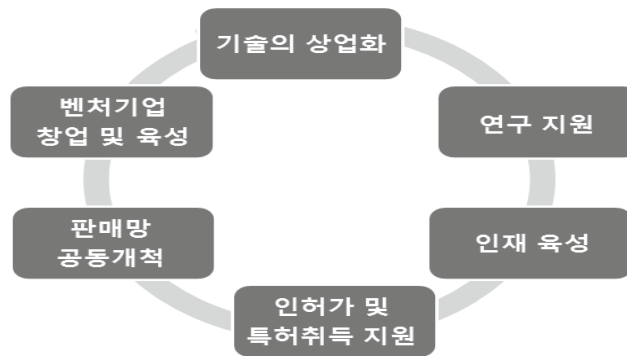
- 고베시가 80%를 출연하고 민간이 20%를 출연하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첨단의료진흥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조직 내부에 클러스터 지원센터 부서를 설치함.



[그림 1] 재단법인 첨단의료진흥센터 조직도

- 첨단의료진흥센터는 고베시 기획조정국이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고베시와 고베시 진흥서비스 주식회사와 클러스터 조성 업무를 협력하고 있으며 법적인 업무 분장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두 조직 간 협력이 원활함.

2) 클러스터 추진센터의 주요 역할



[그림 2] 고베의료산업단지 클러스터 추진센터 역할

3) 클러스터 추진센터의 협력업무

■ 기업 유치 활동

- 고베시의 경제산업국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입주 희망기업에게 토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고 있음.
- 고베시 경제산업국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시회 및 전람회에 참가하여 부스를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기업 유치에 적극적임.

■ 대외 협력 및 홍보

- 한국, 중국,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해외유수의 클러스터와 MOU를 체결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 홍보 계획은 클러스터 추진센터와 고베시 기획조정국 의료산업도시추진실이 협력하여 수립하고 클러스터 추진센터가 추진하고 있음.

4) 고베의료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주는 시사점

■ 거버넌스 체계 명확화

- 고베의료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베시가 직접 관여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하듯이 단기간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FOODPOLIS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유관 기관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하였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센터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 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외부 자문단 구성

- 고베의료산업클러스터가 외부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체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문평가단 구성이 필요함.
- 자문평가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 입주업체 대표, 클러스터 전문가 등 다양한 층으로 구성해야 하며 자문 보고서 제출을 기본으로 해야 함.

■ 효과적인 기업유치 활동

- 기업유치 업무를 지방정부의 경제 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기업유치 활동은 제고되어야 함.
- 기업유치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적 지원정책 근거마련과 각종 세제혜택 제공이 필요함.

■ 클러스터의 효율적 관리

- 고베시가 클러스터의 토지 매입 분양 및 건설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했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도 토지 분양 및 건물 임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출자의 기구 설립이 요구됨.

나. 지바식품산업클러스터

1) 클러스터 운영주체 : 재단법인 지바현산업진흥센터

- 클러스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지바현이 주축이 되어 지바현과 민간(금융기관, 경제단체, 소비자 등)이 협력하여 출자비중 54:46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함.
- 재단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지바현이 매년 예산을 지원하여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지바현산업진흥센터의 연간 예산은 약 70억 엔 수준임.

2) 재단법인 산업진흥센터의 클러스터 관련 주요역할

〈표 1〉 지바현 산업진흥센터의 주요 업무영역

구 분	내 용
사업진흥	설비대여, 설비도입자금 대출, 거래처 알선 및 발주처 매칭
신사업지원	연구 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일관된 종합 지원, 지바 중소기업 자금 조성
창업보육지원	토카즈 테크노 프라자 (창업보육지원센터), 인큐베이팅 사업, 정보 교류 및 촉진, 공동 연구 주선, 기업 연구개발 지원
취업지원	취직지원 서비스, 채용지원 서비스
경영지원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지원센터, 농상공 연계, 정보 제공, 인재 육성

3) 클러스터 관련기관의 협력업무

■ 기업유치 활동

〈표 2〉 지바현 기업유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지바현청 내 기업유치 추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치 활동 • 지바현청 내 상공노동부 기업입지과에 편제 • 추진실 직원 : 20명(해외기업유치 전담 직원 1명 포함) • 해외 기업 유치사례 : 2007년 독일 펌프 업체 • JETRO와 협력, 재외공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국외 세일즈 활동
기업유치 추진 연락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바현 내 읍·면·동과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여 수립
지바현 기업등 유치추진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 : 부지사 • 국내 기업 유치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 • 현재 기업유치를 위한 해외 참가 경험은 없음.

■ 대외 협력 및 홍보

- 타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은 거의 없으며 클러스터 관련 홍보 계획 및 방안은 지바현

- 이 재단법인 산업진흥센터 직원과 협력하여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 홍보활동으로는 해외 유력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4) 지바현식품클러스터 사례의 시사점

■ 거버넌스 체계의 명확화

- 지바현이 54%를 출연하여 지방정부와 재단법인의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듯이 FOODPOLIS의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정부가 주도해야 함.
- 지바현 정부가 클러스터 정책을 수립 하고 “산업진흥센터”가 실행 하듯이 정부가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운영하더라도 클러스터 정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업무영역이 명확해야 함.

■ 기업유치 활성화

- 지바현은 기업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듯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 관련 부서를 신설하도록 함.
- 기업유치를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센티브 개발 시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 함.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Research Society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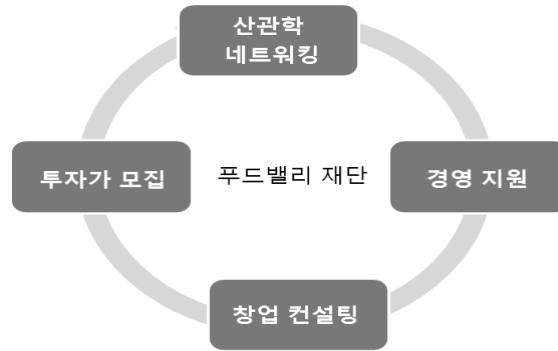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한 대학 또는 민간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집중하도록 연구자 협의회를 구성해야함.

다. 네덜란드 Food Valley

1) 클러스터 운영주체 : 푸드밸리 재단(Food Valley Foundation)

- 와게닝겐 대학이 주도하여 푸드밸리(Food Valley)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푸드밸리 재단 설립을 제안함.
- 중앙정부가 푸드밸리 재단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하지 않으나 클러스터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하며 지방정부는 푸드밸리 재단에 예산을 보조하고 클러스터 운영 측면에서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음.

2) 푸드밸리 재단(Food Valley Foundation)의 역할



[그림 3] 푸드밸리 재단의 역할

- 푸드밸리 재단은 2003년 푸드밸리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푸드밸리 소사이어티를 설립하고 2개월 주기로 협의회를 개최함.
- 대외협력 활동은 주로 해외 클러스터와의 제휴이고 홍보활동은 홍보 책자 및 홍보문헌 발간,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참가하는 것임.

3) Food Valley가 주는 시사점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장기적 운영 플랜 필요

- 푸드밸리 재단이 와게닝겐 지방정부와 대학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NIS차원에서 운영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지리적 관할 구역 확장을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킹 강화

- 푸드밸리 재단도 최초 입주 기업 및 대학의 네트워킹에 의해 설립 되었듯이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중점 업무는 네트워킹 강화에 집중을 두어야 함.
- 상주 직원의 수가 5명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푸드밸리 재단의 주요 업무는 네트워킹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인원이 적어도 4명 이상 요구됨.

■ 기업유치 과정의 체계화

- 푸드밸리 재단에서는 기업 유치 담당자가 없고 기업유치 업무는 중앙정부 담당으로 중앙 정부 경제관련 부서가 네덜란드를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라. 덴마크 · 스웨덴의 외레순식품클러스터

1) 클러스터 운영주체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는 외레순 과학기술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2005년까지 주로 EU의 지역정책 자금으로 예산을 충당하였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의 중앙 및 3개 지방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왔음.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는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관련 기관을 핵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네트워킹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3〉 외레순 푸드네트워크 조직 구성

직책	인원
Managing Director(관리아사)	1명
Project Manager	식품과건강(1명), 생산과유지(1명), 요리(1명)
Coordinator	Project Coordinator(2명), Communication(1명)
Project Assistant	1명
Communication Consultant	1명

- 이 기구는 외레순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NIS측면, 즉 덴마크와 스웨덴 전 지역의 식품업체를 상대로 하고 있음.

2) 외레순 푸드네트워크의 역할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는 정치적 로비활동을 통하여 법적으로 우호적인 클러스터 지원정책 수립을 도모하며 연간 EU 및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은 연구소, 기업, 학계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식품개발에서부터 기술의 상업화, 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 연구소들의 연구지원을 위한 자금 보조 및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음.

3) 외레순 식품클러스터가 주는 시사점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 정부가 예산을 보조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은 클러스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민간을 적극 참여시키고 있음.

- 정부지원 예산과 별도로 자체 수익 사업에 의한 예산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장기적 플랜 필요

- 외레순 식품클러스터는 장기간에 걸쳐 집적된 성공적인 식품 클러스터 사례로, 이는 클러스터 구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수임을 시사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

-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는 식품 클러스터 지원기관으로서 네트워킹에 중점을 두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에 네트워킹 업무를 강화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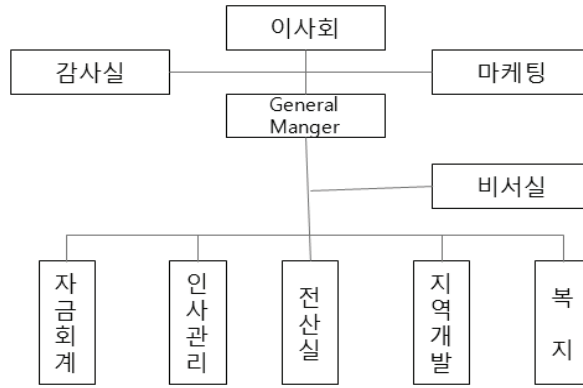
■ 기업유치 역할

- 기업유치활동은 외레순 푸드클러스터와 별도로 정부기관에서 주도하듯이 기업유치를 위한 조직을 클러스터 추진센터 내 구성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나 기관은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받아야 함.
 - 푸드밸리 지역의 토지나 건물은 정부 소유가 아님

마. 이탈리아 ERVET

1) 클러스터 운영주체 : ERVET

- ERVET은 에밀리아 로마냐 정부가 지역의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민간 과 협력하여 1974년 설립된 기관임.
- 지방정부, ERVET, 민간기구가 협력하여 기업지원 산하기관으로 각종 서비스센터를 설치함.
- ERVET의 예산은 지방정부와 EC의 지원, 수익사업으로 충당되고 있음.
- 이사회는 지방 정부에 의해 추천하는 5명과 타 기관에서 추천하는 2명을 합한 7명과 감사기능을 하는 3명의 이사로 구성됨.
- ERVET의 조직



[그림 4] 에르벳의 조직도

2) ERVET의 역할

- 에르벳의 주요 역할은 입주업체 운영의 기술지원, 입주업체의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구축, 클러스터 지역의 성과 분석 및 관찰, 클러스터 정책의 실현의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ERVET System을 통하여 클러스터 내 파트너십 구축은 물론 네트워크 간 조정 및 협력 분위기를 주도 하고 있음
- 식품의 공동 브랜드 사용권장으로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킴.

3) ERVET이 주는 시사점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장기적 플랜 필요

-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가 40년이라는 장기에 걸쳐 형성되었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거버넌스 체계 명확화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지방정부 추천이사의 수가 다수를 차지하듯이 거버넌스 체계에 명확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립해야함.
- 에르벳이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의 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원센터의 역할 중 각 기능별 목적별 산하기관을 신설하여 운영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수행하기에 무리인 기능은 산하기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업유치 활동

- 국내외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ERVET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ERVET 산하기관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ERVET이 협력하는 형태임.

〈표 4〉 해외 주요 클러스터 현황

분야	국 가	명 칭	집적형태	운영주체	비 고
식 품	일본	지바 식품산업 클러스터	자연집적	재단법인 지바현 산업진흥센터	- 재단법인 지바현 산업진흥센터와 지바현이 협의운영 - 지바현이 재단법인에 예산을 지원하여 거버넌스 체계 확립
	네덜란드	Food Valley	자연집적	Food Valley Foundation	- 장기간에 걸쳐 자연 집적된 클러스터 - 예산은 정부와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
	이탈리아	Ervet	자연집적	ERVET System	- 지방정부 80.04% 지분 금융권 18.51%, 기타 1.45% - ERVET S.p.A +11 service centres
	덴마크 스웨덴	외레순 클러스터	자연집적	외레순 Food Network	-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 - 7개 클러스터와 공존
	일본	츠클루바 연구단지	인위적	NARO	- 중앙정부가 인위적 조성 - 연구소 위주의 집적 - 중앙정부 예산(100%)으로 운영
	일본	홋카이도 식품 클러스터	자연집적	홋카이도 식품 클러스터 협의회	- 100% 민간이 운영 - 홋카이도산 원재료를 적극 활용 - 글로벌화 지향
바이 오	일본	홋카이도 바이오 클러스터	자연집적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포럼	- 재단법인 홋카이도 과학기술 종합센터와 협의운영 - 덴마크 메디콘밸리와 협력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조성형태가 유사
의 료	일본	고베의료 산업도시	인위적	클러스터추진센터	- 기업유치 활동은 고베시의 경제 산업국에서 담당 - 첨단의료 진흥재단은 3개의 센터와 경영 기획부로 구성. - 클러스터 추진센터는 R&D기관과 조직상 동등하게 편제

2. 해외사례가 FOODPOLIS에 주는 시사점

가. 클러스터 지원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 지역에 상관없이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일본의 클러스터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원기관 설립시 재산출연을 50% 이상 하고 있으나, 이사회 구성에서 우월적 입지확보는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의 클러스터 운영 개입은 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예산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 지원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클러스터가 자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면 민간운영의 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이 바람직하나,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경우, 조성목적 달성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강력하게 추진하고 운영 할 수 있는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

나. 클러스터 활성화 기구의 조직 구성

■ 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 일본의 대부분의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반면, 유럽은 지원센터가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공공기관 성격이 약함.
- 고베 의료산업클러스터의 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보듯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클러스터를 조성 할 경우, 지원센터는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지원 및 관리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 형태로 출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사회 구성

-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기관에 이사 추천 권한을 주어 입주업체 대표 또는 중역이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음.
- 모든 클러스터 이사회의 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출됨.

다. 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역할

■ 네트워크 강화

■ 벤처 창업지원

■ 개발 기술의 상업화

■ 상품 개발 지원

■ 마케팅 지원

■ 기본 인프라 지원

- 입주업체들의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망, 전기, 상하수도, 통신 시설을 지원하며 정부관련 인허가 취득관련 업무를 지원함.
- 입주 희망기업의 클러스터 입주 결정을 돕기 위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 등 클러스터 주변의 정주 환경 개선에 노력함.

■ 연구 활동 지원

라. 기업 유치활동

■ 기업에 지원의 법제화

- 조사한 유럽 클러스터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특별히 기업유치를 위해 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음
- 일본은 지방정부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유치 상담을 전개하고 있음.
-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기업유치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논의 시,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참여가 요구됨.

■ 기업유치를 위한 역할 주체

- 기업유치활동이 정부와 지원센터로 나뉘는 경우, 클러스터의 지원과 관리업무의 일원화와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와 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이 필요함.

바. 해외 협력 및 홍보

■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

- 고베의료 산업 클러스터와 덴마크 스웨덴의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의 사례와 같이, 해외 클러스터와 제휴함으로써 원거리에 위치한 업체 유치를 지원하여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이는 해외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유럽 클러스터 혹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일본 클러스터 등 대륙별 클러스터 제휴를 추진하는 것은 제휴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음.

■ 해외 박람회 참가

- 국내 또는 해외에 개최되는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해외 박람회에서 영어 및 관련국가 언어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위상 정립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해외 기관과 협조

- 국내 주재 해외 대사관과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찰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음.
- 해외 주재 한국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홍보 및 기업유치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부담

-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전기와 하수도, 폐기물 처리와 같은 H/W(인프라 업무)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관련된 S/W에 더욱 치중하고 있음.
 - 지원센터의 핵심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H/W(인프라 업무)의 업무보다는 S/W업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와 하수도, 폐기물 처리와 같은 H/W(인프라 업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함.

■ 활발한 R&D 사업 진행

- 대덕관리본부는 R&D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활발한 R&D 사업의 영향으로 2005년 대비 입주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크게 신장하고 있음.
 - 지원센터에서도 활발한 R&D 사업 진행의 지원을 통하여 입주기업 유치활동과 입주기업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의 기술수요 파악을 통한 맞춤형 성과확산에 의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거버넌스체계 구축

- 기업유치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과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 따라 조성초기에 대전시와 대덕특구의 마찰이 발생하였음.

■ 정주여건 개선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는 대덕특구 내에 복지시설(헬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음.

【 국내 클러스터지원센터 사례조사 】

1. 국내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운영현황

가. 지방자치단체의 클러스터지원 업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와 농공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각각의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음.

1) 주요업무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크게 **기업지원 업무**와 **산업단지 관리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기업지원업무

-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업무는 기업입주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경영지원 업무가 포함됨.
- 기업지원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따라 다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지원 폭의 차이가 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정책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해당 지역에 입주한 모든 기업들에게 지원되고 있음.

■ 산업단지 관리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관리업무는 H/W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클러스터 지원업무에 따른 장·단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음.
 - 기업지원 업무 진행에 있어서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등 지원 등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이 용이함.
 - 산업단지 관리업무 중 H/W사업에 관련된 기관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관리 업무 협력을 보다 쉽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에 따른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산업단지별 H/W관리 및 S/W 지원 사업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기업체 및 산업단지를 관리 및 지원함에 따라 업종별 특화된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움.
 - 경영지원 즉, 기업애로에 따른 멘토링 사업과 공동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사업의 영위가 어려움.
 - 네트워킹 사업(미니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공동사업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어려움.
 - 기술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연구소, 국책연구소, 각 기술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 성과확산과 기술수요에 대한 조사 및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클러스터지원 업무에 따른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노력을 통한 유치기업 인센티브 개발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기업 인센티브 지원이 용이함에 따라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따른 인센티브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H/W사업의 효율화

- 지방자치단체의 H/W사업에 있어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역량 집중화

- 지원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역량 집중 및 강화를 통하여 클러스터의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네트워킹 사업을 통한 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과 농공단지 네트워크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클러스터 사업의 핵심인 네트워킹 사업(미니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공동사업화 지원 사업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주기업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센터는 네트워킹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르는 포괄적 지원을 해야 함.

■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은 주로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이며,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내 관련 연구소, 국책연구소, 각 기술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1)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 배경 및 목적

■ 설립배경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7년 설립되었음.

■ 목적 및 비전

- 산업을 집적하고 공장설립을 원활히 지원하고,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즉 단순 집적지에 네트워크, 기업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전체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원주체가 되는 것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종 목표임.

2) 주요업무¹⁾

■ 산업단지관리운영

1)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 및 국가기록원 포털 theme.archives.go.kr 참고하여 재가공

-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총 31개 사업 중 한국산업단지공단 주 업무는 산업단지관리운영으로 이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이를 관리할 주체가 필요할 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인수받아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함.

■ 산업단지 클러스터 추진

-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기존의 노후 된 산업단지에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사업임.
- 사업의 내용 및 특징
 - 네트워크 및 R&D 등 혁신역량을 산업단지에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실시함.
 - 산업단지 클러스터 추진사업은 2005년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 5개의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2010년 전국 193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광역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실시하였음.

■ 산업단지 지원기능 고도화

- 산업단지 지원기능 고도화 사업은 기업애로 해결과 같은 입주기업 지원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각 산업 단지별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것임.
- 산업단지 지원기능 고도화 사업은 “기업사랑 도우미”, “종합상담” 및 민원업무대행, “수요자중심의 산업단지 관련제도 개선”,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활성화”로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공장설립 지원서비스 제공

- 공장설립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은 크게 ‘공장설립무료대행서비스’,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기업 지방이전 촉진과 지역투자 활성화’로 나눌 수 있음.
- ‘기업 지방이전 촉진과 지역투자 활성화 사업’은 본사와 11개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수도권 기업 중 지방으로 이전을 하려는 기업에게 이전 적지를 알선하고,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사업임.

3)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원 주체적 특징에 따른 시사점

■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을 위한 S/W사업의 강화 필요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관리는 대부분 생산기능 향상 및 H/W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산업단지 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사업은 양호하나 입주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S/W사업이 미약하여 산업단지들의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음.

■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생관계형성 마련

- 계열적 기업연계구조와 상호 기술력 차이로 기업 간 혁신네트워크는 취약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미니클러스터 사업 등 여러 네트워킹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계열적 문제점으로 한계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도면을 받아 단순 가공조립에 의한 생산에 치중해 있음.

■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 필요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에 기술개발과 연구 분야를 연계시킬 수 있는 중개기관이 부족하여 혁신 주체 간 협력체제가 미흡하고 연구 성과물들에 있어서도 지역을 넘어서 확산되지 않는 RIS개념의 성과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지원

-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입주기업들 중 대기업 위주의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어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체간 협력 및 경쟁을 통한 성장보다는 하청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1) 대덕특구의 설립배경

■ 클러스터 형성 배경

- 한국의 대표적이며 전형적인 연구개발 중심 형 클러스터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해외기술의존 탈피(1970년대) 및 과학기술입국 실현(1980, 1990년대)등을 중장기 목표로 197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대덕연구학원도시'건설에서 시작하였음.
- 전형적인 과학기술집적지로 발전되어 오던 대덕연구단지에는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벤처창업 열기와 더불어 기술혁신 형 중소벤처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면서 연구개발 기능과 산업생산기능이 동시에 육성, 발전하는 연구개발 중심 형 혁신클러스터로 발전

을 거듭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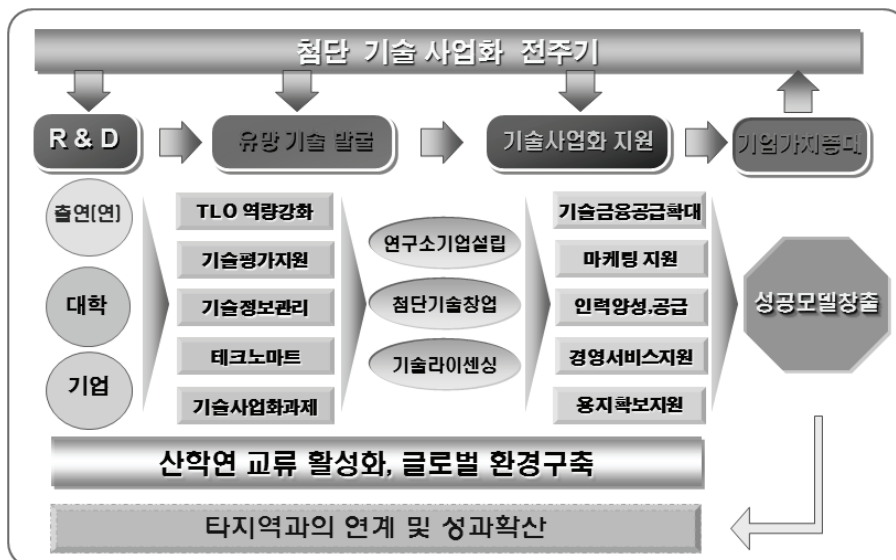
- 특히 2000년대 들어 선진 각국이 새로운 국가 및 산업경쟁력의 유효한 수단으로 혁신 클러스터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술개발(R&D육성) 정책과 산업정책, 지역 개발정책이 혼합된 이른바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추진의 시대적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본격적인 추진을 검토함.
-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와 경쟁할 수 있는 곳으로 국내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선택 집중전략) 대덕연구단지과 인근(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을 2005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본격 육성하고 이를 추진함.

2)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의 주요기능 및 사업

■ 특구관리본부 주요기능

- 대덕특구지원본부의 주요 기능은 크게 대덕특구의 공공기술사업화 등 사업지원 및 교류협력 부문과 연구원, 기업인 등 특구 구성원의 복지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 대덕특구지원본부 조직은 크게 기능적으로 사업지원 교류협력 역할을 수행하는 본부와 체육공원(골프장), 종합운동장, 어린이집 등 각종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설 복지센터(수익사업을 통한 독립채산제 형태)로 되어 있으며, 특구법 및 대덕특구육성종합계획상 주어진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표 5〉 특구법 및 대덕특구육성종합계획상 주어진 주요 역할과 기능



자료 : FOODPOLIS 지원센터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미나 대덕특구지원본부 발표자료, 2010.11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안에서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 -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시행 - 특구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시행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과 기자재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용수·에너지·정보통신·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유치, 설치, 관리 및 운영 - 연구개발성과물의 전시·홍보, 과학기술인식 제고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지원 - 대학·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증진 -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 교수·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지원 - 사업화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및 교육 - 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 종합적 지원 -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 그 밖의 지식경제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주요사업

- 2005년 연구용역 발주를 통하여, 특구법, 지원본부의 역할을 수립하여 특구육성종합계획(2006~2010)을 작성하였으며 특구육성종합계획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세워 각 단계별 추진 목표에 맞는 세부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단계별 추진목표에 따라 크게 연구성과 사업화,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경 구축, 타 지역과 연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음.

■ 연구성과 사업화

- 연구성과 사업화는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구 연구개발사업, 공공기술 발굴 활용 사업이 포함됨.
- 특구연구개발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기술개발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 형성을 지원하여 공공 연구 성과의 조기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주요 사업내용으로 전문클러스터사업, 특구사업화 기술개발사업이 포함됨.
- 공공기술 발굴·활용사업은 연구소, 대학 등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 및 거래 활성화 및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 공공TLO의 협력체제를 통해 기술마케팅의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사업임.

■ 벤처생태계 조성사업

- 벤처생태계 조성사업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에 따르는 벤처 환경적 부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커넥트 프로그램, 하이업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지식기반 기술사업화 서비스, 해외협력 및 투자유치사업이 포함됨.

■ 글로벌 환경구축 사업

- 글로벌 환경구축 사업은 특구관리를 통하여 입주기업 및 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환경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특구관리 및 행정지원, 연구 생산 집적시설 건립 등 H/W관리 및 보수 사업 등이 포함됨.

3)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특징에 따른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부담

-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전기와 하수도, 폐기물 처리와 같은 H/W(인프라 업무)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관련된 S/W에 더욱 치중하고 있음.
 - 지원센터의 핵심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H/W(인프라 업무)의 업무보다는 S/W업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와 하수도, 폐기물 처리와 같은 H/W(인프라 업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함.

■ 활발한 R&D 사업 진행

- 대덕관리본부는 R&D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활발한 R&D 사업의 영향으로 2005년 대비 입주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크게 신장하고 있음.
 - 지원센터에서도 활발한 R&D 사업 진행의 지원을 통하여 입주기업 유치활동과 입주기업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의 기술수요 파악을 통한 맞춤형 성과확산에 의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거버넌스체계 구축

- 기업유치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과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 따라 조성초기에 대전시와 대덕특구의 마찰이 발생하였음.

■ 정주여건 개선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는 대덕특구 내에 복지시설(헬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음.

라. 오송생명과학단지

1) 설립배경 및 목적

■ 설립배경 및 연혁

-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오송단지 조성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 과학기술 수준을 확보 하고자 함.
 -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 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증대 및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1994년 「보건의료과학기술 혁신방안」에의 하여 수립된 과학단지로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바이오산업의 첨단클러스터를 목표로 조성되었음.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1994년 계획수립이후 1997년 건설교통부로부터 단지개발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2002년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03년 단지관리기관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음.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음.
 - 2004년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10년 현재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관련기관 및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고 있음.

■ 목표 및 비전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의 추진방향은 크게 3가지로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단지 내 공장, 연구시설, 교육시설, 주택단지, 상가, 문화 복지시설 등 6대 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함.
 - 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과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함.
 - 국책기관, BT 전문대학원 및 생명과학연구소 등 연구 지원시설, 민간연구소 등을 유

기적으로 연계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함.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바이오산업의 첨단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4가지 단계별 목표를 갖고 있음.
 - 첫 번째 단계는 단지조성 단계로서 2008년까지 오송단지 조성의 성공적인 완료를 비전으로 하며 세부적으로 단지 기반조성공사 완료·기업분양 등 초기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함.
 - 두 번째 단계는 기반구축 단계로서 2009년에서 2012년 까지 오송단지 가동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하며, 세부적인 목표로는 산·학·연·관의 주체를 구성하여 운영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음.
 - 세 번째는 도약성장 단계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오송단지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을 큰 비전으로 삼고 각 주체 간 연계활동 활성화 및 국가적 차원의 산업화 지원을 세부목표로 삼고 있음.
 - 네 번째는 안정·성숙 단계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 BIO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정하였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업무의 총괄은 보건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에서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충청북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에서 일부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송 이전작업을 지원하였음. 오송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사업은 크게 4가지로서 공장설립지원, 생산활동 지원,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사업, 경영 및 기술개발 사업임.

■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지원 및 계획업무

■ 보건복지부의 지원 및 계획업무

- 행정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과학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경우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 국내 및 국제 품질인증을 지원

■ 충청북도의 지원 및 계획업무

- 세제지원
 -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주는 사업, 즉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법인세를

분할하여 납부.

3)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통한 시사점

■ 외부변수 발생에 대한 대비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추진 시 문제점은 추진사업의 장기화를 꼽을 수 있음.
 - 추진사업의 장기화 원인인 자금부족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지원의 감소 때문에 오송단지는 당초 계획되었던 910만㎡에서 463만㎡로 감소하였고 또한 재정지원감소로 인한 재원확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성기간이 필연적으로 길어져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신규투자를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음.
 - 그 외 외환위기의 여파로 입주를 예정이던 기업의 수가 줄어들었음.
 -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는 90%가 넘는 분양률을 기록하며 계획했던 분양률을 달성하여, 관련 기관인 6개 부처 등은 이주를 시작했으나 입주 예정기업의 공장설립이 늦어지면서 지금 오송단지의 혁신 시너지 효과의 발생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원센터에서도 클러스터 조성 시 외부돌발 변수(국제적인 경기악화, 조성공사 시 문화재 발굴, 진입로 확충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기관별 업무분장의 명확화

- 오송단지의 경우 보건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사업을 총괄하며, 충청북도는 투자유치, 토지공사는 기반조성 및 단지분양, 산업단지공단은 단지 입주관리 및 시설 관리를 하고 있음.
 - 지원센터에서도 클러스터 조성업무에 관해서 관련 기관별 업무분담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원센터와 전라북도, 익산시와의 업무분장의 명확화를 통하여 중복 비용이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 관련기관 간의 협의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조성사업 추진 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게 해야 함.

■ CONTROL TOWER의 활성화

- 클러스터 조성 추진사업의 CONTROL TOWER 활성화임.
 - 오송단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조성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를 지휘 했듯이 식품클러스터 추진사업에서도 농식품부 식품클러스터과에서 조성 총괄업무를 지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식품클러스터 조성업무의 총괄업무 시 CONTROL TOWER에서는 조성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공급과, 클러스터 H/W 구축에 대한 업무,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업무, 기업 유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 등 조성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이 필요함.

2. 국내사례가 FOODPOLIS 지원센터에 주는 시사점

■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 시 해당 지역 관련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중복현상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였음.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조성 초기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있었음.
-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원센터 설립 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은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라 할 수 있음.
 - 지원센터가 입주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허가권을 가질 수 없고 인센티브개발 및 부여 업무 중 세제혜택 등에 대하여 기업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주여건 조성방안 마련

- 대덕특구본부에서는 골프장, 유아원 등의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시설 운영과 기업의 공동연구시설, 공동테스트 시설 등 기업을 위한 여건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현재 아파트 입주민의 많은 민원으로 주거 및 교통 등에 관한 인프라의 개선 작업을 실시할 예정임.
- 지원센터에서도 기업유치와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입주민과 기업을 위한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다른 클러스터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 놓을 수 있어야 함.
- 정주여건의 조성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확대는 클러스터 기업유치에 대한 유인책 및 입주기업들의 수요인력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과확산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방안과 대덕특구의 매출확대 두 사례의 공통점은 연구개발과 성과확산으로 축약됨.

■ 내실 있는 발전계획 수립

- 대덕특구지원본부의 경우 발전계획과 그에 맞는 목표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부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단계적 활동방안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구축되어짐.
- 「식품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사업은 총 6 가지로 다음과 같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주요역할 및 기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기업유치, 시설의 관리/운영 및 각 S/W사업에 대하여 추진을 총괄하는 기구의 역할을 담당함.
 - 각 지원시설(임대형 가공공장, 범용Pilot Plant 등)의 총괄관리를 수행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 전체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각 S/W 사업(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 식품인적자원개발사업, 포괄적지원사업, 네트워크사업, H/W관리사업 등)에 대한 추진 주체로서 각 사업 실행 총괄을 담당함.
 - 식품관련 기술개발 사업 및 그에 따르는 성과확산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
- 「식품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6대사업을 수행함.

나. 단계별 사업 목표 설정과 추진활동(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안정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목표가 필요함.

1) 설립준비단계(2010년)

- 2010년은 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임.
 - 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운영함.
 - 설립위원회에서는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업무준비 및 운영 안을 마련함.
 - 지원센터 설립 시 필요한 정관(안) 작성부터 시작하여 조직에 따른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르는 예산과 직원채용에 대한 계획 등을 마련함.

2) 초기단계(I)(2011년)

- 초기단계(I)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획 및 구축추진을 목표로 함.
- 초기단계(I)의 업무는 크게 운영업무 기획 및 전략수립, 산업단지 조성 관련업무, 홍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운영업무 기획 및 전략수립의 세부업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중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의 총괄 전략 및 중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산업단지 조성 관련업무의 세부업무는 H/W시설물 관련업무, R&D센터 설립 관련 업무의 사업시행자와 설계지침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함.
- 홍보활동의 세부업무는 입주기업의 인센티브 발굴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외국기업은 선진국 기업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함.
- 초기단계(I)에서의 농식품부 역할은 총괄기획업무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중기 발전 계획 수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방안 마련, 지원센터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역할을 수행함.
- 초기단계(I)의 지자체 역할은 지속적인 클러스터 홍보를 통한 기업유치 활동, 인센티브 발굴,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진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초기단계(II) (2012년)

- 초기단계(II)는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획 및 구축 추진과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의 성공적인 유치를 목표로 함.

- 초기단계(Ⅱ)의 지원센터 업무는 총괄기획 업무, 산업단지 조성 방안마련, 기업유치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총괄기획 업무의 세부업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장기 발전계획 수립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 농어업 연계방안 마련과 같은 핵심정책 아이템 발굴을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기업지원의 세부업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기획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업무와 지원센터 총괄전략 및 장기 경영 계획 수립 지원 업무 진행 그리고 6대 H/W 시설물 건립을 위한 사전 업무 활동임.
- 산업단지 조성 방안마련의 세부업무는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지방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총괄관리 함.
-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기업유치 전략을 기획하고 수립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초기단계(Ⅱ)에서의 농식품부 역할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장기발전 계획 수립, 지역 농어업 연계방안 마련 등 핵심정책 아이템 발굴, 연구 용역 계획 및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초기단계(Ⅱ)의 지자체 역할은 산단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지속적인 투자 및 입주기업 유치활동 진행, 단지 개발관련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4) 형성단계 (2013년~2015년)

- 형성단계에서는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H/W시설이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고 기업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목표로 함.
- 형성단계의 지원센터 업무는 크게 총괄관리 업무, 기업지원 방안마련,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업무로 구분할 수 있음.
- 총괄기획 업무의 세부업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행과 국가 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 정책개발 임.
- 기업지원 방안마련 업무의 세부업무는 지원센터의 기업지원(S/W)사업을 기획하여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S/W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조성업무의 세부업무는 3대 R&D센터, 임대형공장과 Pilot Plant 등 기업지원시설 설계 및 구축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H/W시설과 R&D지원센터 구축과정 총괄 관리 업무를 진행함.
- 기업유치 업무의 세부업무는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활동을 함.

- 농식품부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행,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강화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지자체에서는 R&D지원센터를 비롯한 H/W시설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지원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함.
-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기업유치활동을 진행하여야 함.

5) 향후발전단계 (2016년~2020년)

- 향후발전단계에서는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정화 및 성공적인 운영과 식품분야 네트워킹 구축 및 운영 총괄을 목표로 함.
- 지원센터의 업무가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기획총괄 업무, 기업지원 업무,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 기업유치 및 대외협력 업무를 통하여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시설관리를 실행하여 클러스터가 조기정착을 유도함.
- 총괄기획 업무의 세부업무는 각 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 운영을 총괄하여 식품클러스터를 총괄하는 중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지원 업무의 세부업무는 발전단계에서 수립한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세부계획을 실행하여야 함.
- 입주한 기업들의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한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연구 성과물이 관련 식품분야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함.
- 식품인적자원개발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식품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식품클러스터의 지속적인 혁신역량 증대의 역할을 수행함.
- 포괄적 지원 및 네트워킹 사업은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업그레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 연속성이 필요함.
-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는 구성된 네트워크의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하여 네트워크 안에서 활발한 교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업이주 및 입주 지원업무인 공장설립 무료대행, 공장설립 정보시스템 활용, 이전 활성화 업무 등을 추진함.
- 기업유치 및 대외협력 업무의 세부업무는 국·내외 홍보활동과 타 클러스터와의 연계 체계 구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식품부에서는 지원센터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지속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형성 노력을 실행함.

- 지자체는 산·학·연·관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각 입주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협조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클러스터 내의 시설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업무를 진행함.
- 클러스터 내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 투자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6) 글로벌 도약단계 (2021년~향후)

- 글로벌 도약단계는 국내 외 수출 또는 수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 초일류 FOODPOLIS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글로벌 네트워크구축은 해외의 KOTRA, 대사관,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로 식품클러스터 내 입주업체와 해외 클러스터 현지 입주 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함.
-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해외기관과의 MOU 체결을 주선하여 대학기관과 함께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주요사업(안)

가.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 수행방안

1)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의 필요성

- 국내 다른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많은 국내 식품업계의 경우 정부차원의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식품 생산에 필요한 식품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IPET의 사업은 상시 기술수요조사에 의한 과제발굴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수시 현장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 성과확산을 지원하고 수시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이 필요함.
- 이러한 식품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통한 성장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산·학·연이 참여하는 연구체계가 필요함.

- 산·학·연 이 직접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및 실질적인 기술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클러스터의 경쟁력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식품특화개발사업의 역할

- 국가 연구기관이나 타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에 의한 원천기술이 개발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급함.
-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과제화 하여 성과가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파생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
- 산업체를 반드시 포함하는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한 맞춤형 특화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3) 식품특화개발사업 추진방안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은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출상품화를 위한 전통식품의 상품화 지원,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및 고부가가치 신 시장 창출 지원, 안전식품의 공급을 위한 식품품질관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은 크게 ①기술수요조사 ②과제발굴 ③연구기관 선정 ④연구수행 관리 및 평가 ⑤연구결과의 활용(기술이전 지원)의 단계를 거침.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에서 IPET의 주요업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식품특화기술개발 관련 기술동향의 조사 및 기술수요 예측.
 - 식품특화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 식품특화기술개발의 연구과제 선정, 협약, 수행, 평가.
 - 식품특화기술개발의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기술 발굴, 연구과제 발굴, 정책개발.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식품특화기술개발 관련 기술동향의 조사 및 기술수요 예측.
 - 수시 현장 애로 기술 사업에 대한 주체적 역할.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을 위한 기업 중심 R&D 지원 사업.

4) IPET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협력방식을 통한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수행

- IPET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임.
- 기술개발 사업의 각 단계를 IPET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나누어서 담당함.
- 과제 발굴 및 기술수요조사는 IPET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수요조사를 시행함.
- 연구기관 선정은 IPET가 담당함.
- 연구수행관리 및 평가, 그리고 연구결과의 성과확산은 IPET가 담당함.

■ 협업화 업무추진 프로세스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IPET에 기술과제를 제안함.
- IPET에서는 기술과제 선정 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제안된 기술과제를 기획 과제로 채택하여 기술수요가 있는 입주기업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술개발과제 선정 후 IPET는 인터넷, 신문 등을 이용하여 기술개발과제를 공고하고, 홍보하여 각 연구소 및 대학들로부터 지원서를 접수함.
- 연구계획서 접수 후 IPET는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작업을 실시한 후 선정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을 실시함.
- 연구진행 시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2개월 전까지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IPET는 중간보고 평가 업무를 진행해야 함.
- 최종평가는 중간보고와 같은 방식으로 IPET에서 실시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IPET는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기술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함.
- IPET와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연구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함.
- 협업화를 통한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은 IPET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추진 시 식품특화기술 사업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지 않는 연구를 수행하여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과 제한된 분야의 식품기술개발 연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또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수시 현장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술과제 우선선정 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IPET의 협업을 통한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은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수요조사에 의한 제안 기술과제를 우선선정 함으로써 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수요 충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활용을 위해 지원센터에서 제안한 기술과제에 대하여 IPET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그 외에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관이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과제를 기획과제, 일반과제, 식품클러스터과제로 나눌 수 있도록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제안한 기술수요 과제를 우선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수시 현장 애로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 프로세스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농림식품부에 예산을 신청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클러스터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R&D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원센터에서 식품산업관련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함.
- 입주 기업들로부터 수시로 기술수요 파악 후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과 수요자 중심의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사업공고 실행함.
-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을 체결함.
- 연구기관 선정 후 주관연구기관은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며, 지원센터는 최종보고 후 연구 성과활용 평가를 실시함.

5)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의 아이템 선정

■ IPET의 특화기술개발사업 수행 사례

- IPET는 농식품 관련 기술개발을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상시 운영하여 기술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 IPET의 기술개발 프로세스는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현장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수요조사 된 연구과제들을 일반과제, 기획과제 등으로 분류하여 기술과제를 선정함.
-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IPET는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연구주체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을 지원 및 성과확산에 기여함.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의 아이템선정

- IPET 2017년 농식품 가공·유통 기술 4대 핵심기술과 ATKERNEY 보고서에 의하여 수요가 크고, 미래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한 6대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한 기술을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계획」 용역과제에서 선정한 전략품목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농식품가공기술개발은 친환경 가공제품, 일반식품(음료류, 과자류, 곡물가공품, 유가공식품), 식품유용물질, 신 가공제품, 로하스 가공식품, 특수목적 식품, 미래형 식품을 개발하는 기술임.
- 건강기능식품개발기술은 천연농산물 기능성 소재의 독점적 발굴 및 제품화 기술개발, R&D 전략 품목(기능성 식품, 기능성 소재 첨가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소비자 지향적 건강기능 식품을 개발하는 기술임.
- 전통식품 기술은 김치, 한식 전략 품목 인 장류(고추장, 된장 등), 주류(전통주), 글로벌 비빔밥, 기능성 떡, 한과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임.
- 식품 신 유통기술은 소비자 관점의 품질지표 및 품질 개량화 기술을 개발하고 유통 및 물류에 대한 관리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 하는 것임.
- 글로벌 식품 기술개발은 커피식품, 소스/드레싱, 차/음료류, 유제품 등 대중성 있는 글로벌 식품에 대하여 기술을 개발 함.
- 기타가공기술개발은 원료전처리 기술, 저장기술, 포장기술(친환경 포장재), 위생관리기술 등을 개발함.

〈표 6〉 농식품 가공·유통 6대 세부 핵심기술

농식품 가공기술	천연신소재/유용물질 개발 기술	건강기능 식품개발 기술	생리활성 성분 동정, 상호작용, 상승작용 규명
	구조변환기술, 품질변화기술 등 소재부가가치 증대기술		체형화 기술
	BT, NT, IT와의 융합을 통한 신 가공기술 및 공정		영양-유전체 진단기술
	비열처리 가공기술 및 공정		뇌기능 및 정신건강 효능 평가 모델 개발
	비열처리 가공기술/대체 가열 기술/Hurdle technology		식품 소재의 소화/흡수율 판정
	우주식품/초 압축식품 등 미래형 가공식품 개발기술		In vitro, 동물실험 및 인체시험 효능 평가 모델 개발
전통식품 개발기술	수출전략형 농식품 개발 기술 및 수출목표 나라 기호조사	식품 신 유통기술	유용성분이 안정성 및 생체이용률 증진
	한국고유 전통식품의 우수성 규명 및 가능성 강화		소비자 관점의 품질지표 및 품질 개량화 기술
	전통식품유래 유용물질 생산 우수 균주 선발 및 개량		위해물질 속/진단/검지/계측기술
	수출목표 국 소비자의 소비패턴/ 기호도 조사 및 Database 구축		수확 후 생리활성 변화 제어기술
	현지인에 적합한 전통식품의 기호/관능특성 개선		U-IT 활용 유통/물류 관리기술
글로벌 식품기술 개발	저염화 발효식품용 신규 균주	기타가공 기술개발	친환경/저 에너지형 유통 관리기술
	천연소재 및 생산기술 개발		비가열처리 가공기술 개발
	천연 향, 변색, 외관변질 방지 기술개발		산지가공기술
	국내 원재료를 이용한 와인개발		다단계 복합처리 설계기술
	국산원료를 이용한 소스/드레싱 개발		지능형 포장소재 개발
중국인 기호에 맞는 유아분유	현장 적용형 검출기술		

자료 : ATKEARNEY,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용역」, 전라북도, 2009. 재구성.
IPET 2017년 농식품 가공·유통 기술 4대 핵심기술, 재구성

6)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수행방안

- 식품특화기술개발의 연구과제는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원천기술 과제, 공공과제, 응용과제, 사업화 과제, 국제공동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원천기술 과제는 미래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위주로 개발을 실시하는 과제임.
- 공공과제는 정부공공임무 수행차원에서 실시되는 과제임.
- 응용과제는 원천기술의 응용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과제임.
- 사업화 과제는 사업화를 전제로 개발되는 과제로서, 기업체가 연구개발의 주 기관임.
- 국제공동연구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인력 교류를 전제로 한 공동연구체제를 채택하고, 기술수출전략 차원의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함.

〈표 7〉 연구 성격별 기본전략

연구성격	기본전략	비고
원천기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주관기관 중심 연구개발(공동연구가능) • 대학, 국가출연연구소가 중심(민간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 중시
공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공공임무 수행차원의 연구수행 (연구결과 파급효과 큼) •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연구원의 참여 및 평가가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방법 및 연구수행전략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임 • 출연금 개념보다 용역발주개념으로 연구와 사업의 통합 추진 • 민간부담비율 최소화
응용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기술의 응용기술 개발이 목적 • 성과확산을 고려한,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장려 • 주관 연구기관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일 경우 컨소시엄 형 기술개발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연구 개발 실패 위험 및 자원 분산 • 기술혁신 성공관점에서의 컨소시엄 구성 내용에 대한 평가
사업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의 주체를 기업체로 함 • 벤처기업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 및 사업화 전략을 중시하여 평가함
국제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경우, 연구인력 교류를 전제로 한 공동연구체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출전략 차원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기관의 보유기술 경쟁력, 기술이전전략이 중요 평가요인임

7) 식품특화기술 성과확산 방식

- 식품특화기술의 성과확산 방식은 기술의 매매방식, 라이선스 방식, 기술과 관련된 경영 자원과 함께 기술이전 및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 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8〉 성과확산 방식

성과확산방식	내용
기술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성과확산으로서 기술수요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
라이선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설정 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이나 노하우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공급자가 특허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기술공급자는 통상 실시권을 설정한 후에도 동시에 다수의 제3자에게 같은 범위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하는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요자가 기술공급자로부터 실시권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할 수 있는 계약관계
기술과 관련된 경영지원과 함께 기술이전 및 거래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 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 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전체 기술 중 특정 기술부문을 분사하여 매수하는 방식

8) 식품특화기술 성과확산

- 식품특화기술개발 성과확산 사업은 크게 성과확산 준비단계, 성과확산관리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성과확산 준비단계에서는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체와 연구개발을 진행한 주관 연구기관이 IPET 혹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 기술이전 신청 또는 기술이전 계획서 작성을 접수함.
 - IPET의 기술이전 심의회 구성 및 업체 평가를 통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 짐.
 - 성과확산 관리단계에서는 기술이전에 대한 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기술료 납부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9) 주요 성과확산 기술

-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의 아이টে으로 선정된 6대 핵심 기술 중 IPET 2017년 농식품 가공·유통 기술 4대 핵심기술의 성과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4대 핵심기술을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계획」 용역과제에서 선별한 전략품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한 성과확산이 어려움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성과확산에 필요한 기술에 집중하여 개발지원을 하여야 함.
 - 4대 핵심기술은 농식품가공 기술, 건강식품 개발기술, 전통식품개발기술, 식품 신 유통기술 임.

나. 식품인적자원 개발사업 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력수요 조사를 수시로 시행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식품인력 양성계획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수행함.
- 식품인력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문 인력양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전문 인력양성은 전문 기능인력과 연구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또한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의 임직원 교육 등 기존 기업들 내부에서의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인력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투자 및 교육이 필요한 정규교육과정인 학위과정(전문 인력양성)과 단기적이고 비상시적인 비정규교육과정인 비학위과정(입주기업 내부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음.

1) 단기적 사업을 통한 식품인력 양성

■ 입주기업 임·직원 교육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정규교육과정)

- 맞춤형 인력개발 수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단기적이고 비상설적인 인력양성 사업이 필요함.
- 입주기업의 임·직원 교육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최고 경영자 과정

-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원활한 협업, 경영 노하우 및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경영자들의 현실 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과정임.

■ 직무별 특화교육

- 식품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별 특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전문성 강화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능·생산 인력, R&D 인력, 판매·지원인력의 직무별 차별화된 교육을 운영함.

■ 경영 일반교육

- 경영 일반교육인 식품아카데미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지역대학이 주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형태로 비상설적으로 운영되며, 운영주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역대학 참여기관은 지역대학 및 연구소임.

〈표 9〉 단기 인력양성 프로그램

	최고경영자과정	직무별 특화교육	경영일반교육
커리큘럼	신상품개발, R&D 중요성, 유통 및 마케팅, CEO 리더십, 인사조직, 중소기업지원정책, 벤치마킹	식품실무전문인력 : 식품산업정책, 시장동향, 식품가공 기초기술, 기능성평가기법, 성분분석, 유통 및 마케팅, 안전성, 식품관련 통계기법 생산/기능인력 : 식품생산 기술 및 가공공정, 기계공작법, 생산관리, 포장/물류관리, 품질,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전문인력 : 기능성식품개발전략, 표준화, 안전성, 기능성, 임상실습사례, 마케팅, 개별인정서류작성실습	식품일반이해, 경영전략, 해외 비즈니스, 원기구매, 생산관리, 재무, 회계 IT
기대 효과	정규교육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각종 단기 생산/기능 프로그램 제공		

2) 중·장기적 사업을 통한 식품인력 양성

■ 식품 전문 기능인력 양성

-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능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과 기업이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기능 인력이 양성 될 수 있도록 함.
 - 학위 연계 교육훈련, 학점 인정 등 우수 기능 인력의 중소기업 근무 유입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강화함.
 -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개설을 통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취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기업의 근무인력을 전문대학 관련학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 전공과 연계된 현장연수 시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연구 인력 양성

- 산·학·연 공동 연구체계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고급 연구 인력 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수요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산·학·연 공동 연구체계 강화를 통한 연구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공동 연구체계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관련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간의 공동연구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장소 제공 및 각종 인프라 지원, 연구원의 배치 및 발굴을 통하여 인력을 양성 하고 양성된 연구인력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식품대학원 및 학연연구과정을 통한 인력양성

- 식품대학원은 기존 대학에 특수대학원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며, 운영주체는 식품대학원 및 설치대학, 참여기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역연구소, 지역대학 임.
- 식품 학연협동연구과정은 한국식품연구원 및 농진청 산하 4개 연구소의 협의체를 구성 하여 입학대학학위 및 식품연구기관 학위과정 수료증을 수여하는 운영형태이며, 운영 주체는 지역연구소, 지역대학, 참여기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임.
 - 교육대상은 학·석사 졸업생, 취업희망자, 식품기업 연구·개발인력이며, 석사·박사 학위 과정이 교육내용임.

〈표 10〉 중·장기 인력양성 프로그램

종류	기능인력	식품대학원	학연협동과정
커리 클럼	1학년 : 식품학개론, 전공영어실무, 컴퓨터기초, 공학기초, 공업경영, 봉사활동 등	식품경영 : 식품학연구, 식품개발론, 식품관계법규, 식품규격론, 식품위생학, 사례연구, 식품전문기특강,	대학과정 : 실험계획법, 식품공학통계, 고급식품화학, 발효·대사공학, 효소·단백질공학,
	2학년 : 전공이론과목은 생명과학, 식품제조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기능성식품학, 식품화학, 미생물학, 식품소재학, 식품안전관리, 식품마케팅, 기능성식품학 전공실습과목 : 기초조작실습, 식품제조저장실습, 식품안전위생실습, 식품가공실습, 프로젝트 실습, 현장실습 등 식품가공기능사과정 : 직업과 사회, 건강과 능력개발, 컴퓨터,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 및 기계 등이며, 식가공 실습, 프로젝트 실습	식품영업 및 마케팅 : 식품마케팅, 식품유통론, 식품소비경제론 식품산업 관리 : 식품경영학, 식품경영전략론, 식품산업조직론, 인적자원론, 식품산업재무관리	식품미생물대사공학, 식품분자미생물학, 식품생물공정공학, 식품포장학, 식품품미화학, 식품생물계측공학, 식품안전성학, 식품분석학, 기능성소재와 생리학, 식품구조유전체학, 식품효소학, 유지식품학, 식품위생미생물학 식품공학관련 기초 실험
기대 효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화 된 생산/기능인력 양성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대기업 및 일부 대형 중소기업에 공급할 식품범용인력 양성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기관에 공급할 실무지식을 갖춘 연구/ 개발인력 양성

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위한 네트워킹 방안

- 네트워킹은 기업 간의 분업에 의한 협력의 지속적 관계를 의미함.
- 거래관계에서 기업조직 내와 기업 간 구조가 혼합된 중간적 유형의 거래관계는 물론 기업 활동과 관련된 여타의 모든 기업과의 관계유형을 포괄함.

1) 미니클러스터

- 식품클러스터안의 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이룸.
- 식품클러스터내의 특화업종별로 기업체,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모여서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함.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원과제는 각 미니 클러스터 활동을 거쳐 미니클러스터 운영위원회 및 회장단 추천으로 현장실태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기술평가위원회 상정,

사업자를 선정하여,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의 활동참여에 따라 과제 지원함.

- 미니클러스터별로 다수의 소그룹인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기술 및 경영애로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으로 기업 간 협력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함.

2) 공동사업화 지원

-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공동사업체에 대해 타 사업과의 연계 및 공동사업자금 융자 연계 등 지원을 실시함.

라.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포괄적 지원 방안

- 식품클러스터 내의 입주기업에 포괄적 지원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기업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으며 이는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 질 수 있음.

1) 창업인큐베이팅

-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식품창업경진대회, 식품기업 매칭서비스 사업, 창업기업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식품창업 경진대회

- 우수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자발적인 창업 촉진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식품창업 경진대회를 지원센터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게 창업에 필요한 경영 및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식품기업 매칭서비스

- 식품기업매칭서비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클러스터 내 기업과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임.
- 창업기업의 매출을 신장시키고 기존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파트너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센터는 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매칭 서비스를 실시함.

■ 창업기업 지원사업

- 지원센터는 창업기업의 사업아이템의 사업성과 기술성, 시장성을 점검하고, 수정, 보완을 실시하도록 함.
- 지원센터는 기술개발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술적 애로를 지원, 완성도를 높여 기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기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지원함.
-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향상과 성과 도출을 위해 PILOT PLANT 사용을 지원하며,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장비들은 전문 연구기관, 기업지원 유관기관, 타 대학기관과의 협조적 제휴를 통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함.
- 성과확산을 통한 창업을 위하여 기술거래기관(예: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이전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이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마케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함.
 - 시장개척지원, 문제해결 멘토지원, 브랜드개발지원, 홍보지원

2) 마케팅 지원

■ 시장 개척 지원

- 운영 가능한 시장 개척 프로그램은 소매점 확보, 제휴마케팅,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구축, 식품박람회 및 컨벤션 개최 등이 있음.
- 해외시장개척은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우수기술 습득, 해외바이어 발굴, 무역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및 발굴할 수 있음.

■ 문제해결 멘토 지원

-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경영 애로사항을 위해 산업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POOL을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 브랜드 개발 지원

- 개별기업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의 목적은 창업 초기 또는 신규 브랜드 출시 초기 가용 마케팅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 개발된 브랜드의 전파, 제품의 판매처 확보를 위한 브랜드 및 제품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하며,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함.
- 개별기업 브랜드 개발지원은 먼저 개별기업이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브랜드 개발 지원신청을 하면,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기업체를 평가 및 선정을 하고, 브랜드 전문개발업체를 선정하여 브랜드 개발 업무를 위탁함.
- 브랜드 개발 실시 후 브랜드 개발업체는 계약서, 소요경비 내역이 정리된 계산서, 결과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지원예산을 청구함.

■ 식품클러스터 통합브랜드 구축

- 성공적인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 브랜드 개발 및 통합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홍보 활동 추진이 필요함.
- 통합 브랜드 개발 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특징과 장점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으며,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타 식품클러스터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하여 식품클러스터가 초기에 활성화 될 수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통합 브랜드 구축 및 홍보 사업은 전문기관 선정, 실제 브랜드 개발, 홍보 단계의 업무프로세스로 진행 됨.

■ 기업체 홍보지원

- 국내홍보, 제품 동영상물 제작, 타지자체 및 타 클러스터와의 MOU 협약을 통하여 클러스터 내 기술혁신 및 기업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체 홍보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식품클러스터 내 중소기업이 홍보신청서를 제출하면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전문 홍보업체와 매칭을 실시함.

마.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행방안

1) 관리업무의 필요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역할이 단순한 산업 집적이 아닌 새로운 지식 창출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클러스터에 적합한 지원체제나 제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축한 지원체제를 유지 및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함.

2) 관리업무 수행방안

- 지원시설, 도로 등 클러스터 내 인프라를 총괄관리 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클러스터 전체의 환경 분야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클러스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반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반시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

3) 주체에 따른 관리업무방안 사례

- 국내 외 클러스터 관리업무를 살펴보았을 때, 클러스터의 S/W관리는 지원센터가 전담 관리 하고, H/W는 관리 주체가 다를 수 있음.

〈표 11〉 H/W 관리주체에 따른 장점과 단점

구분	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지자체
사례		- 국내산업클러스터 - 오송생명과학단지(현재)	- 지역농업클러스터 - 대덕특구
장점	- 국가식품클러스터 S/W 사업과 연계한 사업 진행용이 - 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 강화	- 오랜 기간 축적된 산업단지 관리 노하우 활용가능	- H/W관리에 있어서 행정지원 유리
단점	- H/W 관리 노하우 부족 - H/W관리에 있어서 행정지원의 한계	-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 S/W관리와 H/W관리 이원화의 비효율성 발생 - 국가식품클러스터 설립목적과 관리의 일관성 부족 우려	- S/W관리와 H/W관리 이원화의 비효율성 발생 - 국가식품클러스터 설립목적과 관리의 일관성 부족 우려

- 각 주체에 따른 관리업무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식품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가 필요함.
- 또한 S/W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하여 지원센터 주도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가 필요함.
- 지원센터 주도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 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방안】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및 관리 주체 검토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조직형태 검토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어떠한 조직의 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 및 운영에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지원센터의 조직형태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은 ①지원센터를 정부조직 내 편제 ②정부 산하 공공기관 ③비영리 재단법인 ④정부출연기관의 부서 ⑤민간기업 임.
- **공공부문의 관리시스템과 민간부문의 성과중심 육성지원시스템이 결합된 정부산하의 공공기관 형태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지원센터의 법적 지위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2에 의해 설립근거와 함께 사업의 운영에 대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법인임.
- 지원센터는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함.
- 지원센터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함.
- 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출연이 필요함.

다. 관리주체 선정 논의

- 지원센터의 관리주체는 ① 농식품부 단독 ②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신속한 단지 조성과 성공적 투자유치를 위해서 클러스터 조성 초기 단계에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초기에 단지조성과 하드웨어 시설 구축과 같은 비용 소요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사업의 추진력이 필요함.

-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총괄 역할을 맡은 지원센터 또한 중앙정부(농식품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 함.
- 그러나 「식품산업진흥법」제12조의2 제3항2호의 법률 근거로만 지원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권자가 되기에 법률적 효력이 약함.
 - 따라서 지원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권자가 되기 위해서 「식품산업진흥법」에 효력이 있는 법률 조항 개정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클러스터가 입지한 공간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음. 즉, 중앙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의 주체가 되고, 지자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의 협력자 역할을 수행함.
-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크게 ①투자유치 ②클러스터 단지 개발 ③지원사업의 예산지원 분야임.

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사회 구성안 및 설립절차

- 이사회 구성은 전문성과 함께 직능대표성을 함께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이사는 상근직인 이사장과 비상근직인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함.

〈표 1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사회 구성안

대표기관	내용	명	비고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부주무기관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국장	1명	식품유통정책관 (당연직 이사)
전라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무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	1명	농수산식품국장 (당연직 이사)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무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담당하는 부시장	1명	부시장 (당연직 이사)
식품 민간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식품생산자 단체 또는 식품 생산관련 단체의 장 또는 그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그 단체의 소속 임원	3명	농식품부, 전북, 익산시에서 각 1명씩 추천
식품 공기업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농업인 단체	「농업협동조합법」제126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업경제 대표이사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그 소속 임원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자	2명	
연구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1명	
학계	식품 또는 농업 관련 분야 전공의 대학교수	2명	농식품부와 전북에서 각 1명씩 추천

주 : 이사장을 포함하면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됨.

- 지원센터의 설립은 먼저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작성, 이사장 및 임원 추천, 설립 등기 등 법인 설립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에서 설립위원회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설립위원회 운영 지원, 설립관련 제반사항 사전 검토, 설립위원회 논의안건 작성, 조직 구성 및 인력운영 방안, 내규규정, 정원 및 인사, 급여, 직원 선발, 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한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 설립등기 계획을 마련함.
- 설립절차는 통상적인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준용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설립위원회 구성 → ② 정관 등 제규정 작성 → ③ 이사장 및 임원선출 → ④ 농식품부 장관 허가 → 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⑥ 농식품부 장관에게 설립보고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구성

- 지원센터 조직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단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함. 즉 지원센터의 조직은 식품클러스터의 조성 단계와 연동하여 조직의 구성이 달라짐.

〈표 13〉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단 계	기 간	내 용
초기단계(I)	2011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부지조성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지원센터는 산단조성업무,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계획 수립 업무,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업무에 중점을 둠
초기단계(II)	2012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부지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서 지원센터는 산단 조성 업무, 클러스터 홍보 및 기업 투자 유치 업무, 그리고 지원 H/W 시설물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운영 계획 수립 업무에 중점을 둠
형성단계	2013~2015년	1단계의 부지조성이 끝나고 H/W 시설을 건설하는 단계로서 H/W 건물 구축 총괄 관리 업무,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전략 업무, 그리고 입주기관을 위한 S/W 사업에 대한 계획안 마련 업무에 중점을 둠
향후 발전단계	2016~2020년	H/W 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단지 내에 마련된 지원센터 건물에 입주하여 본격적인 지원센터의 업무가 시작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 조성된 단지로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됨. 이 단계에서는 입주기업의 본격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사업이 수행됨.

1) 초기단계(I)에서의 지원센터 조직 및 인원 구성방안 ('11년)

- 사업초기단계에는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획 및 구축 추진과 지원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목표로 함.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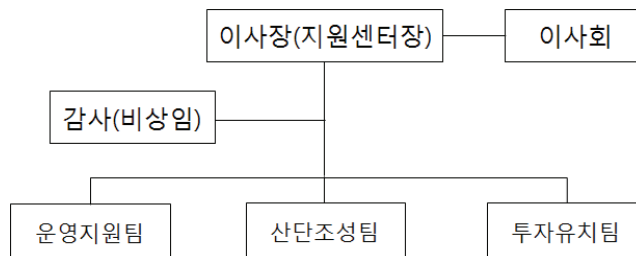
-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계획 수립
-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
-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홍보 및 투자 유치 전략 수립
- * 6대 H/W 시설 건립 계획 및 운영 로드맵 수립

○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총괄기획, 산단조성, 투자유치, 운영지원** 업무 활동이 필요함.

〈표 14〉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I)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구 분	업 무
총괄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중기 발전 계획 수립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방안 마련 • 지원센터 총괄전략 및 중기 경영계획 수립 • 연구 용역 계획 및 관리 • 지원센터 예산 집행 관리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기획·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업무 • 지원센터 총괄전략 및 중기 경영계획 수립 지원 업무 • H/W 시설물 세부 운영 로드맵 수립 • 지원센터의 총무, 인사, 회계, 정보와 관련된 행정업무 수행 • 이사장 또는 지원센터장의 업무수행 지원
산단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 친환경 기반시설(폐수·폐기물처리시설 등) 구축방안 마련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기업유치 인센티브 발굴 및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 수립 •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 조직도



○ 지원센터의 인원 구성

〈표 15〉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Ⅰ) 지원센터 인원구성

팀	인원	직급구성
이사장(지원센터장)	1명	이사장 1명
운영지원팀	6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4명
산단조성팀	3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투자유치팀	3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합계	13명	이사장 1명, 책임급 3명, 선임급 3명, 원급 6명

2) 초기단계(Ⅱ)에서의 지원센터 조직 및 인원 구성방안 ('12년)

- 초기단계(Ⅱ)에서도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구축과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의 성공적인 유치**를 목표로 함.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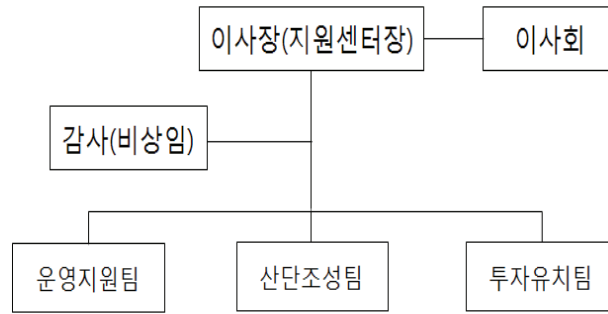
-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관리 방안 마련
- * 6대 H/W 시설물 건립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 * 국내외 식품 기업 및 연구 기관 대상으로 유치 활동
-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초기단계(Ⅱ)에서는 **총괄기획, 산단조성, 투자유치, 운영지원** 업무 활동이 필요
- * **총괄기획은 농식품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함.**

〈표 16〉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단계(Ⅱ)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구분	업 무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기획·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업무 • 지원센터 총괄전략 및 장기 경영계획 수립 지원 업무 • 6대 H/W 시설물 건립을 위한 사전 업무 활동 • 지원센터의 총무,인사,재무,정보와 관련된 행정업무 수행 • 이사장 또는 지원센터장의 업무수행 지원
산단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관리 방안 마련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투자유치 활동 •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 초기단계(Ⅱ)의 지원센터 조직도



[그림 5]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단계(Ⅱ)의 지원센터 조직도

○ 지원센터의 인원 구성

〈표 17〉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단계(Ⅱ)에 따른 지원센터의 인원구성

팀	인원	직급구성
이사장(지원센터장)	1명	이사장 1명
운영지원팀	6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4명
산단조성팀	4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2명
투자유치팀	3명	책임급 1명, 선임급 2명
합계	14명	이사장 1명, 책임급 3명, 선임급 4명, 원급 6명

3) 형성단계에서의 지원센터 조직 및 인원 구성방안 ('13~'15년)

- 형성단계에서도 **H/W 지원시설의 성공적 건립,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의 성공적인 유치, 그리고 기업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목표로 함.
- 형성단계에서는 총괄기획, 행정지원, 마케팅지원, 사업지원, 연구지원 업무 활동이 필요로 함.
- * 총괄기획은 농식품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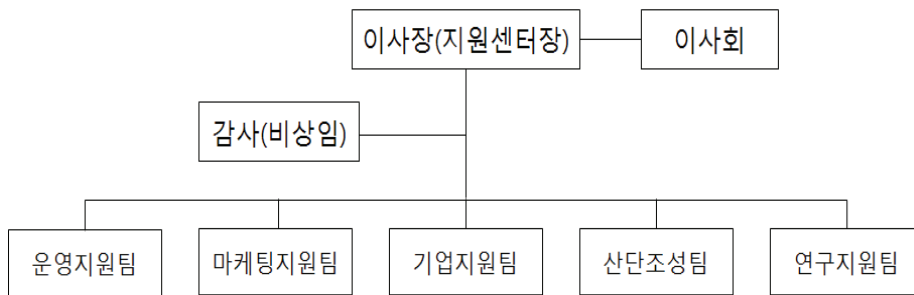
〈주요활동〉

- * H/W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및 건물 구축 과정 총괄
-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관리
- * 국내외 식품 기업 및 연구 기관 대상으로 유치 활동
- * 기업지원 S/W 사업 방안 마련

〈표 18〉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구분	업 무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의 총무, 인사, 재무, 정보와 관련된 행정업무 수행 • 이사장 또는 지원센터장의 업무수행 지원
마케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투자유치 활동 •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정책 개발 지원 업무 • 기업지원 S/W 사업 방안 마련
산단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W 시설 건물 구축 총괄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관리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센터 지원 업무 방안 마련

○ 형성단계에서 지원센터의 조직도



[그림 6]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조직도

○ 지원센터의 인원 구성

〈표 19〉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인원구성

팀	인원	직급구성
이사장(지원센터장)	1명	이사장 1명
운영지원팀	4명	선임급 1명, 원급 3명
마케팅지원팀	3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기업지원팀	3명	책임급 1명, 원급 2명
산단조성팀	4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2명
연구지원원팀	3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합계	18명	이사장 1명, 책임급 4명, 선임급 4명, 원급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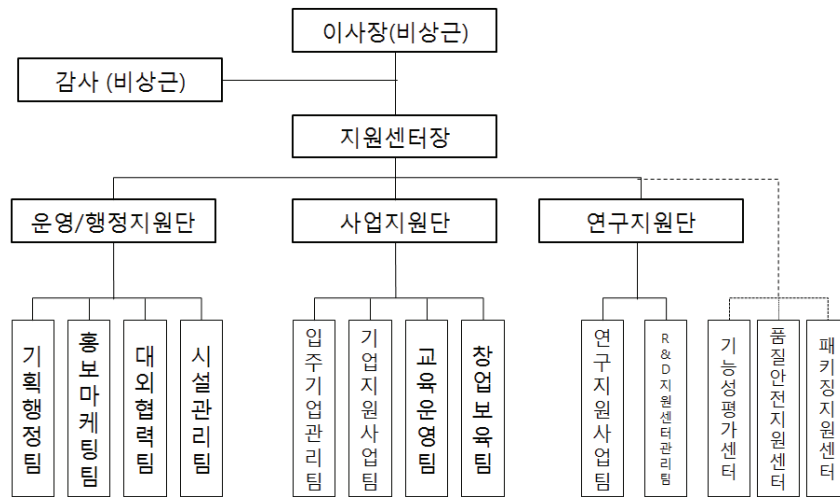
4) 향후 발전단계에서의 지원센터 조직 및 인원 구성방안 ('16년~'20년)

- 사업운영 및 발전단계에서는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정화 및 성공적인 운영과 식품분야 네트워킹 구축 및 운영 총괄**을 목표로 함.

〈주요활동〉

- * 각 지원 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 수행
- *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 전체에 대한 유지, 보수
- * 각 S/W 사업에 대한 실행 총괄
- * 타 클러스터와의 연계 활동 수행
- * 식품산업 정책 연구 등을 통한 식품분야 대학 국가정책 기획 지원
- * 식품 관련 주요 기관, 기업, 연구소를 총괄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완성단계에서는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크게 운영/행정지원단, 사업지원단, 연구지원단을 두고, 각 단 아래 팀을 두어 팀체제의 조직을 구성함.
- 향후발전 단계에서의 지원센터 조직도



[그림 7] 국가식품클러스터 향후 발전단계에서 지원센터 조직도

〈표 20〉 국가식품클러스터 향후 발전 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분장

본부	팀	목표	역할
운영/행정 지원단	기획 행정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안정적 운영 및 지원센터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센터의 기획, 총무, 인사, 재무, 정보와 관련된 행정 업무 수행 지원센터의 총괄 전략 및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이사장의 업무지원 수행
	홍보마케팅팀	기업/연구소의 성공적인 유치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브랜드가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브랜드 관리 및 홍보활동 수행 기업 및 연구소 대상 입주 유치 활동 각종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지원센터 관련 행사 주관
	대외협력팀	국내외 각종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MOU 체결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MOU 체결 지역 농업 및 식품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각종 교류협력 사업 수행
사업지원단	시설관리팀	국가식품클러스터 각종 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원활한 클러스터 기능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하드웨어 시설의 관리, 감독 및 유지 보수 총괄
	입주기업 관리팀	업체들의 클러스터 입주과정의 신속함과 편리성 제공 및 사업개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와 관련된 각종 행정 지원서비스 제공 입주업체 문의 및 상담 요청 사항 대응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지원
	기업지원 사업팀	각종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케팅지원서비스 및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수행 입주기업의 경영컨설팅 비용지원 사업, 기업간 협력 강화 사업 수행 임대형 가공공장 및 파일럿플랜트 운영 및 관리 총괄
	교육운영팀	식품인적자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인적자원개발사업의 총괄 각종 교육프로그램 기획 강사 섭외 및 교육생 모집 교육네트워크 구축 사업 총괄
	창업보육팀	성공적인 식품창업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관련 정보제공,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연구지원단	연구지원 사업팀	각 연구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업체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R&D 수요 조사 입주업체에 대한 개발기술 이전 활성화 촉진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 추진
	R&D지원센터 관리팀	3대 R&D지원센터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의 효과적인 업무공저 체계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R&D 지원센터의 정부출연금 관리 각 R&D 지원센터 간 업무 조율 각 R&D 지원센터 지원 및 연계업무 수행

○ 지원센터의 인원 구성

〈표 21〉 국가식품클러스터 향후 발전 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인원구성

본부	팀	인원(명)	직급구성
이사장		1	이사장 (비상근)
지원센터장		1	지원센터장
운영/행정지원단	기획행정팀	4	선임급 1명, 원급 3명
	홍보마케팅팀	3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대외협력팀	3	선임급 1명, 원급 2명
사업지원단	시설관리팀	3	선임급 1명, 원급 2명
	입주기업관리팀	2	선임급 1명, 원급 1명
	기업지원사업팀	4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2명
	교육운영팀	3	선임급 1명, 원급 2명
	창업보육팀	2	선임급 1명, 원급 1명
연구지원단	연구지원사업팀	3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R&D지원센터 관리팀	2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합계		31명	이사장 1명, 지원센터장 1명, 책임급 4명, 선임급 10명, 원급 15명

주 : 기획행정팀장이 운영/행정지원단장 겸임. 기업지원사업팀장이 사업지원단장 겸임. 연구지원사업팀장이 연구지원단장 겸임.

3.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보수체계

-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대상 직위별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액을 차등 결정하도록 함.
- 기관장의 기본연봉 책정 (이사장이 지원센터장을 겸임할 경우)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을 결정함.
 - 지원센터 기관장의 기본 연봉을 107,542천원에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함.
- 지원센터장의 기본연봉 책정(이사장이 비상근이고 지원센터장과 이사장이 분리된 경우)
 - 지원센터장의 기본연봉은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전무이사 또는 총괄본부장의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함.
 - 지원센터장의 기본연봉을 82,000천원에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함.
- 직원의 기본연봉 책정
 - 신규 임용된 직원의 최초 연봉은 직급별 연봉기준표에 따라 상한 연봉액과 하한 연봉액

사이에서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표 22〉 직급별 기본연봉 기준표

직급	상한(천원)	하한(천원)
수석급	88,572	69,433
책임급	74,990	57,630
선임급	62,386	44,307
원급	42,900	27,80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방안 : 3대 R&D 센터와의 관계■ 중심으로】

1.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3대 R&D 센터와의 관계

- 지원센터의 부설 R&D 기관 형태로 관계 설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 **강한관계** : 이사장(지원센터장)이 각 R&D센터 소장에 대한 임명권과 R&D 센터의 인사권과 예산권·재정권을 가지고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통제하는 관계 (R&D 센터가 지원센터의 하나의 부서로 편입된 형태)
- * **느슨한 관계** : 이사장(지원센터장)이 각 R&D센터 소장에 대한 임명권과 R&D 센터의 예산권을 가지되, 각 R&D 센터의 인사권과 재정권은 각 R&D센터 소장이 가지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 * **독립관계** : 이사장(지원센터장)이 R&D센터 소장에 대한 임명권, R&D 센터의 인사권, 예산권·재정권을 갖지 않고 지원센터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표 23〉 지원센터의 부설 R&D기관 형태로 관계 설정

구 분	R&D 센터장의 임명권	R&D 센터의			
		예산권	인사권	재정권	사업권
강한관계	○	○	○	○	○
느슨한 관계	○	○	X	X	X
독립관계	X	X	X	X	X

주 : ○(지원센터가 가짐), X(R&D센터가 가짐)

- 지원센터와 R&D 센터와의 관계는 **느슨한 관계 설정이 바람직함.**
 - R&D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려면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립의 복잡성과 설립하는데 소요시간이 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강한관계**는 지원센터가 R&D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함께 재정지원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음.
 - **느슨한 관계**는 R&D 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지원센터가 클러스터 조성취지에 맞게 R&D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2. Pilot Plant, 임대형공장의 운영방안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의 운영 방안

가. 임대형 공장의 운영 방안

- 임대형 공장은 식품 가공업,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에게 생산공간, 클러스터 시설 및 서비스 행정, 시설 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AT Kearney, 2009).
- 임대형공장은 지원센터의 부속 하드웨어 시설로 지원센터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게 됨.
- 지원센터의 임대형공장 운영방안은 크게 초기단계, 형성단계, 향후 발전단계, 글로벌 도약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초기단계

- 초기단계는 단계별 사업목표와 추진활동(안)에 의하여 2011년에서 2012년까지의 단계임.
 - 공장 규모와 시설을 확정하고, HACCP 기준에 따른 공장을 건설함.

■ 형성단계

- 형성단계는 단계별 사업목표와 추진활동(안)에 의하여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단계임.
 -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내 기업지원팀에서 공장 건설 및 기업 유치업무를 진행함.
- 입주기업 유치 계획은 정기 및 비정기로 구분하여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입주기업 모집과 지원센터 홍보를 병행함.
 - 입주기업 모집공고 수단은 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소식지 및 지원센터 홈페이지, 일간신문 및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모집을 공고함.
- 기업의 가공공장 입주 시 입주계약의 주요사항은 시설의 주요 명세, 입주 부담사항,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주요 지원서비스 등임.

■ 향후발전 단계

- 향후발전 단계는 임대형공장이 설립되고 입주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2016년 ~ 2020년에 해당하는 시기로 입주기업을 평가하고 업체의 이주를 지원 및 관리하는 단계임.
 - 지원센터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에 맞추어 평가를 진행함.
 - 기업체 평가기준은 재무구조, 경영능력,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입주기업의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클러스터 내의 타 시설과 연계하여 공장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함.
 - 임시 운영하였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기업관리 팀, 공장관리 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함.
 - 기업관리팀은 기업의 입주 및 퇴거, 심사에 관련된 업무, 계약과 서비스 행정업무, 임대 기업 이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함.
 - 공장관리팀은 공장의 설비에 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부대시설을 관리함.

■ 글로벌 도약단계

- 글로벌 도약단계는 2021년~ 향후 기업수요에 맞는 추가적인 공장설립 및 필요설비를 검토함.
 - 임대공장에 대한 초과수요 발생 시 입주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공장설립에 대하여 검토함.
 - 임대공장에 입주한 기업들의 공장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필요설비에 대하여 지원을 검토함.
 - 수요 및 만족도 조사는 지원센터 내 기업지원팀에서 실시하고 홈페이지 내 애로사항 게시판 이용과 건의함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수요 및 애로사항을 파악함.
 -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추가적인 공장설립 및 필요설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파일럿 플랜트 운영방안

- 파일럿 플랜트는 기업들의 생산라인 구축 테스트, 시제품 생산, 소량 생산, 개발연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설비를 제공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함 (AT Kearney, 2009).
 - 시제품 생산 지원은 기업들이 신제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제품의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생산해야하는데, 이에 필요한 라인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생산라인 구축 테스트는 기업들이 본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범생산을 통해 필요한 공정 데이터 등의 정보를 획득해야하는데, 이에 필요한 라인과 설비를 제공하고 공정 분석, 설비 이용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함.
- 제품 개발 연구는 각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 설비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 없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본설비 중 중요 설비는 구입하고, 기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설비는 임대 또는 임차를 통해 지원하도록 함.
- 각 입주기업은 파일럿 플랜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파일럿 플랜트 주체별 관리방안

- 파일럿 플랜트의 관리는 지원센터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과 외부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아웃소싱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4〉 파일럿플랜트의 지원센터관리와 아웃소싱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지원센터 직접관리	아웃 소싱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와 H/W의 일괄관리를 통한 관리 효율성 증대 가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S/W 사업과 연계한 사업 진행용이 • 유사 시 신속한 응대 • 시설관리비용 통제가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비용 절감으로 인건비 절감 • 입찰을 통한 전체 관리비 절감 가능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 업무량대비 과도한 인원 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관리와 H/W관리 이원화의 비효율성 발생가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설립목적과 관리의 일관성 부족 우려 • 유사시 지휘통제의 어려움 • 인수인계의 어려움

■ PILOT PLANT 주요설비

- 파일럿 플랜트 설비의 주요 설비는 먼저 공통적 범용 장비를 도입하고, 추가로 확장 장비를 도입해야함.
- 입주할 기업들의 생산 품목 별 시설 장비를 도입해야함
- 전략 품목별 식품군 파일럿플랜트의 범용기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5〉 파일럿 플랜트의 일반식품 범용 장비

용도	범용장비
세척설비	분무세척기, 부유세척기, 초음파세척기 등
분쇄설비	볼밀, 해머밀, 핀밀, 롤밀, 디스크밀, 콜로이드밀, 기류분쇄기, 분급기 등
혼합설비	원통혼합기, 이중원뿔 혼합기, 스크루혼합기, 리본혼합기, 버터칼믹스, 반죽기 등
유화설비	교반식 유화기, 고압균질, 콜로이드밀초음파 유화기
여과설비	필터프레스, 진공여과기, 원심여과기
건조설비	트레이건조기, 유동층건조기, 드럼건조기, 분무건조기, 동결건조기, 진공건조기 등
농축설비	코일증발기, 진공농축기, 추출기,
살균설비	레토르트 살균기, 고온-초고온 살균기
포장설비	원심분류기, 막분리기, 증류기, 추출기, 냉동기, 정제장치, 포장기, 과립기, sealer, 진공포장기, 스틱포장기, top sealer 등
유틸리티 설비	수처리시설, 보일러, 냉각탑, 에어 컴프레서 등
기타 장비	지게차, 호이스트, 수분등 분석장치, 계량저울, 압착기 등 건강기능성 식품에 필요한 장비(타정기, 믹서기, 캡슐충전기 등)

자료 : 푸드유텍, 「국가식품클러스터 H/W 효율적 배치방안 연구」, 2010

〈표 26〉 전략 품목별 식품군 파일럿 플랜트 범용기기

식품군	전략 품목	범용장비
건강기능 식품군 (R&D 전략 품목)	기능성 식품 기능성소재 첨가물	발효기(5L), 배양기, 고속원심분리기, 연속식원심분리기, 필터프레스, 공급탱크(2000L), 저장탱크(2000L, 5000L), 배지조제탱크(500L), 교반탱크(600L), 이동탱크(300L), 크린스틸발생기, 한외여과장치, 균체과쇄기, 과립기, 유동층건조기, 혼합기, 분쇄기, 진동체, 밴드실링기, 스틱포장기, X-ray 검출기, 보일러, 향온향습기, 정제수시스템, 공기압축기, 냉동기, 공조기, 추출기(2t), 농축기, 심포니(1.5t), 호모믹서(500L), 진공건조기(500kg), 동결건조기, 열풍건조기(500kg), 리본믹서, 하이스피드믹서, 건강음료 포장시스템, 파우치 포장기, 병포장기, 타정기, 코팅기, 선별기, PTP포장기
발효 식품군 (한식 전략 품목)	주류 (전통주) 장류	발효조(30L, 300L, 1200L, 3000L), 발효기(5L), 동결건조기, 초저온냉동고, 냉동 컴프레서, 진공펌프, 동결건조기(20L, 100L, 300L), 냉동창고, 역삼투압수 제조장치, 세포과쇄기, 한외여과기, 시료이송용 압력탱크, 발효보조탱크, 캡슐 포장기, 제균여과기, 효모세포 과쇄기, 저온저장실, 작업탱크(2000L), 원심분리기, 미세여과/한외여과장치, 여과장치, 저장탱크, 원심분리 농축기, 세포과쇄기, 수처리 여과장치, 압여기, 연속멸균기, 추출기 시스템, 강제박막농축기, 원심탈수기, 분무건조기, 탈염 및 농축용 역삼투 파일럿 장치, 여과장치보조탱크, 포터블 펌프, 진공포장기, 타정기, 액체충전기, 컨베이어벨트, 계수충전기, 다기능 원심전동 과립코팅기, 분말 자동포장기, 캡슐충전기, 습식분쇄기, 타블렛코팅기, 액체사면 은박포장기, 자동티백포장기, 티백랩포장기, 자동라벨부착기, 건식분쇄기, V형 혼합기, 과립제조기, 체진동기, 환제조기, 파우치 포장기, 교반식 유화기, 고압균질, 콜로이드밀초음파 유화기, NK 증자기(300Kg), 매주성형기, 고추장, 된장 혼합기(300Kg), 간장 여과, 포장기, 청국장환 제조기, 분쇄기

- 파일럿 플랜트 운영은 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예약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내 기업지원팀이 예약시스템을 운영·관리함.
- 장비사용료는 감가상각비, 전기료, 인건비, 유틸리티비, 기타 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정함.

3. 산학연 협의회 구축 및 운영 방안

가. 산학연협의회 구축 방안

-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식품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및 연구원의 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클러스터 단지 내에 혁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을 상호연계 시키는 산학연 협의회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협의회는 식품산업 관련 업체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최근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등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
- 클러스터 입주기업들과 연구원,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정보를 포함한 상호 교류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기술, 인력, 연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 산학연협의회 구축방안

- 산학연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킹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산학연협의회 회원은 클러스터 내외의 식품산학연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
 - 산학연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학연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함
 - 협의회 운영위원 중에서 협의회장을 선출함
 - 협의회는 산학연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구상하고 결정함.
 - 협의회 주요사업 : 포럼 운영, 세미나 개최, 간담회 개최 등
 - 지원센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경비를 지원함.
- 포럼 중심의 네트워킹 구축은 학회나 포럼 등의 교류의 장을 통하여 네트워킹을 구축함.
 - 지원센터에서 클러스터 주변에 위치한 기업체, 연구소, 학교, 정부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식품클러스터 고유의 정기적인 포럼을 신설 및 운영해야함.
 - 기업지원팀은 공식 네트워킹이 구축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학습동아리 중심의 네트워킹 구축은 클러스터 내부의 산·학·연 구성원들 간 자발적인 교류 및 학습조직을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식품관련 주제에 대하여 학습하고, 공유하면서 인적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학습동아리 중심의 네트워킹 구축은 초기 자발적 네트워킹 구축이 어려움에 따라 지원센터 내 기업지원팀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시설의 기획 및 관리】

1. 지원센터 등 지원시설물의 효율적 배치방안

가. 6대 H/W 지원시설물의 효율적 배치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할 6대 H/W는 대지 이한 녹지용의 최적화, 입주할 H/W의 독립성 및 연계성의 최적화, 유지관리의 최적화라는 세부목표를 갖고 진행이 되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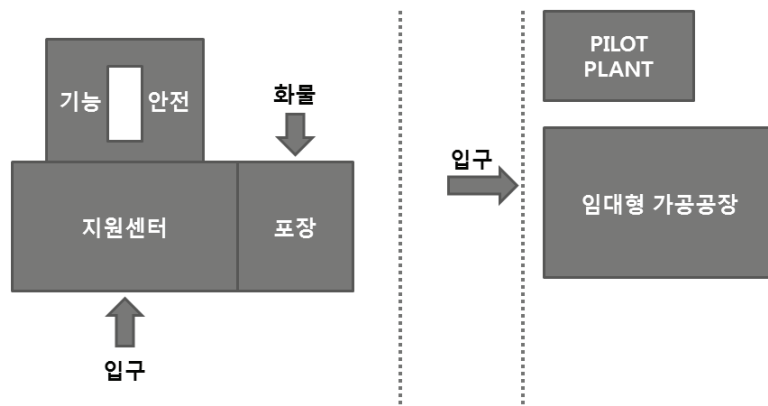
■ 기관별 배치특성

-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6대 시설 및 기관별 배치특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배치특성
클러스터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클러스터 내 랜드마크 기능의 상징성 확보 - 식품클러스터 내외 기관 및 시설물 입주기업들의 접근성 확보 - 자연친화적 환경성 확보 - 사적 외부공간 확보
식품기능성 평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인접 - 식품품질안전지원센터와 인접 - 운영 및 관리 효율성 고려 - PILOT PLANT와 인접
식품품질안전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인접 - 식품기능성평가센터와 인접해야함 - PILOT PLANT - 임대형 공장과 인접
식품패키징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인접 - 식품품질안전지원센터와 인접 - PILOT PLANT와 인접 - 접근이 용이한 도로와 인접한 쪽에 위치 - 물류센터 건설 시 물류센터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 - 독립건물 형태 유지 - 진동, 소음 등 낙하시험을 흡수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
Pilot Pl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생산공장과 유사한 공간배치 - UTILITY 구성을 위한 지하공간 필요
임대형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지역에 위치 - 식품기능성평가센터와 인접 - 식품품질안전지원센터와 인접 - PILOT PLANT와 인접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인접 - 전처리센터, 물류센터와 인접

■ 배치방안

- 기능별 수직 집중형은 기관 및 시설을 기능별로 배치하는 방안으로 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지원센터, 식품패키징지원센터, 식품기능성 평가센터를 한곳에 집적시켜 임대형 공장, PILOT PLANT와 분리 시켜 배치함.
- 수직 집중형은 수평 집중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대지이용계획의 확장성에서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고려함.
 - 수직 집중형은 수직증축으로 기존의 건축물의 유틸리티 사용이 편리하며, 주변의 부지 상황과 무관하게 건축을 할 수 있음
 - 공사기간에도 실사용이 가능하며, 수직 확장 후 건물의 기능 및 동선의 연계성은 연결통로 설치가 가능함
 - 파일럿플랜트를 임대공장과 함께 공장지역으로 이동하여 향후(OEM 등)를 대비하며,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확장성을 고려함.



[그림 8] 기능별 수직 집중형 배치

2. 지원센터 지원시설물의 관리 방안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FOODPOLIS에 건립되어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소속된 건물 자산, 즉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지원 센터, 식품패키징지원센터, Pilot Plant,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짐

■ 시설 관리 방안

〈표 27〉 하드웨어 시설물 관리의 직접관리와 아웃소싱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지원센터 직접관리	아웃 소싱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와 H/W의 일괄관리를 통한 관리 효율성 증대 가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S/W 사업과 연계한 사업 진행용이 • 주인의식과 애사심 고취로 자산 관리의 용이 • 유사 시 신속한 응대 • 시설관리비용 통제가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비용 절감으로 인건비 절감 • 입찰을 통한 전체 관리비 절감 • 시설관리 심적 책임 해소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 업무량대비 과도한 인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관리와 H/W관리 이원화의 비효율성 발생가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설립목적과 관리의 일관성 부족 우려 • 유사시 지휘통제의 어려움 • 애사심 결여로 소극적 자산관리 • 인수인계의 어려움 • 저가의 부자재 사용으로 자산가치 유지의 어려움

- 시설관리 업무를 직접채용 할 것인지 아웃소싱 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발전단계에서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6대 H/W 지원시설물 외의 추가 필요 지원 시설물 검토 및 제시

가. 공동집배송센터

■ 공동집배송 센터의 필요성

- 공동집배송센터는 식품산업의 특징, 기업들의 투자부담, 효율적인 물류 운영, 물류기능 중복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식품클러스터에 공동집배송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물류 기능을 공통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공동집배송센터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수·배송, 제품보관, 국제물류, 물류정보 파악을 위한 설비를 제공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함.
- 기본적으로 공동집배송센터는 냉동·냉장, 보관, 운송, 반송, 피킹, 정보처리 시설 등

을 갖추어야함.

- 타겟기업과 취급 품목에 따라 물류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계별 시설 구축이 필요함.

〈표 28〉 공동집배송센터 기본 시설

냉동·냉장시설	보관 시설	운송장비
저온냉장고 CA 냉장고 예냉고 냉동고	FLOW RACK DRIVEN RACK ARM RACK MOBILE RACK	전동지게차 핸드파렛트럭 전동파렛트럭 크레인
반송시설	피킹시설	정보처리시설
AGV RGV 컨베이어 천정주행시스템 HAND LIFT DOLLY	스태커크레인 MOBILE RACK AR/RS	스캐너 바코드프린트 WMS OMS TMS

자료 :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용역, ATKERNEY, 2009

■ 공동집배송센터의 기대효과

- 식품기업들의 중복 투자를 피하고 물류 시설 등의 고정자산과 인원 비용 등의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 뿐 아니라 물류 아웃소싱을 통해 핵심역량에 집중을 기대할 수 있음.
- 급격한 수요 변동에 따른 창고 부족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입출고 및 재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의 배송기간의 단축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 철저한 물류 흐름 파악으로 물류 배송 오류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 물류의 전문화를 통해 물류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역량에 집중 할 수 있음.

나. 식품전처리 시스템

- 식품기업들의 전처리 식자재에 대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보다 투명한 유통구조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적정가격 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음.

- 전처리 농산물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보장을 통한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식품기업에게 적정가격 구매가 가능한 시장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특히, 안전성 확보와 안전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해 짐에 따라 안정적이고 규격화된 전처리 식자재 공급센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식품 전처리 시스템은 클러스터 내에 공동 전처리 시설을 갖추어 식품 기업들에게 안전한 전처리 식재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식품 전처리 시스템은 HACCP 기준의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 전처리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클러스터 내·외 기업들의 전처리 비용 절감, 국내 농산물의 전처리를 통한 수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함
- 식품 전처리 과정은 원물을 선별, 탈피, 세척, 건조, 절단, 포장 등의 작업으로 구성됨.
 - 식품 전처리 시스템은 각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원물을 제공받아 선별, 세척, 탈피, 건조, 절단 등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기업에게 제공하는 작업임.

■ 식품전처리시설의 구성

- 식품 전처리 시설은 전처리 과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HACCP 기준의 세척, 선별, 건조, 농축, 포장, 냉동, 냉장 설비 등을 갖추어야함.

〈표 29〉 식품전처리 시설의 설비

설비	기기	설비	기기	설비	기기
HA-CCP 시설	- 에어샤워 - 머리카락 이물 흡입기 - 앞치마 살균기 - 신발 세정기 - 방충 설비 - 개인 위생 복장 - 청결 및 일반구역 구분기기 - 중앙공조기기	세척 설비	- 3단 세척대 2라인 - 구근류 세척기 - 정수설비 - 이송컨베어	포장 설비	- 진공포장기 - 실링포장기 - 테이핑머신 - 팩포장기
		선별 설비	- 선별대 - 선별기 - 이물제거기 - X선이물제거기 - 금속검출기	건조 설비	- 온풍건조설비 - 냉동건조설비
실험 기자재	- 병원성 미생물 및 이화학 기기	분쇄 절단 설비	- 해머분쇄기 - 채소절단성형기3종 - 과일다이싱기2종	냉동, 냉장 설비	- 냉동기300HP - 급속경화터널 - 냉장창고
물류 장비	- 지게차 - 컨테이너 - 냉동탑차 - 냉장탑차	농축 설비	- 개인위생복장	기타 설비	- 배수설비 - 일반창고

자료 :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용역

■ 식품전처리시설의 운영방안

- 식품전처리 시설의 운영방안은 정부가 투자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안, 정부가 투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표 30〉 식품전처리시설 투자 및 운영주체

운영방안	정부투자 + 공사운영	정부투자 + 민간운영	민간투자 + 민간운영
장점	- 안정적인 투자 및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국가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 및 보수가 안정적이며, 운영의 효율도 높일 수 있음.	-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재정적 측면과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이점을 지님
단점	- 정부가 운영하는데 전문인력 어려움과 비효율 가능	- 국가예산이 투입됨	- 공공재의 성격을 띠어야 하는 시설을 민간이 소유함으로써 공익달성이 어려움

■ 식품전처리시설의 기대효과

- 식품기업들의 전처리 시설에 대한 과도한 중복 투자 및 안전, 위생적 관련 비용을 피하고 식재료의 대량 전문 처리 센터를 통해 전처리 비용 절감을 함으로써 원가 절약을 기대할 수 있음.
- 식품기업이 요구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전처리된 식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식품기업의 생산계획 및 마케팅 전략에 도움을 줌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에 준한 설비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과학적 위생관리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제공을 통해 동일한 고품질의 식자재 공급을 기대할 수 있음.
-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방법으로 생산되는 식자재 및 신선, 편이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가공 표준화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창업보육센터

■ 창업보육센터 필요성

- 식품산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영세함.
- 창업보육센터는 생산 시설 지원, 기업 지원서비스, 외부 네트워크, 창업보육 전문인력 지원 기능을 갖추에 따라 클러스터내의 건립이 필요함.
- 식품특화기술의 성과확산 즉,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라는 측면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

- 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또다시 R&D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 창업보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실질성과 효과 증대를 위해 필요한 운영 전문인력과 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창업보육센터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전문매니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매니저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사업자의 내규로 정함.
 - 창업보육센터는 입주대상의 심사, 선정, 보육센터 운영성과 평가, 입주자 지원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관계자 및 소속기관 임,직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등을 설치 및 운영 함.
 - 기업의 경영, 기술지도 지원을 상시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함.

■ 창업보육센터 재원

- 창업보육센터의 재원은 입주기업 부담금 및 발전기금, 중소기업청의 센터 설립비와 운영보조금 및 지자체 운영보조금, 기타 사업비지원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입주기업부담금은 보증금, 창업보육료, 관리비, 시설 및 장비 사용료로 나눌 수 있음.
- 보육사업 발전기금 : 입주기업의 보육 성과에 기인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형태로 마련함.
- 중소기업청 센터 설립비는 신규건립 및 확장건립을 내용으로 2009년 기준으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센터 건립규모 및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 운영보조금(2010년도 기준)은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센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센터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4개 등급으로 운영비를 차등지원 함.
- 지자체운영보조금은 센터 관할 시, 군, 구청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

■ 창업보육센터 단계별 활동(안)

- 창업보육 ZONE을 지정하여 식품분야 창업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1단계(2016년 ~ 2018년) 창업보육센터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초기 창업을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2-3년간 지원 및 관리함.
 -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혜택을 제공함.

- 마케팅비용 지원 및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그리고 세미나 개최 등의 창업지원으로 초기 보육지원을 제공함.
- 2단계(2019년 ~ 2020년)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초기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들에게 2-3년간 성장 기회를 제공함.
 - 보다 규모화 된 시설에서 2단계 창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하여 창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육함.
 - Post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면 임대형공장으로 이전을 장려함.

〈표 31〉 창업보육센터 단계별 지원내용

구분	1단계(2016년 ~ 2018년)	2단계(2019년 ~ 2020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창업을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2-3년간 지원/관리 •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혜택 제공 • 마케팅비용 지원 및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 세미나 개최 등의 창업지원으로 초기 보육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들에게 2-3년간 성장기회 제공 • 보다 규모화 된 시설에서 2단계 창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함 • 창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육함 • Post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면 임대형 공장으로서의 이전을 장려함

라. Business Center

- 급격한 아시아 식품시장의 성장에 따라 유럽 등 선진국에 구축된 식품클러스터와 같이 국내에서도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FOODPOLIS, 즉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임

■ Business Center 기능

- FOODPOLIS 내의 Business Center는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한 곳에 집약시켜 놓은 시설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함

■ Business Center 역할

- Business Center는 크게 3가지 역할로 구분할 수 있음
 - 마케팅: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제품을 대외적으로 마케팅하는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교육: FOODPOLIS 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술 세미나, 정책 설

- 명회 등 기업 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교류활동의 장을 제공
- 숙박: 식품 산업단지 내 식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에 의해 활발한 산업 활동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많은 산업 인력의 유입 예상 (예: 네덜란드 Food Valley의 경우 70여개 기업, 20여개 연구소, 1000여개 연관업체 입주 등)

1. 회의시설
2. 교육시설
3. 숙박시설
4. 식당
5. 체육시설
6. 오락시설 등



■ Business Center의 기대효과

- Business Center의 기대효과는 인프라 구축 이미지 향상, 일자리 창출, 관광사업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내 IT 건물인 Business Center를 설립함으로써 FOODPOLIS의 전반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타 클러스터와의 경쟁력 강화
 - 이미지 향상: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Business Center를 제공하여 많은 산업 인력 유입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Business Partner들에게 기존의 영세한 식품산업에 대한 홍보의 기회를 마련하고 첨단 식품산업으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
 - 일자리 창출: Business Center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예: 외래순 클러스터: 61,000명 고용 효과 창출,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 100,000명 고용 효과 창출 등)
 - 관광사업 활성화: Business Center 내 박람회,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 (예: 나파 밸리[미국]: 연간 관광객 19,000만명 유치)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대외 협력방안 】

1.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개발

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연계지원 방안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협력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역농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즉,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농업 클러스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허브 역할을 하며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심점이 될 것으로 생각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지역 농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신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전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기술 수요조사 결과를 식품클러스터 내 입주한 연구기관과 공유하여 기술 연구 성과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역농업클러스터에 부족한 클러스터 운영 방법 전수와 지역에서 하기 어려운 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입주업체 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2) FOODPOLIS 식품기업과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연계방안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산관학 네트워킹 담당자는 FOODPOLIS의 식품기업과 지역농업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해야 함.
- 식품 기업과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네트워킹 역할로 공동 물류망과 판매망을 구축해야 함.
- 식품 기업은 지역농업클러스터에 수준 높은 식품안전관리나 검사 체계를 제공하여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업의 식품 안전관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3) 연구기관과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연계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성과확산팀에 의한 연구 지원 및 신기술 연구에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참여시켜 시너지효과를 창출함.
- 국가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 대학연구소와 지역농업클러스터가 연계하도록 하여 새로운 분야의 R&D를 공동추진하고 이를 통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클러스터 지원센터는 R&D의 공동추진을 위해 연구 장소, 기자재 구입 등 새로운 공동연구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소와 지역농업클러스터가 연계되지 못하더라도 지원센터에서는 클러스터 내 연구기관의 성과물들을 타 지역농업클러스터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함.
- 가능성 있는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품목을 발굴하여 이를 연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4) 미니클러스터와 지역농업 클러스터 연계방안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미니 클러스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하기에 적합한 지역 농업 클러스터를 선별하여 양쪽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판매망 개척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지역농업클러스터에 유사한 특성을 가진 미니클러스터와 사업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함.

5) 기타관련기관과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연계방안

- 국가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주도로 식품유관기업(포장, 기계, 검사 등)과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국가클러스터의 설비를 지역농업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식품관련 포장, 식품관련 기계, 식품 안전성 검사, 자문, 컨설팅, 경영지원 분야 등 지역 농업클러스터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성과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국가클러스터의 지원센터와 지역농업클러스터의 MOU 협약을 통하여 클러스터 내 기술혁신 및 신제품(브랜드 등) 홍보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농업클러스터의 벤처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지원함으로써 벤처창업 지원 및 인큐베이팅 역할을 지역농업클러스터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클러스터 지원센터 자문 위원회 구성

1) 클러스터 지원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 매년 정기적으로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자문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외부 자문 자문위원회는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2) 자문 보고서 반영

- 외부인사의 자문을 통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자문 보고서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목표를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업무 개선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 기업유치는 성공적인 FOODPOLIS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최대 당면 과제임. 따라서 기업을 클러스터로 유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및 기업 유치 관련 조직 구성이 필요함.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금융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투자유치 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
- 인센티브를 개발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투자유치 지원 협의회”에서 토론을 거쳐 인센티브가 개발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인센티브 개발은 피해야 함.
- 기업입주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은 중요하지만 기업 서비스 지원, 질 좋은 정주환경 조성, 기업 이주에 따른 이주 인력 흡수방안도 중요 함.

1)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

- 기업의 입주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입주 결정기업에 맞춤형 서비스, 즉, 패키지형 기업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투자유치 지원 협의회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공동 개발하여 기업 입주를 장려하고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 상담 함.

2)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 클러스터 입주업체의 원재료, 부자재, 상품 이동 관련 원활한 물류망을 구축하도록 함.
- 클러스터 내 법률사무소를 유치하여 입주기업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
- 해외 바이어나 입주 희망 기업이 FOODPOLIS를 방문 했을 때, FOODPOLI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FOODPOLIS 홍보관을 운영
- 입주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위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수출촉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 함

3) 입주 기반시설 확충

- 사업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 또는 클러스터 내에 소방 시설 확충이 필요
- 변전소를 클러스터 내에 설치하여 각종 기업의 전기 수요에 부응하도록 함.
-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 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제공함.

4) 정주여건 구축

- 고베 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예로, 정주여건은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클러스터의 기업 입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임. 잘 정비된 정주환경은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만 열악한 정주환경은 기업들이 이주를 꺼리게 하고 결국 클러스터 성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정주환경은 클러스터 단지 외부에 조성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 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장기적인 정주여건 조성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함.
- 주거 여건으로 클러스터 주변 가까운 거리에 입주기업인 또는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제공과 싱글이나 가족 단위의 주거 시설이 중요함. 나아가 자녀를 위한 보육 시설이나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함. 초중고 시설은 우수 인력 유치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병원 시설, 금융기관, 교통 시설, 문화시설, 공원 시설, 관공서를 유치하여 주민에게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라. 국제적 FOODPOLIS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

1) 중기 계획 (2018 ~ 2020)

■ 사업 비전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토대 마련

■ 사업 목표

- 해외 클러스터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FOODPOLIS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품목별 또는 산업별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함.
- 국내외 수출 또는 수입을 위한 체계적인 물류망을 구축하도록 함.
-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함.

■ 주요 방안

- 해외에서의 FOODPOLIS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해외 홍보를 담당할 전문가를 영입 배치하여 기존의 국내 홍보 담당자와 적극 협력하도록 함.
- FOODPOLIS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해외 수출장려를 위하여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여 입주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하도록 함.
- 국제적인 FOODPOLIS로 성장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업무가 필요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을 대표하여 품목 또는 산업 별 수출 촉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출 기업을 지원 하도록 함.
- 입주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 물류망을 구성하도록 함.

2) 장기 계획 (2021 ~)

■ 사업 비전

- 세계 초일류 FOODPOLIS로 정착

■ 사업 목표

-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주요 방안

- 해외의 KOTRA, 대사관,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등과 긴밀한 협조로 FOODPOLIS의 입주업체와 해외 클러스터 현지 입주 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
- 글로벌 기업과 국내 입주업체의 파트너십 구축을 장려하여 해외시장 개척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함.
- 해외 기관을 통한 해외 시장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관련 정보를 국내에 확산시키고 식품클러스터관련 정보를 국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해외 기업과 국내기업의 네트워킹 강화로 사업파트너를 찾아주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함.

2.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방안

가. 추진목적

1) 추진배경

- 해외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위상 정립을 위해 해외 클러스터와의 제휴는 효율적 방안임.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유사한 환경에서 조기에 정착한 국내 클러스터와 협력은 국내 비즈니스 환경이해에 도움이 됨.

2)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 목적

- 유사한 클러스터와 제휴 또는 협력을 통하여 조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착을 유도함.
- 국내외 클러스터와 제휴시 해당 클러스터 내 입주한 해외 기업유치가 용이함.

나. 교류 협력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1) 클러스터 지원센터 조직 내 명확한 업무분장

- 클러스터 지원센터 조직 내 교류 협력을 전담하는 조직(대외협력팀)을 구성하거나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국내외 성공적인 클러스터 운영 노하우 습득에 주력함.
- 교류 협력을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홍보효과는 물론 해외 기업유치 업무를 기업유치 담당자와 협력하게 함.

다. 교류 협력 방안

1)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내외 클러스터와 MOU체결

- 해외 클러스터와 교류를 추진하기에 앞서 교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휴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 클러스터 선별이 필요함.
- 해외 클러스터와 제휴시 반드시 식품클러스터가 아니더라도 국제 교류 목적에 맞게 다른 품목의 클러스터와도 교류 협력 추진이 필요함.

2)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방안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입주 기업들과 연구기관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입주기업의 기술 수요를 만족시켜 기술 개발과 관련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 전북 소재 대학과 식품관련 (바이오, 식품 영양, 기능성 식품 등)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주업체에게 우수한 전문 인력을 공급하게 함.

3) 한국 주재 대사관, KOTRA, 한국식품공업협회, 해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력

- 해외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해외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KOTRA와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와 협력이 필요함.
- 센터의 해외 교류협력 담당자는 해외 주재기관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해외 주재 기관과 협조가 필요함.

4) 국내 외국 대사관의 인적활용

-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대사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대사관 및 자국의 해외 주재 기관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계역할도 기대할 수 있음.

5)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연계방안

- 예비 창업자와 입주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 업체 또는 예비 벤처 창업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업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함.

6) 기타 공공기관, 협회, 학회와 유대관계 형성

- 연구 개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클러스터는 학회 및 협회를 중심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연구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함.
- 각종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유대관계 형성은 장기적으로 필요로 함.

라. 교류 협력 내용

1) 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방법

- 클러스터 지원센터 또는 클러스터 운영을 맡고 있는 기관 및 유사 기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과 접목시킴.
- 해외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자국 내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이해하므로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입지구축에 도움이 됨.

2)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 및 기능에 추가,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소, 기업 등이 해외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경우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해외 클러스터에 입주한 업체사이에 중계역할을 하여 사업파트너 알선함.

3) 상호 기업유치 협력

- 교류를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홍보효과는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구축함.

4)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환

- 해외 클러스터가 어떻게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인력을 조달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 가능하며 국내 인력의 해외 파견 연수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구축하게 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와 해외 클러스터가 상호 연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국내 업체의 해외 우수인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함.

5) 기 타

- 국제 학술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을 공동 개최하여 연구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함.

마. 기대효과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조기 정착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이미지 제고
- 해외 기업유치가 용이
- 세계의 클러스터 간 경쟁에서 우위 확보

3.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홍보방안

가. 홍보목적

- FOODPOLIS의 국내외 이미지 구축을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브랜드력 향상으로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입주업체의 기업 및 상품 브랜드력을 향상 함.
-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함.

나. 홍보 전략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단계와 발전단계에 따라 홍보 전략은 차별화가 필요 함. 홍보 전략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단계(2011 ~ 2012년)는 이미지 제고, 2단계(2013 ~ 2015)는 기업 유치, 3단계는 입주기업 홍보 및 제품홍보에 중점을 둠.
- 홍보전략 1단계는 전반기에 FOODPOLIS의 조성계획 위주의 영상 홍보물 제작, 국내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둠. 후반기에는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의 분양 홍보에 중점을 둠.
- 2단계는 1단계의 홍보 전략을 지속함과 동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가 결정된 업체를 알리도록 함.
- 3단계는 FOODPOLIS 인지도 제고를 위한 클러스터 운영관련 홍보와 기업유치 및 입주업체들의 공동 브랜드 홍보에 중점을 둠. 그리고 클러스터의 글로벌화에 부응하여 해외 이미지 증대는 물론 해외기업 유치를 위하여 해외 광고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구분	1단계 (2011 ~ 2012)	2단계 (2013 ~ 2015)	3단계 (2016 ~)	
FOODPOLIS 이미지 제고	→			
FOODPOLIS 조성계획	→			
기업유치 홍보	→			
부지 분양 홍보	→			
입주예정 업체 홍보		→		
입주업체 홍보			→	
입주업체 제품 홍보			→	
박람회 및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			

[그림 9] 단계별 홍보 Key Point

다. 단계별 홍보 방안

1) 1단계 (2011 ~ 2012) 방안

■ 외국 대사관과 외국기업 관련자 초청

-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대사관과 해외 기업인을 초청하여 준비된 가이드 책자와 함께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며 인적 네트워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도록 함.
-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 FOODPOLIS 부지 분양 및 해외 기업에 대한 법적 인센티브, 단계별 국가식품클러스터 비전을 제시하여 해외기업을 유인동인을 홍보해야 함.
- 국내 주재하는 해외 기업인을 통하여 경영 애로사항 및 클러스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청취하고 FOODPOLIS 운영에 반영하며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자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

■ 국내 식품관련 관계자, 대학, 연구 기관을 초청하여 설명회 개최

- 국내 식품관련 기업체를 선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과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함.
- 대학 연구소와 민간 연구 기관 등을 초청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R&D와 관련한 업무과정 및 지원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

■ 각종 FOODPOLIS 자료 제작

- 클러스터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즉,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가

필요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기본으로 구축하고, 해외 사용자를 위하여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서비스 함. 홍보물은 이미지 구축과 기업유치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함.

- 홍보책자를 한글, 영문,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하여, 국내 공공기관 및 해외 주재 기관에 비치하고, 국내 외국 대사관 및 기업에 송부하도록 함. 나아가 해외의 기업에도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함.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홍보

- 해외 클러스터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웹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함.

■ 각종 협찬

-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진행 할 것인지 고려하여 세계에서 주목받는 각종 박람회 또는 국제적 대회를 협찬하여 FOODPOLIS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함.

2) 2단계 (2013 ~ 2015) 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식과 비전 선포식

- 준공식에 중앙정부의 고위급 인사(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초청하여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여 대중매체에 FOODPOLIS 노출을 극대화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국내외 대중매체의 관심을 유도함.
- 준공식 일정에 맞추어 국내 주재 외국 인사 초청과 세계 우수 언론인 초청으로 해외 언론에 노출을 유도하도록 함.

■ 기업 방문 홍보

3) 3단계 (2016 ~) 방안

■ 각종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화를 도모하는 단계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클러스터 또는 식품 산업관련 컨퍼런스에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 참가하도록 격려 및 지원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

가식품클러스터를 해외에 홍보하도록 함.

■ 기술 성과물 확산 사례 발표회

- 입주기업의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여 기업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저널 출판 지원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적극 지원하여 다수의 연구 결과물이 국내외 저널에 출판 되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FOODPOLIS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함.

■ 해외 미디어 노출

- 해외 우수 언론을 초청하여 특별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및 뉴스를 제공함.
- 해외 유명 연예인 또는 스포츠 인사를 초청하여 언론 노출을 유도함.

I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의 기대효과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배경

가. 연구 필요성

- 식품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과 클러스터 내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협력체계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임.
- 세계 주요 선진국은 정책적으로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 2008년 정부는 동북아에서 식품산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함.
 - 2008년 9월 정부는 전라북도 익산지역에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을 결정함.
 - 장기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집적된 해외 식품클러스터와는 달리 단기간에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솔력을 갖춘 기관의 설립이 요구 됨
- 식품산업의 발전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획,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총괄 지휘하는 기관이 필요. 즉,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 해외 성공적인 식품클러스터 중심에는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우리나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 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클러스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단계에서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이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실질적인 클러스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건인 역할을 담당 함.

-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센터의 운영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그 역할과 기능 정립은 지원센터 운영의 기초가 될 것임.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함.
 -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FOODPOLIS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 됨.

나. 연구의 목적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관리 총괄, 조율 및 통합 기능을 통한 실질적인 클러스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 기본계획 수립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 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목표와 역할을 제시하여 지원센터 단계별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안을 마련하여 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방안과 운영주체를 검토하여 2011년 지원센터 실제 설립 때 설립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의 하드웨어 시설 설계와 건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가. 연구 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 유사 사례 연구

- 해외 주요 클러스터 사례를 기반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연구
 - 해외 사례 조사를 위한 클러스터 방문 및 인터뷰 실시
 - 일본의 식품,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사례 조사
 - 스웨덴 덴마크의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조사

- 네덜란드의 푸드밸리(Food Valley) 사례 조사
- 이탈리아의 식품클러스터 ERVET 지원센터 사례 조사
- 국내 클러스터(한국산업단지공단, 대덕연구개발특구단지 등) 지원센터 사례 조사
- 국내외 클러스터 지원센터 또는 유사기관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연구

- 「식품산업진흥법」 12조의2(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명시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내용을 위주로 연구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 수립
- 단계별 사업목표 설정과 추진활동 제시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의 수행방안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같은 기존 기관과의 협력관계 설정 및 차별적 역할 수립방안 마련
- 식품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방안 수립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위한 네트워킹 방안 수립
- 입주기업의 마케팅 및 컨설팅, 그리고 기술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 수립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행 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방안 연구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법적 성격 구분 : 타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최적의 설립 방안(특수 법인/공공기관) 도출, 각각의 장·단점 분석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업무 범위 : 타 유사 기관사례를 검토하여 조직 구성 및 업무 범위, 직급별 연봉 지급 기준 제시
- 정관 작성 및 이사회 구성(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 3대 R&D 센터와의 관계 설정
- 범용시험생산공장과 임대형공장의 운영 방안
- 2015년까지 연도별 필요 예산
- (가칭)산학연합의회 구축 및 운영 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각종 시설의 기획, 설계, 유지, 보수 관련 연구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6대 H/W 지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배치방안 수립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6대 H/W 지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
- 6대 H/W 지원시설물 이외 추가 필요 지원 시설물 검토 및 제시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대외 협력, 홍보사업 관련 연구

- 수익사업 모델 발굴
- 세계적인 연구소 등과의 협력방안(MOU 체결방안), 연계사업 방안
-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대내외 홍보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나. 연구 방법

-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 연구 분야 별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를 방문 또는 초청하여 인터뷰
 - 해외 현지 방문 때 클러스터 담당자들과 심층 인터뷰 실시
 - 각 연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 전문가 자문
 - 국내 클러스터 지원센터 담당자 초청 자문회의
 - 해외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담당자 자문
 - 연구 분야별 전문가 자문
-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클러스터 조성 및 발전에 대한 일반적 문헌 조사
 - 해외 클러스터 지원센터 사례(식품, 바이오, 의료 등) 분석 논문 조사
 - 국내외 클러스터 지원센터 유사사례에 대한 인터넷 자료 조사
- 국내외 클러스터 현지 방문 조사
 - 국내의 대표적인 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 실시
 - 해외 클러스터(일본의 지바현 식품클러스터, NARO, 고베 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직접 방문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 담당자 인터뷰 실시

가. 기업 및 R&D 기관의 성공적 유치

- FOODPOLIS의 긍정적 이미지구축은 해외 및 국내 식품관련업체 유치활동에 기여하며 그 위상은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직결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일관성 있게 FOODPOLIS의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함.
 - 기업유치가 FOODPOLIS의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 해외 클러스터와 MOU를 체결하여 해외 식품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함으로써 해외기업 유치활동에 기여

나. 국가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입주 기업 및 3대 R&D센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유기적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입주 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산·관·학을 연계하여 식품산업기술의 수요창출과 빠른 신기술 개발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업체에게 전파되어 국내외 식품업체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나아가 기술 성과물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유하여 국가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함.
- 공동 마케팅 및 공동 브랜드 권장을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식품업체의 해외 진출은 물론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도모
 - 입주기업은 해외시장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아 적극 활용이 가능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로 입주업체는 브랜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입주업체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므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며 각 관계사의 생산성을 개선함.
 - 기술정보 교환으로 신상품 개발에서부터 판매까지 기여
- 입주업체의 정기적인 미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뿐 아니라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함.

다. 동북아 식품시장의 성공적인 FOODPOLIS로 정착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립은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구축하는 FOODPOLIS의 조기 정착을 주도함.
 - 자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성되는 해외 클러스터와 달리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기구 또는 기관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구성에 따른 조직 단위별 업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에도도함.

II 장

해외 클러스터지원센터의 사례조사

1. 해외 사례 분석
2. 해외사례가 FOODPOLIS에 주는 시사점



해외 클러스터지원센터의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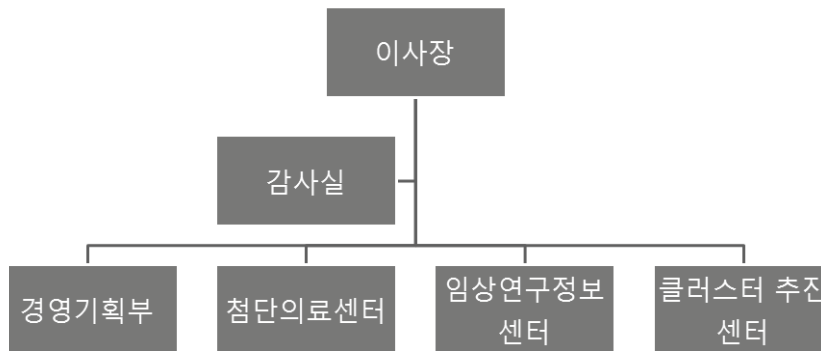


1 해외 사례 분석

가. 고베의료산업클러스터

1) 클러스터 운영 주체 : 첨단의료진흥센터 내 클러스터 지원센터

- 고베시가 80%를 출연하고 민간이 20%를 출연하여 클러스터 구성과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인 첨단의료진흥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조직 내부에 클러스터 지원센터 부서를 설치함.
- 고베시는 재단법인 설립 때 최초 30%를 출연하였으나 현재는 80%까지 확대함.
- 기존에 재단법인 첨단의료진흥재단 내에서 클러스터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2010년 4월 재단 내 클러스터 추진센터를 신설하게 됨.



[그림 2-1] 재단법인 첨단의료진흥센터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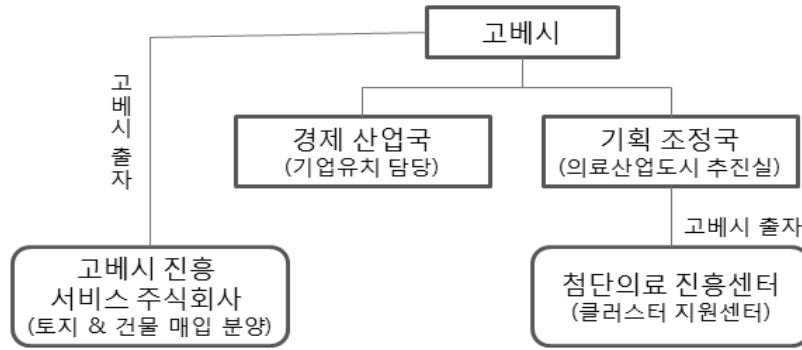
〈재단법인 첨단의료진흥센터〉

- 설립배경: 고베시 의료산업도시구상 추진실은 고베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함.
- 설립주체: 고베시는 민간과 함께 재단법인 첨단의료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설립 때 고베시는 30%를 출연하였으나 현재 80%로 확대함.
- 운영특징
 - 재단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고베시가 재단의 80%를 출연하고 매년 진흥재단에 예산(15억 엔)을 지원함으로써 고베시가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음.
 - 2009년 예산은 약 72억 엔으로 진료수입 27억 엔, 공적 연구비 15억 엔, 고베시 지원 15억 엔, 기타수입 15억 엔으로 구성됨.
- 주요역할: 첨단의료진흥센터의 조직은 경영기획부 1개, 센터 3개로 구성되며 경영기획부는 3개의 센터를 총괄 관리하고 있음.
 - 경영기획부는 각 센터의 기획, 총무, 인사, 회계, 복지, 전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첨단의료센터는 R&D 기능을 수행하며 재생의료(재활치료)의 임상응용, 세포배양 기술 개발, 영상의료 연구 개발, 의약품 개발을 함.
 - 임상연구 정보센터는 임상응용의 중개연구¹⁾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유함으로써 의료산업 활성화를 도모함.
 - 클러스터 추진센터는 연구 기능 센터(첨단의료센터, 임상연구 정보센터)와 대등하며 2010년 기준 상주 직원이 약 20명이고 고베시 지원 예산 15억 엔 중 5억 엔을 사용하고 있음.

- 첨단의료진흥센터는 고베시 기획조정국이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고베시와 고베시 진흥서비스 주식회사와 클러스터 조성 업무를 협력하고 있으며 법적인 업무 분장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두 조직 간 협력이 원활함.
 - 클러스터의 전략 및 정책은 고베시 기획조정국 의료산업도시구상 추진실²⁾에서 수립하며 정책 실행은 첨단의료진흥재단 내 클러스터 추진센터가 하고 있음.
 - 고베시 진흥서비스 주식회사는 클러스터 단지의 토지 매입 분양 건물 임대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고베시가 금융기관 등의 민간기구와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토지 매입, 건축, 건물 임대 등의 클러스터 기반 조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고베시 경제산업국과 협력하여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1) 연구소와 연구소가 연계하여 연구하는 것을 말함.

2) 의료산업도시구상 추진실 직원은 약 20명임.



[그림 2-2] 고베시와 클러스터 관련 기구의 관계

〈고베시 진흥서비스 주식회사〉

- 설립배경: 클러스터 부지조성 및 분양 업무를 총괄할 기구의 설립 필요성 대두됨.
- 설립목적: 클러스터 단지 내 토지 매입, 건축, 입주기업에게 건물 임대함으로써 입주 기업의 초기 비용을 절감시켜 기업을 유치함.
- 설립주체: 금융기관 등의 민간투자자가 70%, 고베시가 30% 출자하여 설립함.
- 운영특징: 고베시와 민간기구는 “고베시 진흥서비스 주식회사”를 설립을 통하여 클러스터 조성 업무를 위양하고 기업유치 업무는 첨단의료진흥센터(클러스터 지원센터)와 협력함.
- 주요역할: 클러스터 부지 조성, 입주업체에 부지 분양, 건축물을 임대하여 매각 또는 임대

2) 클러스터 추진센터의 주요 역할



[그림 2-3] 고베 의료산업단지클러스터 추진센터 역할

- 클러스터 추진센터는 기술의 상업화, 연구 지원, 인재육성, 인허가 및 특허취득 지원, 판매망 공동 개척,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역할을 수행함.
 - 산·관·학을 연결하여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거나 기술을 상업화함으로써 기초 기술개발에서부터 임상 실험까지 일관된 연구개발이 용이함.
 - 입주한 연구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연구용역 발주에 적극 입찰 할 수 있도록 지원 함.
 - 교육 강좌를 개설하거나 학계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컨퍼런스 참가 및 출판을 지원함으로써 인재육성 사업을 실시함.
 - 입주 기업들의 인허가 관련 지원은 물론 개발된 기술의 특허 취득을 지원함.
 - 입주기업의 상품 판매망을 공동으로 개척하거나 공동브랜드 사용을 권장함.
 - 지역의 중소기업 및 진출기업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거나 육성 역할을 하는데 벤처기업 지원 업무에는 입주업체의 입주절차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연구소의 개발 기술과 기업수요자의 매칭 서비스, 신약 개발을 위한 약사상담 지원,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션 시설에 각종 지원,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적절한 관리가 있음.

3) 클러스터 추진센터의 협력업무

■ 기업 유치 활동

- 고베시의 경제산업국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입주 희망기업에게 토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고 있음.
 -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에는 각종 보조금, 융자, 신용보증 등이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입주 희망기업에게 공적 연구비를 제공하거나 세제 감면(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도시 계획세, 법인세, 부동산 취득세)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고베시 경제산업국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시회 및 전람회에 참가하여 부스를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기업 유치에 적극적임.

■ 대외 협력 및 홍보

- 한국, 중국,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해외유수의 클러스터와 MOU를 체결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의 대구, 중국의 태주와 제휴하고 있으며 인천과는 협의 중에 있음.
- 홍보 계획은 클러스터 추진센터와 고베시 기획조정국 의료산업도시추진실이 협력하여

수립하고 클러스터 추진센터가 추진하고 있음.

- 홍보예산(고베시의 예산에 포함됨)은 매년 추진센터 직원과 협의하여 고베시에서 지원하고 있음.

■ 재단 활동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 재단법인 첨단의료진흥센터는 매년 외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은 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되고 외부평가 시 고베의료산업도시 구상의 개요, 각 부분의 프리젠테이션, 5개년 계획안의 설명 및 질의응답, 종합토론을 실시하여 평가와 조언을 하고 있음.
- 위원장은 평가의견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베시에 제출하고 이를 첨단의료진흥센터와 공유하고 있음.

4) 고베시 의료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주는 시사점

■ 거버넌스 체계 명확화

- 고베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베시가 직접 관여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하듯이 단기간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FOODPOLIS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유관 기관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 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함.
- 고베시가 재단의 출연을 30%에서 80%까지 강화함으로써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히 하듯이 거버넌스 체계 명확화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중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보다 원활히 해결할 것임.
- 재단법인 첨단의료진흥재단 내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각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R&D센터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을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두 기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부 직제가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외부 자문단 구성

- 고베 의료산업 클러스터가 외부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체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문평가단 구성이 필요함.
- 자문 평가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 입주업체 대표, 클러스터 전문가 등 다양한 층으로 구성해야 하며 자문 보고서 제출을 기본으로 해야 함.

■ 효과적인 기업유치 활동

- 기업유치 업무를 지방정부의 경제 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센터의 기업유치 활동은 제고되어야 함.
 - 기업을 원활히 유치하기 위하여 인허가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
- 기업유치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적 지원정책 근거 마련과 각종 세제혜택 제공이 필요함.
- 기업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클러스터 조성 단지 주변의 물류 시스템,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은 물론 산업 별 폐수 및 상하수도 요구에 따라 단지를 준별로 구분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단계부터 민간 기구를 참여시킴으로서 기업의 클러스터 참여욕구를 향상시키고 이는 기업 유치활동을 용이하게 할 것임.
 - 예를 들어 금융기관을 참여시키는 것은 입주업체의 자금지원에 일조할 것임.

■ 클러스터의 효율적 관리

- 고베시가 클러스터의 토지 매입 분양 및 건설 임대와 관련 민간과 협력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했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도 토지 분양 및 건물 임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기구 설립 검토 필요

〈고베 의료산업클러스터 개요〉

1) 클러스터 조성 배경

- 중앙정부는 1995년 고베시의 한신 대 지진 참사 이후 고베시의 경제 회복을 위해 효고현에 클러스터 육성을 제안하였고 효고현이 이를 고베시에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고베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하게 됨.
- 클러스터 조성에는 고베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단기간 인위적으로 조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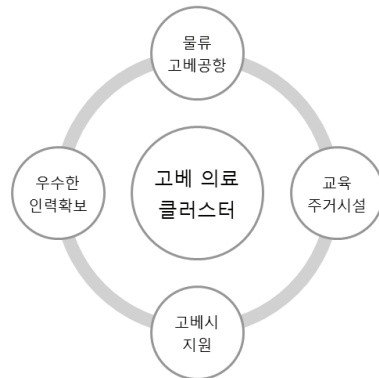


[고베 의료산업클러스터 위치]

2) 클러스터 입지 환경

○ 고베 의료산업도시는 일본 효고현 고베에 위치하며 고베 중심지와 근접하여 기업이주에 필요한 주거·교육·문화·물류·정보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접근이 용이하며 정주 환경이 탄탄한 편임.

- 고베공항과 고베항은 고부가가치의 상품의 물류 활동을 원활하게 하게 함.
- 또한 클러스터가 고베 중심지로부터 20여분의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윤택한 주거 및 교육환경으로 클러스터 근무 인력을 커버하고 있음.
- 주요 대학(교토·고베·코난·오사카 대학)이 인접해 있어 의료산업에 필요한 우수인력 확보가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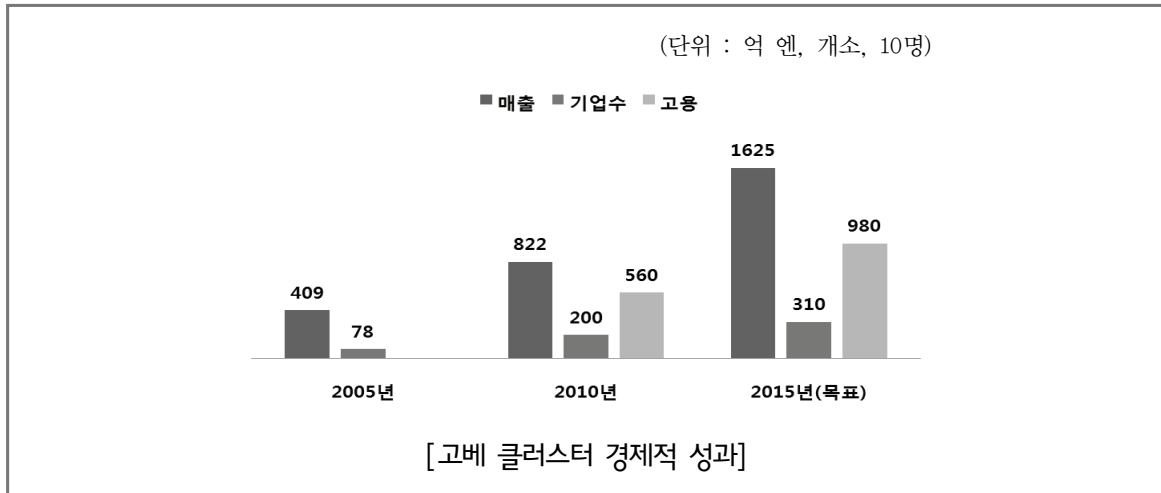
[고베 의료산업클러스터의 주변 환경]

3) 클러스터 입주 기업

- 클러스터 단지 내 존별(교육 존, 의료 존, 연구개발 존)로 구성되며 2010년 8월 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의 60~70 %가 분양 또는 임대되었음.
- 클러스터에는 기업 및 연구소가 182개 입주해 있고 병원이 6개 있으며 입주 기업에는 외국 기업 22개(7개 국), 대학 연구소 4개(와세다·고베·코난·교토 대학 연구소)가 포함됨.
- 주요 입주 기업에는 의약품 개발(미국계, 독일계회사), 의약품 원료 개발, 의료기기 기업, 의료 서비스 기업, 국제 비즈니스 대행 회사, 대학 병원 및 건강 관련 회사, 고베 임상 연구센터(미국계 입주)가 있음.
- 덴마크 스웨덴의 메디콘 벨리와 교류 제휴하였으나 2009년 파견 직원을 철수시킴.

4) 클러스터의 경제적 성과

- 고베 의료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조성 목적은 신규 고용창출과 고베시 지역경제의 활성화, 첨단의료 기술의 제공을 통한 시민의 건강 복지 증진, 아시아 각국의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적 공헌에 있으며 2010년 현재 기업유치와 매출액 측면에서 목표한 수치보다 초과 달성하고 있고 신규고용 창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표 2-1〉 고베 의료산업클러스터

구 분	내 용
운영주체	첨단의료진흥센터 내 클러스터 지원센터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상업화 • 연구지원 • 인재육성 • 인허가 및 특허취득 지원 • 판매망 공동개척 •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기업유치	기업유치를 위하여 고베시와 고베시 진흥서비스 주식회사와 협력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베시의 거버넌스 체계 명확화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외부 자문단 구성 •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으로 효과적인 기업유치 활동 • 클러스터 부지 조성 및 분양 업무를 위한 주식회사 설립으로 클러스터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

나. 지바 식품산업클러스터

1) 클러스터 운영주체 : 재단법인 지바현 산업진흥센터

- 클러스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지바현이 주축이 되어 지바현과 민간(금융기관, 경제단체, 소비자 등)이 협력하여 출자비중 54:46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함.
- 재단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지바현이 매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지바현 산업진흥센터의 연간 예산은 약 70억 엔 수준임.
- 재단법인의 조직은 크게 사업진흥(50명), 신사업 지원(50명), 사업지원(15명), 경영지원(15명)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상주직원은 약 130명임.

2) 재단법인 산업진흥센터의 클러스터 관련 주요 역할

- 재단법인은 지바현 산업진흥과와 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협력하고 있으며 지바현청의 산업진흥과는 클러스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진흥센터는 이를 실행하고 있음.
 - 지바현청에는 클러스터 정책 입안 및 관리를 위해 약 3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음.
 - 지바현청과의 업무분장의 법적 기준이 미흡하여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각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해결하고 있음.
- 재단법인 지바현 산업진흥센터의 클러스터 업무영역은 사업진흥, 신사업지원, 창업보육 지원, 취업지원, 경영지원의 5개 부문으로 구분됨.

〈표 2-2〉 지바현 산업진흥센터의 주요 업무영역

구 분	내 용
사업진흥	설비대여, 설비도입자금 대출, 거래처 알선 및 발주처 매칭
신사업지원	연구 개발부터 관료개척까지 일관된 종합 지원, 지바 중소기업 자금 조성
창업보육지원	토키즈 테크노 프라자 (창업보육지원센터), 인큐베이팅 사업, 정보 교류 및 촉진, 공동연구 주선, 기업 연구개발 지원
취업지원	취직 지원 서비스, 채용지원 서비스
경영지원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지원센터, 농상공 연계, 정보 제공, 인재 육성

- 재단법인은 연구기술 개발을 위하여 5개 분야를 선정하고 Researching society를 구성 하였는데 여기서는 복지 의료 장비, 제조 기술 과정, 환경기술개발, 고부가가치의 식품 개발, 정보기술 개발을 하고 있음.
 - 특히 고부가가치의 식품관련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바현 내 4개의 대학과 55개의 회사가 Researching Society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약 2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진흥재단 내 1명의 팀장과 산업진흥과에서 관리하는 5개의 클러스터에 각각 1명의 코디네이터가 존재함.
 - 산업진흥센터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산·관·학 네트워킹,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알선 및 연구 입찰 지원, 지바현 클러스터 정책 추진 및 협력임.
 - 코디네이터는 각각 분야별 클러스터와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는데 식품클러스터 코디네이터는 기꼬망에서 영입하였음.

3) 클러스터 관련기관의 협력업무

■ 기업유치 활동

- 기업유치 활동은 전적으로 지바현청이 담당하며 입주자 거의 성사되면 산업진흥센터와 지바현, 입주 희망기업이 협력함.
- 지바현청은 기업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로 「기업입지 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지바현 기업 입지의 촉진에 대한 조례」는 정보 제공, 유치, 조성, 환경정비 및 체제 정비를 규정하여 전문적 기업유치활동을 가능하게 함.
- 지바현청 내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 상공노동부 기업입지과에 기업유치 추진실을 편제하였는데 기업유치 추진실 직원은 20명이며 해외기업유치를 전담하기 위하여 직원 1명을 별도로 배치하였음.
 - 해외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2007년 독일의 펌프 업체 유치가 성공한 바 있음.
- 지바현청은 클러스터 기업유치를 위해 현청 조직 내 기업 등 유치추진본부(1997년 설립)와 기업유치 추진 연합회의(2001년 설립)를 구성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바현 기업 등 유치추진본부(본부장은 부지사)는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시회 또는 전람회를 참가하여 부스 설치하며 해외에 기업유치를 위한 참가 경험은 현재까지 없음.
 - 지바현 기업유치 추진 연합회의는 지바현 내 읍·면·동과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립하였음.
- 해외 기업유치를 위하여 해외지사 설립 또는 사무소 개설 등은 없으나 기업유치 추진실의 해외담당직원이 세계 72곳에 있는 JETRO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외자업체 유치를 위한 담당직원은 영어에 의한 정보발신, 재외공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국외의 세일즈 활동에 전념하고 있음.

〈표 2-3〉 지바현 기업유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지바현청 내 기업유치 추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치 활동 • 지바현청 내 상공노동부 기업입지과에 편제 • 추진실 직원 : 20명(해외기업유치 전담 직원 1명 포함) • 해외 기업 유치사례 : 2007년 독일 펌프 업체 • JETRO와 협력, 재외공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국외 세일즈 활동
기업유치 추진 연합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바현 내 읍·면·동과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여 수립
지바현 기업등 유치추진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 : 부지사 • 국내 기업 유치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 • 현재 기업유치를 위한 해외 참가 경험 없음

- 지바현청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보조금(단 보조금 상환의무는 없음), 용자, 신용보증,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를 위한 인·허가 및 관공서 관련서비스를 지원함
- 지바현청은 클러스터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 기업유치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할 목적으로 지바 투자 서포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대외 협력 및 홍보

- 타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은 거의 없으며 클러스터 관련 홍보 계획 및 방안은 지바현이 재단법인 산업진흥센터 직원과 협력하여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 홍보활동으로는 해외 유력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인데 이는 해외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4) 지바현 식품클러스터 사례의 시사점

■ 거버넌스 체계의 명확화

- 지바현이 54%를 출연함으로 지방정부와 재단법인의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정부가 주도해야함.
- 재단법인 내 코디네이터가 있어 지방정부와 재단의 업무협력이 용이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배치가 요구 됨.
- 지바현 정부가 클러스터 정책을 수립 하고 “산업진흥센터”가 실행 하듯이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운영하더라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업무영역이 명확해야 함.
- 업무 분장에 있어 지방정부와 재단법인의 역할을 명시한 법적인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하듯이 유관기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 기업유치를 활성화

- 지바현은 기업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듯이 중앙 또는 지방정부 조직에 기업유치 관련 부서를 신설함.
- 조직 내 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협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기업유치 활동 업무가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분장 시 주요 업무영역으로 구분하여 정

부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함.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 함.
- 기업유치 목표에 따라 인센티브는 상이 할 수 있음.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Research Society 구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한 연구 기능을 하는 대학 또는 민간 연구소가 연구개발에 집중하도록 연구자 협의회를 구성함.
- 식품 산업관련 연구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 교류 및 공유로 연구개발 성과물 확산은 물론 연구수요자 데이터베이스화로 맞춤형 연구를 장려함.

〈지바 식품산업 클러스터 개요〉

1) 지바현 현황

- 지바현의 면적이 약 5,157km²(전국 28위 규모), 인구 약 600만 명(전국 6위 규모), 노동 생산 인구는 전체의 67.5%를 차지하며 경제규모는 2006년 GDP 기준으로 19조 2,465억 엔으로 일본 내 7번째 규모임.
- 지바현청은 클러스터와 별도로 산업용지 15개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GDP 규모는 전국의 4위(2005년 기준 농업 출하액 4,161억 엔 규모), 나리따 국제공항은 일본 항공물류의 60%이상, 식품 제조 출하액은 1조830억 엔으로 전국에서 6위 규모임.



〈지바 식품산업 클러스터 위치〉

2) 클러스터 조성과정

- 지바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일본의 지바현 전체에 두루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바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장기간 자연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이기 때문임.
- 지바현은 클러스터 조성 전 이미 장기간에 걸쳐 업종별로 다양한 기업이 자연적으로 집적되어 있어 클러스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보다 자연 집적된 기업 및 대학 연구소를 네트워킹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기술의 상업화를 도모하고자 클러스터 개

념을 도입하게 되었음.

- 지바현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청의 산업진흥과가 2006년 6월 중장기 전략인 “지바 신산업진흥전략”을 수립 함
 - “지바 신산업진흥전략”에 따라 핵심 산업 7개 분야를 지정하고 분야별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하고 7개 클러스터를 운영하기위하여 제조 산업, IT 전기 산업, 바이오 생명과학, 그린화학, 물류산업, 식품산업, 관광산업의 분야별 클러스터 협의회를 설치함.
- 지바현이 선정한 7개의 클러스터는 현청 내의 관련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관광레저 클러스터는 관광부, 물류 클러스터는 교통관련부서, 나머지 5개 클러스터는 상공노동부가 관리하고 있음.
 - 클러스터에 가입한 대학 기업 연구소는 약 1,000여개 이상임.

3) 지바현의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 지바현은 클러스터 추진조직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바현 운영 7개 프로그램〉

구분	내용
네트워크 형성 촉진 프로그램	“지바신산업진흥전략회의” 를 설치하여 계획의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지원정책을 검토
연구개발 지적재산 활용지원 프로그램	중소업체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성과물 확산을 지원
창업지원, 경영혁신촉진 프로그램	에비 창업자 양성, 클러스터 멤버의 경영혁신 지원
판로개척촉진 프로그램	개발한 상품의 마케팅 활동 지원
자금조달지원 프로그램	자금부족을 겪는 클러스터 멤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바현이 금융기관과 협력
전략적 기업유치 촉진 프로그램	국내외 우수 기업유치에 주력
인재육성 취업촉진 프로그램	클러스터에 우수 인력 공급, 지역 내 인력의 취업 지원

〈표 2-4〉 지바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분	내용
운영주체	재단법인 지바현 산업진흥센터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의 사업 확장을 지원 • 신상품 개발에서 판매까지 업체에 사업지원 • 창업보육 지원 • 취직지원 서비스 • 업체에 경영지도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기업유치	지바현청 내 상공노동부 기업입지과가 담당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바현의 거버넌스 체계 명확화 •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으로 효과적인 기업유치 활동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자 협의회 구성

다. 네덜란드 Food Valley

1) 클러스터 운영주체 : 푸드밸리 재단(Food Valley Foundation)

- 와게닝겐 대학이 주도하여 푸드밸리(Food Valley)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푸드밸리 재단 설립을 제안함.
 - 4개의 기초지방단체와 1개의 광역지방단체, 네덜란드 지역개발청 등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하였으며 지방정부가 예산을 보조함에도 불구하고 푸드밸리 재단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푸드밸리 재단은 Food Valley Society를 조직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회원을 모집하여 매년 회비를 징수하고 회비 수익은 재단 운영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직원은 5명임.
- 중앙정부가 푸드밸리 재단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하지 않으나 클러스터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은 협조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푸드밸리 재단에 예산을 보조하며 클러스터 운영측면에서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음.

2) 푸드밸리 재단(Food Valley Foundation)의 역할

- 네덜란드에 식품클러스터가 푸드밸리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구는 네덜란드 전 지역의 식품관련 업체를 커버하고 있음.
- 재단이사과 직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데, 재단 이사는 정치적 로비를 담당하여 클러스터에 우호적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 상주 직원의 주요 업무는 입주업체의 네트워킹, 투자가 모집, 창업컨설팅, 경영지원임.



[그림 2-4] 푸드밸리 재단의 역할

- 산학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상업화하거나 연구소와 기업을 연결하여 신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를 모집함.
 -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보조 또는 지원정책은 전무하나 창업 관련 컨설팅을 실시함.
 - 기업의 경영지원(기업의 계획 수립 등)은 물론 벤처창업이 가능하도록 농식품 관련 실험실, 사무실 임대 및 IT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상담 및 인허가 절차를 지원함.
- 또한 푸드밸리 재단은 2003년 푸드밸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푸드밸리 소사이어티를 설립하고 2개월 주기로 협의회를 개최함.
 - 대외협력 활동은 주로 해외 클러스터와 제휴이고 홍보활동으로는 홍보 책자 및 홍보문헌 발간, 각종 세미나 등 개최 및 참가가 있음.
 - 일본(삿포로 생명공학 클러스터)과 말레이시아와 제휴하거나 유럽의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조직 FINE (Fine Innovation Network Europe)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기업에게 해외 컨퍼런스 참가를 격려하여 푸드밸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있음.

3) Food Valley가 주는 시사점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장기적 운영 플랜 필요

- 푸드밸리 재단이 와게닝겐 지방정부와 대학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NIS차원에서 운영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지리적 관할 구역 확장을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관·학이 공동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또는 기구 설립에 참가를 하는 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유치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용이하게 함.

■ 네트워킹 강화

- 푸드밸리 재단도 최초 입주 기업 및 대학의 네트워킹에 의해 설립 되었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중점 업무는 네트워킹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네트워킹 업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 관련 네트워크, 가공공장 네트워크, 식품 설비관련 네트워크, 유사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위 개념의 네트워크 구축

- 상주 직원의 수가 5명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푸드밸리 재단의 주요 업무는 네트워킹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인원이 적어도 4명 이상 요구 됨.

■ 기업유치 과정의 체계화

- 푸드밸리 재단에서는 기업 유치 담당자가 없고 기업유치 업무는 중앙정부 담당으로 중앙정부 경제관련 부서가 네덜란드를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기업을 위한 법적인 인센티브는 없음.
- 세계글로벌 기업의 유치는 푸드밸리의 집적효과에 큰 영향을 주는데, 즉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의 유치가 기업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이 필요함.
- 대학과의 밀접한 연계는 우수한 글로벌 인력 양성에 기여하며 나아가 글로벌 기업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업유치를 위한 법적 인센티브는 단계적으로 부여하도록 검토해야함.

〈푸드밸리(Food Valley) 클러스터 개요〉

1) 입지 및 현황

- 네덜란드 푸드밸리는 이미 농업이 경제활동의 주가 되어 식품업체의 입지적 매력이 형성됨.
 - 푸드밸리는 와게닝겐 주변 15km에 걸쳐 조성되어 이 지역을 기점으로 두 시간 이내 전 지역을 망라하며 주변 국가와의 입지적 접근성 역시 뛰어남.
 - 주거 및 교육환경 역시 잘 구축되어 있음.
 - 클러스터 내 연구소 및 패키징 센터 등의 기본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식품관련 사업 창업자들이 이 지역의 입주를 희망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푸드밸리는 연간 네덜란드 GDP의 10% 수준(60조원)으로 이 중 50%는 수출이며 약 70만 명이 종사하고 있음.



〈푸드밸리(Food Valley) 클러스터 위치〉

- 2010년 약 1,50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주요 기업은 NIZO, 유니레버, 하인즈, 네슬레 등이 있음.

2) 푸드밸리 재단의 설립 과정

- 푸드밸리의 지역이 타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기존의 농업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푸드밸리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함.
- 푸드밸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식품클러스터에 1997년부터 정책적 요소가 개입되었는데 이는 와게닝겐 대학이 주도하여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민간 기구와 협력하여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다짐.
 - 1997년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와게닝겐 지방정부가 설립한 “와게닝겐 생명과학 재단”은 푸드밸리 재단의 기반으로 2004년 재단 설립 이후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됨.
 - 푸드밸리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자연 형성된 클러스터이며 Food Valley Foundation이라는 지방 정부 예산이 투입된 기관이 존재하나 정부소유의 토지나 건물은 없음.
- 또한 2001년 「와게닝 식품클러스터 비전 보고서(The Wageningen Knowledge Cluster in View)」가 출간되어 클러스터의 공식명칭으로 푸드밸리(Food Valley)를 선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함.
- R&D 연구 기관은 민간에 의해 운영 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은 전무함.

〈표 2-5〉 Food Valley 클러스터

구 분	내 용
운영주체	푸드밸리(Food Valley) 재단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관·학 네트워크 • 경영지원 • 창업 컨설팅 • 투자가 모집
기업유치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며 인센티브 제도 없음.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장기적 운영 플랜 필요 • 네트워크 강화 • 기업유치 업무 분장 명확화

라. 덴마크 · 스웨덴의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1) 클러스터 운영주체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는 외레순 과학기술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EU정부의 관심에 의해 출발한 외레순 푸드네트워크는 EU의 정책적 자금으로 대학과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구성되었으나 운영은 EU보다 민간 운영으로 보아야 함.
- 2005년까지 주로 EU의 지역정책 자금으로 예산을 충당하였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의 중앙 및 3개 지방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왔음.
 - 각국의 중앙정부에 의한 클러스터 조성 개입은 극히 미미하지만 예산을 일부 보조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은 외레순 과학기술협회가 외레순 푸드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있음.
 - 2005년 이후 클러스터 회원들로부터도 회비를 받거나 기타 연구용역 사업 이익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
-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는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관련 기관을 핵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네트워킹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사는 총 13명으로 2008년 현재 이사진은 대학 및 연구소 관련 6명, 정부기관 4명, 민간업체 3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의 2/3는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회원 중에 임명하고 1/3은 외레순 과학기술협회에서 임명하고 있음.
 - 구성정부가 예산을 지원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정부의 영향력은 작은 편임.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의 직원은 덴마크 6명, 스웨덴 3명으로 총 9명이며 직책에 따라 Managing Director 1명, Project Manager 총 3명, Coordinator 3명, Project Assistant 1명, Communication Consultant 1명으로 구성됨.

〈표 2-6〉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 조직 구성

직책	인원
Managing Director(관리이사)	1명
Project Manager	식품과건강(1명), 생산과유지(1명), 요리(1명)
Coordinator	Project Coordinator(2명), Communication(1명)
Project Assistant	1명
Communication Consultant	1명

- 이 기구는 외레순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NIS측면, 즉 덴마크와 스웨덴 전 지역의 식품업체를 상대로 하고 있음.
 - 다수의 클러스터 멤버는 외레순 지역의 입주업체이지만 타 지역의 업체도 멤버로 가입이 가능함.
- 2005년 이전에는 주로 입주업체의 요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활동하였으나 2005년 이후 식품클러스터의 지원기관으로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 자산은 없음

2)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의 역할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는 정치적 로비활동을 통하여 법적으로 우호적인 클러스터 지원정책 수립을 도모하며 연간 EU 및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은 연구소, 기업, 학계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식품개발에서부터 기술의 상업화, 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도하는 것임.
 - 농업, 연구소, 대학, 기업 간 네트워킹, 전 지역을 상대로 식품 기술개발을 독려하거나 개발된 식품기술을 상업화함.
 -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업 종사자와 현지 연구소 또는 대학의 연구 개발자들을 연계시켜 기술 개발을 활성화시킴.
 -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연구소, 기업, 학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산·관·학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협력적인 연구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 입주업체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거나 회원사 간의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함.
 - 주요이슈가 발생하면 회원사 간 미팅을 주선하여 사업 파트너를 알선함.
- 연구소들의 연구지원을 위한 자금 보조 및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음.
-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의 입주 기업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 지원은 미미함.
 - 입주업체가 탁월한 마케팅 능력과 영어 구사능력으로 세계시장을 직접 개척함.

3) 외레순 식품클러스터가 주는 시사점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 정부가 예산을 보조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은 클러스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민간을 적극 참여시키고 있음.

-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민간기업의 클러스터 구성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이사회 구성 시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배려하여 각 기관의 중역들을 이사진에 참여시킴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및 문제 해결에 기여함.
- 정부지원 예산과 별도로 자체 수익 사업에 의한 예산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입주업체로부터 연회비를 받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장기적 플랜 필요

- 외레순 식품클러스터는 장기간에 걸쳐 집적된 성공적인 식품클러스터 사례로서 이는 클러스터 구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수 사항임을 시사 함.
- 식품클러스터라고 해서 반드시 식품관련 산업 업체에 국한 시킬 필요가 없으며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업체를 입주시킴으로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는 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으로서 멤버들 사이 네트워킹에 중점을 두고 있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에 네트워킹 업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주최할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킹 강화의 일환으로 입주업체의 잦은 방문과 사업상 파트너를 연결시켜주는 업무가 필요함.
- 클러스터 지원기관도 연구용역 수주, 출판물 발간 또는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이사진의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로비 및 입주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유대관계 형성이 필요함.

■ 기업유치 역할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정책은 없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는데 이는 기업유치가 주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기업유치활동은 외레순 푸드 클러스터와 별도로 정부기관에서 주도하듯이 기업유치를 위한 조직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내 구성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위적으로 정부가 부지를 조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중요한 업무가 될 수가 없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경제관련 부서가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와 별도로 투자 유치 역할을 하고 있음.
- 입주할 희망하는 업체나 기관은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받아야 함.
 - 클러스터 지역의 토지나 건물은 정부 소유가 아님.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개요〉

1) 입지 및 현황

- 스웨덴과 덴마크사이에 16km에 달하는 외레순 대교의 건설로 지역경제의 통합이 이루어졌음.
 - 외레순 지역 인구 370만 명 중 250만 명이 덴마크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국민의 80% 이상이 영어를 구사함.
 - 1995년 EU 멤버가 되면서 두 나라는 적극 협력하여 클러스터를 육성하게 되었음.
 - 덴마크에는 외레순 식품클러스터를 포함하여 3개의 식품클러스터가 있음.
- 외레순 지역은 19세기부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농업생산과 식품가공업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계 발전해 왔는데, 외레순 클러스터 매출은 연간 480억불 규모로 이 중 70%는 수출임.
- 10개의 대학과 160,000명 학생이 있으며 400여개의 식품업체가 입주하여 약 250,000명이 종사함. 입주업체의 95%가 중소기업임.
- 5개의 공항이 근접해 있어 물류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갖춘.
- 스웨덴 정부는 지역 산업에 특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 2002년 외레순 과학기술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협의회는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7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레순 지역 식품클러스터를 포함하며 7개 클러스터는 각각의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위치〉

〈외레순 7개 클러스터 지원기관〉

산업 분야	클러스터 지원기관
식품 분야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
의료분야	메디콘 벨리
환경분야	외레순 환경 아카데미
물류분야	외레순 물류
정보통신분야	외레순 IT
기업의 창업과 경영분야	외레순 창업
나노 기술분야	나노 컨넥 스칸디나비아

2) 클러스터 조성 배경

-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로 오래 전부터 외레순 지역에 식품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식품산업의 집적형태를 보임. 많은 기업들이 집적되며 공동의 관심사가 생겨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여 1999년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를 형성함.
- 산업의 자연 집적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발전시키고자 출발함.
- 클러스터의 조성은 외레순 지역자체 입주업체의 클러스터 조성 관심에 앞서 EU에서의 관심과 권장으로 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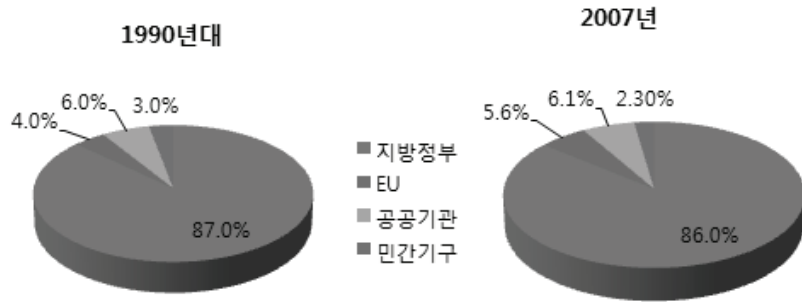
〈표 2-7〉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구 분	내 용
운영주체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로비 • 산·관·학 네트워킹 • 개발기술의 상업화 •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기업유치	기업유치 업무 부재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위한 이사진 구성 •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장기적 플랜 필요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 중요 • 기업유치 업무를 지원센터가 할 것인지 검토 필요

마. 이탈리아 ERVET

1) 클러스터 운영주체 : ERV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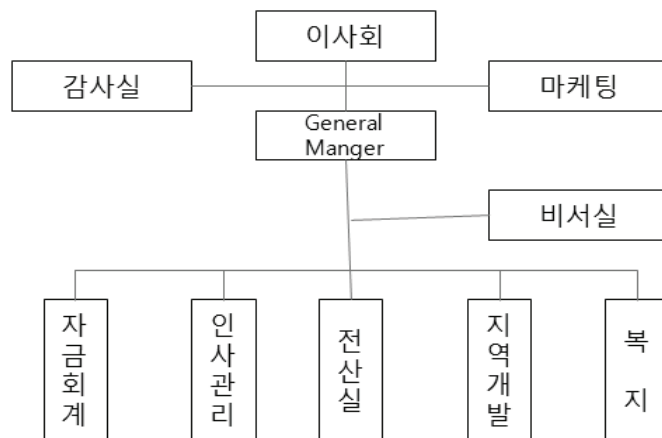
- ERVET은 에밀리아 로마냐 정부가 지역의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1974년 설립된 기관임.
 - 1970년대 ERVET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인프라 구축에 주력함.
 - 1980년대는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체제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제고함.
 - 1990년대는 네트워킹의 일환으로 각종 서비스센터를 산하기관으로 설립하여 품질개선 혁신 기술전수차원의 지원을 실시함.
- 지방정부, ERVET, 민간기구가 협력하여 기업지원 산하기관으로 각종 서비스센터를 설치함.
 - 지역내 11개의 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운영을 주도하였으나 최근 들어 운영을 민영화 시키고 있음.
 - 각종 서비스 센터의 효율을 개선하고자 ERVET은 ERVET system을 구체화하여 서비스센터를 네트워킹하고 입주업체를 지원하고 있음.
 - 각종 서비스 센터는 산업의 특성 업무의 성격에 따라 설립되었음.
 - ERVET 시스템은 ERVET과 11개 서비스센터로 구성하고 있으며, 1,000여개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음.
- ERVET의 예산은 지방정부와 EU의 지원, 수익사업으로 충당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연간 예산의 대부분을 조달하며 입주업체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
 - EU도 일부 ERVET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연간 결산 회계장부는 매년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짐.
 - 예산의 약 72%는 입주업체의 서비스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인건비 관련하여 약 24%를 지출하고 있음.
- ERVET의 운영예산은 지방정부, EU, 민간 기구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자본 투자 현황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 이사회는 지방 정부에 의해 추천하는 5명과 타 기관에서 추천하는 2명을 합한 7명과 감사기능을 하는 3명의 이사로 구성됨.
 - 지방정부의 지원은 90년대까지 87%였으나 86%로 낮아졌으며, 동기간 EU의 지원은 4%에서 5.6%로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지원도 증가하고 있음. 반면 민간기구의 지원은 2.3%로 낮아짐.



[그림 2-5] 구성원 별 자본 구성

○ ERVET의 조직

- ERVET의 초기 설립 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ERVET은 11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함.
- ERVET은 약 1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서비스센터의 직원을 포함하여 180여명에 달함.
- ASTER는 지방정부, EU, 민간에 의해 설립된 지역의 기술전수 기관으로 클러스터 내 대학, 민간 연구소, 서비스센터, 신규 혁신센터의 네트워킹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그림 2-6] 에르벳의 조직도

2) ERVET의 역할

- 에르벳의 주요 역할은 입주업체 운영의 기술지원, 입주업체의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구축, 클러스터 지역의 성과 분석 및 관찰, 클러스터 정책의 실현의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에르벳은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지역발전을 도모 하고 있고, 특히, 90년대 이후 기술 혁신분야에 관심을 두고 집중지원하고 있음
 -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하여 인프라 지원은 물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에밀리아-로마냐 지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기술혁신 지원을 하고 있음.
 - 동종 산업 별 네트워킹을 도모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입주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차원에서 입주 업체를 지원함.
 - 입주 업체가 관공서 업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도입 추진하고 있음.
 - 고용정책에도 적극 관여함으로써 인력양성을 도모함.
- ERVET System을 통하여 클러스터 내 파트너십 구축은 물론 네트워크 간 조정 및 협력 분위기를 주도 하고 있음.
 - EU, 중앙, 지방정부를 네트워킹, 공공기관과 민간기구의 파트너십을 구축, 지역 간 국가 간 네트워킹을 통한 중재역할을 시도하고 있음.
- 식품의 공동 브랜드 사용권장으로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킴.
 - 식품 분야 상품품질 인증을 강화
- 지역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위하여 지역과 해외지역의 협력을 주도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산하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유치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음.
- ERVET은 각종 세미나에 참가하여 클러스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대외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터키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3) ERVET이 주는 시사점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장기적 플랜 필요

-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가 40여년이라고 하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 ERVET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역할이 변경되었듯이, 향후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및 역할 변경이 필요함.
 - 출범과 동시에 과도한 운영목표는 운영효율을 제한시킬 소지가 있음.

■ 거버넌스 체계 명확화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지방정부 추천이사의 수가 다수를 차지하듯이, 거버넌스 체계에 명확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립해야함.
- 에르벳 클러스터의 기업집적은 자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민간기구가 자발적으로 조직화하였으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클러스터이므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함. 따라서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주도하여야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정부 주도형 운영이 되어야 함.
- 에르벳이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의 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원센터의 역할 중 각 기능별 목적별 산하기관을 신설하여 운영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하기에 무리에 있는 기능은 산하기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업유치 활동

- 국내외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ERVET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ERVET 산하기관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ERVET이 협력하는 형태임.
 - 에르벳이 아닌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듯이 기업 유치 업무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ERVET 클러스터 개요〉

1) 입지 및 현황

- 이탈리아 에르벳 지역의 인구는 2009년 기준 432만 명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GDP는 2009년 이탈리아 평균 (25,200 유로)보다 높은 30,600 유로와 2009년 이탈리아 전체 실업률 7.8%보다 낮은 4.8%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지역의 클러스터는 장기간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클러스터를 정책적으로 육성 지원하게 되었음.



〈ERVET 위치〉

- 2008년 입주한 기업은 430,000개를 넘고 있으며, 97%의 기업은 종업원 20명 미만으로 기업 당 평균 종업원 수는 5.2명임.
- 6개의 대학이 위치해 있고 150,000이상의 학생과 6,400명의 교수와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의 40%는 타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음. 연간 이탈리아 특허의 17%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기술과학 분야 산업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벤처 창업 열기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임.
- 1974년 지방정부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유한회사인 ERVET(Regional development agency)을 설립함.
 - 1970년대는 산업공단의 성격을 각고 1980년대는 입주업체의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주력
 - 지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입주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ERVET은 조직이 다양화되어 분화함.
 - 2003년 지방정부는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과 기술이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
- ERVET은 다수의 지역개발 기구의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지역개발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주도 함.
- ERVET에서 식품클러스터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15%로 추정됨.
 - 1950년대부터 20년간은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1970년 이후는 클러스터의 성장기로 진입함.
 - 농업과 관련 다양한 회사들이 입주하여 농업분야의 클러스터로 성장함.

2) 클러스터 조성배경

- 지역의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특산물을 배경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차 세계대전 후 이 지역은 산업공단형태로 조성이 이루어짐.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자 지방정부가 토지를 구매하여 민간 소기업들에게 재분양을 실시하여 사업 환경을 조성함.
- 소기업 중심의 전통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방정부가 클러스터 형성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에밀리아-로마냐 지방정부는 직접 개입하기보다 유한회사 설립을 통하여 클러스터 형성을 주도함.

〈표 2-8〉 ERVET 클러스터

구 분	내 용
운영주체	ERVET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업체 운영의 기술 지원 • 입주업체의 파트너 십 구축 및 입주업체의 네트워킹 • 클러스터 지역의 성과분석 및 관찰 • 클러스터 정책 실현
기업유치	ERVET 산하기관이 담당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러스터지원센터의 장기적 플랜 필요 • 거버넌스 체계 명확화 • 클러스터지원센터가 기업유치 업무를 할 것인지 검토 필요

〈표 2-9〉 해외 주요 클러스터 현황

분야	국 가	명 칭	집적형태	운영주체	비 고
식품	일본	지바 식품산업 클러스터	자연집적	재단법인 지바현 산업진흥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법인 지바현 산업진흥센터와 지바현이 협의운영 - 지바현이 재단법인에 예산을 지원함으로 거버넌스 체계 확립
	네덜란드	Food Valley	자연집적	Food Valley Fou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에 걸쳐 자연 집적된 클러스터 - 예산은 정부와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
	이탈리아	Ervet (에르빗)	자연집적	ERVET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80.04% 지분 금융권 18.51%, 기타 1.45%
식품	덴마크 스웨덴	외레순 클러스터	자연집적	외레순 Food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 - 7개 클러스터와 공존
	일본	츠클쿠바 연구단지	인위적	NA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가 인위적 조성 - 연구소 위주의 집적 - 중앙정부의 예산 100%로 운영
	일본	홋카이도 식품 클러스터	자연집적	홋카이도 식품 클러스터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러스터가 100% 민간에 의해 운영 - 홋카이도산 원재료를 적극 활용 - 글로벌화를 지향
바이오	일본	홋카이도 바이오 클러스터	자연집적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법인 홋카이도 과학기술 종합 센터와 협의운영 - 덴마크 메디콘 벨리와 협력 - 조성형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유사 함
의료	일본	고베의료 산업도시	인위적	클러스터추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치 활동은 고베시의 경제 산업국에서 담당 - 첨단의료진흥재단은 3개의 센터와 경영기획부로 구성. - 클러스터 추진센터는 R&D기관과 조직상 동등하게 편제

- 지금까지 해외 클러스터 사례로 고베 의료산업클러스터, 지바 식품산업 클러스터, 네덜란드 푸드밸리, 덴마크와 스웨덴의 외레순 클러스터를 살펴보았는데, 본 절에서는 클러스터 운영 주체,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구 설립, 조직 구성, 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역할, 기업 유치 활동 해외 협력 및 홍보 측면으로 나누어 FOODPOLIS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 자함.

가. 클러스터 지원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 지역에 상관없이 클러스터 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유럽의 경우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예산 또는 자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지원기구 (외레순 푸드네트워크, 푸드밸리 재단)의 운영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음.
- 반면 조사된 일본의 클러스터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원기관 설립 시 재산 출연을 50% 이상 하였으나, 이사회 구성에서 우월적 입지확보는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의 클러스터 운영 개입은 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예산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 지원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클러스터가 자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면 민간운영의 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이 바람직하나,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조성목적 달성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강력하게 추진하고 운영 할 수 있는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

나. 클러스터 활성화 기구의 조직 구성

■ 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 일본의 대부분의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반면, 유럽은 지원센터가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공공기관 성격이 약함.
- 고베 의료산업클러스터의 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보듯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클러스터를 조성 시, 지원센터는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지원 및 관리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 형태로 출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협의회 구성

- 클러스터 내 입주업체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정부기관에 입주업체를 대변하고 입주업체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함.
 - 협의회 운영을 위한 비용은 자체 회비로 충당하거나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음.
- 클러스터 내 동종 산업 간 미니 클러스터와 유사한 형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클러스터 지원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기여하고 있음.
 - 협의회는 클러스터 지원기관과 정기적인 미팅을 통하여 사업 환경개선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들 사이의 협력을 유도함.

■ 이사회 구성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직접적인 정부 인사의 참여는 없으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정부에 있음.
- 정부 추천이 가능한 이사의 수는 클러스터 별로 상이하나 민간기관의 이사추천 수가 우세하며, 이탈리아 ERVET은 정부 주도형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음.
-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기관에 이사 추천 권한을 주어 입주업체 대표 또는 중역이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음.
- 모든 클러스터 이사회의 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출됨.

다. 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역할

■ 네트워크 강화

- 클러스터 지원기관의 등장배경이 입주업체 사이 네트워킹 강화가 목적인만큼 클러스터 지원기관은 입주업체간 상호 관심사항을 전달하고 공유하며, 사업파트너를 찾아주는 네트워킹 역할에 주력하여 산·관·학 연결과 입주업체간 원활한 협력을 유도하고 있음.
 - 산업공단과 달리 연구소가 클러스터에 입주하고 개발한 기술 성과물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클러스터 내 네트워킹은 주요 핵심 역할임.
 - 입주업체가 요구하는 기술개발을 연구소에게 연결시키기 위해 클러스터는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벤처 창업지원

-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예비창업자의 유치 및 창업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창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작성, 관공서 서류 작성 지원, 자금지원, 세무 회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음.
 -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동기와 경영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있음.
- 벤처 창업을 지원하고자 벤처 양성 기관을 클러스터 내 유치 하거나 직접 운영하고 있음.
 - 클러스터 내에서 식품 벤처 창업보육 사업이 필요함.

■ 개발 기술의 상업화

-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술에 적합한 기업을 연구소와 매칭시킴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클러스터 입주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정보화하여 상호 공유함으로써 비즈니스 파트너 개발을 용이하게 함.
 - 입주업체가 원하는 기술 개발을 연구소에 전달하여 상업화를 향상시킴.
-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피하고 상업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함.
 - 개발된 기술을 입주업체가 상업화하는데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의 사장을 방지함.

■ 상품 개발 지원

- 입주업체가 개발을 희망하는 신상품 개발과 관련 컨설팅업체 연결 및 필요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연결시키고, 신상품의 테스트 장소 제공 및 원재료 생산 기술 개발 업체를 소개함.

■ 마케팅 지원

- 입주업체들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체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상품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에게 적합한 유통채널을 개척하는 마케팅 교육은 물론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음.
 - 클러스터 내 마케팅 전문 업체를 유치하여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업체들 사이에 공동으로 판로개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마케팅 컨설턴트를 채용함으로써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업체의 무료 상담을 지원함.

■ 기본 인프라 지원

- 입주업체들의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망, 전기, 상하수도, 통신 시설을 지원하며 정부관련 인허가 취득관련 업무를 지원함.
- 입주 희망기업의 클러스터 입주 결정을 돕기 위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 등 클러스터 주변의 정주 환경 개선에 노력함.

■ 연구 활동 지원

- 연구개발 관련업체들의 정부 및 민간 발주 연구용역 수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연구 파트너의 개발과 연결을 지원함.
- 국제 컨퍼런스,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함.
- 연구원들의 학술 저널 발표 등을 지원하여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시킴.
- 연구 성과물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연구 성과물 확산을 도모함.

라. 기업 유치활동

■ 기업에 지원의 법제화

- 조사한 유럽 클러스터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특별히 기업유치를 위해 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음.
- 반면 일본은 지방정부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유치 상담을 전개하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 가능 한 모든 세제 혜택을 한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을 지정하여 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 반면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은 없음.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논의 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참여가 요구됨.

■ 기업유치를 위한 역할 주체

- 유럽 및 일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은 정부주도로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유치활동이 정부와 지원센터로 나누어 질 경우, 클러스터의 지원과 관리업무의 일원화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와 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이 필요함.
- 기업유치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사항이나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는 정부의 권한이기에, 기업 유치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와 정부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함.

바. 해외 협력 및 홍보

■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

- 고베의료 산업 클러스터의 덴마크 스웨덴의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와의 제휴에서 보듯이, 해외 유사 클러스터와 제휴를 통해 지리적 원거리에 위치한 업체 유치를 지원하여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나아가 해외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유럽의 클러스터 혹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일본의 클러스터 등 대륙별 클러스터 제휴를 추진함으로써 제휴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음.

■ 해외 박람회 참가

- 국내 또는 해외에 개최되는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영어 및 관련국가 언어 홍보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위상 정립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클러스터 입주업체와 협력하여 참가함으로써 클러스터 입주업체와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윈윈(win-win)이 가능함.
 - 식품 관련 업체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우수 기업의 정보 취득은 물론 기업유치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해외 기관과 협조

- 국내 주재 해외 대사관과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찰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음.
- 해외 주재 한국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홍보 및 기업유치를 할 수 있음.

III 장

국내 클러스터지원센터 사례조사

1. 국내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운영현황
2. 국내사례가 FOODPOLIS 지원센터에 주는 시사점



국내 클러스터지원센터 사례조사

1 국내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운영현황

가. 지방자치단체의 클러스터지원 업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와 농공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각각의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음.
- 국내에 존재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 주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1) 주요업무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크게 **기업지원 업무**와 **산업단지 관리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관리업무는 별도의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를 개설하여 관리 및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복수의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최소 1개 이상의 여러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음.

■ 기업지원업무

-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업무는 기업입주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경영지원 업무가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에는 입지보조금, 투자 보조금, 본사이전 보조금, 고용보조금, 고용훈련보조금,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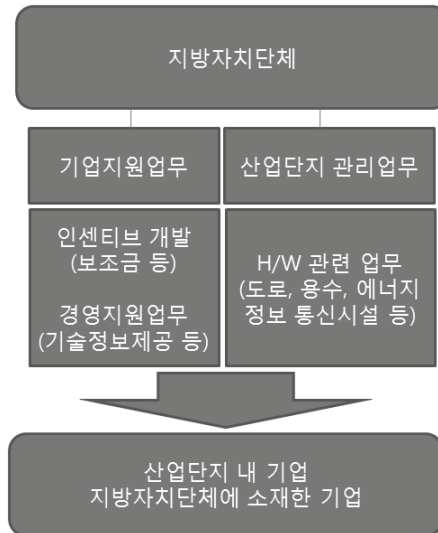
〈표 3-1〉 지방자치단체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현황

유형	인센티브 내용	비고
입지 보조금	분양가, 자가, 임대료 일부 지원	투자 인센티브 중 가장 큰 규모로, 대전, 울산을 제외한 시도에서 시행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 비율이 높은 편임)
투자 보조금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구입비 등 투자구입 금액의 일부지원	분양가, 자가, 임대료 일부 지원
본사 이전 보조금	상시 고용인원(10-30명) 초과 1명당 30-100만원 지원	수도권과 원거리에 입지하거나 투자촉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한해 도입 (경북, 경남, 대전, 전북, 강원, 제주)
고용 보조금	기준인원(10-20명)초과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50-60만원지원(지원기간 : 6-12개월)	지역에 따라 고용보조금 지급한도 설정: 강원(10억 원), 전북(5억 원), 경북(6억 원)등
고용훈련 보조금	기준인원(10-20명)초과 시 1인당 50-100만원지원(지원기간 : 6-12개월)	지원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이나, 전남은 12개월임. 경북과 제주의 경우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대규모투자 기업특별지원	대규모투자(300-1,000억원)기업에 부지매입비, 투자지원비, 근로정착비등 특별지원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강원과 제주의 경우 지원 대상기준이 관대한 편임
기타	지역별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보조금지원	전남(성장유망산업 지원), 부산(생산자서비스업/직원능력개발훈련보조금 지원)

- 그 외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100% 면제를 해주고 있음.
- 경영지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핵심기술의 정보 제공,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기업지원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따라 다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지원 폭의 차이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정책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해당 지역에 입주한 모든 기업들에게 지원되고 있음.

■ 산업단지 관리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관리업무는 H/W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음.
 - H/W에 관련된 관리업무는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용수공급시설·정보 통신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등을 관리 및 설치·보수 업무를 수행을 의미함.



[그림 3-1]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클러스터 지원업무에 따른 장·단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음.
 - 기업지원 업무 진행에 있어서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등 지원 등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이 용이함.
 - 산업단지 관리업무 중 H/W사업에 관련된 기관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관리 업무 협력이 보다 용이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에 따른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산업단지별 H/W관리 및 S/W 지원 사업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기업체 및 산업단지를 관리 및 지원함에 따라 업종별 특화된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움.
 - 경영지원 즉, 기업애로에 따른 멘토링 사업과 공동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사업의 영위가 어려움.
 - 네트워킹 사업(미니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공동사업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어려움.
 - 기술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연구소, 국책연구소, 각 기술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 성과확산과 기술수요에 대한 조사 및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클러스터지원 업무에 따른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노력을 통한 유치기업 인센티브 개발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기업 인센티브 지원이 용이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따른 인센티브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지원 업무 진행에 있어서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이 용이하므로 지원센터는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및 혜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노력을 해야 함.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H/W사업의 효율화

- 지방자치단체의 H/W사업에 있어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관리업무 중 H/W사업에 관련된 기관(가스공사, 수도공사, 도로공사, 전기공사, 폐기물 종합처리장 등)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산업단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클러스터의 H/W사업 중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이고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형성하여야 함.

■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역량 집중화

- 지원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역량 집중 및 강화를 통하여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의 산업단지별 H/W관리 및 S/W 지원 사업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기업체 및 산업단지에 대해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특화된 기업들의 집적화가 어려움.
- 따라서 지속적인 경영지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클러스터 성장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지원센터에서는 클러스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클러스터 내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멘토링 사업과 공동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을 통해 경영 지원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네트워킹 사업을 통한 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네트워크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아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클러스터 사업의 핵심인 네트워킹 사업(미니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공동사업화 지원 사업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주기업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센터는 네트워킹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르는 포괄적 지원을 해야 함.

■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은 주로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이며,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내 관련 연구소, 국책연구소, 각 기술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지원센터에서 기술개발 또는 기술수요에 대한 조사 및 대응에 대하여 주체적 지원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술 성과확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의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심사 및 평가하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기술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이를 지원하여야 함.

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1)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 배경 및 목적

■ 설립배경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7년 설립되었음.
- 1963년에 창립된 한국수출산업공단 및 그 후에 설립된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1997년 5개 국가관리공단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개편하였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관리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립업무를 위임받아 실행하고 있음.
- 현재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인수받아 관리업무 및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목적 및 비전

- 산업을 집적하고 공장설립을 원활히 지원하고,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2006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였음.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관리지원서비스의 표준모델 기관이 되는 비전을 설정하였음.
 -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를 창출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증진, 주거, 연구, 문화 등이 함께하는 신개념의 산업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즉, 단순 집적지에 네트워크, 기업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전체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원주체가 되는 것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종 목표임.

2) 주요업무³⁾

■ 산업단지관리운영

-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총 31개 사업 중 한국산업단지공단 주 업무는 산업단지관리운영으로 이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이를 관리할 주체가 필요할 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인수받아 산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을 실행함.

■ 산업단지 클러스터 추진

-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기존의 노후 된 산업단지에 신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사업임.
- 사업의 내용 및 특징
 - 네트워크 및 R&D 등 혁신역량을 산업단지에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실시함.
 - 산업단지 클러스터 추진사업은 2005년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 5개의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2010년 전국 193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광역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실시하였음.
 - 산업단지 클러스터 추진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각 지역별 본부를 개편하여 만든

3)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 및 국가기록원 포털 theme.archives.go.kr 참고하여 재가공

클러스터 추진단을 주축으로 사업이 진행됨.

- 산업단지 클러스터 추진사업의 하부사업에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사업, 맞춤형 특성화 사업, R&D역량 강화사업, 공동사업 등이 있음.

〈표 3-2〉 산업단지 클러스터 추진사업의 하부사업

사업구분	주요내용
맞춤형 특성화 사업	공동기술개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동브랜드 구축, 선도 기업유치 등 산업단지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
R&D역량 강화사업	R&D관련 인프라 및 장비를 확충하고 기간별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사업	각 산업단지별 미니클러스터 및 전문가 POOL을 운영하여 지식과 기술의 네트워크를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 및 산업단지가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
공동사업	입주기업이 공동브랜드 개발 등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산업단지 지원기능 고도화

- 산업단지 지원기능 고도화 사업은 기업애로 해결과 같은 입주기업 지원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각 산업 단지별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것임.
- 산업단지 지원기능 고도화 사업은 “기업사랑 도우미”, “종합상담” 및 민원업무대행, “수요자중심의 산업단지 관련제도 개선”,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활성화”로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표 3-3〉 산업단지 지원기능 고도화 사업

사업구분	주요내용
기업사랑 도우미 사업	기존의 공장설립 등과 같은 모든 입주기업 민원해결 창구를 단일화 하고, 애로 해결 전담팀을 지역본부와 각 지사에 배치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
종합상담 및 민원업무대행사업	공장설립에서부터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문제까지 상담해주는 ‘기업지원종합콜센터’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 관련 각종 인·허가, 신고 등 서류작성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관련제도 개선사업	여러 행정절차를 입주기업 중심으로 간소화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지속적인 혁신역량을 유지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전문가를 교육 및 양성하고 있으며, 관리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TFI를 조성 운영하여 관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사업	미분양된 산업단지를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분양율을 높이고 분양완료 된 산업단지는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에 공장 조기착공을 유도하는 사업

■ 공장설립 지원서비스 제공

- 공장설립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은 크게 ‘공장설립무료대행서비스’,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기업 지방이전 촉진과 지역투자 활성화’로 나눌 수 있음.
-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사업은 공정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절차를 공단이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무료 대행하여, 기업체가 갖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해소하여 기업체의 경쟁력, 나아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임.
- 세부 사업으로는 공장설립에 필요한 세부 행정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설립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정 입지로 유도하여 시행착오에 따른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 중임.
- 공장설립 관리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온라인을 통하여 공장현황과 통계자료의 확보로 기업이 사업전략에 도움을 주고 설립담당 업무를 표준화 하여 공장설립 행정업무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사업임.
- ‘기업 지방이전 촉진과 지역투자 활성화 사업’은 본사와 11개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수도권 기업 중 지방으로 이전을 하려는 기업에게 이전 적지를 알선하고,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사업임.

3)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원 주체적 특징에 따른 시사점

■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을 위한 S/W사업의 강화 필요.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관리는 대부분 생산기능 향상 및 H/W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산업단지 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사업은 양호하나 입주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S/W사업이 미약하여 산업단지들의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음.
- 지원센터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클러스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혁신클러스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S/W사업을 우선 하여야 함.
-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임하게 된다면 H/W사업에 치중되어 S/W사업이 약화되어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지원센터가 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생관계형성 마련.

- 계열적 기업연계구조와 상호 기술력 차이로 기업 간 혁신네트워크는 취약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미니클러스터 사업 등 여러 네트워킹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계열적 문제점으로 한계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도면을 받아 단순 가공조립에 의한 생산에 치중해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라기보다는 원·하청 관계로, 완제품 생산기업, 중간 모듈 생산기업, 부품 생산기업 및 소재/원자재 생산기업들 간의 경쟁적 협업체계가 미흡함.
- 따라서 지원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 필요.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에 기술개발과 연구 분야를 연계시킬 수 있는 중개기관이 부족하여 혁신 주체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연구 성과물들에 있어서도 지역을 넘어서 확산되지 않는 RIS개념의 성과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각종 연구회, 산·학 협동 연구개발, 기술 중개 프로그램, 기술정보 제공 등의 연계 프로그램과 전문기관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지원센터에서는 클러스터내의 기술개발과 연구 분야를 연계시킬 수 있는 중개기관의 역할과 산·학 협동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특화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뿐만 아니라 성과확산에 있어서도 연구 성과물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RIS개념의 역할에 따른 지원과 NIS 개념에 기초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중소기업지원

-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입주기업들 중 대기업 위주의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어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체간 협력 및 경쟁을 통한 성장보다는 하청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 식품클러스터에는 식품산업 특징 상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위주의 입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대기업 위주의 지원방안 보다는 임대형공장, PP 등과 같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주여건 강화 등의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방

안을 모색하여야 함.

- 또한 벤처기업의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체간 협력 및 경쟁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1) 대덕특구의 설립배경

■ 클러스터 형성 배경

- 한국의 대표적이며 전형적인 연구개발 중심 형 클러스터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해외기술의존 탈피(1970년대) 및 과학기술입국 실현(1980, 1990년대)등을 중장기 목표로 197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대덕연구학원도시’건설에서 시작하였음.
- 전형적인 과학기술집적지로 발전되어 오던 대덕연구단지에는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벤처창업 열기와 더불어 기술혁신 형 중소·벤처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면서 연구개발 기능과 산업생산기능이 동시에 육성, 발전하는 연구개발 중심 형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특히 2000년대 들어 선진 각국이 새로운 국가 및 산업경쟁력의 유효한 수단으로 혁신 클러스터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술개발(R&D육성) 정책과 산업정책, 지역 개발정책이 혼합된 이른바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추진의 시대적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본격적인 추진을 검토함.
-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와 경쟁할 수 있는 곳으로 국내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선택 집중전략) 대덕연구단지와 인근(산업단지 및 주변 지역)을 2005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본격 육성하고 이를 추진함.

2)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의 주요기능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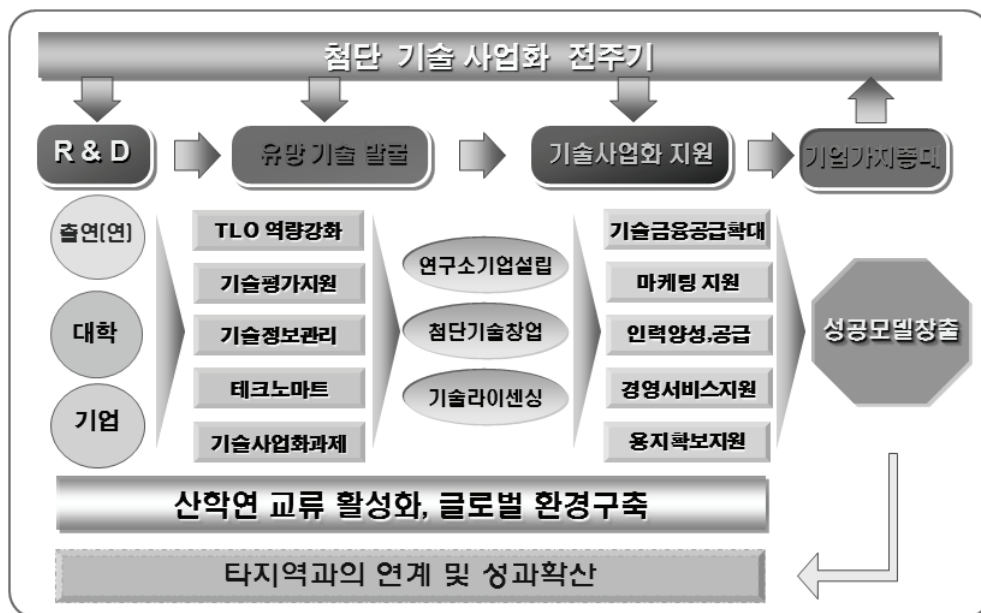
■ 특구관리본부 주요기능

- 대덕특구지원본부의 주요 기능은 크게 대덕특구의 공공기술사업화 등 사업지원 및 교류협력 부문과 연구원, 기업인 등 특구 구성원의 복지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 대덕특구지원본부 조직은 크게 기능적으로 사업지원 교류협력 역할을 수행하는 본부와 체육공원(골프장), 종합운동장, 어린이집 등 각종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설 복지센터

(수익사업을 통한 독립채산제 형태)로 되어 있으며, 특구법 및 대덕특구육성종합계획상 주어진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표 3-4〉 특구법 및 대덕특구육성종합계획상 주어진 주요 역할과 기능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안에서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 -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시행 - 특구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시행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과 기자재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용수·에너지·정보통신·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유치, 설치, 관리 및 운영 - 연구개발성과물의 전시·홍보, 과학기술인식 제고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지원 - 대학·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증진 -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 교수·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지원 - 사업화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및 교육 - 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 종합적 지원 -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 그 밖의 지식경제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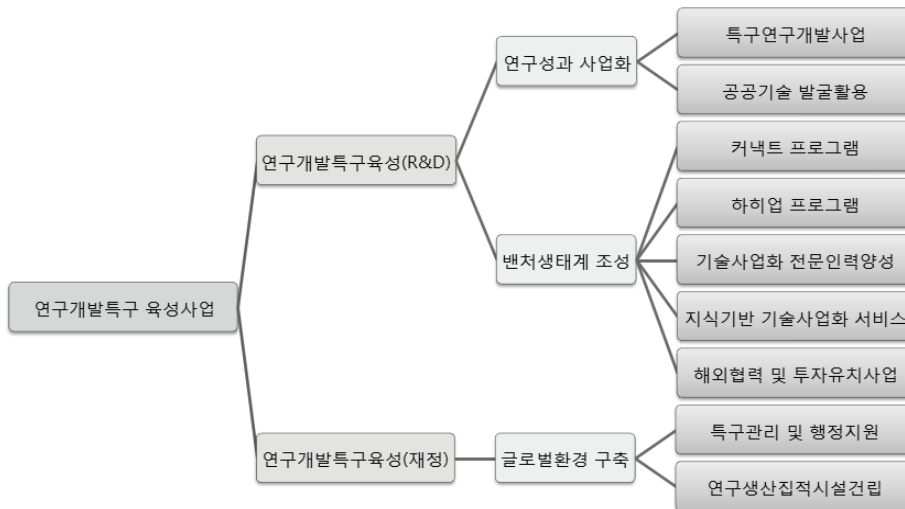


자료 : FOODPOLIS 지원센터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미나(2010) 자료 참고

[그림 3-2] 특구관리 본부의 역할 및 기능 프로세스

■ 주요사업

- 2005년 연구용역 발주를 통하여, 특구법, 지원본부의 역할을 수립하여 특구육성종합계획(2006~2010)을 작성하였으며 특구육성종합계획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세워 각 단계별 추진 목표에 맞는 세부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 특구육성종합계획은 총 2단계로 나누어지며, 1단계는 2006년에서 2007년까지 혁신클러스터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특구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확산을 통해 첨단산업의 허브로 도약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임.
 - 2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간 쌓아온 인프라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산업기능이 조화된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임.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단계별 추진목표에 따라 크게 연구성과 사업화,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경 구축, 타 지역과 연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음.



[그림 3-3] 대덕연구개발특구 주요사업

■ 연구성과 사업화

- 연구성과 사업화는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구 연구개발사업, 공공기술 발굴 활용 사업이 포함됨.
- 특구연구개발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기술개발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 형성을 지원하여 공공 연구 성과의 조기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주요 사업내용으로 전문클러스터사업, 특구사업화 기술개발사업이 포함됨.
- 공공기술 발굴·활용사업은 연구소, 대학 등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에 대한 지원

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 및 거래 활성화 및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 공공TLO의 협력 체제를 통해 기술마케팅의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사업임.

- 세부 사업에는 우수기술 발굴·이전 기술가치·타당성평가 등이 있음.
- 특구연구개발사업과 공공기술 발굴활용 사업의 주요사업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5〉 특구연구개발사업과 공공기술 발굴활용의 주요 사업내용

사업구분		주요내용
특구 연구 개발 사업	전문클러스터 사업	- 1단계 사전기획, 2단계 사업화 단계로 진행 - 1단계 사전기획은 유망 사업화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클러스터링 확대를 위한 기획 지원하는 단계로,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과 연관된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에게 연구과제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 - 2단계는 제품생산 및 매출과 직접 연계된 상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활동 지원하는 단계로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과 연관된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에게 과제당 최대 40억 원 이내에서, 2년간 지원
	특구사업화 기술개발사업	- 특구내 연구기관·대학의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지주회사, 연구원창업기업 등의 사업화 기술개발 및 외국R&D센터와의 공동기술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기관 등과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게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 -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 및 거래 활성화 및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 공공TLO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기술마케팅의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사업이며, 세부 사업으로 우수기술 발굴·이전 기술가치·타당성평가 등으로 구분
공공 기술 발굴 활용	우수기술 발굴·이전사업	- 대덕특구 내 연구소·대학과 민간 사업화 전문회사 간 공동 기술 발굴, 기술마케팅, 수요기술조사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반활동을 지원
	연구실 방문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	- 특허등급별 마케팅, 기술이전 중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을 공공TLO와 민간 사업화 전문회사 간 컨소시엄의 활동계획을 평가 후 간당 3억원 이내로 지원
	기술가치 타당성평가사업	- 국립연구기관, 연구소 등의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타당성평가 비용 지원하는사업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건당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 벤처생태계 조성사업

- 벤처생태계 조성사업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에 따르는 벤처 환경적 부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커넥트 프로그램, 하이업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지식기반 기술사업화 서비스, 해외협력 및 투자유치사업이 포함됨.
- 커넥트 프로그램은 산·학·연 기술사업화 주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대덕특구와 타 지역 연계를 위한 기술·생산 네트워크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산·학·연 교류협력 기술·생산 네트워킹, 기술사업화 대상 사업이 있음.

- 하이업 프로그램은 첨단기술형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함양,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목표시장 조기진입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세부 단계로는 기업가정신 함양(1단계), 비즈니스 모델링(2단계), 초기사업화 자금연계(3단계)로 3단계에로 단계별로 실시되는 사업임.

〈표 3-6〉 커넥트 프로그램과 하이업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내용

사업구분		주요내용
커넥트 프로그램	산·학·연 교류협력	- 기술사업화와 관련하여 대덕특구 내 산·학·연 및 전문가들의 기술사업화 분야, 교류협력분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구 내 산·학·연 그룹 및 단체에게 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기술·생산 네트워킹사업	-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연구인력 등으로 구성된 C&D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는 사업
	기술사업화 대상 사업	- 대덕특구 내 기술사업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기업부문, 연구원부문, 기술이전조직부문, 공로상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포상하는 사업
하이업 프로그램	기업가정신 함양	- 사례학습, 액션러닝, 기업의 성장단계별 분석·진단 및 전문가 네트워크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CEO 지원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링	- 기업의 니즈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중·단기 사업전략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수료기업 중 건당 최대 2천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초기 사업화 자금연계	- 2단계를 통해 수립된 사업전략의 실행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창업 등 사업화 자금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단계 수료기업 중 시제품 제작 등 건당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

- 기술 사업화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및 기업·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여 대덕특구 기업의 인력수급 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벤처아카데미, 특구인력연계, 특구기업 인턴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벤처아카데미사업은 기술사업화, CEO, CFO, 신입사원 과정 등 4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교육비의 최대 90% 이내로 지원하고 있음.

〈표 3-7〉 벤처아카데미 교육내용

구분	내용
CEO	- CEO를 대상으로 시장지향적 마인드 제고 및 이업종간 교류 활성화
CFO	- 자금조달 및 운용 등 기업재무 교육 및 CFO간 네트워크 형성 촉진
기술사업화	- 유망기술의 발굴·조사·분석 등 실무·사례 중심의 기술사업화 교육
신입사원	- 벤처기업 경영, 조직 등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 배양 및 리더십 함양

* 필요시 대덕특구내 산학연의 수요에 따라 추가과정 운영

자료 : 대덕특구포털 (www.ddi.or.kr) 참조 및 재가공

- 특구인력연계사업은 대덕특구 기업관련 대학정규강좌를 개설하고, 벤처실무과정 운영, 기업설명회·채용박람회 개최, 특구리더십캠프 등 인력연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함.

〈표 3-8〉 인력연계사업 교육내용

구 분		내 용
대학정규강좌		-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 구성으로 기술사업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증대
인력연계 패키지 프로그램	벤처실무과정	- 특강, 기업체 견학, 모의면접 등을 통한 대덕특구 기업정보 제공 및 실무능력 배양 지원
	기업설명회 채용박람회	- 대덕특구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대학 순회 기업설명회 및 맞춤형 공동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특구리더십캠프	- 취업희망자와 대덕특구 기업간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단기 심화 공동체 훈련 지원

자료 : 대덕특구포털 (www.ddi.or.kr) 참조 및 재가공

- 특구기업 인턴십 지원 사업은 대덕특구 내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인력(인턴) 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덕특구 내 입주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인건비의 최대 50%,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 지식기반 기술사업화서비스는 민간 사업화전문기관 및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을 활용한 기술사업화서비스 제공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세부사업에는 기술창업·경영서비스,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기술·시장정보, 사업화 전략기획, 특히 패키징·마케팅, 토탈 디자인이 포함됨.
- 해외협력 및 투자유치사업은 세계 각국의 혁신클러스터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기업·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대덕특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사업에는 해외교류협력, 국내외 투자유치사업이 포함됨.

〈표 3-9〉 지식기반 기술사업화서비스와 해외협력 및 투자유치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사업구분		주요내용
지식기반 기술사업화 서비스	기술창업· 경영서비스	-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경영 전반에 관련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대덕특구 내 산·학·연 에서 기술창업·경영컨설팅, 기술종합병원제도 등을 통해 소요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제도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 대덕특구 유망상품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제품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사업구분		주요내용
지식기반 기술사업화 서비스	기술·시장정보	- 대덕특구 사업화 유망기술, 국내외 논문·저널 등 맞춤형 시장분석자료 등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비즈니스정보센터 및 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제공
	사업화전략기획	- 대덕특구내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요비용의 80% 이내를 지원
	특허 패키징·마케팅	- 대덕특구내외 연구소, 대학이 보유 또는 수탁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패키징·기술포트폴리오 구성 및 기술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
	토탈디자인	- 대덕특구내 산·학·연 보유기술의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개발 및 후속 양산개발·마케팅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개 비즈니스모델에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해외협력 및 투자유치 사업	해외교류협력	- 2009 국제혁신클러스터 컨퍼런스 개최 및 2010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 세계총회 개최와 같은 전시회, 컨퍼런스 개최활동 및 해외 혁신클러스터와의 기술교류, 투자설명회, 대덕특구(사이언스파크) 모델 개도국 전수 등 교류 및 협력 활동 추진
	국내외 투자유치사업	- 국내외 기업·연구소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2회 이상) 및 유치활동 추진을 하는 사업이며, 특히 국내 거주 외교관들을 대덕단지로 초청·견학을 함으로써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 노력 진행

■ 글로벌 환경구축 사업

- 글로벌 환경구축 사업은 특구관리를 통하여 입주기업 및 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환경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특구관리 및 행정지원, 연구 생산 집적시설 건립 등 H/W관리 및 보수 사업 등이 포함됨.
- 특구관리 및 행정지원 사업은 대덕특구 도우미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입주업무 절차 안내 및 전자민원 서비스를 활용한 각종 민원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과 연구소기업 과 첨단기술기업 승인 등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외국인 민원지원센터 및 특구도우미센터 설치·운영, 특구정보화 시스템 및 전자민원 서비스 유지 관리, 특구현황 등에 대한 모형도 및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연구 생산직접 지원시설 건립사업은 사업목적 대덕특구 연구 성과물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첨단기술기업 등의 연구·생산 연계지원을 위한 「연구생산 집적시설」 건립·운영을 목적으로 특구 내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생산기반형 기술기업 등의 입주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생산 집적 공간 제공을 실시하고 있음.

3)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특징에 따른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부담

-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전기와 하수도, 폐기물 처리와 같은 H/W(인프라 업무)의 관

리는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관련된 S/W에 더욱 치중하고 있음.

- 지원센터의 핵심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H/W(인프라 업무)의 업무보다는 S/W업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와 하수도, 폐기물 처리와 같은 H/W(인프라 업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함.

■ 활발한 R&D 사업 진행

- 대덕관리본부는 R&D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활발한 R&D 사업의 영향으로 2005년 대비 입주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크게 신장하고 있음.
- 지원센터에서도 활발한 R&D 사업 진행의 지원을 통하여 입주기업 유치활동과 입주기업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의 기술수요 파악을 통한 맞춤형 성과확산에 의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거버넌스체계 구축

- 기업유치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과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 따라 조성초기에 대전시와 대덕특구의 마찰이 발생하였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역시 기업유치에 관련된 인·허가 권한이 없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클러스터 조성 초기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시작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원센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두어야 함.
- 발전계획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클러스터의 발전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복투자 및 애로사항 발생의 가능성이 높음.

■ 정주여건 개선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는 대덕특구 내에 복지시설(헬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음.
- 대덕특구 내의 복지시설 운영은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따라 입주기업 유치에 있어 하나의 유인책이 됨.
- 또한 입주기업의 임·직원 삶의 질에 대한 여건개선으로 인하여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도 정주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입주기업 중 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라. 오송생명과학단지

1) 설립배경 및 목적

■ 설립배경 및 연혁

-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오송단지 조성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 과학기술 수준을 확보 하고자 함.
 -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 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증대 및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1994년 「보건의료과학기술 혁신방안」에의 하여 수립된 과학단지로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바이오산업의 첨단클러스터를 목표로 조성되었음.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1994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0년 완공하여 관련 연구소 및 지원기관, 기업체들이 이주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음.
 - 계획에서부터 완공 및 기업입주 시작까지 16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으며, 이는 당초 계획했던 기간 보다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었음.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1994년 계획수립이후 1997년 건설교통부로부터 단지개발을 승인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2002년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03년 단지관리기관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음.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음.
 - 2004년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10년 현재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관련기관 및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고 있음.

〈표 3-10〉 오송단지 연도별 추진활동

연도	추진활동
1994	11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학기술 혁신방안」수립
1997	09월 건설교통부 「국가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76만평) 12월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1999	외환위기 발생으로 사업비 축소

연도	추진활동
2001	04월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 기본계획」 확정
2002	06월 건설교통부 「단지개발계획」 변경(3차) (140만평)
2003	10월 보건복지부 단지조성공사 기공식 개최 0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단지내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04월 보건복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 04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단지실시계획」 승인 02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완료
2004	11월 산업자원부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08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오송생명과학단지 「지구단위계획」 고시 06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관련 4대 국책기관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2005	10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 04월 보건복지부 국책기관 기본설계완료 및 성과물 납품
2006	10월 보건복지부 국책기관이전사업 실시설계 추진 09월 보건복지부 국책기관이전사업 타당성 재검증 완료 및 총사업비 확정 05월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 05월 보건복지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05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오송생명과학단지 「실시계획」 변경(3차) 05월 건설교통부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변경(7차) - 사업기간 연장 문화재 지표 조사 및 시굴 및 사업비 확보 난항 03월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분양계획 수립
2007	11월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6개 국책기관 신축공사 착공 07월 보건복지부 국책기관 이전 실시설계 완료 07월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302천m) 05월 보건복지부 연구지원시설 건립방안 연구용역 완료 04월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3차 분양 추진
2008	12월 보건복지가족부 인체지원 중앙은행 건립예산 확보(3년간 총 260억) 10월 보건복지가족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식 09월 보건복지가족부 토지조성, 도로·전기 등 기반조성공사 완료 08월 한국토지공사 오송생명과학단지 생산시설용지 4차분양 실시
2010	10월 6대기관 보건의료행정타운 완공 10월 6대기관 이전시작 07월 보건복지부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 전담팀 출범

자료 : <http://team.mohw.go.kr/osong>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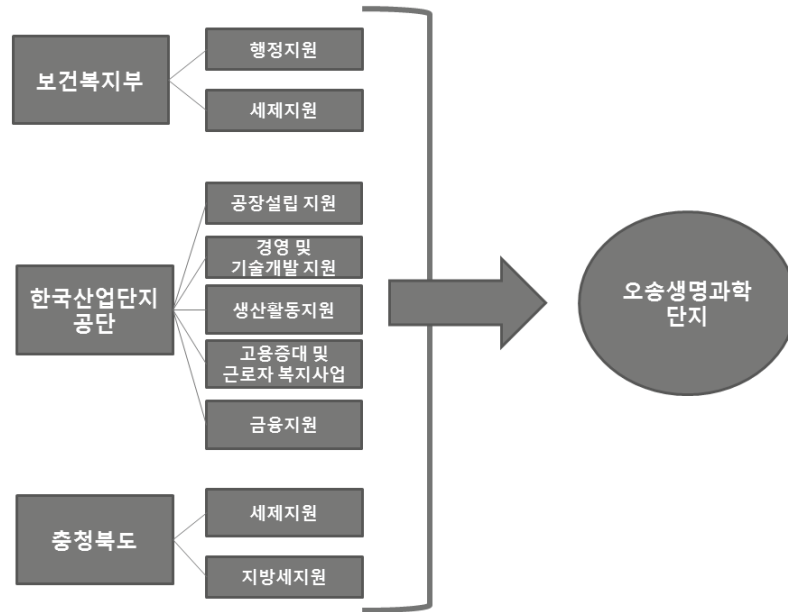
■ 목표 및 비전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의 추진방향은 크게 3가지로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단지 내 공장, 연구시설, 교육시설, 주택단지, 상가, 문화 복지시설 등 6대 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함.
 - 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과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함.

- 국책기관, BT 전문대학원 및 생명과학연구소 등 연구 지원시설, 민간연구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함.
- 오송생명과학단지 는 바이오산업의 첨단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4가지 단계별 목표를 갖고 있음.
 - 첫 번째 단계는 단지조성 단계로서 2008년까지 오송단지 조성의 성공적인 완료를 비전으로 하며 세부적으로 단지 기반조성공사 완료·기업분양 등 초기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함.
 - 두 번째 단계는 기반구축 단계로서 2009년에서 2012년 까지 오송단지 가동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하며, 세부적인 목표로는 산·학·연·관의 주체를 구성하여 운영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음.
 - 세 번째는 도약성장 단계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오송단지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을 큰 비전으로 삼고 각 주체 간 연계활동 활성화 및 국가적 차원의 산업화 지원을 세부목표로 삼고 있음.
 - 네 번째는 안정·성숙 단계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 BIO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정하였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업무의 총괄은 보건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에서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충청북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에서 일부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에서는 오송단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투자유치 수립 등 단지조성에 관한 총괄 업무뿐만 아니라 조성 후 오송단지의 운영 및 기획업무를 맡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송 이전작업을 지원하였음.
 - 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 추진단은 오송단지의 관리 뿐 아니라 이전 실무 작업, 직원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함.

2) 주요사업

- 오송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사업은 크게 4가지로서 공장설립지원, 생산활동 지원,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사업, 경영 및 기술개발 사업임.
- 현재 한국산업단지 공단, 충청북도에서 각각의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림 3-4] 지원주체별 지원업무

■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지원 및 계획업무

- 공장설립지원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완료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
 - 지원기관의 적극 유치 및 입주기업체 자문기관설치 운영
 -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 생산활동 지원
 - 해외시장 동향파악 및 종합홍보물 제작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전시장 및 정보센터 설치(유치) 운영
 -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정보의 확보 및 제공
 - 융자자금(산업기반자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알선
-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사업

- 단지 내 사회복지회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지하여 근로자의 여가활용을 지원하고 유휴 여성인력의 취업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공원시설 내에 운동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 체력증진 도모 및 입주기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지원함.

○ 금융지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금리 5.0%, 4.4%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 있음.

○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오송단지의 주요사업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네트워킹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주로 H/W 관련 지원업무, 인적 개발 업무, 경영지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코디네이터 업무임.

■ 보건복지부의 지원 및 계획업무

○ 행정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과학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경우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 국내 및 국제 품질인증을 지원
-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출원 지원
-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기술·경영 지원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정보 제공

○ 자금지원

- 신약개발자금, 식품진흥기금,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 연구개발비 등 지원 예정임.

■ 충청북도의 지원 및 계획업무

○ 세제지원

-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를 하는 사업, 즉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3년간 유예하고, 그 후 3년간 법인세를 분할하여 납부.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당해에는 100%, 그 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사업.

- 그 외 벤처 중소기업이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사업 등이 있음.

○ 지방세지원

- 연구시설, 생산시설 신·증축 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사업
-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 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업.
- 벤처기업이 2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창업 후 5년간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사업 등이 있음.

3)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통한 시사점

■ 외부변수 발생에 대한 대비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추진 시 문제점은 추진사업의 장기화를 꼽을 수 있음.
 - 추진사업의 장기화 원인인 자금부족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지원의 감소 때문에 오송단지는 당초 계획되었던 910만㎡에서 463만㎡로 감소하였고 또한 재정지원감소로 인한 재원확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성기간이 필연적으로 길어져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신규투자를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음.
 - 그 외 외환위기의 여파로 입주를 예정이던 기업의 수가 줄어들었음.
 -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는 90%가 넘는 분양율을 기록하며 계획했던 분양율을 달성하여, 관련 기관인 6개 부처 등은 이주를 시작했으나 입주 예정기업의 공장설립이 늦어지면서 지금 오송단지의 혁신 시너지 효과의 발생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원센터에서도 클러스터 조성 시 외부돌발 변수(국제적인 경기악화, 조성공사 시 문화재 발굴, 진입로 확충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기관별 업무분장의 명확화

- 오송단지의 경우 보건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사업을 총괄하며, 충청북도는 투자유치, 토지공사는 기반조성 및 단지분양, 산업단지공단은 단지 입주관리 및 시설 관리를 하고 있음.
 - 지원센터에서도 클러스터 조성업무에 관해서 관련 기관별 업무분담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원센터와 전라북도, 익산시와의 업무분장의 명확화를 통하여 중복 비용이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 관련기관 간의 협의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조성사업 추진 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게 해야 함.

■ CONTROL TOWER의 활성화

- 클러스터 조성 추진사업의 CONTROL TOWER 활성화임.
 - 오송단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조성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를 지휘 했듯이 식품클러스터 추진사업에서도 농식품부 식품클러스터과에서 조성 총괄업무를 지휘해야할 필요가 있음.
 - 식품클러스터 조성업무의 총괄업무 시 CONTROL TOWER에서는 조성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공급과, 클러스터 H/W 구축에 대한 업무,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업무, 기업 유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 등 조성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이 필요함.

2 국내사례가 FOODPOLIS 지원센터에 주는 시사점

■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 시 해당 지역 관련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중복현상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였음.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조성 초기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있었음.
-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원센터 설립 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은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라 할 수 있음.
 - 지원센터가 입주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허가권을 가질 수 없고 인센티브개발 및 부여 업무 중 세제혜택 등에 대하여 기업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입주기업의 인·허가와 세제혜택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이루어져야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서는 식품산업관련 연구소 및 지원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체계의 명확화는 향후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자칫 기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클러스터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정주여건 조성방안 마련

- 대덕특구본부에서는 골프장, 유아원 등의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시설 운영과 기업의 공동연구시설, 공동테스트 시설 등 기업을 위한 여건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현재 아파트 입주민의 많은 인원으로 주거 및 교통 등에 관한 인프라의 개선 작업을 실시할 예정임.
- 지원센터에서도 기업유치와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입주민과 기업을 위한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다른 클러스터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 놓을 수 있어야 함.
- 정주여건의 조성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확대는 클러스터 기업유치에 대한 유인책 및 입주기업들의 수요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과확산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방안과 대덕특구의 매출확대 두 사례의 공통점은 연구개발과 성과확산으로 축약됨.
 - 지원센터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노력과 NIS 개념의 성과확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혁신클러스터의 모습을 조기에 갖출 수가 있으며 성과확산을 통한 입주기업의 유치 및 기업매출의 증대를 통하여 클러스터 내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내실 있는 발전계획 수립

- 대덕특구지원본부의 경우 발전계획과 그에 맞는 목표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부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음.
 -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조성 초기에 클러스터의 발전 계획뿐만 아니라 지원센터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IV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단계적 활동방안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주요사업(안)
3. 단계별 사업 목표 설정과 추진활동(안)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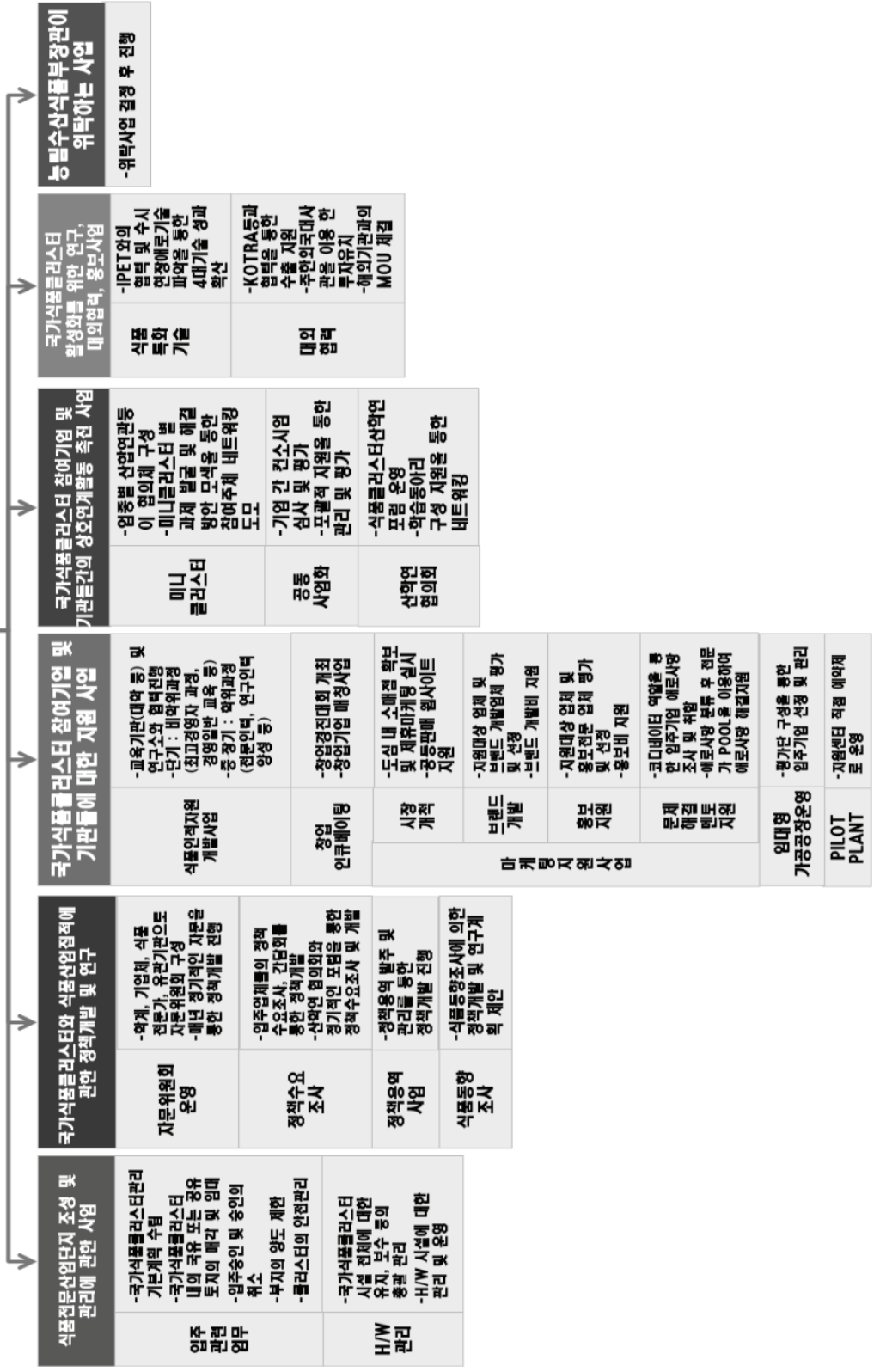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단계적 활동방안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구축되어짐.
- 「식품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사업은 총 6가지로 다음과 같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지원센터 6대 사업



[그림 4-1] 지원센터 6대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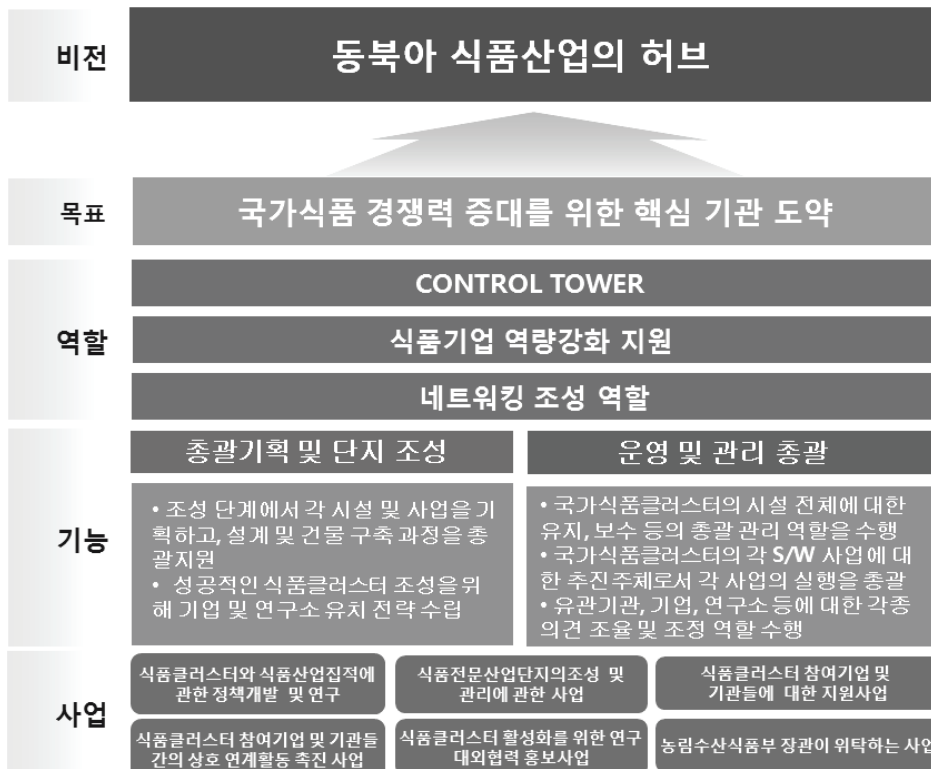
■ 주요역할 및 기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기업유치, 시설의 관리/운영 및 각 S/W사업에 대하여 추진을 총괄하는 기구의 역할을 담당함.
 - 각 지원시설(임대형 가공공장, 범용Pilot Plant 등)의 총괄관리를 수행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 전체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각 S/W 사업(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 식품인적자원개발사업, 포괄적지원사업, 네트워킹사업, H/W관리사업 등)에 대한 추진 주체로서 각 사업 실행 총괄을 담당함.
 - 식품관련 기술개발 사업 및 그에 따르는 성과확산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
- 「식품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6대사업을 수행함.

〈표 4-1〉 지원센터 사업구분 및 내용

사업구분	사업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자문위원회 운영	- 학계, 기업체, 식품전문가, 유관기관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 매년 정기적인 지문을 통한 정책개발 진행
	정책수요조사	- 입주업체들의 정책수요조사, 간담회를 통한 정책개발 - 산학연 협의회와 정기적인 포럼을 통한 정책수요조사 및 개발
	정책용역사업	- 정책용역 발주 및 관리를 통한 정책개발
	식품동향조사	- 식품동향조사에 의한 정책개발 및 연구계획 제안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입주관련업무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 매각 및 임대 - 입주 승인 및 승인의 취소 - 부지의 양도 제한 - 클러스터의 안전관리
	H/W 관리	-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 전체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총괄 관리 - H/W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연계 활동 촉진 사업	미니클러스터	- 업종별 산학연관등이 협의체 구성 - 미니클러스터 별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참여주체 네트워킹 도모
	공동사업화	- 기업 간 컨소시엄 심사 및 평가 - 포괄적 지원을 통한 관리 및 평가
	산학연협의회	- 식품클러스터 산학연 포럼 운영 - 학습동아리 구성 지원을 통한 네트워킹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식품특화기술	- IPET와의 협력 및 수시 현장 애로기술 파악을 통한 4대기술 성과확산
	대외협력	- KOITRA 등과 협력을 통한 수출 지원 - 주한 외국대사관을 이용한 투자유치 - 해외 기관과의 MOU체결

사업구분	사업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식품인적자원 개발사업	- 교육기관(대학 등) 및 연구소와 협력 진행 - 단기: 비학위과정(최고경영자과정, 경영일반교육 등) - 중·장기: 학위과정(전문 인력, 연구인력 양성 등)	
	창업 인큐베이팅	-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창업기업지원 사업 실시 - 창업기업 매칭서비스 사업실시	
	마케팅 지원 사업	시장개척	- 도심 내 소매점 확보 및 제휴마케팅 실시 - 공동판매 웹사이트 지원
		브랜드 개발	- 지원 대상 업체 및 브랜드 개발업체 평가 및 선정 - 브랜드 개발비 지원
		홍보지원	- 지원 대상 업체 및 홍보전문 업체 평가 및 선정 - 홍보비 지원
		문제해결 멘토지원	- 코디네이터 역할을 통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취합 - 애로사항 분류 후 전문가 POOL을 이용하여 애로사항 해결지원
	임대형 가공공장 운영	- 평가단 구성을 통한 입주기업 선정 및 관리	
PILOT PLANT	- 지원센터 직접 예약제로 운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위탁사업 결정 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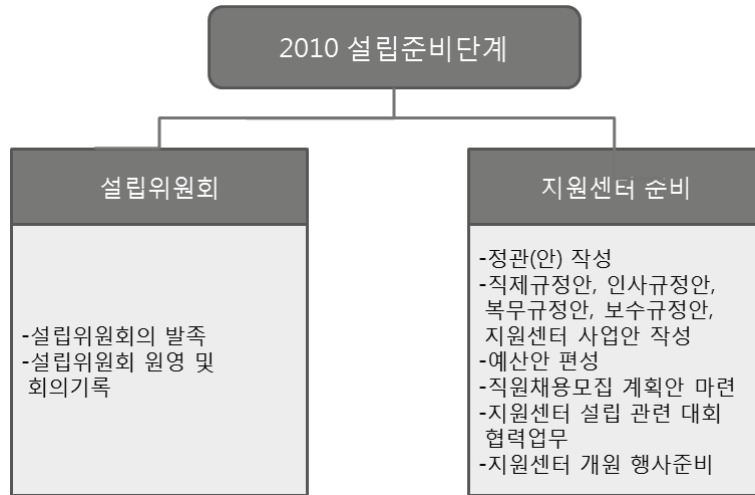
[그림 4-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나. 단계별 사업 목표 설정과 추진활동(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안정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목표가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단계별 목표는 설립 준비단계, 초기단계(I), 초기단계(II), 형성단계, 향후 발전단계, 글로벌 도약기의 6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초기단계(I)는 2011년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산단 구성에 관한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하는 시기에 해당함.
 - 초기단계(II)는 2012년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하는 시기에 해당함.
 - 형성단계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단계임에 따라 각 중요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총괄업무를 진행하는 시기라 할 수 있음.
 - 향후 발전단계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로서 초기단계 부터 수립한 S/W사업방안을 실행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산업 분야에서 중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기임.
 - 글로벌 도약단계는 2021년부터 국내 유관기관 및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시키는 단계임.

1) 설립준비단계(2010년)

- 2010년은 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임.
 - 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운영함.
 - 설립위원회에서는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업무준비 및 운영 안을 마련함.
 - 지원센터 설립 시 필요한 정관(안) 작성부터 시작하여 조직에 따른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르는 예산과 직원채용에 대한 계획 등을 마련함.
- 지원센터 설립에 따르는 인프라 조성 및 지원센터 개원 행사 준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활동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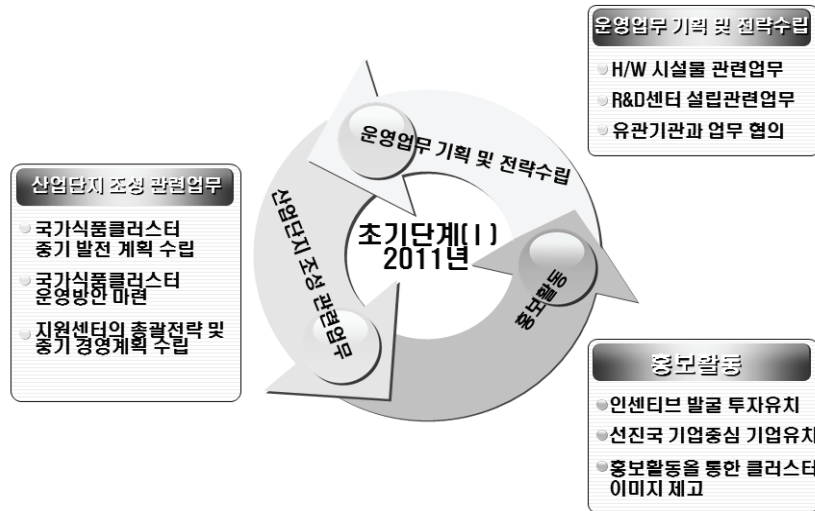
[그림 4-3] 2010년 설립준비단계 업무

<표 4-2> 2010년 설립준비단계 실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위원회의 발족 • 설립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 • 정관(안) 작성 • 직제규정안, 인사규정안, 복무규정안, 보수규정안, 지원센터 사업안 작성 • 예산안 편성 • 직원채용모집 계획안 마련 • 지원센터 사무실 임차 • 지원센터 집기 및 장비 구입 • 지원센터 보도 및 홍보 자료 작성 및 배포 • 지원센터 설립 관련 대외협력 업무 • 지원센터 개원 행사 준비

2) 초기단계(I)(2011년)

- 초기단계(I)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획 및 구축추진을 목표로 함.
- 초기단계(I)의 업무는 크게 운영업무 기획 및 전략수립, 산업단지 조성 관련업무, 홍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음.



[그림 4-4] 초기단계(I)의 실행업무

- 운영업무 기획 및 전략수립의 세부업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중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의 총괄 전략 및 중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산업단지 조성 관련업무의 세부업무는 H/W시설물 관련업무, R&D센터 설립 관련 업무의 사업시행자와 설계지침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함.
- 홍보활동의 세부업무는 입주기업의 인센티브 발굴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외국기업은 선진국 기업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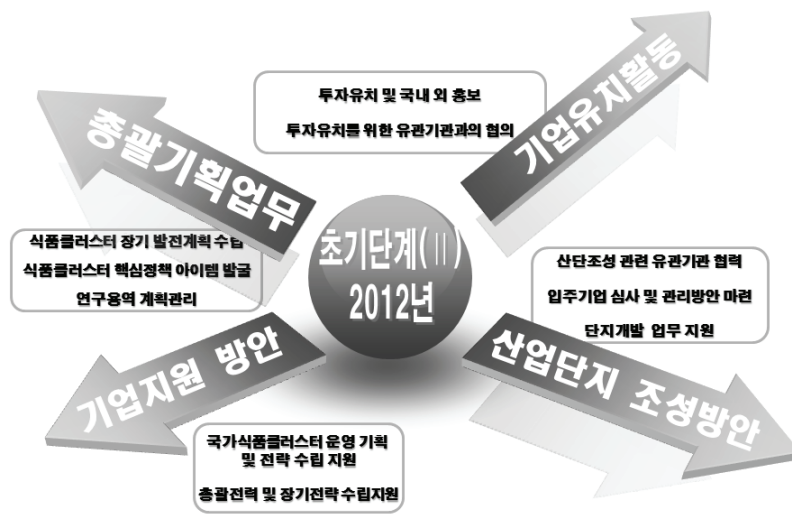
<표 4-3>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초기단계(I) 실행업무

업무구분	운영업무 기획 및 전략수립	산업단지 조성 관련업무	홍보활동
세부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식품클러스터 중기 발전 계획 수립 지원센터의 총괄 전략 및 중기 경영계획 수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방안 마련 연구 용역 계획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H/W시설물 관련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와 설계지침 협의 지원 - 세부운영 로드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센티브 발굴을 통한 투자기업유치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클러스터 이미지 제고 선진국 기업 중심으로 기업유치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센터 예산 집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센터 설립관련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R&D센터 설계지침협의 지원 - 설립방안 마련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 방안 마련(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간디자인 기술개발 시범산단 지정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 초기단계(I)에서의 농식품부 역할은 총괄기획업무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중기 발전 계획 수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방안 마련, 지원센터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역할을 수행함.
- 초기단계(I)의 지자체 역할은 지속적인 클러스터 홍보를 통한 기업유치 활동, 인센티브 발굴,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진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초기단계(II) (2012년)

- 초기단계(II)는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획 및 구축 추진과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의 성공적인 유치를 목표로 함.



[그림 4-5] 초기단계(II) 실행업무

- 초기단계(II)의 지원센터 업무는 총괄기획 업무, 산업단지 조성 방안마련, 기업유치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총괄기획 업무의 세부업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장기 발전계획 수립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 농어업 연계방안 마련과 같은 핵심정책 아이템 발굴을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기업지원의 세부업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기획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업무와 지원센터 총괄전략 및 장기 경영 계획 수립 지원 업무 진행 그리고 6대 H/W 시설물 건립을 위한 사전 업무 활동임.
- 산업단지 조성 방안마련의 세부업무는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지방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총괄관리 함.

- 이주가 확정된 공공기관과의 업무분담 및 협의체계 마련.
 - 입주기업의 분류기준을 결정하여 입주기업 심사 및 관리방안을 마련함.
 - 분양과 관련된 업무 주체를 결정하는 등 단지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자의 업무를 지원함.
-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기업유치 전략을 기획하고 수립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식품기업에 지속적인 유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하여 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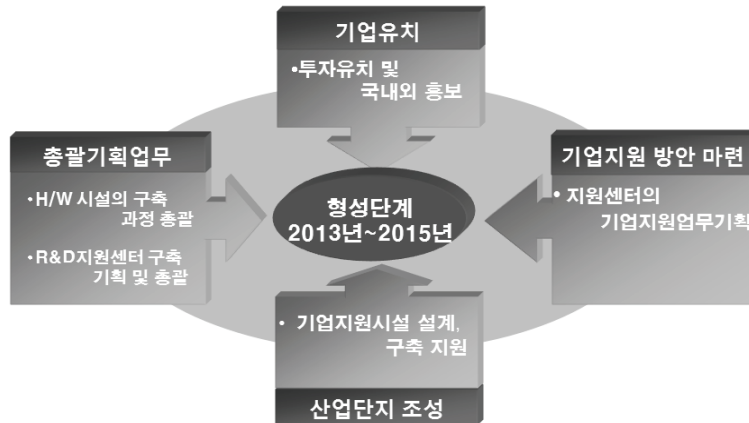
〈표 4-4〉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초기단계(Ⅱ) 실행업무

업무구분	총괄기획 업무	기업지원 방안마련	산업단지 조성 방안마련
세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장기 발전 계획 수립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핵심정책 아이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 농어업 연계 방안 마련 등 • 연구 용역 계획 및 관리 • 지원센터 예산 집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기획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업무 • 지원센터 총괄전략 및 장기 경영 계획 수립 지원 업무 • 6대 H/W 시설물 건립 사전 업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조성 관련 유관기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지방 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 이주가 확정된 공공 기관과의 협조 체계 마련 - H/W관리 주체 결정 • 입주기업 심사 및 관리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의 분류 기준 결정 • 단지 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과 관련된 업무 주체 결정

- 초기단계(Ⅱ)에서의 농식품부 역할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장기발전 계획 수립, 지역 농어업 연계방안 마련 등 핵심정책 아이템 발굴, 연구 용역 계획 및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초기단계(Ⅱ)의 지자체 역할은 산단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지속적인 투자 및 입주기업 유치활동 진행, 단지 개발관련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4) 형성단계 (2013년~2015년)

- 형성단계에서는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H/W시설이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고 기업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목표로 함.



[그림 4-6] 형성단계 실행업무

- 형성단계의 지원센터 업무는 크게 총괄관리 업무, 기업지원 방안마련,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업무로 구분할 수 있음.
- 총괄기획 업무의 세부업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행과 국가 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 정책개발 임.
- 기업지원 방안마련 업무의 세부업무는 지원센터의 기업지원(S/W)사업을 기획하여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S/W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조성업무의 세부업무는 3대 R&D센터, 임대형공장과 Pilot Plant 등 기업지원시설 설계 및 구축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H/W시설과 R&D지원센터 구축과정 총괄 관리 업무를 진행함.
- 기업유치 업무의 세부업무는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활동을 함.

<표 4-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형성단계 실행업무

업무구분	총괄기획 업무	기업지원 방안마련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세부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행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 정책개발 • 지원센터 예산 집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의 기업 지원 (S/W 사업) 업무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기업 지원 S/W사업 계획 수립 - 각 사업 관련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R&D 센터, 임대형 공장과 Pilot Plant 등 기업지원시설 설계, 구축 지원 • H/W 시설의 구축 과정 총괄 • R&D지원센터 구축 과정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및 국내·외 홍보 • 국내의 기업 및 연구 기관 투자유치 활동 •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 농식품부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행,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강화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지자체에서는 R&D지원센터를 비롯한 H/W시설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지원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함.
-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기업유치활동을 진행하여야 함.
 - 농식품부와 함께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를 도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야 함.

5) 향후발전단계 (2016년~2020년)

- 향후발전단계에서는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정화 및 성공적인 운영과 식품분야 네트워킹 구축 및 운영 총괄을 목표로 함.



[그림 4-7] 향후발전단계 실행업무

- 지원센터의 업무가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기획총괄 업무, 기업지원 업무,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 기업유치 및 대외협력 업무를 통하여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시설관리를 실행하여 클러스터가 조기정착을 유도함.



[그림 4-8] 향후발전 단계 업무

- 총괄기획 업무의 세부업무는 각 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 운영을 총괄하여 식품클러스터를 총괄하는 중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지원 업무의 세부업무는 발전단계에서 수립한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세부계획을 실행하여야 함.
 - 지속적인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성과확산, 식품인적자원개발사업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포괄적 지원 및 네트워킹 사업을 통한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지속 등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함.
 - 이주 및 입주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입주한 기업들의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한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연구 성과물이 관련 식품분야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함.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식품기업들의 경쟁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함.
 - 기술수요에 대한 기술공급자와의 연결을 위한 기술정보의 취합 및 성과확산과 관련된 행정업무 지원을 통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나가야 함.
- 식품인적자원개발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식품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식품클러스터의 지속적인 혁신역량 증대의 역할을 수행함.
 - 인적자원개발은 현장 수요에 의한 식품전문인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임.
 - 단기적 인적개발사업과 장기적 인적개발 사업을 병행하여 글로벌 식품전문가 육성 사업을 진행함.
 - 이를 위하여 지원센터와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의 공동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포괄적 지원 및 네트워킹 사업은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업그레이

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 연속성이 필요함.

- 미니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을 업종별, 혹은 생산품목별로 나누어 미니클러스터 구성을 지원하여 기업체간 네트워크 형성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임.
- 기업체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기술교류, 공동사업 등의 진행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큼.
-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는 구성된 네트워크의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하여 네트워크 안에서 활발한 교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식품클러스터 조성 중 식품산업과 관련된 이슈 등을 주제로 하는 정기 세미나 혹은 학술대회 주최 등으로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 교류확대 지원이 필요함.
- 기업이주 및 입주 지원업무인 공장설립 무료대행, 공장설립 정보시스템 활용, 이전 활성화 업무 등을 추진함.
 - 공장설립 무료대행 사업을 통하여 입주심사 신청 시 필요한 행정업무 진행을 간소화함.
 - 공장설립 정보시스템 활용은 홈페이지에 공장입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기업체가 원하는 공장설립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이전 활성화 업무는 클러스터로 이전을 원하는 기업에게 최적의 이전위치를 코디네이터 해 주어 이전 기업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유치 및 대외협력 업무의 세부업무는 국·내외 홍보활동과 타 클러스터와의 연계 체계 구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인 국가클러스터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기업유치 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타 클러스터와 연계를 통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수행함.

〈표 4-6〉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향후발전단계 실행업무

업무 구분	총괄기획업무	기업지원	시설관리 및 운영	기업유치 및 대외협력
세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설 및 사업의 운영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의 기업 지원(S/W 사업)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특화기술, 식품인적자원 개발, 포괄적 지원등 사업 실행 - 산·학·연·관 네트워크 형성 • 입주기업 및 이주 기업지원 사업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 무료대행, 공장 설립 정보 시스템 활용, 이전 활성화 업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설 (H/W 등) 효율적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및 국내·외 홍보 • 타 클러스터와의 연계체계 구축

- 농식품부에서는 지원센터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각 시설 및 사업운영 총괄 업무를 진행함.
 - 지원센터의 대외협력 사업을 지원함.
 - 지원센터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지속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형성 노력을 실행함.
- 지자체는 산·학·연·관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각 입주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협조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클러스터 내의 시설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업무를 진행함.
- 클러스터 내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 투자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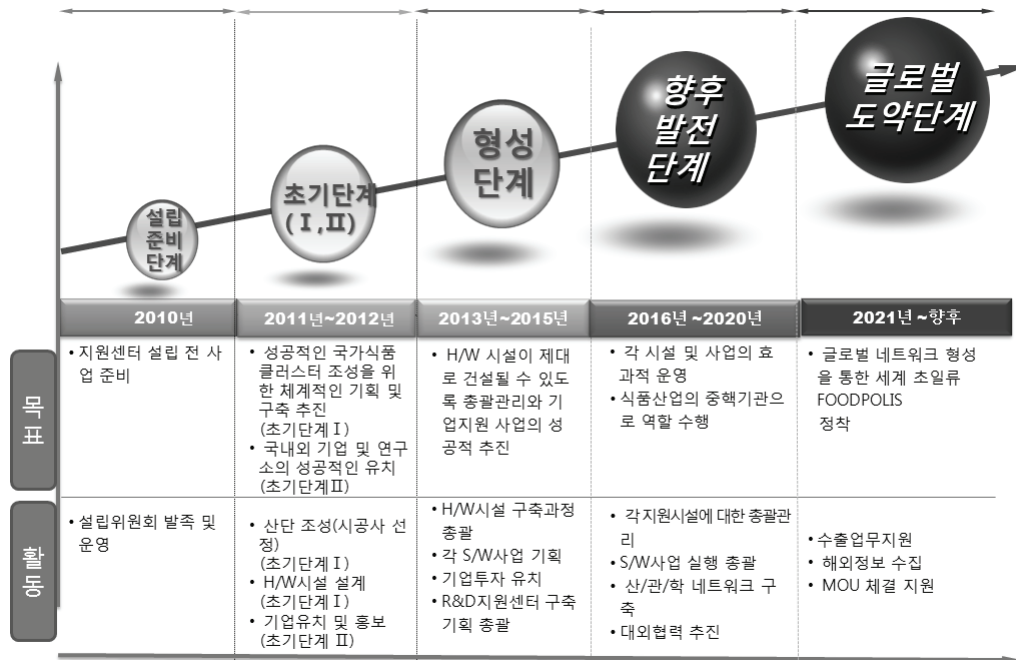
5) 글로벌 도약단계 (2021년~향후)

- 글로벌 도약단계는 국내 외 수출 또는 수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 초일류 FOODPOLIS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글로벌 도약단계는 향후 발전단계에서 실시하는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글로벌 식품클러스터로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임.



[그림 4-9] 글로벌 도약단계 업무

- 글로벌 네트워크구축은 해외의 KOTRA, 대사관,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로 식품클러스터 내 입주업체와 해외 클러스터 현지 입주 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함.
- 해외 기관을 통한 해외 시장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관련 정보를 국내에 확산 시키고 식품클러스터 관련 정보를 국내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함.
- 해외 기술 수요조사를 통하여 국내 연구기관과 연결시킴.
- 해외에서 발생하는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 해주는 창구역할을 수행함.
-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해외기관과의 MOU 체결을 주선하여 대학기관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림 4-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단계별 목표 및 활동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주요사업(안)

가.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 수행방안

1)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의 필요성

- 국내 식품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추정됨.⁴⁾
- 2008년 기준 보건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를 살펴보면 식품산업의 경우 같은 보건산업군에 있는 의료기기산업(6.66%), 의약품산업(4.55%) 등 보다 낮은 0.94%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⁵⁾
 - 2008년 기준으로 글로벌 선진국의 연구개발 집약도가 약 2%인 것에 비해 국내 식품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는 매우 낮은 편임.
- 향후 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유기농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분야, RFID를 이용한 포장분야 등 식품산업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추세임.
- 국내 다른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많은 국내 식품업계의 경우 정부차원의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생산액 비중은 전체 제조업 중 14.17%를 차지함.⁶⁾
-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식품 생산에 필요한 식품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의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은 중장기 기술개발방향을 설정, 동향분석,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과제를 발굴한 후, 인터넷 혹은 신문을 통해 공고 및 홍보를 하고 있음.
- IPET에서는 전문가 평가를 하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정책 부합성 평가를 통한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한 후 중간보고, 최종평가, 연구 성과 활용평가의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4) 광창근, 「식품제조업의 현황과 전망」, 농정연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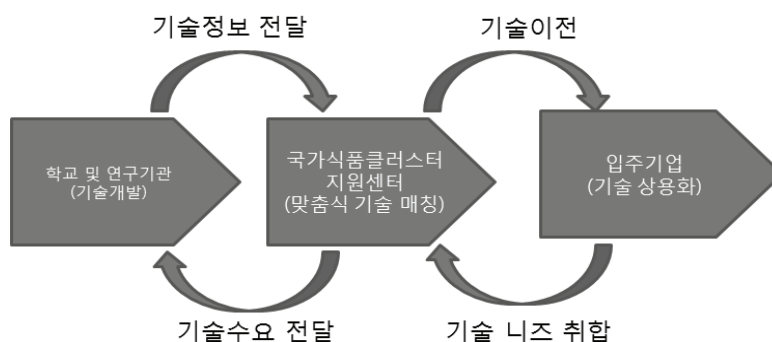
5) 보건산업통계(www.khiss.go.kr)참고

6) 「2008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약청, 2009.

- IPET의 사업은 상시 기술수요조사에 의한 과제발굴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수시 현장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 성과확산을 지원하고 수시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이 필요함.
- 이러한 식품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통한 성장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산·학·연이 참여하는 연구체계가 필요함.
 - 산·학·연이 직접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및 실질적인 기술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클러스터의 경쟁력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의 역할

- 국가 연구기관이나 타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에 의한 원천기술이 개발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급함.
-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과제화 하여 성과가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파생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
- 산업체를 반드시 포함하는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한 맞춤형 특화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그림 4-1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식품특화기술개발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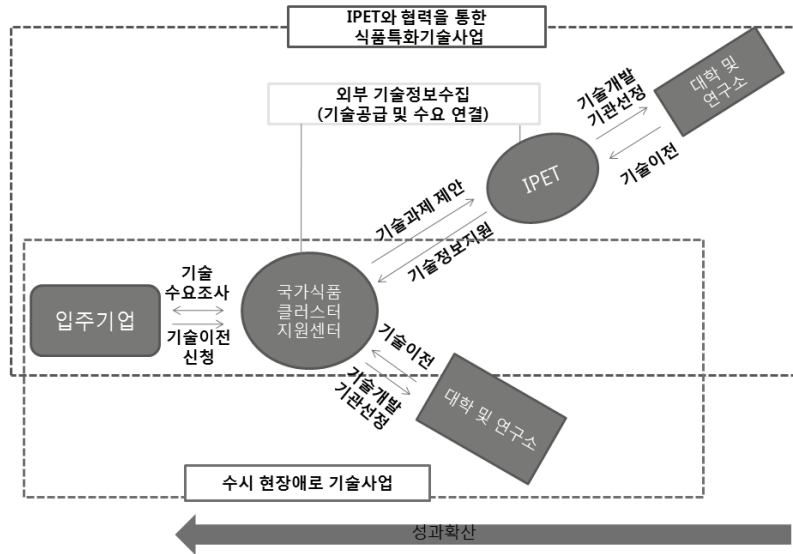
3)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 추진방안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은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출상품화를 위한 전통식품의 상품화

지원,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및 고부가가치 신 시장 창출 지원, 안전식품의 공급을 위한 식품품질관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⁷⁾.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은 식품의 원천기술과 상용화·상품화 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은 현재 IPET에서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으나 기업의 기술애로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및 지원이 어려움.
 -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애로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고 또한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면 IPET와의 사업 중복 현상이 발생하여 예산 낭비가 예상됨.
- 따라서 식품특화 기술개발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IPET의 협업화 및 보완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함.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은 크게 ①기술수요조사 ②과제발굴 ③연구기관 선정 ④연구수행 관리 및 평가 ⑤연구결과의 활용(기술이전 지원)의 단계를 거침.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에서 IPET의 주요업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식품특화기술개발 관련 기술동향의 조사 및 기술수요 예측
 - 식품특화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 식품특화기술개발의 연구과제 선정, 협약, 수행, 평가
 - 식품특화기술개발의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기술 발굴, 연구과제 발굴, 정책개발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식품특화기술개발 관련 기술동향의 조사 및 기술수요 예측
 - 수시 현장 애로 기술 사업에 대한 주체적 역할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을 위한 기업 중심 R&D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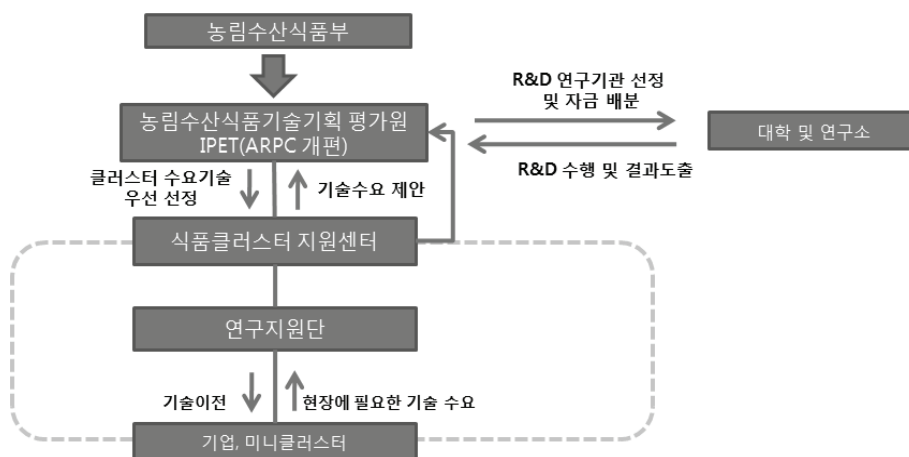
7)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 R&D 기획·관리·평가 강화방안」, 2010.



[그림 4-12]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안

4) IPET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협력방식을 통한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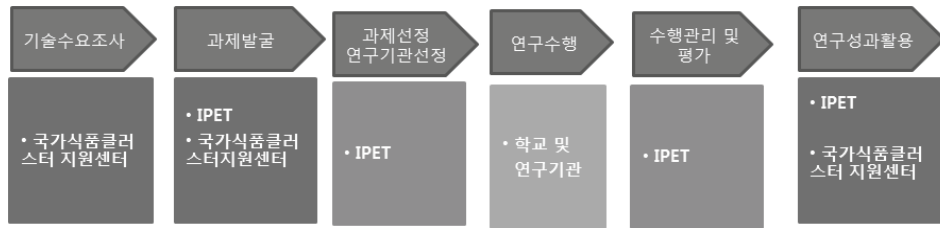
- IPET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임.
- 기술개발 사업의 각 단계를 IPET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나누어서 담당함.
- 과제 발굴 및 기술수요조사는 IPET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수요조사를 시행함.
- 연구기관 선정은 IPET가 담당함.
- 연구수행관리 및 평가, 그리고 연구결과의 성과확산은 IPET가 담당함.



[그림 4-13] 협업화 기술개발사업

■ 협업화 업무추진 프로세스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상대로 기술수요조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IPET에 기술과제를 제안함.
- IPET에서는 기술과제 선정 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제안된 기술과제를 기획과제로 채택하여 기술수요가 있는 입주기업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IPET는 중장기 기술개발방향과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분석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센터에서 제안한 기술과제를 우선 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과제 선정 후 IPET는 인터넷, 신문 등을 이용하여 기술개발과제를 공고하고, 홍보하여 각 연구소 및 대학들로부터 지원서를 접수함.
- 연구계획서 접수 후 IPET는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작업을 실시한 후 선정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을 실시함.
 - IPET는 접수한 연구기관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는 서면평가, 공개 프리젠테이션 평가로 이루어짐.
 - 평가 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선정을 확정하며, IPET와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협약체결을 실시함.
- 연구진행 시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2개월 전까지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IPET는 중간보고 평가 업무를 진행해야 함.
 - 중간보고는 서면평가, 공개 프리젠테이션 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 시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계속 이행, 중단, 조기 완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최종평가는 중간보고와 같은 방식으로 IPET에서 실시함.
 - IPET에서 구성·운영하는 평가위원회에서는 서면평가, 공개 프리젠테이션으로 평가를 진행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IPET는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기술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함.
 - 기술개발의 성과확산을 위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 IPET와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연구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함.



[그림 4-14] 협업화 주체별 업무프로세스

- 협업을 통한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은 IPET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추진 시 식품특화기술 사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지 않는 연구를 수행하여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과 제한된 분야의 식품기술개발 연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또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수시 현장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술과제 우선선정 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IPET의 협업을 통한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은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수요조사에 의한 제안 기술과제를 우선선정 함으로써 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의하여 농·식품관련 연구과제의 선정은 IPET에서 주관하고 있음.
-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수요 충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활용을 위해 지원센터에서 제안한 기술과제에 대하여 IPET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을 통한 우선과제 선정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2항⁸⁾과 3항⁹⁾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8)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 5조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립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기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제안 기술과제가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세부항목의 단서 조항 추가가 필요함.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 2항 7호의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함.
- 단서 조항 예시 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기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제안 기술과제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과제 선정 시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¹⁰⁾(현장수요 조사) 5항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함.
- 단서 조항 예시 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기술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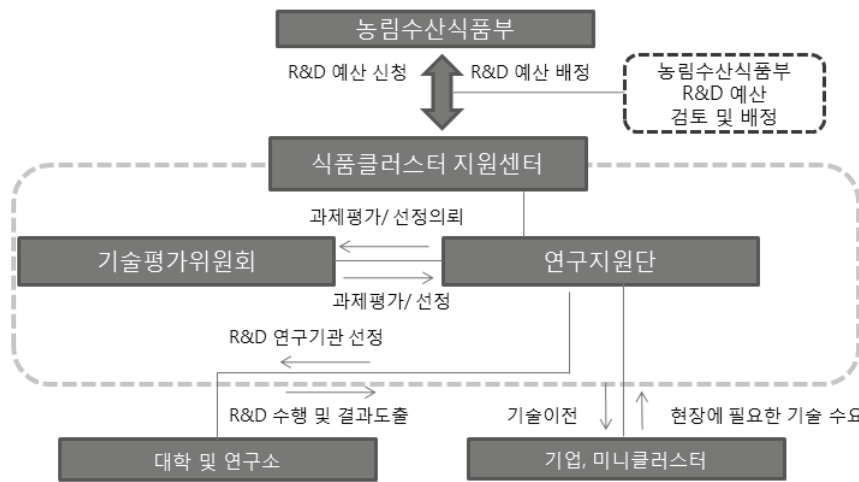
○ 그 외에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10조¹¹⁾에 명시되

-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목표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6.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 5조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10) 제5조(현장수요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18조제4항 제2호에 따라 현장수요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안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개발 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시장 동향 및 시장 규모
 4. 제안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제와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은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림수산업 관련 기업,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이 수시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 11)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형태) 장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어 있는 장관이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과제를 기획과제, 일반과제, 식품클러스터과제로 나눌 수 있도록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제안한 기술수요 과제를 우선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수시 현장 애로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 프로세스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농림식품부에 예산을 신청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그림 4-15]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도의 수시 현장애로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

- 식품클러스터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R&D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R&D 예산 확보는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청 예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필요 R&D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R&D 예산 확보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 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의 개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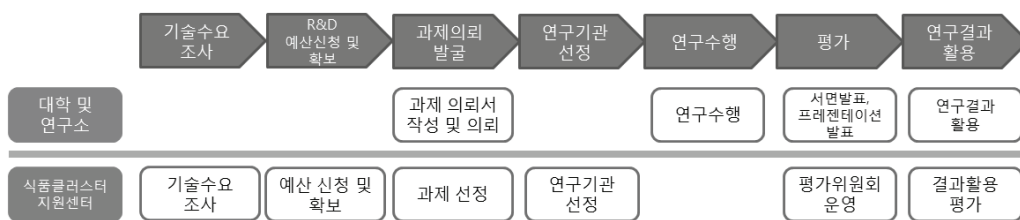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장관이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과제형태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기획과제 : 농림수산식품분야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장관이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농림수산식품업 관련 첨단기술, 부가가치 제고 기술 및 산업화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는 과제

〈표 4-7〉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 11조 추가 항목 예시 안

기존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	개정 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 예시 안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의 기술 공유와 성과확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 지원센터에서 식품산업관련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함.
- 입주 기업들로부터 수시로 기술수요 파악 후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과 수요자 중심의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사업공고 실행함.
-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을 체결함.
 - 선정평가 시 지원센터 내 연구지원 사업팀에서 정책 부합성 평가를 실시하며, 접수한 연구기관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전문가 평가 업무를 진행함.
 - 평가는 서면평가, 공개 프리젠테이션 평가로 나누어 평가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후 식품클러스터 내 연구지원 사업팀에서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함.
 - 평가의견에 따라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을 실행함.
- 연구기관 선정 후 주관연구기관은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며, 지원센터는 최종보고 후 연구 성과활용 평가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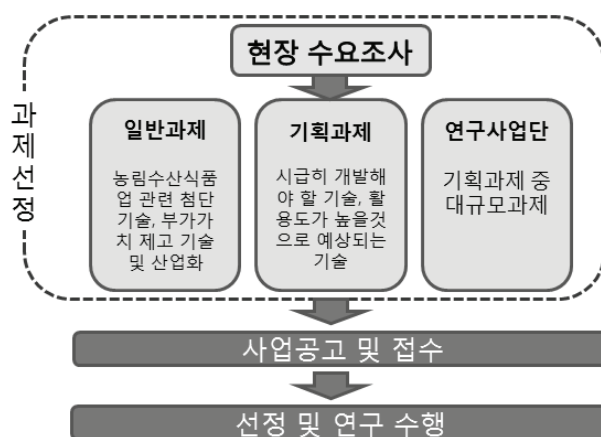


[그림 4-16] 수시 현장애로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 프로세스

5)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의 아이템 선정

■ IPET의 특화기술개발사업 수행 사례

- IPET는 농식품 관련 기술개발을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상시 운영하여 기술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 수요조사 실시 후 선정된 연구과제는 일반과제, 기획과제로 나누어 각 각의 연구과제 특성에 맞는 연구주체를 배정하고 있음.
- IPET의 기술개발 프로세스는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현장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분야 현장주심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의 체계적인 발굴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연중 상시 실시함.
- 수요조사 된 연구과제들을 일반과제, 기획과제 등으로 분류하여 기술과제를 선정함.
 - 일반과제는 농림수산식품업 관련 첨단기술, 부가가치기술 및 산업화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 하도록 함.
 - 기획과제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지정하여 공모함.
 - 기획과제 중 대규모과제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사업단을 지정하여 공모함.
-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IPET는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연구주체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을 지원 및 성과확산에 기여함.



[그림 4-17] IPET의 특화기술개발 프로세스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의 아이템 선정

- IPET 2017년 농식품 가공·유통 기술 4대 핵심기술과 ATKERNEY 보고서에 의하여 수요가 크고, 미래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한 6대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술을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계획」 용역과제에서 선정된 전략 품목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6대 핵심기술분야는 농식품가공기술개발, 건강기능식품개발기술, 전통식품개발기술, 식품 신 유통기술, 글로벌식품개발기술, 기타가공기술개발임.
- 농식품가공기술개발은 친환경 가공제품, 일반식품(음료류, 과자류, 곡물가공품, 유가공 식품), 식품유용물질, 신 가공제품, 로하스 가공식품, 특수목적 식품, 미래형 식품을 개발하는 기술임.
 - 이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신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있음.
 - 다양한 소재 활용 및 제품 개발의 가능성이 있음.
- 건강기능식품개발기술은 천연농산물 기능성 소재의 독점적 발굴 및 제품화 기술개발, R&D 전략 품목(기능성 식품, 기능성 소재 첨가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소비자 지향적 건강기능 식품을 개발하는 기술임.
 - 건강기능 식품시장의 높은 성장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건강수명을 증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전통식품 기술은 김치, 한식 전략 품목 인 장류(고추장, 된장 등), 주류(전통주), 글로벌 비빔밥, 기능성 떡, 한과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임.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매출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중·대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전통 장류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고 세계적인 식품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음.
- 식품 신 유통기술은 소비자 관점의 품질지표 및 품질 계량화 기술을 개발하고 유통 및 물류에 대한 관리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 하는 것임.
 - IT기술의 발달은 유통 및 물류의 효율화를 촉진시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음.
- 글로벌 식품 기술개발은 커피식품, 소스/드레싱, 차/음료류, 유제품 등 대중성 있는 글로벌 식품에 대하여 기술을 개발 함.

- 대중적인 글로벌 식품의 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기타가공기술개발은 원료전처리 기술, 저장기술, 포장기술(친환경 포장재), 위생관리기술 등을 개발함.
-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업은 제품성 강화 및 실용화를 통하여 신제품에 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표 4-8〉 농식품 가공·유통 6대 세부 핵심기술

농식품 가공 기술	천연신소재/유용물질 개발 기술	건강 기능 식품 개발 기술	생리활성 성분 동정, 상호작용, 상승작용 규명
	구조변환기술, 품질변화기술 등 소재부가가치 증대기술		체형화 기술
	BT, NT, IT와의 융합을 통한 신 가공기술 및 공정		영양- 유전체 진단기술
	비열처리 가공기술 및 공정		뇌기능 및 정신건강 효능 평가 모델 개발
	비열처리 가공기술/대체 가열 기술/Hurdle technology		식품 소재의 소화/흡수율 판정
	우주식품/초 압축식품 등 미래형 가공식품 개발기술		In vitro, 동물실험 및 인체시험 효능 평가 모델 개발
	수출전략형 농식품 개발 기술 및 수출목표 나라 기호조사		유용성분이 안정성 및 생체이용율 증진
전통 식품 개발 기술	한국고유 전통식품의 우수성 규명 및 기능성 강화	식품 신 유통 기술	소비자 관점의 품질지표 및 품질 개량화 기술
	전통식품유래 유용물질 생산 우수 균주 선발 및 개량		위해물질 속/진단/검지/계측기술
	수출목표 국 소비자의 소비패턴/ 기호도 조사 및 Database 구축		수확 후 생리활성 변화 제어기술
	현지인에 적합한 전통식품의 기호/관능특성 개선		U-IT 활용 유통/물류 관리기술
	저염화 발효식품용 신규 균주		친환경/저 에너지형 유통 관리기술
글로벌 식품 기술 개발	천연소재 및 생산기술 개발	기타 가공 기술 개발	비가열처리 가공기술 개발
	천연 향, 변색, 외관변질 방지기술개발		산지가공기술
	국내 원재료를 이용한 와인개발		다단계 복합처리 설계기술
	국산원료를 이용한 소스/드레싱 개발		지능형 포장소재 개발
	중국인 기호에 맞는 유아분유		현장 적용형 검출기술

자료 : ATKEARNEY,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용역」, 전라북도, 2009. 재구성. IPET 2017년 농식품 가공·유통 기술 4대 핵심기술, 재구성

6)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수행방안

- 식품특화기술개발의 연구과제는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원천기술 과제, 공공과제, 응용과제, 사업화 과제, 국제공동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원천기술 과제는 미래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위주로 개발을 실시하는 과제임.
 - 단일주관기관의 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연구도 가능토록하며 민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과제는 정부공공임무 수행차원에서 실시되는 과제임.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연구원의 참여 및 평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응용과제는 원천기술의 응용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과제임.
 - 성과확산을 고려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관 연구기관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일 경우 관련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사업화 과제는 사업화를 전제로 개발되는 과제로서, 기업체가 연구개발의 주 기관임.
- 국제공동연구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인력 교류를 전제로 한 공동연구체제를 채택하고, 기술수출전략 차원의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함.

〈표 4-9〉 연구 성격별 기본전략

연구성격	기본전략	비고
원천기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주관기관 중심 연구개발(공동연구가능) • 대학, 국가출연연구소가 중심(민간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 중시
공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공공임무 수행차원의 연구수행 (연구결과 파급효과 큼) •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연구원의 참여 및 평가가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방법 및 연구수행전략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임 • 출연금 개념보다 용역발주개념으로 연구와 사업의 통합 추진 • 민간부담비율 최소화
응용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기술의 응용기술 개발이 목적 • 성과확산을 고려한,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장려 • 주관 연구기관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일 경우 컨소시엄 형 기술개발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연구 개발 실패 위험 및 자원 분산 • 기술혁신 성공관점에서의 컨소시엄 구성 내용에 대한 평가
사업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의 주체를 기업체로 함 • 벤처기업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 및 사업화 전략을 중시하여 평가함
국제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경우, 연구인력 교류를 전제로 한 공동연구체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출전략 차원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기관의 보유기술 경쟁력, 기술이전전략이 중요 평가요인임

7) 식품특화기술 성과확산 방식¹²⁾

- 식품특화기술의 성과확산 방식은 기술의 매매방식, 라이선스 방식, 기술과 관련된 경영 자원과 함께 기술이전 및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 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기술의 매매방식은 기술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함.
 - 기술의 매매는 기술수요자인 기업에서 보면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고 기술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특허관리 및 기술료 징수의 부담이 없음.
- 라이선스 방식은 계약에 기초하여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기술공급자에게 있고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기술수요자에게 허락하는 방식으로 전용실시권, 통상 실시권, 재실시권, 크로스라이선스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전용실시권**은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의 설정 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이나 노하우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임.
 - **통상 실시권**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기술공급자는 통상 실시권을 설정한 후에도 스스로 실시하거나 동시에 다수의 제3자에게 같은 범위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음.
 - **재실시권**은 기술수요자가 기술공급자로부터 실시권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할 수 있는 계약관계를 의미함.
 - **크로스라이선스권**은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간에 지식재산권의 상호교환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서로 실시권을 교환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함.
-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 기술이전 및 거래하는 방식은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관련된 자본, 경영 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임.
- 기술력 보유 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매수 또는 전체 기술 중 특정 기술부문만을 분사하여 매수하는 방식임.

〈표 4-10〉 성과확산 방식

성과확산방식		내용
기술매매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성과확산으로서 기술수요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
라이선스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설정 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이나 노하우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12)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지식경제부. 2007. 참조

성과확산방식		내용
라이선스	통상 실시권	• 기술공급자가 특허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기술공급자는 통상 실시권을 설정한 후에도 동시에 다수의 제3자에게 같은 범위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하는 권리
	재실시권	• 기술수요자가 기술공급자로부터 실시권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할 수 있는 계약관계
기술과 관련된 경영지원과 함께 기술이전 및 거래하는 방식		•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 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 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전체 기술 중 특정 기술부문을 분사하여 매수하는 방식

8) 식품특화기술 성과확산

- 개발된 식품특화기술의 확산은 연구 성과의 특성에 따라 확산유형을 산업체 기술이전, 교육·지도, 정책 자료로 분류할 수 있음.
 - 산업체 기술이전 활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기술을 이전하여 성과를 확산하는 활동임.
 - 교육·지도는 중소기업에게 현장에서 활용될 목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 교육 등으로 성과를 확산 시키는 활동임.
 - 정책자료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용함으로써 성과를 확산시키는 활동임.
- 식품특화기술개발 성과확산 사업은 크게 성과확산 준비단계, 성과확산관리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성과확산 준비단계에서는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체와 연구개발을 진행한 주관연구기관이 IPET 혹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 기술이전 신청 또는 기술이전 계획서 작성을 접수함.
 - IPET의 기술이전 심의회 구성 및 업체 평가를 통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 짐.
 - 성과확산 관리단계에서는 기술이전에 대한 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기술료 납부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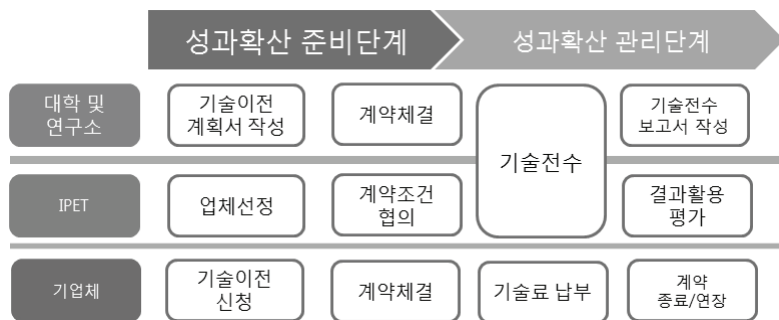
■ 성과확산 준비단계

- 기업체는 IPET 혹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게 기술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주관연구기관은 기술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IPET 혹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게 제출하여야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의 기술수요가 있는 기술과 식품산업과 관

련된 외부 기술에 대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확산 관리단계

- 성과확산 관리단계는 본격적인 기술전수 및 기술료 납부, 기술전수 보고서 작성 등의 프로세스를 거침.
- 성과확산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기술을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과 수요하고자 하는 기업의 연결을 통하여 성과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IPET 혹은 식품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기술이전 및 행정적 지원을 실시함.
-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시 기술료는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IPET와 기업체간 협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IPET 혹은 식품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실시기업의 대표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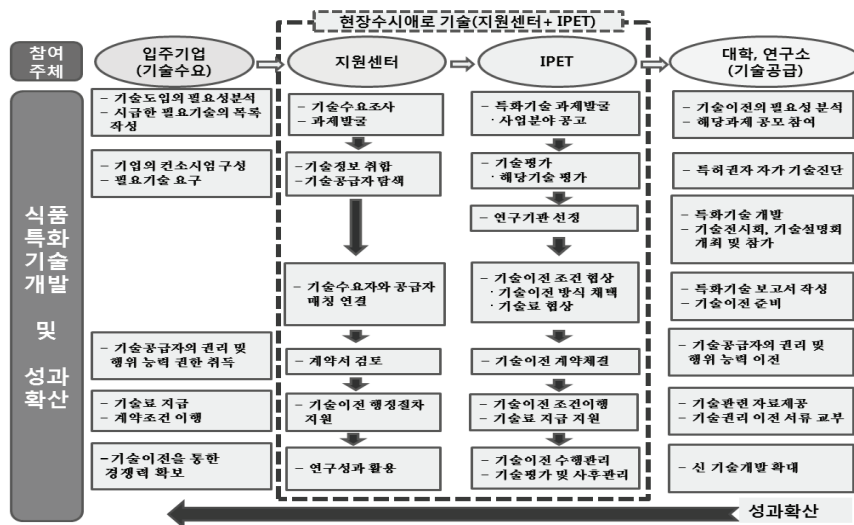
[그림 4-18] 성과확산 프로세스

〈참고〉 연구 성과확산 사례

- 일본의 NARO에서는 농식품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100% 국비로 진행함.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상업화 용도로 사용화 할 경우 성과물을 무료로 제공
- 일반기업의 연구수요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나 대부분 중앙정부가 요청하는 연구를 실시

9) 주요 성과확산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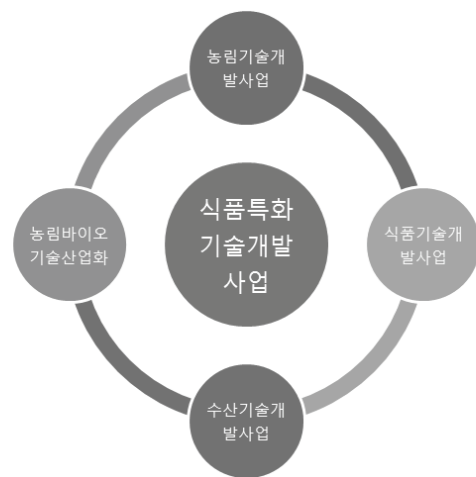
-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의 아이টে으로 선정된 6대 핵심 기술 중 IPET 2017년 농식품 가공·유통 기술 4대 핵심기술의 성과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4대 핵심기술을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계획」 용역과제에서 선별한 전략품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한 성과확산이 어려움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성과확산에 필요한 기술에 집중하여 개발지원을 하여야 함.
 - 4대 핵심기술은 농식품가공 기술, 건강식품 개발기술, 전통식품개발기술, 식품 신 유통기술 임.
 - 농식품가공 기술은 일반식품(음료류, 과자류, 곡물가공품, 유가공 식품), 수출 전략형 농식품 개발 기술 및 비열처리 가공기술/미래형 가공기술에 대한 허브역할을 하도록 하는 가공기술임.
 - 건강기능식품 개발기술에는 유용성분의 안정성 및 생체 이용율을 증진시키는 기술, 체형화 기술 등이 핵심요소기술로 포함되어 있으며 R&D전략 품목인 기능성 식품과 기능성 소재 및 첨가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임.
 - 전통식품 개발기술은 저염식품 개발을 위한 최적발효조건 확립, 전통식품유래 유용물질 생산유수 균주 서발 및 개량 기술 등 핵심요소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한식 전략 품목인 주류(전통주), 장류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임.
 - 식품 신 유통기술에는 수확 후 생리활성 변화 제어기술, 위해물질 신속 진단/검지/계측기술 등이 핵심요소기술로 꼽히고 있음.



[그림 4-19] 식품특화기술개발 매뉴얼

〈참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추진 사업내용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추진하는 기술개발 사업들은 농림기술개발사업, 식품기술개발사업, 수산기술개발사업,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임.
- 농림기술개발사업은 산업화·실용화 위주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력을 성장 동력원으로 하는 농식품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정부의 농식품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R&D사업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실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임.
 - 농림기술개발사업은 먼저 중장기 기술개발방향을 설정, 동향분석,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과제를 발굴한 후, 인터넷 혹은 신문을 통해 공고 및 홍보를 함. 그 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전문가 평가를, 농수산식품부에서 정책부합성평가를 통한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한 후 중간보고, 최종평가, 연구성과활용평가의 순으로 사업이 진행됨.
- 식품기술개발사업은 첨단 복합 기술에 의한 세계 일류 식품산업 육성, 한식세계화를 위한 세계 일류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국민에게 신뢰 받는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개발사업 임.
 - 식품기술개발사업의 업무추진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업무흐름과 같음.
- 수산기술개발사업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독자적인 신기술개발 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기업 육성과 첨단 수산기술 개발을 통한 수산부문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증대 및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임.
 - 수산기술개발사업은 수산식품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및 개발과 현장에서 직접 활용가능한 친환경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급히 개발해야 하는 과제는 기획과제로, 수산 관련 첨단 기술 등은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토록하는 응모형 과제로 이루어짐.
-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는 생명공학을 활용한 농림분야 신성장동력원 창출을 위하여 바이오기술의 사업화 연구를 지원하고, 농림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이를 통한 농가의 신소득원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임.
 -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는 단기간 내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연간 최고 20억원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추진 사업]

지, 3년 이내에 지원을 하며, 먼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 후 사업공고 및 과제접수를 함, 그 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를 서면, 공개, 현장 실시 후 선정심의회에서 선정함.

나. 식품인적자원 개발사업 방안

1) 식품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 국가 전체적인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식품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
- 전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른 시대조류에 대응하고 국내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식품 인력의 육성이 필요함.
-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맞춤형 식품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함.
- 식품 분야에 필요한 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식품산업 및 기업의 안정적 발전과 성과확산을 위한 인력이 필요함.

2) 식품인적자원개발 추진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력수요 조사를 수시로 시행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식품인력 양성계획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수행함.
- 식품인력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문 인력양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전문 인력양성은 전문 기능인력과 연구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또한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의 임직원 교육 등 기존 기업들 내부에서의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인력개발사업의 방향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교육, 외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통한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식품인력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투자 및 교육이 필요한 정규교육과정인 학위과정(전문 인력양성)과 단기적이고 비상시적인 비정규교육과정인 비학위과정(입주기업 내부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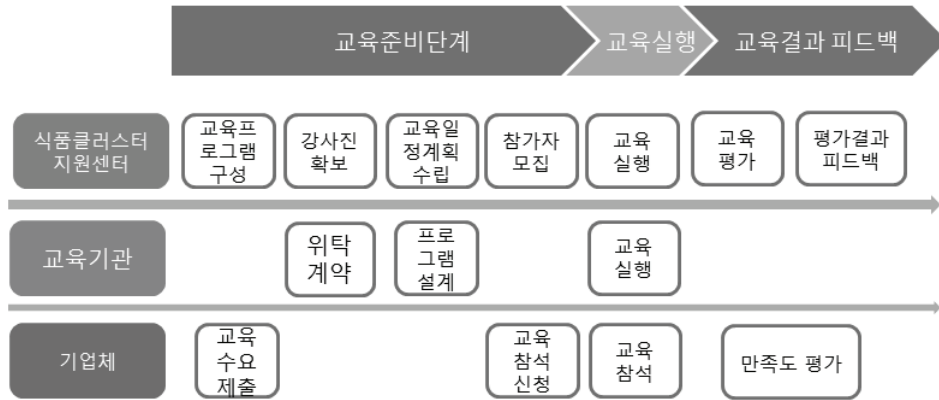


[그림 4-20] 인적개발사업 구분

■ 지원센터 독자적인 인력개발 사업 및 업무프로세스

-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내부교육을 실시함.
- 지원센터 내의 교육장 및 연구 실습실을 준비하고 기능인력과 연구인력, 입주기업의 내부 교육을 통한 인력개발 사업을 수행함.
- 인력개발을 위한 강사POOL을 조직하고 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
- 지원센터의 독자적인 인력개발 사업 및 업무는 교육준비단계, 교육실행 단계, 교육결과 피드백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교육준비단계는 인력개발사업의 준비단계로서, 세부단계로 교육프로그램구성, 강사진 확보 및 구성, 교육일정 수립, 교육 참가자 모집 및 선정의 세부단계로 나누어 짐.
 - 교육프로그램 구성단계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분야 별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임.
 - 강사진 확보 및 구성단계는 외부 교육업체/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강사 POOL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전문 강사진을 확보하고, 강사의 경험, 학력 등을 평가하여 해당 강사 혹은 기관과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임.
 - 교육일정 수립단계는 각 교육업체/대학/연구소에서 설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취합하여 연간 교육일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임.
 - 교육 참가자 모집 및 선정단계는 관련분야 기업체 대상 교육 참가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프로그램별 적정인력을 감안하여 최종 교육 참가자를 확정 및 통보하는 단계임.
- 교육실행 단계는 강의장, 강의자료, 강의 자재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지원을 실시하는 단계임.

- 교육결과 피드백 단계는 교육평가 및 평가결과 피드백의 세부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교육평가단계는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강사의 교육과정 구성 능력 및 준비/진행 역량을 평가하여 기록하는 단계이며, 평가결과 피드백단계는 강사 평가결과를 수집하며, 강사의 소속기관에 평가결과를 피드백하여 추 후 교육준비 시 이를 반영함.



[그림 4-21] 주체별 인적자원개발 업무 프로세스

- 독자적인 인력개발 사업 수행은 인력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함.
- 기업내부 교육의 경우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기술수요에 대한 정보제공이 용이함.
- 특히 연구인력 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결과의 특허화 및 사업화가 용이함.
- 지원센터 독자적인 인력개발 사업 진행의 경우 학위과정 운영이 어렵고 전문화된 강사 POOL 조직에 따른 비용,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인력개발 사업에 의한 기능직 인력과 연구직 인력의 고용촉진이 외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교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개발 사업 수행의 결과보다 미흡할 가능성이 높음
- 공동연구 관리 및 운영이 제대로 정착될 가능성이 낮음.

■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개발 사업

- 식품인력개발사업은 지원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교육기관(학교, 대학교, 교육전문기관), 기업, 연구소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실행함.
- 기능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참여 기업체 및 학교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을 함.
- 교육기관(학교/대학교, 교육전문기관)에서는 담당교수를 선정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
-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학위 및 교육 수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수료생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원센터에서는 공동연구 추진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연구 장소 제공 및 기자재 구입에 대해 지원함.
- 교육기관(학교/대학교, 교육전문기관)에서는 대학/대학원 내 연구인력 파견 및 인력양성 공동연구 그룹의 관리 및 운영을 함.

〈참고〉 전북지역 식품산업 관련대학 및 학과 현황(4년제 기준)

학교	개설학과		정원	비고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40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전공	35	
우석대	식품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40	개편
		동물자원식품학과	30	신설
		외식산업조리학과	45	개편
		식품영양학과	40	개편
		식품비즈니스경영학과	N/A	경영행정문헌대학원과정
원광대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환경학과	40	개편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전공	80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35	
		동물소재공학과	30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33	
	환경생명자원대학 (익산캠퍼스)	바이오식품공학과	40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생명자원유통경제학과	30	신설, 식품유통경제 분야
		외식산업학과	50	
		전통음식문화전공	52	
	대체의학대학	외식산업경영학과	N/A	특수대학원 과정
		건강기능식품전공	40	개편

자료 : 식품전문인력 양성체계 수립, 현대경제연구소, 2009.

- 기업 및 연구소에서는 기술 수요에 관한 정보제공을 하고 연구자 및 기술자를 파견하여 질 높은 연구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참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개발 사업의 진행은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한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성과가 높아질 수 있음.
-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질 높은 인력양성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각 기관의 참여를 통하여 양성된 인력임에 따라 고용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음.
- 지원센터의 경우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확보 및 운영이 가능함.
- 식품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표 4-11〉 식품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

구 분	전문 인력양성(정규교육과정 - 학위과정)		입주기업 내부교육 (비정규교육과정 - 비학위과정)
	기능 인력양성	연구인력 양성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체 및 학교선정 • 전반적인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 추진사업 전반관리 • 연구 장소 제공 및 기자재 구입 지원 • 연구결과의 특허화 및 사업화 • 발굴인력 고용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참여 대학 선정 • 교육참가자 모집 • 교육담당자 평가
교육기관 (학교/ 대학교, 교육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교수 선정 •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학위 및 교육수료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대학원 내 연구인력 파견 및 인력양성 • 공동연구 그룹의 관리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 설계 • 교육실행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요 정보 제공 • 교육수료생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수요에 관한 정보제공 • 연구자 및 기술자 파견 • 참여인력 채용을 통한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수요에 관한 정보제공 • 교육참석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파견 • 공동연구 그룹의 관리 및 운영 	

■ 인력개발 사업방안들의 장·단점 비교

- 지원센터 독자적인 인력개발 사업 수행은 인력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고 기술수요에 대한 정보제공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연구인력 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결과의 특허화 및 사업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지원센터 독자적인 인력개발 사업 진행의 단점은 학위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전문화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인력개발 사업에 의한 기능직 인력과 연구직 인력의 고용촉진이 외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교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개발 사업 수행의 결과보다 미흡할 가능성이 높음.
-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개발 사업 운영의 장점으로는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이 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고 교육을 맡을 강사들의 섭외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통하여 양성된 인력들의 고용촉진이 기업의 참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질 높은 기업내부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한 성과확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한편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개발 사업의 단점으로는 어느 한 기관에서 맡은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력개발 사업 수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
- 지원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 및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인력 개발사업의 수행은 어렵게 됨.
- 네트워크 된 각 기관들이 서로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수행이 어려워 짐.

〈표 4-12〉 식품인적자원 개발 방안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지원센터 독자적인 인적개발 사업수행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개발 사업수행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진행 가능 • 기술수요에 대한 정보제공 용이 • 연구인력 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결과의 특허화 및 사업화가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 가능 •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용이 • 강사들 섭외용이 • 발굴인력 고용촉진 • 성과확산에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과정 운영이 어려움 • 전문화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 고용촉진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한 기관의 관리소홀로 전체적인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지원센터의 중심적 역할 및 계획적인 예산 확보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 짐 • 각 기관들의 신뢰성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 짐

3) 단기적 사업을 통한 식품인력 양성

■ 입주기업 임·직원 교육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정규교육과정)

- 맞춤형 인력개발 수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단기적이고 비상설적인 인력양성 사업이 필요함.
 - 입주기업의 임·직원 교육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기업의 인력수요에 대한 맞춤형 인력개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최고 경영자 과정

-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원활한 협업, 경영 노하우 및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경영자들의 현실 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과정임.
 -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사례 연구, 국내외 우수 기업을 탐방을 통하여 기업가 정신 및 경영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은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직무별 특화교육

- 식품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별 특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전문성 강화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능·생산 인력, R&D 인력, 판매·지원인력의 직무별 차별화된 교육을 운영함.
- 기능/생산 인력 과정 및 R&D 인력과정
 - 식품 생산기술 및 가공공정, 식품 품질관리 및 품질제고 방안, 식품 안정성에 대한 재교육을 통하여 인력들의 능력 업그레이드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함.
 - 신 성장 분야 및 유망 기술 분야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R&D 기획 및 성과물의 관리와 사업화가 연계될 수 있는 직무별 특화교육을 운영함.
- 판매·지원 인력과정
 - 식품 마케팅/영업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국내외 우수사례 및 노하우 공유하는 방향으로 과정을 운영하며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자체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경영 일반교육

- 기업 경영 지식 제고 및 업무 수행 역량 향상을 위한 경영 일반 교육을 실시함.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생산관리, 품질관리, 재무/회계, 경영정보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실습 및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경영 일반교육인 식품아카데미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지역대학이 주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형태로 비상설적으로 운영되며, 운영주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역대학 참여기관은 지역대학 및 연구소임.
- 식품아카데미는 생산·기능인력 양성과정과 영업·관리인력 양성 및 기타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¹³⁾
 - 기타과정은 식품실무전문인력 양성과정, 식품CEO전문과정, 건강기능식품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생산·기능인력 양성과정의 주요 교육내용은 식품생산기술 및 가공공정, 기계공작법, 생산관리, 포장·물류관리, 품질, 식품안전 등임.
 - 영업·관리인력 양성의 주요 교육내용은 식품일반이해, 경영전략, 리더십, 영업, 해외 비즈니스, 원가구매, 생산관리, 재무 회계, IT등임.

〈표 4-13〉 단기 인력양성 프로그램

	최고경영자과정	직무별 특화교육	경영일반교육
커리큘럼	신상품개발, R&D 중요성, 유통 및 마케팅, CEO 리더십, 인사조직, 중소기업지원정책, 벤처마킹	식품실무전문인력 : 식품산업정책, 시장동향, 식품가공 기초기술, 기능성평가기법, 성분분석, 유통 및 마케팅, 안전성, 식품관련 통계기법 생산/기능인력 : 식품생산 기술 및 가공공정, 기계공작법, 생산관리, 포장/물류관리, 품질,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전문인력 : 기능성식품개발전략, 표준화, 안전성, 기능성, 임상실습사례, 마케팅, 개별인정서류작성실습	식품일반이해, 경영전략, 해외 비즈니스, 원가구매, 생산관리, 재무, 회계 IT
기대 효과	정규교육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각종 단기 생산/기능 프로그램 제공		

13) 한국생산성본부, 「2009 식품아카데미커리큘럼」, 한국농림협회 교육프로그램, 200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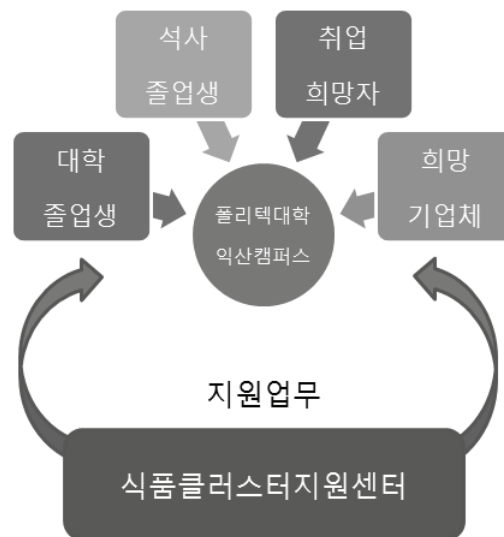
4) 중·장기적 사업을 통한 식품인력 양성

■ 식품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한 정규교육과정)

- 국가 식품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클러스터 내 식품기업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식품 전문 기능인력 양성

-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능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과 기업이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기능 인력이 양성 될 수 있도록 함.
 - 학위 연계 교육훈련, 학점 인정 등 우수 기능 인력의 중소기업 근무 유입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강화함.
 -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개설을 통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취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기업의 근무인력을 전문대학 관련학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 전공과 연계된 현장연수 시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그림 4-22] 한국폴리텍대학을 통한 식품 전문 기능인력 양성 프로세스 예

〈참고〉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식품 전문 기능인력 양성 사업 예

- 식품전문 기능인력양성 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 식품전공과정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한국폴리텍대학 식품전공과정은 운영주체가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이며, 참여기관은 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지역대학,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임.
- 한국폴리텍대학 식품전공과정은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에 식품관련 학과를 설치 및 운영하는 형태임.
 - 교육대상은 고교졸업생, 취업희망자, 식품기업 생산/기능인력이며, 교육내용은 산업학사 학위과정(2년), 기능사 취득 과정(1년/6개월),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과정임.
 - 산업학사 학위과정의 주요과목 중 교양기초과목으로 식품학개론, 전공영어실무, 컴퓨터기초, 공학기초, 공업경영, 봉사활동 등이며, 전공이론과목은 생명과학, 식품제조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기능성식품학, 식품화학, 미생물학, 식품소재학, 식품안전관리, 식품마케팅, 기능성식품학 등임. 전공실습과목은 기초조작실습, 식품제조저장실습, 식품안전위생실습, 식품가공실습, 프로젝트 실습, 현장실습 등임¹⁴⁾.
 - 식품가공기능사과정의 주요과목은 교양기초과목으로 직업과 사회, 건강과 능력개발, 컴퓨터 등이며, 전공이론과목으로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 및 기계 등이며, 전공실습과목은 식품가공 실습, 프로젝트 실습임.
 -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과정은 단기과정 위주로 운영되며 주요과목은 식품생산기술 및 가공공정, 식품품질관리, 식품안전관리, 포장/물류임.

■ 연구 인력 양성

- 산·학·연 공동 연구체계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고급 연구 인력 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수요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산·학·연 공동 연구체계 강화를 통한 연구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공동 연구체계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관련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간의 공동연구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장소 제공 및 각종 인프라 지원, 연구원의 배치 및 발굴을 통하여 인력을 양성 하고 양성된 연구인력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기업 및 연구소의 연구 인력 수요조사를 통한 기능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4)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커리큘럼 일부참고

- 지역 내 대학교(대학원)와 기업이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연구 인력이 양성되고 학점 연계 공동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하여 우수 연구 인력의 기업유입이 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연구 과제를 통하여 연구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함.

〈참고〉 일본의 NARO에서는 전문연구인력양성 사업 예

- 일본의 NARO에서는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해 연구과제 수행 시 기업 및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 식품대학원 및 학연연구과정을 통한 인력양성

- 식품대학원은 기존 대학에 특수대학원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며, 운영주체는 식품대학원 및 설치대학, 참여기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역연구소, 지역대학 임¹⁵⁾.
- 교육과정은 석사학위 과정과 특별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석사학위 과정의 주요 과목 중 식품경영 기초과목은 식품학연구, 식품개발론, 식품관계법규, 식품규격론, 식품위생학, 사례연구, 식품전문가특강이며, 식품영업 및 마케팅 과목은 식품마케팅, 식품유통론, 식품소비경제론임. 식품산업 관리 과목은 식품경영학, 식품경영전략론, 식품산업조직론, 인적자원론, 식품산업재무관리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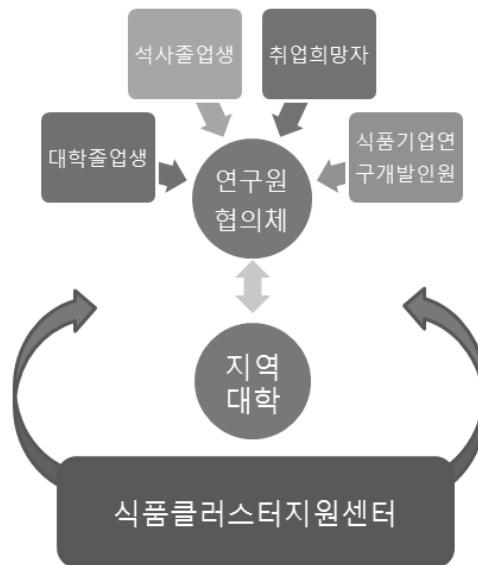
[그림 4-23] 식품대학원 인력양성 방안

- 식품 학연협동연구과정은 한국식품연구원 및 농진청 산하 4개 연구소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학대학학위 및 식품연구기관 학위과정 수수료등을 수여하는 운영형태이며, 운영

15) 중앙대학교의약식품대학원(2009 식품아카데미), 전북대학교식품공학과, 고려대학교 식품공학부 및 식품자원경제학과 커리큘럼, 참고

주체는 지역연구소, 지역대학, 참여기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임.

- 교육대상은 학·석사 졸업생, 취업희망자, 식품기업 연구·개발인력이며, 석사·박사 학위 과정이 교육내용임.
- 학연협동연구과정은 연구소에서 모집 및 추천서를 발급하면 협정대학과 학연운영위원회가 입학사정을 실시하며, 협정대학은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실시함.
 - 연구소와 협정대학은 공동으로 학위논문을 공동지도하며, 협정대학은 기본교과목강의, 논문자격시험을 실시, 연구소는 학생들에게 연구과제 참여를 제공하고, 실험·실습을 지도 함.
 - 졸업 시 협정대학에서는 협정대학 명의의 석사·박사학위 수여를 하며, 연구소에서는 학위과정 이수증을 수여함.
 - 교육과정은 협정대학과 연구소로 분류하여 볼 수 있으며, 협정대학에서는 실험계획법, 식품공학통계, 고급식품화학, 발효·대사공학, 효소·단백질공학, 식품미생물대사공학, 식품분자미생물학, 식품생물공정공학, 식품포장학, 식품풍미화학, 식품생물계측공학, 식품안정성학, 식품분석학, 기능성소재와 생리학, 식품구조유전체학, 식품효소학, 유 지식품학, 식품위생미생물학 식품공학관련 기초 실험의 교과목으로 구성됨.



[그림 4-24] 식품 학연협동연구과정 업무 개념

〈표 4-14〉 중·장기 인력양성 프로그램

종류	기능인력	식품대학원	학연합동과정
커리큘럼	1학년 : 식품학개론, 전공영어실무, 컴퓨터기초, 공학기초, 공업경영, 봉사활동 등	식품경영 : 식품학연구, 식품개발론, 식품관계법규, 식품규격론, 식품위생학, 사례연구, 식품전문기특강,	대학과정 : 실험계획법, 식품공학통계, 고급식품화학, 발효·대사공학, 효소·단백질공학,
	2학년 : 전공이론과목은 생명과학, 식품제조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기능성식품학, 식품화학, 미생물학, 식품소재학, 식품안전관리, 식품마케팅, 기능성식품학 전공실습과목 : 기초조작실습, 식품제조저장실습, 식품안전위생실습, 식품가공실습, 프로젝트 실습, 현장실습 등 식품가공기능사과정 : 직업과 사회, 건강과 능력개발, 컴퓨터,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 및 기계 등이며, 식가공 실습, 프로젝트 실습	식품영업 및 마케팅 : 식품마케팅, 식품유통론, 식품소비경제론 식품산업 관리 : 식품경영학, 식품경영전략론, 식품산업조직론, 인적자원론, 식품산업재무관리	식품미생물대사공학, 식품분자미생물학, 식품생물공정공학, 식품포장학, 식품풍미화학, 식품생물계측공학, 식품안정성학, 식품분석학, 기능성소재와 생리학, 식품구조유전체학, 식품효소학, 유지식품학, 식품위생미생물학 식품공학관련 기초 실험
	기대 효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화 된 생산/기능인력 양성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대기업 및 일부 대형 중소기업에 공급할 식품범용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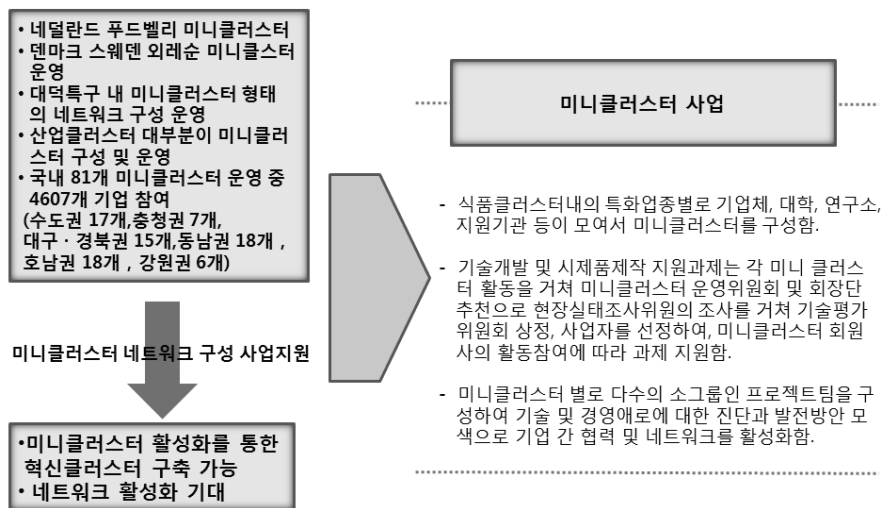
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위한 네트워킹 방안

- 네트워킹은 기업 간의 분업에 의한 협력의 지속적 관계를 의미함.
 - 거래관계에서 기업조직 내와 기업 간 구조가 혼합된 중간적 유형의 거래관계는 물론 기업 활동과 관련된 여타의 모든 기업과의 관계유형을 포괄함.
- 클러스터의 형성이론에 있어서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 제품개발을 위한 협력관계, 정보교환 및 공동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연구·개발·생산의 통합, 이종 산업간 협력 등의 혁신네트워크가 클러스터의 혁신능력을 지속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클러스터 내에서 기업 간 네트워크가 정착하는 것이 클러스터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각 클러스터 사례에서 알 수 있음.

1) 미니클러스터

- 식품클러스터안의 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이룸.
 - 식품클러스터내의 특화업종별로 기업체,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모여서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함.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원과제는 각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거쳐 미니클러스터 운영위원회 및 회장단 추천으로 현장실태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기술평가위원회 상정, 사업자를 선정하여,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의 활동참여에 따라 과제 지원함.
 - 미니클러스터별로 다수의 소그룹인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기술 및 경영애로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으로 기업 간 협력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함.



[그림 4-25] 미니클러스터 사업 개념도

■ 식품클러스터 미니클러스터의 분류

- 식품클러스터 내 미니클러스터의 분류는 2가지 방향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생산 품목별로 분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푸드시스템에서의 경로별로 분류하는 방법임.
 - 아직 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보다 입주기업이 확정된 후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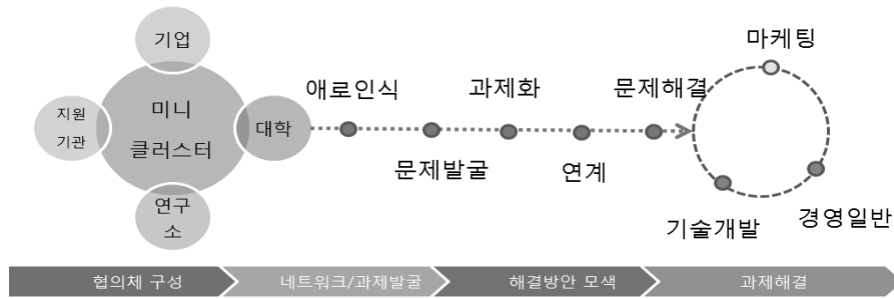
- 첫 번째 생산품목별로 분류하여 대학과정 : 실험계획법, 식품공학통계, 고급식품화학, 발효·대사공학, 효소·단백질공학, 구성하는 방법은 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체들의 주요 생산품목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 장류, 김치류, 음료류,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임.
- 첫 번째 방법은 식품산업의 특성 상 같은 가공식품이더라도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생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니클러스터 구성을 세세히 품목별로 나누어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생산단계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기술수요조사, 애로사항요구 등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였을 때 산출되는 결과물이 보다 현실적이고 사업화가 용이할 수 있으나 분류된 품목의 입주기업의 수가 적을 때 미니클러스터 구성에 난항을 겪을 수 있음.
- 두 번째 방법은 푸드시스템 상의 단계별로 미니클러스터를 구분하는 것임.
- 원료 및 원료 1차 가공, 식품제조, 식품유통 등으로 구성하는 방법임.
- 이러한 방법은 식품제조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유통분야 등 관련 산업분야를 포함하여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음.
- 식품산업 및 관련산업 전체의 네트워킹이 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푸드시스템 내에서 역할 및 기능은 같으나 가공방법이나 제조, 유통 방법이 다를 경우 미니클러스터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 미니클러스터 구성의 이상적인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혼합형으로 푸드시스템에서의 단계에서 각 품목별로 분류하여 구성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미니클러스터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미니클러스터 업무추진 프로세스

- 미니클러스터의 핵심 기능은 산·학·연간의 친목 네트워킹 및 미니클러스터를 통한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임.
- 미니클러스터별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니클러스터 운영방안 수립 및 사업 수행 대책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 그룹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전문가 POOL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함.
- 운영위원회는 각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자발적 토의 및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은 미니클러스터 활동의 주된 유형임.
- 정기모임은 전문가 초청 세미나, 워크숍 등의 형태로 진행되어 미니클러스터 회원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을 지원함.
- 미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전문가 POOL은 기술, 자금, 금융, 마케팅, 법무, 회계, 일

반경영 등 다방면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로 구성하며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함.

- 지원센터는 구성된 전문가 POOL 활용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 사업지원단을 구성하고, 미니클러스터 참여 및 과제도출을 지원해야함.
- 또한 미니클러스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미니클러스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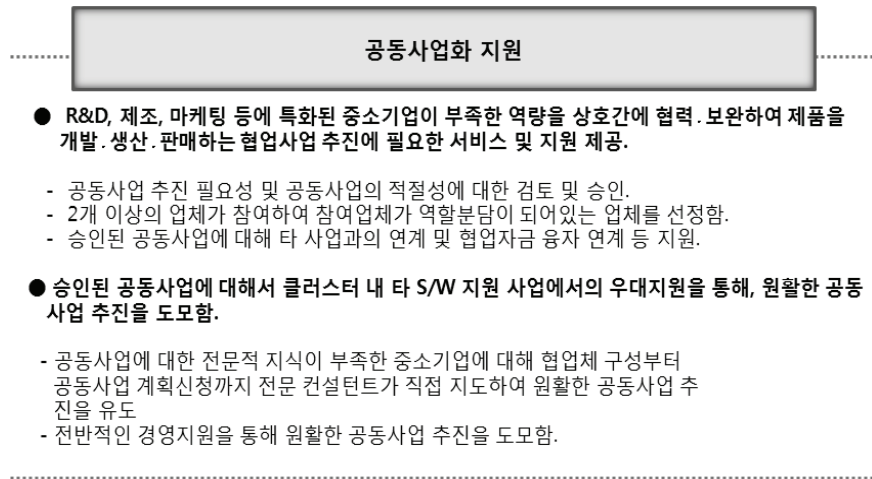
[그림 4-26] 미니클러스터 업무프로세스

〈참고〉 미니클러스터 사례

- 구미단지의 미니클러스터는 특화업종 9개로 구성되었으며 2개의 SUB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6개의 미니클러스터로 통합 진행 중)
 - 모바일, 전자부품금형, 에너지디스플레이, E&H, IT융복합소재, IT장비
 - 총회원수는 711명이며 기업체 470명, 대학 184명, 연구소 20명, 지원기관 37명임.
- 미니클러스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기위해 총 17개 분야의 세부주제로 나눌 수 있는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진행.
 - 회의주제는 1) 미니클러스터 회장단 회의, 2) 미니클러스터 총무단 회의, 3) 클러스터 혁신마당 개최, 5) 정기포럼, 6)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방문/교류, 7) 혁신클러스터 전략 워크숍, 8) 혁신클러스터 전문가 초청 조찬포럼, 9) 혁신클러스터 전문가풀 포럼 개최, 10) 지역대학 산학협력단장 초청 오찬 간담회, 11)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강연회 12)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교류협력행사, 13) IT융합 섬유 미니클러스터 구성 발기인 회의, 14) 구미혁신클러스터 송년포럼, 15)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신제품 IR 설명회, 16) 기술평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 17) 미니클러스터 통합운영
- 과제발굴 시스템 구축
 -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거쳐 사업자 선정 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원을 실시함.

2) 공동사업화 지원

-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공동사업체에 대해 타 사업과의 연계 및 공동사업자금 융자 연계 등 지원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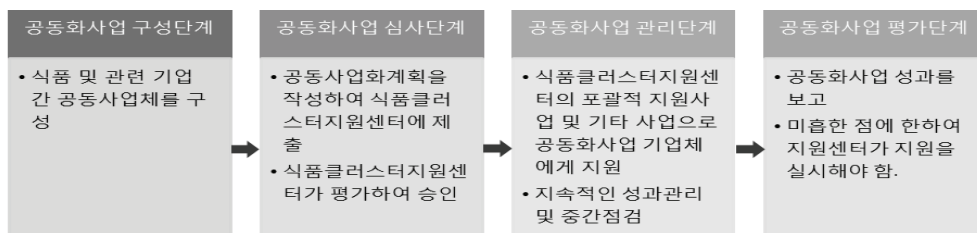
[그림 4-27] 공동사업화 지원사업의 개념

■ 공동사업화 사업의 기능 및 목적

- 공동사업체에 대해서 클러스터 내 타 S/W 지원 사업에서의 우대지원을 통해, 원활한 공동사업 추진을 도모함.
 - 공동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공동사업체 구성부터 공동사업 계획신청까지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지도하여 원활한 공동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사업화 타당성검토, 공동사업화 계약체결, 회계 자문, 공동사업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동사업체 중 R&D 부문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생산, 마케팅 등의 전문기업과 상호 협력 및 보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동사업체의 제품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품질안전 인증 컨설팅, 원료·식품 성분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공동사업체 제품의 브랜드 개발, 브랜드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사업화 사업의 업무 프로세스

- 공동사업화 사업의 업무단계는 크게 공동사업화 계획 및 공동사업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공동사업화 계획 업무단계의 세부단계는 기업 간 공동사업화 구성단계 공동사업계획 심사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공동사업화 구성단계는 식품관련 기업이 식품중소기업 간, 식품 및 관련 기업 간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임.
 - 공동사업화 계획 심사단계는 공동사업화 구성단계에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사업화 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제출을 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평가하여 승인하는 단계임.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사업화계획을 심사하여하며, 평가위원회는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
 - 기업체는 공동사업화 사업계획 신청 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2개 이상의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업체간 기능별 역할분담이 되어있어야 하며, 참여업체간의 계약이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형태의 계약이어야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공동사업화 계획 평가 시 공동 사업 추진 필요성과 구성의 적절성, 공동 사업의 안전성, 실현가능성, 추진능력 등을 평가해야 함.
 - 공동사업 지원 업무단계는 공동 사업관리단계, 평가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공동사업화 관리단계는 공동사업화 진행 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포괄적 지원 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공동사업화 기업체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중간점검으로 공동사업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단계임.
 - 공동사업화 지원 사업으로는 제휴, 규약의 작성, 컨설턴트 연계, 마케팅 조사 등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단계는 공동사업화 성과를 보고 및 평가하는 단계로서 평가 후 미흡한 점에 한하여 지원센터가 지원을 실시해야 함.



[그림 4-28] 공동사업화 업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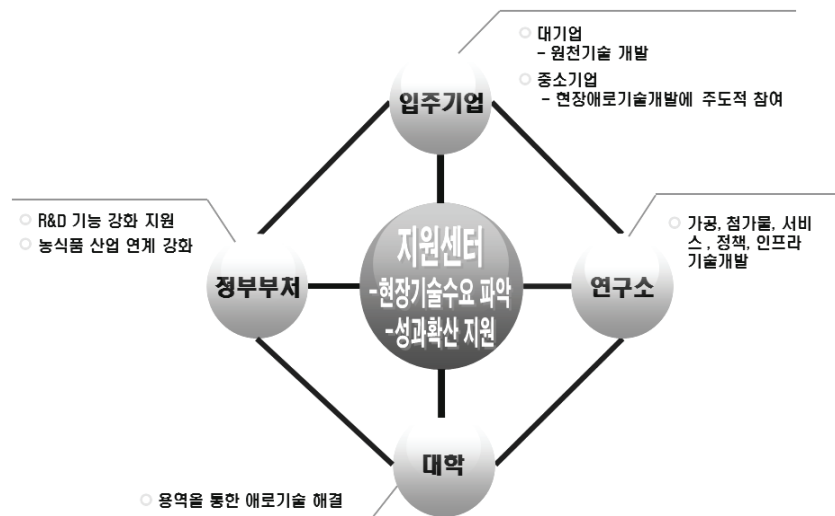
- 공동사업화 지원은 클러스터 내 타 사업과 연계지원을 실시해야하며, 주된 연계사업은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 포괄적지원 사업들임.
 - 포괄적지원사업 중 창업기업 지원사업과 같이 실시해야 하며, 특히 공동화사업 구성부터 공동화사업 계획신청까지 산·학·연 전문가POOL에서 직접 지도하여 원활한 공동화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센터는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함.
 -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은 승인된 공동화사업체에게 식품특화기술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는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해야함.
- 공동화 사업의 예
 -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장 및 창고설치 등 협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협동화사업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유통산업관련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벤처기업을 영위하고 일정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토지구입비, 건축비, 원자재구매 및 운전자금 등을 대출 지원함.
 - 협동화자금의 지원은 자금선정위원회에서 실천계획 승인 후, 자금을 지원하며, 추진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은행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함.
 - 일본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 및 기능성 평가 지원(사업화, 시장화 지원, 제휴 체 구축 지원 사업 등) 사업이 공동사업화 지원 사업의 일부를 진행한 예라 할 수 있음.

3) 효율적인 네트워킹 사업방안 제시

- 클러스터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며 지원센터의 입주기업들을 위한 효율적인 네트워킹 방안은 입주기업들의 특화업종별 별도의 미니클러스터 사업 지원과 함께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함.
- 효율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에 참여한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 각 참여주체별 역할에 따라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음.
-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산·관·학·연 주체별 역할¹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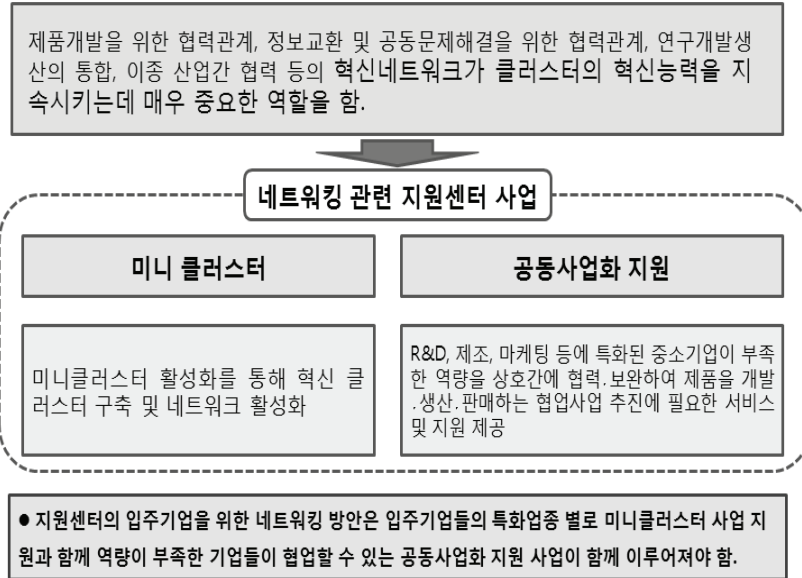
16)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 R&D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2008, 참조

- **입주기업**은 미니클러스터 등의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연구과제화 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함.
- 대기업은 식품원천기반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식품가공분야 현장 애로기술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여야 함.
- **정부부처**는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R&D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농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 **대학**은 식품분야의 기초연구 수행 및 우수 연구자를 양성하고, 우수 연구팀 구성을 통한 연구거점을 육성해야함.
- 또한 연구용역을 통한 식품가공기술 등 중소기업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힘써야 함.
- **연구소**는 식품가공(식품 공정, 전통·발효식품, 포장과 식품기계)과 식품첨가물, 식품유통·서비스 분야(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정책과 인프라(식품정책, 식품영양관리) 등에 대한 원천·기반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함.
- **지원센터**는 현장의 기술수요를 수시로 파악하고 기업과 연결을 위하여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정보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함.
-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성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자료 : 「식품산업 R&D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농림수산물부, 2008 참조

[그림 4-29] 네트워킹 시 주체별 역할과 업무



[그림 4-30] 효율적인 네트워킹 사업방안

라.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포괄적 지원 방안

- 국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입주한 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함.
 - 벤처기업이 신제품개발을 통한 신산업발전과 기술혁신을 추구하여 클러스터 내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지역의 생동적인 산업발전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공헌하고 있음.
 - 따라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첨단 벤처기업의 창업이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데 크게 공헌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음.
- 식품클러스터 내의 입주기업에 포괄적 지원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기업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으며 이는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업 경쟁력이 상승한다면 클러스터의 홍보효과도 더 불어 커질 수 있음.
 -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 사업으로 기업유치에 제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진정한 국가 식품산업의 중추가 될 수 있음.

1) 창업인큐베이팅

-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식품창업경진대회, 식품기업 매칭서비스 사업, 창업기업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식품창업 경진대회

- 우수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자발적인 창업 촉진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식품창업 경진대회를 지원센터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게 창업에 필요한 경영 및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식품창업 경진대회는 식품과 관련된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식품관련 기술기반의 모든 분야가 응모분야이며 타 정부기관 입상작, 기 사업화 된 아이템, 표절작품, 전 대회 입상자는 참가제한을 둠.
-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센터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참가자들을 평가함.
 -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창업에 관련된 경영 지원, 행정지원 등을 제공함.



[그림 4-31] 식품창업 경진대회

■ 식품기업 매칭서비스

- 식품기업매칭서비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식품클러스터 내 기업과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임.
 - 창업기업의 매출을 신장시키고 기존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파트너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매칭 서비스를 실시함.
 - 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로부터 정기적인 수요조사 및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하여 거래처 수요를 파악 및 홈페이지 및 신문을 통하여 공고함.
 - 창업기업은 지원센터의 공고를 통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함.
 - 지원센터는 신청기업의 재무구조, 사업성, 상시고용인원, 등을 평가하여, 후보 군을 선정함.

- 수요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제시한 후보군 중 하나의 기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시 지원센터는 창업기업과 수요기업의 계약이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창업기업 지원사업

- 지원센터는 창업기업의 사업아이템의 사업성과 기술성, 시장성을 점검하고, 수정, 보완을 실시하도록 함.
 -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함.
 -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을 위해 동일한 분야에서 성공한 CEO나 창업컨설턴트 등을 활용한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함.
- 지원센터는 기술개발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술적 애로를 지원, 완성도를 높여 기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기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지원함.
-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향상과 성과 도출을 위해 PILOT PLANT 사용을 지원하며,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장비들은 전문 연구기관, 기업지원 유관기관, 타 대학기관과의 협조적 제휴를 통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함.
- 성과확산을 통한 창업을 위하여 기술거래기관(예: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이전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이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마케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함.
 - 시장개척지원, 문제해결 멘토지원, 브랜드개발지원, 홍보지원



[그림 4-32]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참고〉 벤처기업 창업지원 사례

- 고베 의료산업단지 클러스터에서는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에 중점을 두며 Local 중소기업 및 진출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함.
 -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연구소와 기업의 매칭 서비스
 - 인큐베이션시설에 각종 지원
 -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적절한 관리

2) 마케팅 지원

■ 시장 개척 지원

-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은 식품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식품기업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어야함.
- 운영 가능한 시장 개척 프로그램은 소매점 확보, 제휴마케팅,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구축, 식품박람회 및 컨벤션 개최 등이 있음.
 - 소매점 확보 사업은 주요 도시 내 대형 쇼핑몰 및 할인점에 개별 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상설 소매점을 운영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기업들에게 공동판매를 채널을 제공함.
 - 입점을 원하는 기업체에 한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평가 및 선정을 하여, 식품기업체에게 소비자 접점의 기회를 제공함.
 - 제휴마케팅사업은 신용카드, 통신, 유통 등의 대기업과의 제휴마케팅을 통한 개별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고객소식지 내 우수기업 및 제품을 소개하고,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임.
 -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사업은 공동 판매 웹사이트, 및 운영 콜센터를 통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원활한 구매를 돕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공동 판매 웹사이트·콜센터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해야 함.
 - 식품박람회 및 컨벤션 개최사업은 개별기업 제품을 판매,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및 컨벤션을 개최 및 참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 ATKERNEY에서 발표한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용역」에 의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참여 가능한 식품박람회 및 컨벤션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음.

〈표 4-15〉 참여 가능한 식품박람회 및 컨벤션

행사명	내용
기네스 북 관련 식품행사	북분자 먹기 대회 등 볼거리 제공하고 전북 음식산업을 적극 홍보
한-네덜란드 Food Valley 기능성식품 EXPO	네덜란드의 Food Valley와 연계하여 전북의 기능성 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엑스포 개최
한-덴마크/스웨덴 Oresund 기능성 식품 EXPO	덴마크/스웨덴의 Oresund과 연계하여 전북의 기능성 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엑스포 개최
한-중-일 미래식품기술포럼	세계적인 식품관련 융합기술 연구사례, 상용화 및 기능성 식품소재와 생산 기술 및 유통, 마케팅 방안 등을 논의
한-중-일 식품클러스터 교류회	한-중-일 식품 전문가, 하계,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운영방안, 새로운 R&D 발전방향, 교류 협력
한-미, 한-EU간 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컨벤션	향후 FTA가 체결될 EU와 FTA가 이미 체결된 미국의 식품 관련 기업/연구소 등과 함께 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컨벤션 개최
세계식품 클러스터 교류회	네덜란드 Food Valley, 덴마크/스웨덴의 Oresund 등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간 지식 공유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세계식품공학포럼	4년마다 개최되어 약 50개국의 2,000여명의 식품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식품공학에 대한 포럼
세계식품과학기술협회포럼	세계식품과학기술협회에서 개최하는 정례회의
식품테마파크 컨벤션	신기술, 신상품에 대한 컨벤션을 테마파크 형식으로 꾸며, 유관 기업/연구소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호응 및 참여 유발
세계식품CEO교류회	세계 식품기업의 경영변화와 FTA 등 국제 식품 무역환경 논의

자료 : ATKERNEY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용역」, 전라북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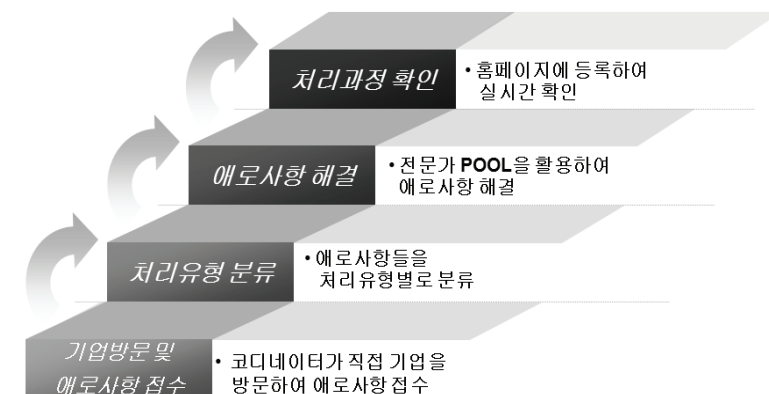
- 해외시장개척은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우수기술 습득, 해외바이어 발굴, 무역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및 발굴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회사 및 상품 해외 홍보를 통한 매출증대와 해외바이어 상담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제품개발 동향 및 해외정보 획득을 지원함.
 - 신흥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방문 및 상담회 개최를 지원하여 이를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시장 진출전략 수립에 기여함.
 - 주한 외교사절단을 이용하여 입주 업체와 해당 국가들과 매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 주한 외교사절단을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초청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소개 및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주한 외교사절단이 간접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대사로 활동함을 기대할 수 있음.

〈참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사례

- 구미산업단지클러스터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우수기술 습득, 해외바이어 발굴, 무역상담회 증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및 해외 홍보활동, 마케팅 연수단을 파견하여 해외시장 발굴하고 있음
- 2006년 모스크바 정보통신박람회, 러시아 IT연수단 파견, 동경 기계요소 기술 전, 스위스 바젤 과학기기 박람회, 미국마케팅 연수단 파견

■ 문제해결 멘토 지원

-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경영 애로사항을 위해 산업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POOL을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사업지원단에서 수요자 중심의 코디네이터제도를 도입하여, 통합형 지원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식품산업현장과 기업체의 불편을 종합 관리함.
- 사업지원단에서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사함. 그 후 사업지원단은 각 애로사항을 처리유형별로 분류하여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함.
- 애로사항의 분류는 자금, 인력, 기술, 마케팅, 경영, 입지, 지원시설, 기반시설, 기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문가 POOL 구성 시 분류별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
- 사업지원단은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기업체가 애로사항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해결 후 결과를 통보함.



[그림 4-33] 문제해결 멘토 지원 업무 프로세스

〈참고〉 입주기업 문제해결 멘토 지원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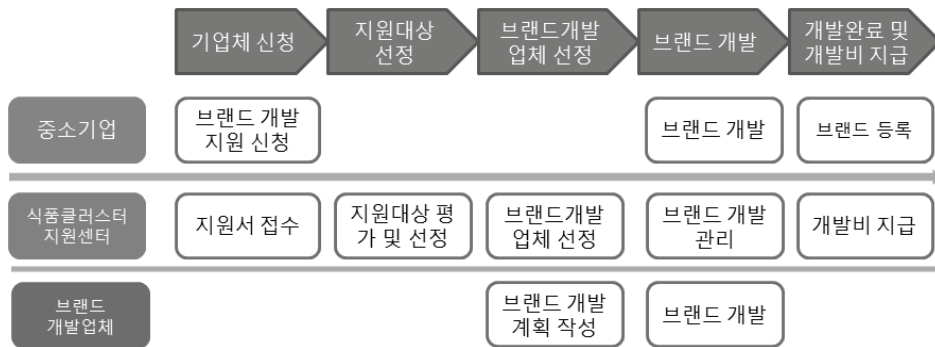
- 울산산업단지클러스터에서는 다양한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여 코디네이터제도를 운영
 - 울산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고급 전·현직 전문 기술인력, 선진기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연구·교수진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인력 풀을 구성
 - 수석코디네이터를 2명 등 기술분야, 150명, 경영분야 66명 등 인력풀을 구성하여 과제해결 분야 89건, 네트워크 활동 173건 등 정기적인 기업방문을 통한 기업과의 접촉 빈도를 높여 수시 컨설팅 채널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
- 지바식품클러스터의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지바현 산업진흥재단은 진흥재단 내 1명의 팀장과 산업진흥과에서 관리하는 5개의 클러스터에 각 각 1명의 코디네이터가 존재함.
 - 코디네이터는 각각 분야별 클러스터와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구성
(예로 식품클러스터 코디네이터는 기꼬망에서 영입)
 - 지바현이 재단법인에 출연하고 매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재단 내 코디네이터는 물론 클러스터 업무와 관련하여 지바현 산업진흥과와 적극 협력
 - 코디네이터는 산 학 관 연결, 공동연구 알선 및 연구 입찰 지원, 지바현 클러스터 정책 추진 및 협력을 하는 역할을 함.

■ 브랜드 개발 지원

- 글로벌 식품 시장 내 경쟁 심화 및 수요 양극화 현상에 따라 브랜드 및 마케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창업 초기 또는 신규 브랜드 출시 초기의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브랜드 포지셔닝을 위한 자원이 부족함.
 - 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의 홍보마케팅 전략이 필요로 함.
- 개별기업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의 목적은 창업 초기 또는 신규 브랜드 출시 초기 가용 마케팅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 개발된 브랜드의 전파, 제품의 판매처 확보를 위한 브랜드 및 제품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하며,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함.
- 개별기업 브랜드 개발지원은 먼저 개별기업이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브랜드 개발 지원신청을 하면,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기업체를 평가 및 선정을 하고, 브랜드 전문개발업체를 선정하여 브랜드 개발 업무를 위탁함.
 - 개별기업 브랜드 개발지원은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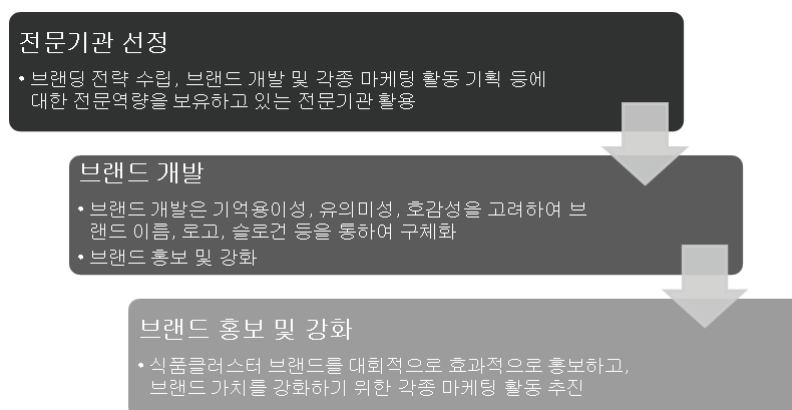
-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 업체를 평가해야하며, 평가 위원회는 기업체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운영해야함. 또한 선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해야 함.
 - 평가위원회는 지원 대상 기업체 선정 시 R&D 수준, 시장동향 및 제품 경쟁력과 같은 사업성, 부채비율 및 매출액 같은 재무구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경영진의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기타사항 등을 평가해야함.
 - 평가 시 R&D 수준은 클러스터 집중 육성 식품특화기술 영역 해당여부, 정부 및 주요 연구기관 R&D 지원 사업에서의 선정여부, 사업화 가능 시기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야함.
 - 평가위원회는 브랜드 전문 업체 선정 시 개발내용의 실현가능성, 참신성 및 차별성, 구체성 등에 대한 브랜드 개발계획의 명확성을 평가하여야 함.
 - 또한 일정의 적정성, 타당성 등 개발방법의 적정성, 과거 사업실적, 인적구성 현황 등의 개발수행 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 용역 산출내역의 적정성, 현실성 등의 개발비용의 합리성 등을 평가해야함.
 - 브랜드 전문 업체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각, 포장디자인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로 한함.
- 브랜드 개발 실시 후 브랜드 개발업체는 계약서, 소요경비 내역이 정리된 계산서, 결과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지원예산을 청구함.
-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개발비용 요청내역에서 개발 도중, 개발이 와해되거나 해체되는 경우, 기업체와 개발업체와의 담합 등 귀책사유로 개발비 지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불함.
- 개별기업은 최종 개발된 브랜드에 대해 자체부담으로 상표법에 의한 국내 상표등록을 실시함.



[그림 4-34] 주체별 개별기업 브랜드 개발사업 업무 프로세스

■ 식품클러스터 통합브랜드 구축

- 성공적인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브랜드 개발 및 통합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홍보 활동 추진이 필요함.
- 통합브랜드 개발 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특징과 장점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으며,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타 식품클러스터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하여 식품클러스터가 초기에 활성화 될 수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통합브랜드 구축 및 홍보 사업은 전문기관 선정, 실제 브랜드 개발, 홍보 단계의 업무프로세스로 진행 됨.
 - 전문기관 선정은 브랜딩 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 및 각종 마케팅 활동 기획 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임.
 - 전문기관 선정은 과거 추진경험, 글로벌 네트워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이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전문기관을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 브랜드 컨셉, 전략 방향성, 마케팅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제안을 받은 후 선정해야함.
- 브랜드 개발은 기억용이성, 유의미성, 호감성을 고려하여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여야 함.
 - 브랜드 이름은 잠재고객에게 인지시키고 태도나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매개 요소로서 발음이 쉽고 기억에 용이하며, 어떤 언어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단어이어야 함.
 - 로고는 시각이미지는 단어보다 기억이 용이하고 제품과 연관된 심리적 암시작용을 위해서 향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대화를 고려하여 개발해야함.
 - 브랜드슬로건은 브랜드가 표방하는 실체를 구축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브랜드 이름과 로고가 지닌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는 문구를 선택해야함.



[그림 4-35] 통합브랜드 구축 프로세스

- 구축된 통합브랜드는 식품클러스터 내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통합브랜드 사용을 원하는 업체는 지원센터가 준비한 평가 결과 후 이용할 수 있음.
- 지원센터는 기업체 평가 시 기업체 제품의 품질, 재무구조, 제품 경쟁력과 같은 사업성, 경영진의 자질 등을 평가하여야 함.

■ 기업체 홍보지원

- 국내홍보, 제품 동영상물 제작, 타지자체 및 타 클러스터와의 MOU 협약을 통하여 클러스터 내 기술혁신 및 기업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식품관련산업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부스확보 및 관련 행정업무 등을 지원 함.
 - 클러스터 내의 기업체가 제품에 관한 홍보동영상을 제작 시 제작비의 일부 혹은 관련 인력, 혹은 장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식품클러스터와 국내 타 지자체, 타 클러스터, 국외의 클러스터와 MOU협약을 통하여 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에게 기업체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체 홍보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홍보준비단계는 식품클러스터 내 중소기업이 홍보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전문 홍보업체와 매칭을 실시하는 단계임.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원 대상 기업체를 선정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운영해함.
 - 평가위원회는 지원대상 기업체를 선정 시 브랜드의 운영현황, 브랜드 가치, 제품품질 등과 관련된 브랜드 우수성, 부채비율, 매출액과 같은 재무구조, 제품경쟁력, 시장동향 등과 같은 사업성, 경영자의 능력 등을 평가해야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선정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전문 홍보업체들은 그에 대하여 공개 입찰 및 홍보 계획서를 작성, 제출 후 지원센터는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이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전문 홍보업체와 매칭을 실시해야함.



[그림 4-36] 주체별 기업체 홍보지원 업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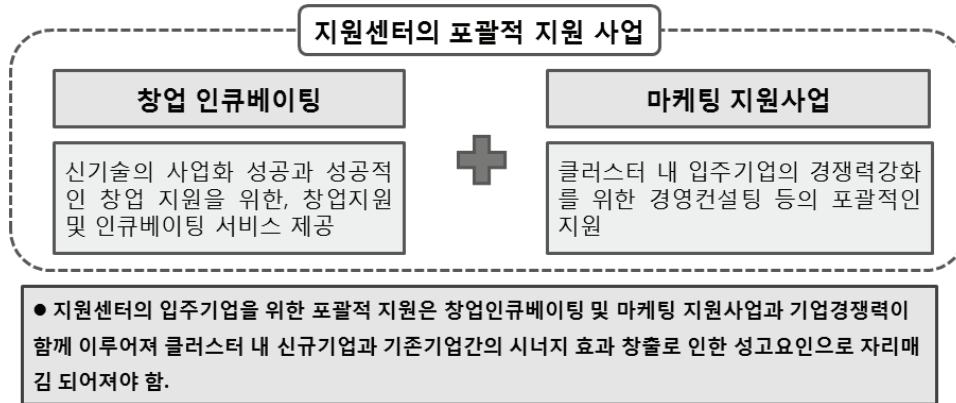
3) 효율적인 포괄적 지원 사업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은 네트워킹 방안처럼 지원방안 중 하나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제안된 모든 방안을 수행하여야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음.
- 클러스터 내 입주업체의 연구개발 및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기업경쟁력 강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국가 신 성장동력 창출할 수 있음.
- 기술개발에 따른 사업화 그리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 및 연구와 산업 기술의 결합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혁신 식품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음.
- 포괄적 지원방안은 선택이 아닌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음.

<표 4-16> 포괄적 지원업무

포괄적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창업 인큐 베이팅	식품창업 경진대회	지원센터가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원센터 입주의 기업에게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제공
	창업기업 매칭 사업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과 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을 매칭을 하는 사업
마케팅 지원	시장개척 지원	소매점 확보, 제휴마케팅,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구축, 식품박람회 및 컨벤션 개최 등을 통한 시장개척지원
	문제해결 멘토	지원센터에서 전문가POOL을 구성 및 운영하여, 개별기업의 애로사항 및 미니 클러스터를 통하여 수요조사 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브랜드개발	개별기업이 지원센터에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기업을 평가 및 선정 후 브랜드 전문개발업체를 선정하여 브랜드 개발 업무를 위탁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센터가 지원

포괄적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마케팅 지원	통합브랜드	지원센터에서 전문기관을 평가 및 선정하여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통합브랜드이용을 원하는 기업들을 자체적으로 심사 및 평가
	홍보지원	지원센터에서 제품 동영상 제작, MOU 협약을 통하여 클러스터 내 기술 혁신 및 기업체 홍보 지원 개별기업이 홍보사업 지원신청서를 지원센터에서 평가 및 선정 및 홍보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매칭하고 홍보비의 일부를 지원센터에서 지원



[그림 4-37] 효율적인 포괄적 지원 사업방안

마.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행방안

1) 관리업무의 필요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역할이 단순한 산업 집적이 아닌 새로운 지식 창출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클러스터에 적합한 지원체제나 제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축한 지원체제를 유지 및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함.
- 클러스터에 조성된 H/W를 관리하여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입주 주민에 대한 편의를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클러스터 관리업무를 통하여 클러스터 입주기업, 입주연구소, 입주지원기관 등의 역할을 최대한 끌어내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관리업무가 포함 되어야 함.

2) 관리업무 수행방안

■ H/W 관리방안

- 지원시설, 도로 등 클러스터 내 인프라를 총괄관리 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H/W관련 인프라 등을 유지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클러스터에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설 전체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함.
- 클러스터 전체의 환경 분야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클러스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 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이루어 냄.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적정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함.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반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반시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

3) 주체에 따른 관리업무방안 사례

- 국내 외 클러스터 관리업무를 살펴보았을 때, 클러스터의 S/W관리는 지원센터가 전담 관리 하고, H/W는 관리 주체가 다를 수 있음.
 - S/W관리는 지원센터가 전담 관리 하고, H/W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지원센터 등 세 곳 중 한 곳이 관리하고 있음.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H/W관리 사례
 - 국내의 대부분의 국가 산업단지클러스터와 오송생명과학단지(현재)가 현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H/W관리를 하고 있음.
 - 장점은 오랜 기간 축적된 산업단지 관리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인력의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단점은 H/W관리에 치중하여 S/W지원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S/W관리와 H/W관리 이원화의 비효율성이 발생가능성이 높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설립목적과 관리의 일관성 부족이 우려됨.
- 지방자치단체의 H/W관리 사례
 - 장점은 H/W관리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이 유리함.
 - 단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S/W사업과 연계한 사업진행이 어려움.
 - 국가식품클러스터 설립목적과 관리의 일관성 부족이 우려됨.
- 지원센터의 H/W관리 사례
 - 장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S/W사업과 연계한 사업진행이 용이함.
 -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H/W관리가 가능함.
 - 단점은 H/W관리에 대하여 전문성이 미흡하여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 H/W관리에 있어서 행정지원의 한계가 있음.

〈표 4-17〉 H/W 관리주체에 따른 장점과 단점

구분	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지자체
사례		- 국내산업클러스터 - 오송생명과학단지(현재)	- 지역농업클러스터 - 대덕특구
장점	- 국가식품클러스터 S/W 사업과 연계한 사업 진행용이 - 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 강화	- 오랜 기간 축적된 산업단지 관리 노하우 활용가능	- H/W관리에 있어서 행정지원 유리
단점	- H/W 관리 노하우 부족 - H/W관리에 있어서 행정지원의 한계	-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 S/W관리와 H/W관리 이원화의 비효율성 발생 - 국가식품클러스터 설립목적과 관리의 일관성 부족 우려	- S/W관리와 H/W관리 이원화의 비효율성 발생 - 국가식품클러스터 설립목적과 관리의 일관성 부족 우려

- 각 주체에 따른 관리업무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식품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가 필요함.
- 또한 S/W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하여 지원센터 주도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가 필요함.
- 지원센터 주도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 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V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방안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및 관리 주체 검토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구성
3.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보수체계
4.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예산

V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방안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및 관리 주체 검토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조직형태 검토

- 현재 농식품부 안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있음.
-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총괄, 기업 지원시설마련, 국내·외 투자유치 등과 같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조직을 확대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의 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할 경우 기관 또는 법인 신설에 소요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2011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한 지원센터의 역할을 조기에 가동할 수 있으며, 기존 조직의 유사 사업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업무의 연계성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함.
 -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같은 국책 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이 원활할 수 있으며, 국내외 투자유치에서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로 인하여 투자유치가 용이할 수 있음.
 - 공식적인 법적근거에 따른 계층적 통제가 가능하므로 책임성 확보가 가능함.
- 새로운 조직을 정부 내에 둔다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의지와 배치되고 사업의 추진 시 여러 단계의 행정라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특히, 지원센터는 클러스터 내의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함에 있어 기업이 원하는 때에 적절한 행정력이 지원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의 인사 시스템으로 인한 보직 순환제가 장기적으로 식품클러스터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 결여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마케팅 지원과 같은 민간부문에서 더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가 담당함으로써 인해 사업의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조직의 관료화로 인해 조직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부족할 수 있음.

2) 정부산하의 공공기관 설립(안)

- 정부산하의 공공기관은 정부 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이 아니면서 정부의 보호 아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정부의 주무부처의 관리와 통제를 받으면서 정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 단체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정부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일반 행정기관인 정부부처가 직접 관장할 필요가 없는 일상 집행 기능의 업무를 수행해야하거나, 단일목적의 업무 수행이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
-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직접 재원을 출연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 총괄, 관리, 운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이 경우 설립 비용은 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하지만,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일정부문을 보조하거나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함.
- 정부출연에 의해 공공기관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과 활성화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여 지원센터 사업의 공공성을 보장 받아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센터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공익적 노력을 구현하기가 더 유리함.
 -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과 아울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 받아 시장에 의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방만 경영의 우려와 공공정책의 집행에 있어 책임성 확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공익적인 목적보다 기관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간섭 등으로 인해 자율적이고도 책임 있는 경영이 어려울 수 있음.

3) 공익의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설립(안)

- 농식품부 내 조직과 별도로 「민법」 제 32조에 의해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임.
- 법인 설립은 순수하게 민간이 담당하는 경우, 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일부 출자를 하는 민관공동법인(제3섹터 방식)이 있음.
 - 전자의 경우 지원센터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초기 투자비 과다로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으므로 후자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보다는 재물을 구성요소로 하는 재단법인의 형태가 향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 왜냐하면, 사단법인은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활동이 구속되는 차이점이 있음. 즉,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따른 고정된 조직과 목적 하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이 더 바람직한 형태임.
 - 또한, 현재 「식품산업진흥법」 제 12조에 지원센터의 사업내용, 즉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재단법인 설립이 더 바람직함.
- 「민법」 제 32조에 근거하여 설립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설립 대안에 비해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음.
 - 민간자본에 의해 통해 설립되기 때문에 설립이 비교적 간단함.
 - 또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음¹⁷⁾.
 - 사업 추진이 정부기관의 형태보다는 비교적 용이함.
 - 민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이 가능함.
- 법인 설립을 위해 초기 투자가 과다하기 때문에 수익을 보전해주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민간 자본의 참여가 쉽지 않음.
 - 초기 설립이 민간부문의 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부출연기관처럼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지원 근거가 법률로 명시되어야 함.

17) 비영리법인이기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은 불가능하지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함.

4) 정부출연기관 및 유관기관에 업무 위탁(안)

- 농식품부 관련 국책연구원이나 산하 유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임.
- 정부부처 관련사업의 업무를 연구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의지와 일치하기 때문에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임.
 -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관측센터를 운영함.
-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농식품부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있음.
 - 두 기관 중에서 식품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식품연구원이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관련 기관 특히 공공기관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식품 관련 전문성이 풍부한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정부의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였기에 지원센터 사업의 공공성이 보장됨.
 - 수익성 사업의 경우 민간에게 위탁이 가능함.
- 지원센터가 기존 기관의 일부로 편입되는 부속기관이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 업무 추진 시 소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제약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지원센터의 효과적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지원센터는 농식품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의 흐름이 농식품부 → 소속 상급기관 → 지원센터라는 중간단계를 거치게 됨.
 - 상급기관의 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지원센터에 넘겨주는 방식을 취하게 됨. 이 경우 상급기관으로부터 행정지원을 받게 되므로 상급기관은 일반관리비의 명목으로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 (예, 10%)을 징수함. 이로 인해 지원센터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됨.
- 지원센터의 업무의 범위나 규모가 기존 기관의 규모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원센터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지원센터의 업무의 범위와 규모가 점차 커져서 기존 기관의 업무의 규모보다 커진다면, 결국 당초 기존 기관 설립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관 설립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의 업무의 범위와 규모가 기존 기관보다 작아야 함. 그런데, 기존 기관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지원센터 또한 성장하

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5) 민간기업 출범 후 업무 위탁(안)

- 민간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정부가 민간에게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임.
- 민간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내용을 식품산업진흥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어 설립의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민간에게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임할 경우 업무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기에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기능의 외부위탁수행을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음.
 - 행정기관을 대신 한 서비스 공급자를 외부 민간기업 간 경쟁과정을 통해 선정하여 수행토록 함으로써 정부 내에서의 독점적인 수행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음.
- 수익성이 있는 업무만 하게 되어, 공공성을 가지는 지원센터 설립의 고유의 취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업체들은 지원센터로부터 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때 지원서비스에 대한 가격(수수료)이 높게 책정될 수 있음.
 - 정부의 민간위탁 업체의 관리·감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만약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서비스의 질 저하와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6) 조직형태의 종합비교

- 지금까지 논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조직안을 비교정리하면 <표 5-1>과 같음.
- 각각의 대안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반드시 우수하다고 판단 내리기는 어려움.
- 정부 조직 내 편재하는 방안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공신력을 가지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원 업무의 신뢰성이 높아지지만 관

료화된 정부 조직이 다른 대안에 비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짐.

- 민간 기업이 담당하는 방안은 정부조직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여 업무 추진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원센터 업무의 공공성과 공익성과는 배치되는 단점이 있음.
- 공공기관의 설립은 장기적으로 지원 업무를 안정적인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관의 방만한 운영의 가능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라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배치되는 단점이 있음.
- 정부출연기관에 업무 위탁하는 방안은 지원센터 설립이 가장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원센터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기에 기존 정부출연기관에 따라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재단법인 설립은 다른 대안의 단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 설립 자원 마련과 운영비용 마련의 어려움이 있음.
- 지금까지 지원센터의 조직형태를 검토한 결과 **공공부문의 관리시스템과 민간부문의 성과 중심 육성지원시스템이 결합된 공공기관의 형태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1〉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조직형태 비교

구분	정부 조직내 편제	정부산하 공공기관 신설	신설법인 설립 (비영리재단법인)	정부출연기관에 업무 위탁	민간기업
설명	농식품부 내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이 지원센터 업무 담당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형태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추진, 총괄, 관리, 운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민간 또는 정부 (공공기관 포함)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	한국식품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 지원센터 업무 위탁	민간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정부가 지원센터 업무 위임
기관 성격	정부조직 (농식품부내 식품클러스터과 신설)	공공기관	준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업무위탁	주식회사
재원 조달	정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설립비 : 정부 100% • 운영비는 정부지원으로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설립비 : 민간 자본 100% 또는 정부+ 민간자본 100% • 운영비 일부는 수익사업으로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설립비 : 정부 100% • 운영비는 정부지원으로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본 100%

구분	정부 조직내 편제	정부산하 공공기관 신설	신설법인 설립 (비영리재단법인)	정부출연기관에 업무 위탁	민간기업
설립 관련법	「농림수산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산업진흥법」에 설립 근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에 의해 설립 정부가 운영비 지원시 관련법에 지원 근거 명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에 사업위탁 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에 사업위탁 규정 필요 입찰형식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센터의 조기 가동 가능 기존 조직의 유사사업 경험 및 전문성 활용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지원 수혜 농식품부 행정 업무와 연계성 풍부 국책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협력 국가신뢰도를 통한 국내외투자 유치 용이 조직의 특성에 따른 계층적 통제가 가능하며 책임소재가 명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재정적으로 안정적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사업 지속 가능 사업의 공공성 보장 민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개발 가능 지원센터 사업의 체계적 추진 가능 지원센터 업무의 전문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절차가 간단함 사업추진이 비교적 용이함 민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개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철학과 일치 지원센터 설립절차가 가장 간단함 공공성 보장 전문기관 노하우 활용 가능 기존 조직 활용 가능 수익성 사업 민간위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부문의 효율성 도입 정부의 재정지원 불필요 지원서비스의 질 향상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 운영 방향과 배치 다단계의 행정 업무로 인한 사업 추진의 신속성 결여 장기적으로 정부의 순환보직 시스템으로 지원업무 인력의 전문성 결여 민간부문의 사업 영역에서 낮은 사업효과 조직의 관료화로 창의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 운영 방향과 배치 방만한 경영의 잠재성 공익적 목적보다 기관의 이익 실현이 우선할 가능성 존재 책임성 확보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 재원 확보 어려움 —안정적 사업 수행의 어려움 정부가 운영자금 지원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기관 업무 추진방식, 조직, 문화 등의 영향으로 역할 및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음 기존 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예산 지원 시 추가비용 발생 (기존 기관에 일반관리비 지불) 기존 기관의 규모에 의해 지원센터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사업만 하게 되어 지원센터의 공익성 기능 상실 지원서비스에 대한 높은 가격 부과 정부의 감독관리 비용 발생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시 서비스의 질 저하와 함께 비효율성 발생

나. 지원센터의 법적 지위

- 지금까지의 지원센터 법적 지위에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지원센터의 법인의 성격은 특수법인임.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2에 의해 설립근거와 함께 사업의 운영에 대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법인임.

〈특수법인의 특징〉

- * 특수법인 :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민·상법이 아닌 특별한 개별행정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 특수법인은 본질상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 중에서 효율성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수행토록 한 것.
- * 따라서 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의 재정상의 특권과 행정상의 특권을 가짐.

〈특수법인의 장·단점〉

- * 장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재원의 확보가 용이
정부조직의 한계 극복 → 자율적 경영 보장,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사업의 공공성 보장과 업무의 전문성 제고
- * 단점 : 정부의 관리감독으로 기관의 완전한 자율적 활동의 제한

- 지원센터는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함.
- 지원센터는 설립 후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함.
 - 특수법인은 주로 정부가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지원센터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설립 및 운영의 경비를 정부로부터 전액, 50% 이상, 또는 30%(인사권 등 정책결정권을 정부가 소유)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함.
 - 만약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지원센터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지원센터 설립 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함.
 - 농식품부 산하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제정 이

후에(2007년) 설립된 기관들은 설립 후 바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09.10 설립 → '10.1 기타공공기관 지정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08.6 설립 → '10.1 기타공공기관 지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09.9 설립 → '10.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지정

〈지원센터 공공기관 지정의 장·단점〉

- * 장점 : 대외적 공신력 증가 → 국내외 투자유치의 용이
지원센터의 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센터 경영의 자율성, 효율성, 투명성 향상
공익서비스의 질 향상
- * 단점 : 정부 관리감독 기관의 이원화(경영감독 : 기재부, 사업감독 : 농식품부)로
인해 완전한 자율적 조직 관리의 한계
조직의 확대 또는 부설기관 신설의 어려움

1) 지원센터 자원 조달을 위한 법률 검토¹⁸⁾

- 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2의 제5항에 “출연”이라는 용어를 삽입해야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됨.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2의 제5항에 있는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은 정부의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속적 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출연의 정의

- 일반적으로 출연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대행하게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를 말함.
- 출연은 정부기관, 정부회계 등에서 각종, 기금, 공공기관 등으로 이전되는 현금 또는 현물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현행 법률상 출연금의 정의, 지급,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

18) 출연과 관련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2010), 『출연사업평가』” 자료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함.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되는 연구소요경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전부임. 그러나 이 정의는 연구개발사업에 국한하고 있어 포괄적인 정의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출연금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음 (12조: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연의 장·단점

- 출연의 가장 큰 장점은 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용이하다는데 있음.
 - 재원 마련이 용이하다는 것은 사업비 마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의 출연을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 출연의 단점으로 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정부 출연에 의해 마련되기 때문에 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의 추진과정에 방만한 운영을 할 수 있음.
 - 민간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

- 출연금은 통상 보조금과 비교되는데, 이 또한 법적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¹⁹⁾. 그러나 통상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개별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에 있어 출연금은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이 가능한 반면, 보조금은 일반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외에 반드시 개별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는 않음.

19)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공공기관에 정부예산을 지급하는 방법은 출자, 출연, 보조, 위탁사업비, 계약 등 매우 다양한데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음.

- 사업의 용도와 관련하여 보조금은 국가가 사전에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자가 집행과정에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과 같이 광범위한 범위 속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이 보장됨.**
- 정산과 집행잔액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조금은 반드시 사후정산을 하고,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출연금은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요약하면, 보조금은 재원을 이전받은 주체 입장에서 재원 사용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좁은 반면, 개별법적 근거가 불필요하고, 출연금은 이전받은 주체 입장에서 재원 사용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 반드시 개별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음.

〈표 5-2〉 출연금과 보조금 비교

구분	출연금	보조금
정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대행하게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 (법적 근거 없음)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반법적 근거	없음 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법적 근거	반드시 법률의 지원근거가 있어야 함 (「국가재정법」 제12조)	대부분 개별 법령에 “보조할 수 있다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로 지급근거가 명기되어 있으나, 반드시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용도지정 여부	기관출연금의 경우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목적출연금의 사용 용도가 지정됨.	반드시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자의 재량여지가 없음
집행잔액 처리	사후정산하지 않으며 집행잔액은 집행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처리	반드시 사후정산하고, 국고에 반환해야 함
이자수입 처리	집행기관의 자체수입 처리	국고에 반환 처리

주: 1) 출연금의 정의, 출연금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법률이 없다는 의미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0), 『출연사업평가』

〈출연금 법적근거 확대 해석의 사례〉

- 「국가재정법」 제12조에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 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음.
 -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만 출연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 현행 법률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 예를 들어, 동일한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출연 관련 법률의 규정 체계가 상이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2조에서 동 기관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고용정책기본법」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8조 5항).
 - 이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이 기관운영비를 출연 받는 법적인 근거 외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출연금의 요건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법적인 근거에 대한 광범위한 확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엄격한 요건 하에 출연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음.

■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지원센터의 사업과 기관운영비 조달은 명시적인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 현재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⑤항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어 지원센터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이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 경비를 경우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임.
 - 또한 ‘출연’에 대해 명기하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센터 운영경비 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곳에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음. 즉, 지원센터 운영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지원센터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동시에 운영 예산 지원 또한 명확하지 않은 법적인 명시로 인해 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동북아식품시장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품산업진흥법」개정을 통해 **사업예산 및 운영 예산 지원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처럼 법률에(“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사업과 운영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다고 명확하게 해야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음.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법률에 의해 사업비와 시설운영비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출연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명시적인 출연의 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5-3〉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5항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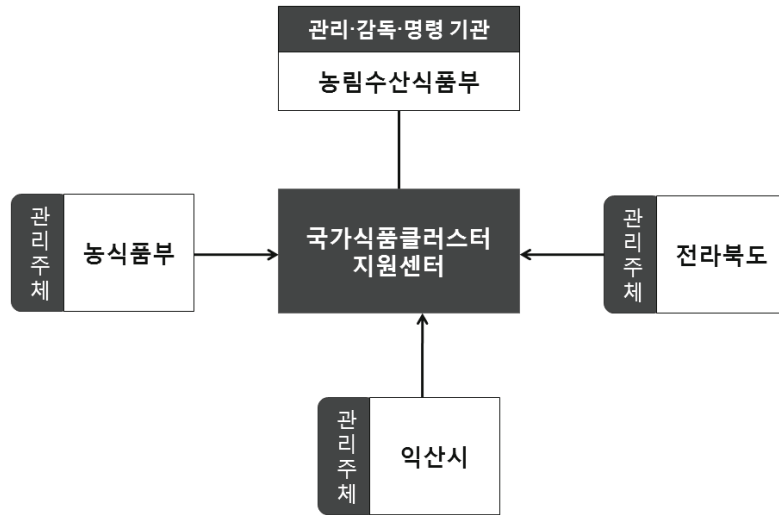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출연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센터가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연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다. 관리주체 선정 논의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관리주체 후보

- 지원센터는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부담한 주체가 운영방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원센터의 운영 경비 부담이 가능한 기관은 중앙정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과 익산시, 그리고 민간이 될 수 있음.

-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상당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부담할 민간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임.
- 지원센터의 역할이 장기적으로 국가 식품산업 발전과 연계된 정책적 수단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보다는 중앙(지방)정부의 참여가 바람직함.



[그림 5-1]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능한 관리주체

2) 지원센터 관리주체 검토

- 지원센터 관리주체 대안 : ① 농식품부 단독 ②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관리

■ 농식품부 단독 관리

- 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비를 농식품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장점
 - 국가 전체 식품산업 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추진이 가능함.
 - 예산 또는 법령을 통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센터 역할 수행의 조기 안정화가 가능함.
 - 국가가 주도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외 투자 유치에 매우 유리함.
- 단점
 -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의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즉, 국가의 정책적 입장만 고려하여 지역 발전과 무관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비 지원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음.

■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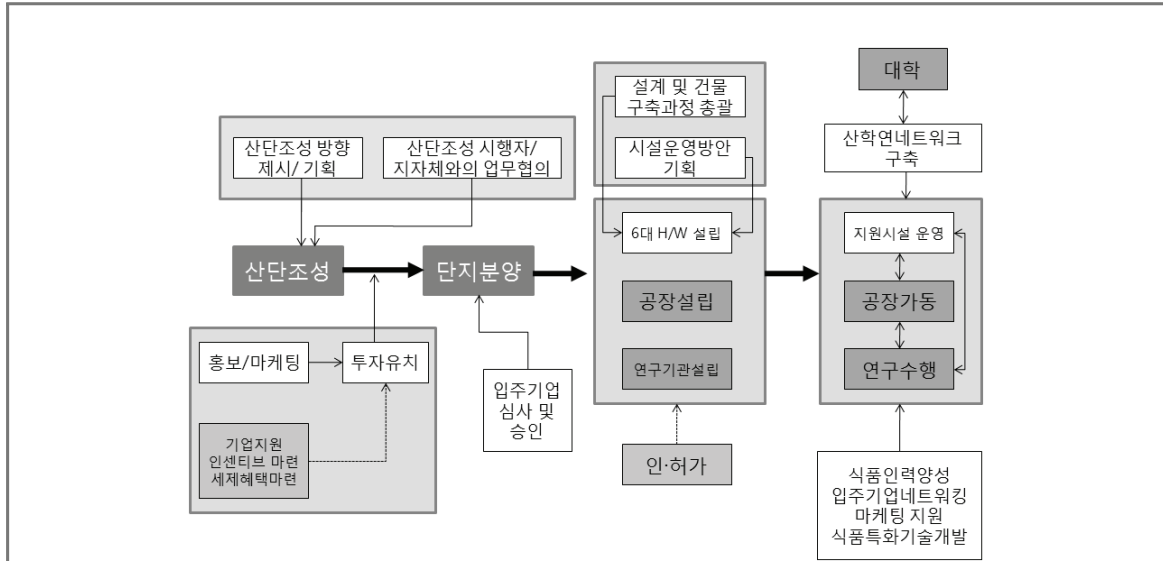
- 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비를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 그리고/또는 익산시)가 예산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 장점
 -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과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국가 전체 식품산업 발전과 지역발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음.
- 단점
 - 기관의 이익이 우선할 경우, 사업의 방향과 추진의 혼선을 가져와 오히려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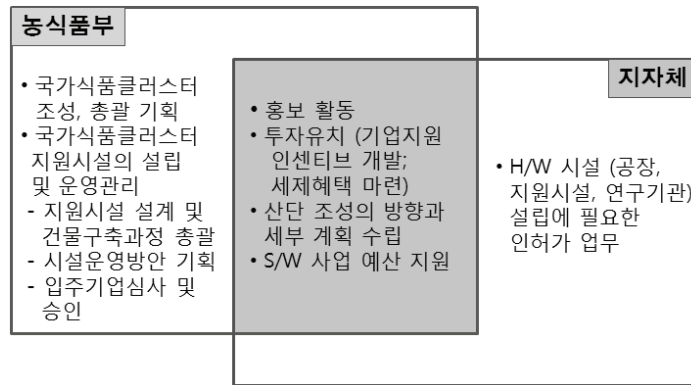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신속한 단지 조성과 성공적 투자유치를 위해서 클러스터 조성 초기 단계에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초기에 단지조성과 하드웨어 시설 구축과 같은 비용 소요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사업의 추진력이 필요함.
-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총괄 역할을 맡은 지원센터 또한 중앙정부(농식품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 함.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과정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지원센터 업무 분장〉

-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업무 분장을 위해서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과정에 대한 도식화가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과정의 흐름에서 크게 농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지원센터의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함. 지자체는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함.



[그림 5-2]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정의 흐름



[그림 5-3]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정에 따른 지원센터 업무 분장

3) 지원센터 관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클러스터가 입지한 공간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음. 즉, 중앙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의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의 협력자 역할을 수행함.
-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클러스터 운영이 자발적 또는 자율적인 협력관계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적 협력관계를 통한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①투자유치 ②클러스터 단지 개발 ③지원사업 분야임.
 - 투자유치 : 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시기에는 식품기업을 비롯하여 연구원, 유관 업체들을 유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후방 지원이 필요함.
 - 클러스터 단지 개발: 클러스터 개발 계획은 중앙정부가 가지지만, 사업의 시행자가 결정되어 사업의 시행자가 클러스터 개발의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과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함.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인적자원개발, 식품기업지원과 같은 S/W 사업비의 70%는 국고로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국고와 지방비 보조를 50% : 50%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부족으로 인한 가상 시나리오

- 투자유치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전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투자유치 성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세우기 위해 독자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경우.
- 클러스터 단지 개발: 클러스터 단지 개발의 세부계획을 클러스터 발전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개발이익에 우선한 계획에만 승인을 해주는 경우.
-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과 운영에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자신의 지역개발과 밀접한 사업에만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만약,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지원센터는 클러스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협력을 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해결방안

- 협력창구 개설 : 지방자치단체에 클러스터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관을 만들어서 지원센터와 협력을 위한 창구를 만들어야 함.

- 투자유치협의회 :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센터의 투자유치팀과 지방자치단체의 클러스터 담당자가 투자유치협의회를 만들어 투자유치의 방향, 대상, 전략 등을 협의하고 역할 분담을 하여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조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단지 개발 세부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원센터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신설함.
 - 지원사업 및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지방비 부담을 명문화 하는 조항 신설함.

4)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 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 입주기업의 종사자 및 가족을 위한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즉 레저, 쇼핑 등 문화 복지 시설을 제공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클러스터 주변 주거환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
 - 주거환경 개선으로 입주 예정업체의 주거 걱정 해소. 특히 해외기업을 유치하기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외국인을 위한 교육시설 병원시설 등을 제공함.
 - 금융기관 쇼핑 레저시설 관공서 등 주요 기반 시설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가 필요함.
- 우수한 보육시설과 교육 환경 조성은 기업의 이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주를 고려할 때 교육이 주요 이슈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좋은 교육환경의 조성이 기업유치에 도움이 됨.
 - 우수인력을 유치 하기위한 교육정책을 협력하여 클러스터 내 기업에게 공급함.
- 전입 세대의 부동산 취득 및 정착에 따르는 세제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입주 기업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입주업체의 유치를 원활히 하기위해 기본적인 도로, 전기,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등의 구축이 필요함.
 - 입주업체의 원활한 수출입에 필요한 물류망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항만 및 공항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확충이 필수임.
 - 가공 공장의 입주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 하기위한 시설은 물론 환경 관련법안

의 정비가 요구 됨.

- 상·하수도처럼 기업이 요구하는 전기용량에 맞추어 원활한 전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업체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와 협력함으로써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관할 하지 않는 공공기관 업무를 신속히 처리 하게 함.

■ 원활한 인허가 관련 서비스 제공

- 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인허가 관련 통합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유치활동에 기여할 수 있음.
 - 인허가 취득을 위한 법적 소요기간 단축 및 절차를 간편화 할 수 있음.
 - 입주 업체가 자체적으로 인허가 취득 및 입주를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지방 관공서를 방문하기보다는 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통합서비스 창구를 신설하도록 함.
- 통합서비스 패키지 제공을 통하여 기업의 입주, 공장 설립, 연구소 설치, 교육기관 설립 등이 용이할 수 있음.
- 나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창구를 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원화함으로써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기업유치 활동 전개

-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입지 관련 기구와 공조하여 국내 외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입주 희망기업 유치가 용이할 수 있음.
 - 통합된 유치서비스 제공으로 기업들에게 신뢰도를 제고시킬 가능성이 높음.
 - 지방자치단체 내 기업유치 담당과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협력함으로써 중소기업 유치는 물론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유치 가능성이 증진됨.
-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기업유치 활동을 직접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인허가 관련 사항으로 협력은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음.

라.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권자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관리주체는 크게 ‘관리권자’와 ‘관리기관’으로 나뉘짐.

-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관리기관’은 관리권자로부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리권자가 되며,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됨.
 - 관리기관은 관리권자가 직접 관리기관이 될 수 있으며, 또는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지방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관리기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리권자가 되며, 지식경제부 장관이 클러스터 관리업무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임하게 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클러스터의 관리기관이 됨.
 - 클러스터와 관련된 현재의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만을 가지고는 농식품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권자와 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설립취지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경부 장관보다는 농식품부 장관이 관리권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식품산업은 농업과 생명과학기술(BT)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농식품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주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식품부 장관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 보완이 필요함.
 -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이 되기 위해서도 현행 법률 보완이 필요함.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제3항2호에서 지원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제3항2호의 법률 근거로만 지원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권자가 되기에 법률적 효력이 약함.
 - 농식품부장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권자와 관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과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음.

○ 1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개정>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중략> 6.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신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에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식품산업진흥법」에 나온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식품부 장관이 관리권자가 되도록 법률 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업무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담당하도록 법률 조항 신설

○ 2안: 「식품산업진흥법」 보완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6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권자가 된다. <신설> ⑨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권자와 관리기관이 각각 농식품부장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되도록 법률 조항 신설

마.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관(초안)

- 1) 이사장이 비상근이며 지원센터장이 상근일 경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지원센터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지원센터의 주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원 시설, 부설기관, 분사무소, 해외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 ②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 ③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 ④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 ⑤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 ⑥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지원센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설립자 출연금
2. 정부 또는 국내·외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출연 또는 기부 받은 재산
3.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금

4.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6조(재산의 관리) ①지원센터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원센터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재산의 평가) 지원센터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8조(운영재원의 조달) 지원센터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기본재산에서 생긴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익금
4.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다른 사업에의 출자) ①지원센터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원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 또는 출연가액
3. 사업개요
4. 그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회계원칙) 지원센터에 속하는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

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준예산) ①이사장은 천재지변 이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이하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업무보고) ①지원센터는 매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지원센터는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당해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4. 그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잉여금 처리) 지원센터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센터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 ①지원센터에 두는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하고 지원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 이사장 1명
2. 지원센터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지원센터장 포함)
3. 감사 1명

②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 이외의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이사장과 지원센터장은 재직기간 동안 지원센터의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비상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 종료일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 종료일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사회를 거쳐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⑤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⑥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임원의 연임 여부는 이사회 추천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비상설기구인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장이 결원일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유고시에 는 지원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이사장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이사회에서 선출한 비상임 이사 2인
2. 이사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 2인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당연직이사 1인

③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④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 3인 이내를 장관에게 추천한다.

⑤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이사장이 임명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⑥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한다.
- ⑦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지원센터장) ①지원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 ②지원센터장의 임면은 이사장이 하되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을 병행할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의 경우 이사장은 지원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진절차, 필요한 자격요건 등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 ⑤지원센터장은 이사장이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20조(이사) ①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이사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로 본다.
 1.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2. 전라북도 농수산식품국장
 3. 익산시 부시장

제21조(감사) ①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감사는 지원센터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벌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이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및 해임)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원센터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할 때
- ② 제1항의 각 호의 이유로 해임할 경우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이사장과 지원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구성) ① 지원센터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지원센터장, 당연직이사 및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원센터의 기본운영방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주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 또는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지원시설, 부설기관, 분사무소, 해외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차입금에 관한 사항
10. 출자 및 출연에 관한 사항
11. 이사장 보수에 관한 사항
12. 지원센터장 보수에 관한 사항

- 1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 14. 전 각호 이외의 사항으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과 11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 ③이사회는 이사회장이 소집한다.
- ④이사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의결) ①이사회 의결은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이사회장이 결정한다.

- ②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③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이사 전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이사회 의결의 안전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전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이사회장은 주요사업 진행 등의 이사회 진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이사회 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약간인의 서기를 두되, 지원센터의 직원 중에서 이사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 직무에 대한 보수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장 직원

제31조(직원의 임면) ①직원은 지원센터 인사규정에 따라 지원센터장이 임면한다.

- ②지원센터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③지원본부의 직제, 정원,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3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지원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본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지원센터장은 지원본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원센터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지원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원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33조(비밀엄수의 의무)** 지원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 또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가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정관의 변경)** ①지원센터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정관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35조(해산)** ①지원센터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지원센터가 해산할 때에 그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③지원센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공고)**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고시하여 할 사항은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37조(규정의 제·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인사·급여·회계·직제규정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위원회의 설치) 이사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자문기구의 운영) 이사장은 지원센터의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지원센터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지원센터는 설립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는 지원센터 이사회 구성 후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지원센터 설립당시 임원의 임명) ①정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②정관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지원센터장은 설립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③정관 제20조 및 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이사(당연직이사 제외)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원센터 설립위원 전원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0년 0월 0일에 각각 기명날인함.

설 립 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

정관작성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위원

2) 이사장이 상근이며 이사장이 지원센터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지원센터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지원센터의 주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원 시설, 부설기관, 분사무소, 해외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 ②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 ③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 ④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 ⑤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 ⑥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지원센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설립자 출연금
2. 정부 또는 국내·외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출연 또는 기부 받은 재산
3.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금
4.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지원센터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원센터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재산의 평가) 지원센터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8조(운영재원의 조달) 지원센터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기본재산에서 생긴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익금
4.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다른 사업에의 출자) ① 지원센터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원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 또는 출연가액
3. 사업개요
4. 그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회계원칙) 지원센터에 속하는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준예산) ① 이사장은 천재지변 이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이하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업무보고) ①지원센터는 매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지원센터는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당해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4. 그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잉여금 처리) 지원센터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센터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 ①지원센터에 두는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1명

②이사장은 지원센터 이외의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재직기간 동안 지원센터의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 종료일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사회를 거쳐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⑤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임원의 연임 여부는 이사회 추천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이사장은 비상설기구인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 ③이사장이 결원일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유고시에 는 당연직 이사 중 농림수산식품부 당연직 이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이사장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하기 위하여

-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이사회에서 선출한 비상임 이사 2인
 2. 이사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 2인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당연직이사 1인
- ③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④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 3인 이내를 장관에게 추천한다.
- ⑤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이사장이 임명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⑥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한다.
- ⑦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이사) ①이사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로 본다.
 1.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2. 전라북도 농수산식품국장
 3. 익산시 부시장

제20조(감사) ①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감사는 지원센터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벌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2조(임원의 신분보장 및 해임)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원센터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각 호의 이유로 해임할 경우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구성) ① 지원센터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당연직이사 및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원센터의 기본운영방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주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 또는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지원시설, 부설기관, 분사무소, 해외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차입금에 관한 사항
10. 출자 및 출연에 관한 사항
11. 이사장 보수에 관한 사항
1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3. 전 각호 이외의 사항으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과 11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의결) ①이사회 의결은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이사 전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이사장은 주요사업 진행 등의 이사회 진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약간인의 서기를 두되, 지원센터의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 직무에 대한 보수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장 직원

제30조(직원의 임면) ①직원은 지원센터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지원본부의 직제, 정원,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본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지원본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원센터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원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비밀엄수의 의무) 지원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 또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가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정관의 변경) ①지원센터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관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4조(해산) ①지원센터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원센터가 해산할 때에 그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공고)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고시하여 할 사항은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6조(규정의 제·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인사·급여·회계·직제규정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위원회의 설치) 이사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자문기구의 운영) 이사장은 지원센터의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지원센터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지원센터는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는 지원센터 이사회 구성 후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지원센터 설립당시 임원의 임명) ①정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②정관 제19조 및 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이사(당연직이사 제외)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원센터 설립위원 전원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0년 0월 0일에 각각 기명날인함.

설 립 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

정관작성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위원

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사회 구성안 및 설립절차

1) 이사회 구성안

- 이사회는 지원센터의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함.
- 이사회는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지만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사가 비상임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식품기업, 연구원, 대학교, 농업인,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 효과를 증대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정관 초안에 의하면 이사는 상근직인 이사장과 비상근직인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함.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전라북도 농수산식품국장, 익산시 부시장은 당연직 이사로 지정함.

제19조(이사) ①이사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로 본다.

1.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2. 전라북도 농수산식품국장
3. 익산시 부시장



[그림 5-4]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사회 구성안

○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지원센터의 이사회 구성안은 다음과 같음.

〈표 5-4〉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사회 구성안

대표기관	내용	명	비고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부주무기관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국장	1명	식품유통정책관 (당연직 이사)
전라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무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	1명	농수산식품국장 (당연직 이사)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무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하는 부시장	1명	부시장 (당연직 이사)
식품 민간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식품생산자 단체 또는 식품생산관련 단체의 장 또는 그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그 단체의 소속 임원	3명	농식품부, 전북, 익산시에서 각 1명씩 추천
식품 공기업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대표기관	내용	명	비고
농업인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업경제 대표이사와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그 소속 임원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자	2명	
연구자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 중 농림수산물식품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1명	
학계	식품 또는 농업 관련 분야 전공의 대학교수	2명	농식품부와 전북에서 각 1명씩 추천

주 : 이사장을 포함하면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됨.

〈참고자료〉 유사기관의 이사회 구성 사례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의 이사회는 총 10명이며 기관장 1명, 감사 1명, 비상임 이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선임절차가 상이함.
- 기관장(이사장)은 공개모집→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선임→지식경제부장관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감사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선임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 혹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이사회 구성〉

직위	직책	임기	비고
기관장	이사장	3년	이사장후보추천
감사	감사(비상임)	2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재직기간	당연직
비상임 이사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재직기간	당연직
비상임 이사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	재직기간	당연직
비상임 이사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	재직기간	당연직
비상임 이사	대덕특구기관장협의회 회장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학부총장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대덕특구여성벤처협회 회장	3년	이사회 선임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의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기관장(원장) 1명, 감사 1명, 비상임 이사 9명으로 구성되며 기관장 임기 3년,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감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임.
- 기관장(원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 농식품부 장관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설립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이 임명하고 있음.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의 이사회 구성〉

직위	직책	임기	비고
기관장	원장	3년	농식품부장관 임명
감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	2년	농식품부장관 임명
비상임 이사	농촌정책국 녹색성장정책관	2년	당연직
비상임 이사	경북대 교수	2년	농식품부장관 임명
비상임 이사	전북대 교수	2년	농식품부장관 임명
비상임 이사	강원대 교수	2년	농식품부장관 임명
비상임 이사	세종대 교수	2년	농식품부장관 임명
비상임 이사	부산대 교수	2년	농식품부장관 임명
비상임 이사	(전) 지식경제부 사무관	2년	농식품부장관 임명
비상임 이사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위원	2년	농식품부장관 임명
비상임 이사	남양농장 대표	2년	농식품부장관 임명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2010년 11월 기준

■ 시장경영진흥원

- 시장경영진흥원의 이사진은 총 15명이며 이사장 1명, 기관장(원장) 1명, 감사 1명, 당연직(1명)을 포함한 비상임 이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당연직은 재직기간).
- 이사장과 원장은 이사회 선임 후 중소기업청장이 승인을 해야 하며 감사와 비상임 이사(당연직 제외)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음.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이사회 구성〉

위	직책	임기	비고
비상임 이사	이사장	3년	중소기업청장 승인
기관장	원장	3년	중소기업청장 승인
감사	신한회계법인 회계사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장	3년	당연직
비상임 이사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전국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전국상인연합회 부산지회장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서강대 교수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중앙대 교수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중앙대 교수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숭실대 교수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강남구 상공회의소 이사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상임이사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장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인천중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3년	이사회 선임
비상임 이사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 회장	3년	이사회 선임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2010년 11월 기준

2) 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절차

■ 지원센터 설립절차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2에 근거하여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는 지원센터의 설립은 통상적인 재단법인 설립 절차에 따라 설립함을 원칙으로 함.
- 통상적인 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발기인 구성 → ② 창립총회 개최 →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통상적인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준용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설립위원회 구성 → ② 정관 등 제 규정 작성 → ③ 이사장 및 임원선출 → ④ 농식품부 장관 허가 → 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 ⑥ 농식품부 장관에게 설립보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위원회 구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함) 발족 목적: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사전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 설립과 관련된 현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설립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함.
- 설립위원회 발족 및 활동 근거: 설립위원회는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임의기구 또는 위원회의 성격으로 발족하여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만약 설립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훈령의 형태로 공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 설립을 위해 2009년 3월 5일에 환경부 훈령835호로 “한국환경공단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포한 사례가 있음.
- 설립위원회 활동기간 : 설립위원회 설립된 시점에서 지원센터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지원센터 이사장에게 그 사무의 인계가 끝나는 시점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함.
- 설립위원회 기능 : 정관작성, 이사장 및 임원 추천, 설립 등기 등 법인 설립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함.
- 설립위원회 구성 :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
 - * 설립위원회 구성원 수에 대한 규정은 없음.
 - * 한국환경공단 설립위원회 : 15명,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 15명,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 13명, 부산항만공사설립위원회 : 7명,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위원회 : 7명,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설립위원회: 5명
 - 설립위원회 구성원 수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지원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사례에 의하여 7명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농식품부 주무부서의 국장이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을 맡는 대안과 농식품부 장관 추천에 의해 위촉하는 방법과 설립위원회의 호선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음.
 - 다른 기관의 설립위원회 사례 검토에 의하면 정부 부처 관계자가 설립위원회에 들어 오지 않으면 설립위원회의 호선으로 결정함.
 - * 한국환경공단 설립위원회 : 당연직 (환경부 차관)
 -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 : 당연직 (농림부 차관)
 -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 호선으로 결정
 - 부산항만공사설립위원회 : 당연직 (해양수산부 차관)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설립위원회: 호선으로 결정

- 따라서 설립위원회 구성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농식품부 주무부서 국장이 설립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설립위원회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결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설립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설립위원회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할 부서가 필요함.
- 지금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센터 설립의 업무를 준비한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에서 설립위원회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은 설립위원회 운영 지원, 설립관련 제반사항 사전 검토, 설립위원회 논의안건 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함.
- 또한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은 정관, 조직 구성 및 인력운영 방안, 내규규정, 정원 및 인사, 급여, 직원 선발, 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한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 설립등기 계획을 마련함.

〈표 5-5〉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의 업무 분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위원회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작성 • 설립 당시의 이사장 후보 및 이사 후보 농식품부장관에게 추천 • 주요 사업계획 수립 • 예산 편성 • 주요 운영규정의 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예산 규정 등) • 직원채용 • 법인 설립등기 • 기타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위원회의 운영을 실무적 지원 업무 • 설립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 • 정관(안) 작성 • 직제규정안, 인사규정안, 복무규정안, 보수규정안, 지원센터 사업안 작성 • 예산안 편성 • 직원채용모집 계획안 마련 • 지원센터 사무실 임차 • 지원센터 내부시설 배치 공사 • 지원센터 집기 및 장비 구입 • 지원센터 보도 및 홍보 자료 작성 및 배포 • 지원센터 설립 관련 대외협력 업무 • 지원센터 개원 행사 준비

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기관 현조직의 개편 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추진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어 추진사업의 중복문제와 더불어 일관된 정책실현의 어려움이 제기됨.
 -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현행 추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전라북도 식품산업과 클러스터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기획, 산단조성,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하나의 추진주체가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총괄기획 담당 업무를 지원센터로 이전하는 시기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1단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의 이원화 ('11~'15년)
 - 농식품부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총괄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실무적 수행 기능을 담당함.
 - 2단계에는 지원센터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의 일원화 ('16년 이후)
 - 농식품부의 식품클러스터 사업 총괄기획 업무를 지원센터로 이전하도록 함.
 - 1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재 조직의 개편 또는 역할 변경이 불가피함.
 - 전라북도 클러스터계의 역할 변경 - 식품클러스터로 전라북도 농산물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과 같은 식품클러스터 후방지원 업무를 담당함.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의 역할 변경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의 상업시설, 편의 시설 유치, 학교 설립과 같은 정주환경 개선 사업 지원 업무를 담당함.

나. 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원 구성방안의 논의

- 지원센터 조직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단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함. 즉 지원센터의 조직은 식품클러스터의 조성 단계와 연동하여 조직의 구성이 달라짐.

〈표 5-6〉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단 계	기간	내 용
초기단계 (I)	2011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부지조성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지원센터는 산단조성업무,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계획 수립 업무,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업무에 중점을 둠
초기단계 (II)	2012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부지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서 지원센터는 산단조성 업무, 클러스터 홍보 및 기업 투자 유치 업무, 그리고 지원 H/W 시설물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운영 계획 수립 업무에 중점을 둠
형성단계	2013~2015년	1단계의 부지조성이 끝나고 H/W 시설을 건설하는 단계로서 H/W 건물 구축 총괄 관리 업무,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전략 업무, 그리고 입주기관을 위한 S/W 사업에 대한 계획안 마련 업무에 중점을 둠
향후 발전단계	2016년 이후	H/W 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단지 내에 마련된 지원센터 건물에 입주하여 본격적인 지원센터의 업무가 시작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 조성된 단지로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됨. 이 단계에서는 입주기업의 본격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사업이 수행됨.

1) 초기단계(I)에서의 지원센터 조직 및 인원 구성방안 ('11년)

- 사업초기단계에는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획 및 구축 추진과 지원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목표로 함.

〈주요활동〉

-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계획 수립
-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
-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홍보 및 투자 유치 전략 수립
- * 6대 H/W 시설 건립 계획 및 운영 로드맵 수립

-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총괄기획, 산단조성, 투자유치, 운영지원 업무 활동이 필요함.

〈표 5-7〉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I)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구 분	업 무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기획·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업무 • 지원센터 총괄전략 및 중기 경영계획 수립 지원 업무 • H/W 시설물 세부 운영 로드맵 수립 • 지원센터의 총무, 인사, 회계, 정보와 관련된 행정업무 수행 • 이사장 또는 지원센터장의 업무수행 지원

구분	업무
산단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 친환경 기반시설(폐수·폐기물처리시설 등) 구축방안 마련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기업유치 인센티브 발굴 및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 수립 •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 역할에 따른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8〉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Ⅰ)에 따른 지원센터 조직구성 대안

대안	농식품부	지원센터
1안	총괄기획, 투자유치, 산단조성	운영지원
2안	총괄기획	산단조성, 투자유치, 운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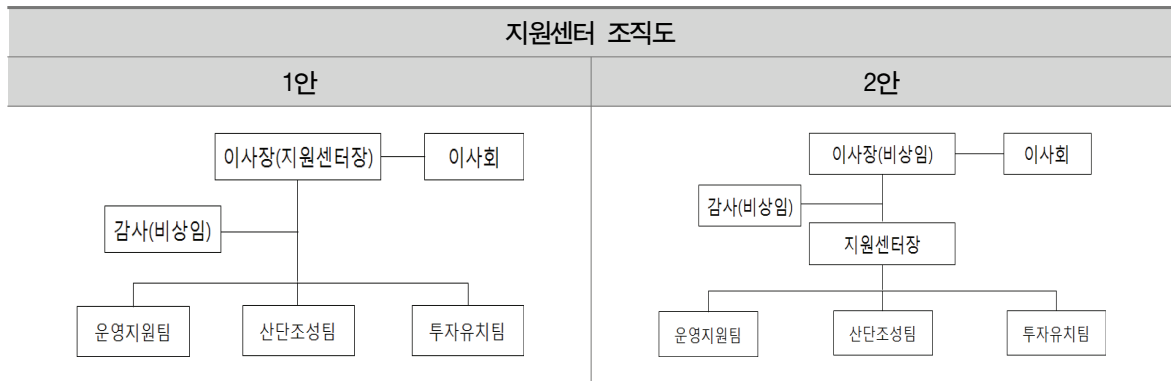
○ 대안에 따른 장·단점 비교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9〉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Ⅰ) 조직구성 대안 장단점 비교

대안	장점	단점
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연계성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 • 업무의 책임성 확보가 용이 • 정부부처간의 조정용이 • 총괄기획팀하고 다른 팀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일관된 사업 추진과 팀 간의 신속한 업무 조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으로 인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계획과 추진의 가능성 증가 • 기업이 원하는 때에 적절한 행정력 지원되지 못할 가능성 잠재 •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한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부족 발생 가능 • 조직의 관료화로 인한 효율성과 생산성 감소 문제 발생 가능 • 지원센터 운영의 조기 안정 어려움 • 지원센터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의 어려움
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기능을 가진 팀이 한 장소에 있음으로 인해 각 부문 간 일체감을 공유시켜 클러스터 사업의 시너지 효과 발생 • 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함 • 추진단에서 이미 함께 일한 경험으로 인해 팀워크 효과 극대화 가능 • 추진단에서의 유사 사업 경험 및 전문성 활용으로 인해 지원센터의 조기 안정화 가능 • 현장 상황의 신속한 대처 가능 • 현장 업무 실무자의 의견을 토대로 한 사업 연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기획을 담당하는 본부와 지리적으로 떨어진집으로 인해 유기적인 사업추진의 어려움 발생 가능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원센터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적 사업 수행의 어려움 증가 • 사업 추진의 명확한 책임성 규명이 어렵고, 기관의 이익이 우선할 가능성이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원센터 운영의 조기 안정화 등의 이유로 **제2안의 조직형태가 바람직함.**
- 2안의 조직형태로 할 경우, 조직구성에 있어서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여 실질적인 지원센터의 총괄 업무를 관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그 아래 지원센터장을 두어 지원센터장이 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총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표 5-10〉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I)에서 지원센터 조직도 대안



〈표 5-11〉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I) 지원센터 조직도 대안의 장·단점

	장점	단점
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장이 지원센터의 수장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한 책임 있는 경영과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장을 상근으로 할 경우 인건비 부담 발생 - 지원센터 조직의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명망 있는 이사장 영입이 어려움 - 내부건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 감소 - 전문성이 높은 지원센터장의 영입을 통해 효과적인 업무 추진 가능 - 내부건제균형으로 인해 독단적 운영의 폐해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에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 상실의 가능성 - 이사장과 지원센터장의 이원화로 인한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 발생 가능성

- 지원센터의 책임있는 경영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이사회에 대표가 되는 이사장이 지원센터의 수장이 되어 직접 경영하는 것이 이사회에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동시에 책임경영이 가능함.

-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 1안이 바람직한 조직 구성**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향후 지원 센터 업무 규모가 커지면 이사장이 겸임하던 지원센터장을 분리하여 이사장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본부(Headquarters) 조직 현황>

기관명	법인성격	본부 조직	기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단법인	본부장(비상임) → 전무이사(상임)	본부장이 농식품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무이사 임명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재단법인	원장(상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사단법인	원장(상근) → 전무(상근)	
축산물품질평가원	재단법인	원장(상근)	
농림수산물정보센터	재단법인	이사장(비상근) → 사장(상근)	-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임명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서는 농림수산물정보센터 조직도에는 이사장이 빠져 있음.
한국어촌어항협회	사단법인	회장(상근) → 전무이사(상근)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전무이사 임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재단법인	이사장(상근) → 총괄본부장(상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총괄본부장을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 지원센터의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12>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I) 지원센터 인원구성

팀	인원	직급구성
이사장(지원센터장)	1명	이사장 1명
운영지원팀	6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4명
산단조성팀	3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투자유치팀	3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합계	13명	이사장 1명, 책임급 3명, 선임급 3명, 원급 6명

○ 지원센터의 팀별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13〉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 단계(Ⅰ) 지원센터 담당업무 분장

구분	인원	담당업무
운영지원	1 (책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기획·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업무 • 지원센터 총괄전략 및 중기 경영계획 수립 지원 업무 • 지원센터 건립 추진 업무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업무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업무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업무
	1 (선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평가센터 설립 추진 업무 • 품질안전센터 설립 추진 업무 • 패키징센터 설립 추진 업무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보수, 조직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 • 직원복리후생 업무 • 직원, 직무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업무 •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 • 인사기록 관리 및 제 증명 발급 업무 • 인사고과관리 • 직원출장관련 업무 •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업무 • 이사장 또는 지원센터장 지원 업무 • 인사와 관련된 기타 업무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및 서무 일반 업무 • 문서 및 우편물 관리에 관한 업무 •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민원업무 처리 • 자산취득 및 처분 업무 • 지원센터 물품구매 업무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의 비품 및 시설관리 업무 •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업무 • 대내외연락 업무 • 대외기관 협조 업무 • 각 팀의 비용청구업무 • 이사회 지원 업무 • 의전업무 • 지원센터 주관 행사 지원 및 준비 • 그 밖의 지원센터 내의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담당

구분	인원	담당업무
운영지원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 및 세무·회계 관한 업무 • 예산 집행 업무 •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 • 법인 카드 관리 • 결산 업무 • 감사업무 협조 • 원천징수 관련 업무 • 세금신고 업무 • 그 밖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기획 및 정보 보안업무 •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경영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업무 • 전산장비 유지 및 보수 업무 • 지원센터 업무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 • 전산 및 정보와 관련된 기타 업무
산단조성	1 (책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조성의 기획과 조성 로드맵 수립을 위한 지원 업무 • 산단조성 설계 및 허가와 관련된 업무 지원 • 친환경 기반시설 (폐수, 폐기물처리시설 등) 구축방안 마련 • 산단조성 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 지원
	1 (선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조성 사업시행자와 업무 협의 • 전북, 익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산단조성을 위한 협력 업무 추진 • 산단조성과 관련된 중앙부처 협력 업무 추진 • 산단조성과 관련한 법무 지원 업무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형공장 설립 추진 업무 • 파일럿 플랜트 설립 추진 업무 • 산단조성과 관련된 기타 업무
투자유치	1 (책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투자 유치 및 국내 홍보전략 수립 • FOODPOLIS 마케팅 전략 수립 계획 업무 • 국내 유치 대상 기업 리스트 관리 • 기업유치 인센티브 발굴 • 투자협의회 운영
	1 (선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아시아권) 투자 유치 및 해외 홍보전략 수립 • 해외(아시아권) 유치 대상 기업 리스트 관리 • 해외(아시아권)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마련
	1 (선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미주 및 유럽) 투자 유치 및 해외 홍보전략 수립 • 해외(미주 및 유럽) 유치 대상 기업 리스트 관리 • 해외(미주 및 유럽)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마련 • 투자유치 및 홍보와 관련된 기타업무

〈지원센터에 중앙 또는 지자체 공무원 파견에 대한 법적 검토〉

- 클러스터 산단 조성이 조성되는 초창기에, 그리고 지원시설 설립 및 공장이 설립되는 단계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함.
 - 따라서 **지원센터 설립 초창기에는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 파견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무원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의해 파견이 가능함.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에 의해 파견이 가능함.

구분	사유	기간	파견대상기관
1호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	2년 (필요시 1년연장 가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2호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2년 (필요시 1년연장 가능)	국가기관
3호	소관불명 또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	1년 (필요시 1년연장 가능)	국가기관
4호	교육훈련	필요한 기간	교육훈련기관
5호	교수요원	1년 (필요시 1년연장 가능)	교육훈련기관
6호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	필요한 기간	외국의 정부·연구기관 국제기구
7호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단체에서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 관한 자료수집	2년 (필요시 1년연장 가능)	연구기관, 민간기관·단체

- 임용령 제41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의한 파견시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수행(제1호)을 위한 파견 요청시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지원센터는 제1호의 목적을 위해 지원센터장이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공무원 파견을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에 공무원 파견 요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그러나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에 의해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센터에 공무원 파견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임.

2) 초기단계(Ⅱ)에서의 지원센터 조직 및 인원 구성방안 ('12년)

- 초기단계(Ⅱ)에서도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구축과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의 성공적인 유치**를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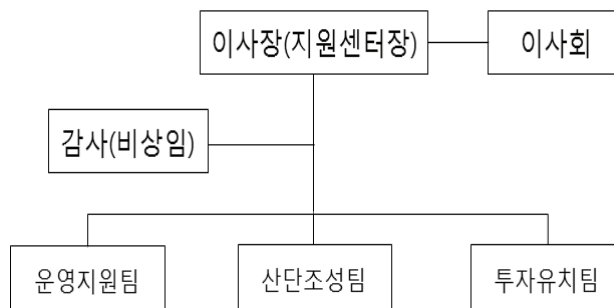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관리 방안 마련 * 6대 H/W 시설물 건립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 국내외 식품 기업 및 연구 기관 대상으로 유치 활동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초기단계(Ⅱ)에서는 **총괄기획, 산단조성, 투자유치, 운영지원** 업무 활동이 필요
*** 총괄기획은 농식품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함.**

〈표 5-14〉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단계(Ⅱ)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구 분	업 무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기획·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업무 • 지원센터 총괄전략 및 장기 경영계획 수립 지원 업무 • 6대 H/W 시설물 건립을 위한 사전 업무 활동 • 지원센터의 총무, 인사, 재무, 정보와 관련된 행정업무 수행 • 이사장 또는 지원센터장의 업무수행 지원
산단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관리 방안 마련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투자유치 활동 •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 초기단계(Ⅱ)의 지원센터 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5-5]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단계(Ⅱ)에서 지원센터 조직도

○ 지원센터의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15〉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단계(Ⅱ)에 따른 지원센터의 인원구성

팀	인원	직급구성
이사장(지원센터장)	1명	이사장 1명
운영지원팀	6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4명
산단조성팀	4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2명
투자유치팀	3명	책임급 1명, 선임급 2명
합계	14명	이사장 1명, 책임급 3명, 선임급 4명, 원급 6명

○ 지원센터의 팀별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16〉 국가식품클러스터 초기단계(Ⅱ)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분장

구분	인원	담당업무
운영지원	1 (책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기획·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업무 지원센터 총괄전략 및 장기 경영계획 수립 지원 업무 H/W 시설물 사업시행자와 설계지침 협의 지원 지원센터 건립 추진 업무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 업무
	1 (선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성평가센터 건립 추진 업무 품질안전센터 건립 추진 업무 패키징센터 건립 추진 업무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보수, 조직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 직원복리후생 업무 직원, 직무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업무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 인사기록 관리 및 제 증명 발급 업무 인사고과관리 직원출장관련 업무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업무 이사장 또는 지원센터장 지원 업무 인사와 관련된 기타 업무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 및 서무 일반 업무 문서 및 우편물 관리에 관한 업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민원업무 처리 자산취득 및 처분 업무 지원센터 물품구매 업무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업무 지원센터의 비품 및 시설관리 업무 대내외연락 업무

구분	인원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기관 협조 업무 • 이사회 지원 업무 • 의전업무 • 지원센터 주관 행사 지원 및 준비 • H/W 시설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서류 준비 • 그 밖의 지원센터 내의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담당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 및 세무·회계 관한 업무 • 예산 집행 업무 •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 • 법인 카드 관리 • 결산 업무 • 감사업무 협조 • 원천징수 관련 업무 • 세금신고 업무 • 그 밖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기획 및 정보 보안업무 •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경영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업무 • 전산장비 유지 및 보수 업무 • 지원센터 업무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 • 전산 및 정보와 관련된 기타 업무
산단조성	1 (책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조성 관련 업무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관리 방안 마련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입주기업 승인 요건 마련 • 단지 내 유치 업종, 주요 전략업종 결정
	1 (선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조성 사업시행자와 업무 협의 • 전북, 익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산단조성을 위한 협력 업무 추진 • 산단조성과 관련된 중앙부처 협력 업무 추진 • 공장설립 지원업무 계획 수립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조성 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 • 산단조성과 관련한 법무 지원 업무 • 단지 분양과 관련한 업무 지원 • 산단조성과 관련한 기타 업무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형공장 건립 추진 업무 • 파일럿 플랜트 건립 추진 업무 • 산단조성 관련 기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국내 유치 대상 기업 리스트 관리 • 국내 식품기업 투자유치 활동 • 국내 식품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기업유치 인센티브 발굴 • 식품클러스터 홍보물 제작 및 언론 홍보 활동 • 투자상담 • 투자협의회 운영
투자유치	1 (책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미국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유럽, 미국권 유치 대상 기업 리스트 관리 • 유럽, 미국권 식품기업 투자유치 활동
	1 (선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미국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유럽, 미국권 유치 대상 기업 리스트 관리 • 유럽, 미국권 식품기업 투자유치 활동

구분	인원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미국권 식품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유럽, 미국권 대상 식품클러스터 홍보물 제작 및 언론 홍보 활동 • 해외투자자문관, 투자에이전시 운영·관리 • 해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마련 •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1 (선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아시아권 유치 대상 기업 리스트 관리 •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식품기업 투자유치 활동 • 아시아권 식품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아시아권 대상 식품클러스터 홍보물 제작 및 언론 홍보 활동 • 투자유치 및 홍보와 관련된 기타업무

3) 형성단계에서의 지원센터 조직 및 인원 구성방안 ('13~'15년)

- 형성단계에서도 **H/W 지원시설의 성공적 건립,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의 성공적인 유치, 그리고 기업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목표로 함.
- 형성단계에서는 총괄기획, 행정지원, 마케팅지원, 사업지원, 연구지원 업무 활동이 필요함.
- * 총괄기획은 농식품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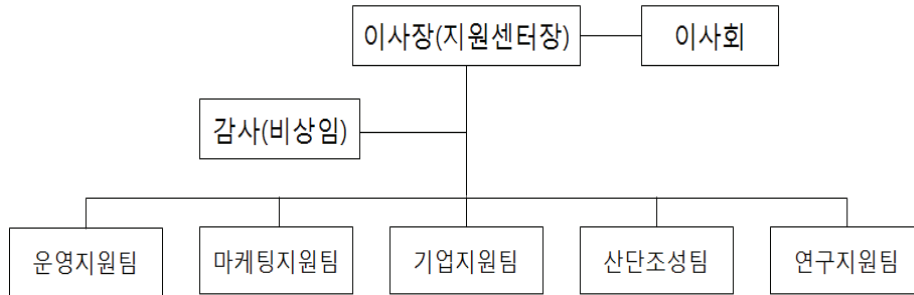
〈주요활동〉

- * H/W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및 건물 구축 과정 총괄
-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관리
- * 국내외 식품 기업 및 연구 기관 대상으로 유치 활동
- * 기업지원 S/W 사업 방안 마련

〈표 5-17〉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구분	업무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의 총무, 인사, 재무, 정보와 관련된 행정업무 수행 • 이사장 또는 지원센터장의 업무수행 지원
마케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투자유치 활동 •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정책 개발 지원 업무 • 기업지원 S/W 사업 방안 마련
산단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W 시설 건물 구축 총괄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관리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센터 지원 업무 방안 마련

○ 형성단계에서 지원센터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5-6]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조직도성

○ 지원센터의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18>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인원구성

팀	인원	직급구성
이사장(지원센터장)	1명	이사장 1명
운영지원팀	4명	선임급 1명, 원급 3명
마케팅지원팀	3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기업지원팀	3명	책임급 1명, 원급 2명
산단조성팀	4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2명
연구지원원팀	3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합계	18명	이사장 1명, 책임급 4명, 선임급 4명, 원급 9명

○ 지원센터의 팀별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19>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성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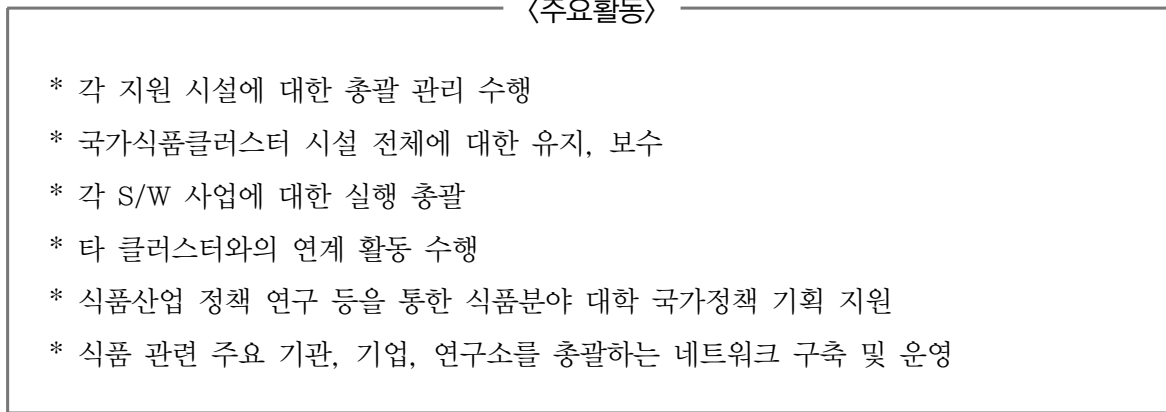
구분	인원	담당업무
운영지원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보수, 조직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 • 직원복지후생 업무 • 직원, 직무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업무 •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 • 인사기록 관리 및 제 증명 발급 업무 • 인사고과관리 • 직원 출장관련 업무 •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업무 • 이사장 또는 지원센터장 지원 업무 • 인사와 관련된 기타 업무

구분	인원	담당업무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및 서무 일반 업무 • 문서 및 우편물 관리에 관한 업무 •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민원업무 처리 • 자산취득 및 처분 업무 • 지원센터 물품구매 업무 •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업무 • 지원센터의 비품 및 시설관리 업무 • 대내외연락 업무 • 대외기관 협조 업무 • 이사회 지원 업무 • 의전업무 • 지원센터 주관 행사 지원 및 준비 • H/W 시설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서류 준비 • 그 밖의 지원센터 내의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담당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 및 세무·회계 관한 업무 • 예산 집행 업무 •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 • 법인 카드 관리 • 결산 업무 • 감사업무 협조 • 원천징수 관련 업무 • 세금신고 업무 • 그 밖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기획 및 정보 보안업무 •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경영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업무 • 전산장비 유지 및 보수 업무 • 지원센터 업무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 • 전산 및 정보와 관련된 기타 업무
연구지원	1 (책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평가센터 운영 방안 마련 업무 •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 방안 마련
	1 (선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안전센터 운영 방안 마련 업무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키징센터 운영 방안 마련 • 연구지원 관련된 기타 업무
산단조성	1 (책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관리 총괄 업무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입주기업 승인 심사 • 6대 H/W 시설 건축 총괄 업무 • 지원센터 건축 총괄
	2 (선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조성 사업시행자와 업무 협의 • 전복, 익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산단관리를 위한 협력 업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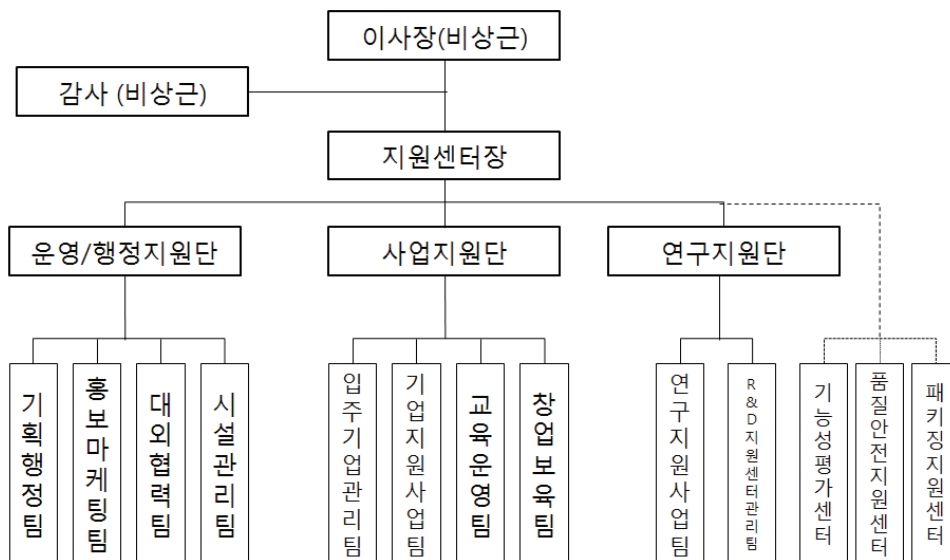
구분	인원	담당업무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관리와 관련된 중앙부처 협력 업무 추진 • 공장설립 지원업무 • 기능성센터 건축 총괄 업무 • 품질안전센터 건축 총괄업무 • 패키징센터 건축 총괄업무 • 클러스터 입주와 관련한 기타 업무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분양과 관련한 업무 지원 • 임대형 가공공장 건축 총괄 업무 • 파일럿 플랜트 건축총괄 업무 • H/W 시설 건축과 관련한 기타 업무
기업지원	1 (책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정책 개발 지원 업무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 업무 •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원료공급, 수출 지원 방안 마련 • 기업지원 S/W 사업 방안 마련 총괄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인적자원사업 방안 마련 • 네트워크 사업 방안 마련
	1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지원사업 방안 마련 • 임대형가공공장 운영 방안 마련 • 파일럿 플랜트 운영 방안 마련
마케팅지원	1 (책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국내 유치 대상 기업 리스트 관리 • 국내 식품기업 투자유치 활동 • 국내 식품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기업유치 인센티브 발굴 • 식품클러스터 홍보물 제작 및 언론 홍보 활동 • 투자상담 • 투자협의회 운영
	1 (선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미국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유럽, 미국권 유치 대상 기업 리스트 관리 • 유럽, 미국권 식품기업 투자유치 활동 • 유럽, 미국권 식품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유럽, 미국권 대상 식품클러스터 홍보물 제작 및 언론 홍보 활동 • 해외투자자문관, 투자에이전시 운영·관리 • 해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마련 • 해외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1 (선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아시아권 유치 대상 기업 리스트 관리 •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식품기업 투자유치 활동 • 아시아권 식품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아시아권 대상 식품클러스터 홍보물 제작 및 언론 홍보 활동 • 투자유치 및 홍보와 관련된 기타업무

4) 향후 발전단계에서의 지원센터 조직 및 인원 구성방안 ('16년~'20년)

- 향후 발전단계에서는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정화 및 성공적인 운영과 식품분야 네트워킹 구축 및 운영 총괄**을 목표로 함.



- 향후 발전단계에서는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크게 운영/행정지원단, 사업지원단, 연구지원단을 두고, 각 단 아래 팀을 두어 팀체제의 조직을 구성함.
- 향후 발전단계에서 지원센터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5-7] 국가식품클러스터 향후 발전단계에서 지원센터 조직도

〈표 5-20〉 국가식품클러스터 향후 발전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분장

본부	팀	목표	역할
운영/행정지원단	기획 행정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안정적 운영 및 지원센터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센터의 기획, 총무, 인사, 재무, 정보와 관련된 행정 업무 수행 지원센터의 총괄 전략 및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이사장의 업무지원 수행
	홍보마케팅팀	기업/연구소의 성공적인 유치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브랜드가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브랜드 관리 및 홍보활동 수행 기업 및 연구소 대상 입주 유치 활동 각종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지원센터 관련 행사 주관
	대외협력팀	국내외 각종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MOU 체결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MOU 체결 지역 농업 및 식품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각종 교류협력 사업 수행
사업지원단	시설관리팀	국가식품클러스터 각종 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원활한 클러스터 기능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하드웨어 시설의 관리, 감독 및 유지 보수 총괄
	입주기업관리팀	업체들의 클러스터 입주과정의 신속함과 편리성 제공 및 사업개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와 관련된 각종 행정 지원서비스 제공 입주 업체 문의 및 상담 요청 사항 대응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지원
사업지원단	기업지원사업팀	각종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케팅지원서비스 및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수행 입주기업의 경영컨설팅 비용지원 사업, 기업 간 협력 강화 사업 수행 임대형 가공공장 및 파일럿플랜트 운영 및 관리 총괄
	교육운영팀	식품인적자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인적자원개발사업의 총괄 각종 교육프로그램 기획 강사 섭외 및 교육생 모집 교육네트워크 구축 사업 총괄
	창업보육팀	성공적인 식품창업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관련 정보제공,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연구지원단	연구지원사업팀	각 연구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업체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R&D 수요 조사 입주업체에 대한 개발기술 이전 활성화 촉진 식품특화기술개발 사업 추진
	R&D지원센터 관리팀	3대 R&D지원센터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의 효과적인 업무공저 체계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R&D 지원센터의 정부출연금 관리 각 R&D 지원센터 간 업무 조율 각 R&D 지원센터 지원 및 연계업무 수행

○ 지원센터의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21〉 국가식품클러스터 향후 발전 단계에 따른 지원센터의 인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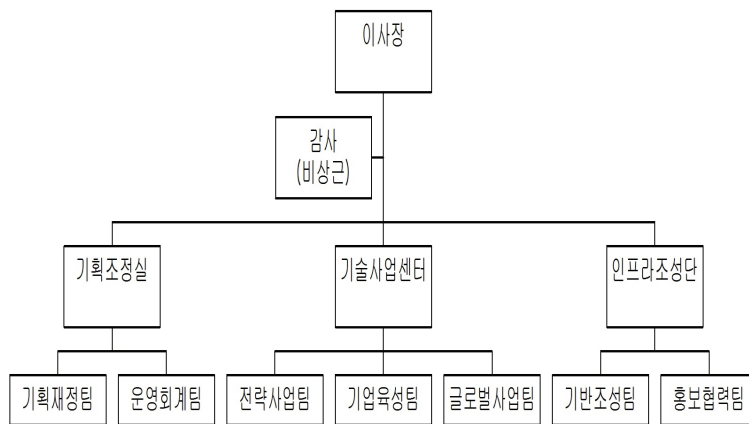
본부	팀	인원(명)	직급구성
이사장		1	이사장 (비상근)
지원센터장		1	지원센터장
운영/행정지원단	기획행정팀	4	선임급 1명, 원급 3명
	홍보마케팅팀	3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대외협력팀	3	선임급 1명, 원급 2명
사업지원단	시설관리팀	3	선임급 1명, 원급 2명
	입주기업관리팀	2	선임급 1명, 원급 1명
	기업지원사업팀	4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2명
	교육운영팀	3	선임급 1명, 원급 2명
	창업보육팀	2	선임급 1명, 원급 1명
연구지원단	연구지원사업팀	3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R&D지원센터 관리팀	2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합계		31명	이사장 1명, 지원센터장 1명, 책임급 4명, 선임급 10명, 원급 15명

주 : 기획행정팀장이 운영/행정지원단장 겸임. 기업지원사업팀장이 사업지원단장 겸임. 연구지원사업팀장이 연구지원단장 겸임.

〈참고 자료〉 유사 기관의 조직 구성 사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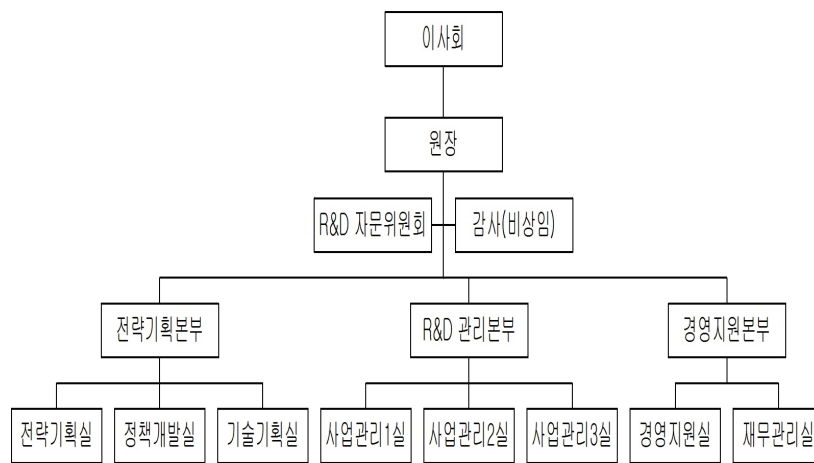
○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분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구관리분부의 조직을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지원센터 조직의 큰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본부 조직 구성〉



-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본부의 조직도를 통해 특구의 관리와 기업의 기술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예상되는 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가 식품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의 지원업무임. 따라서, 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조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는 R&D 관리 본부를 두어 R&D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지원센터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본부 또는 지원팀을 둬으로써 식품기술관련 지원업무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조직 구성〉



3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보수체계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보수체계 근거

- 공공기관의 정관 및 임원의 인사, 경영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기관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존재하고 있지 않음.
-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 임의적으로 결정짓기보다는 유사한 법률이나 규정 또는 유사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보수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나. 공공기관의 보수 현황

- 공공기관의 기관장 연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22〉 2009년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

(단위: 백만원)

전체평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40	167	136	137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http://www.alio.go.kr/>

- 2009년 공공기관장의 전체 평균연봉은 1억 4천만 원이며, 그 중에서도 공기업의 기관장 연봉이 1억 6,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1억 3,700만원,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1억 3,600만원의 평균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23〉 2009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

(단위 : 만원)

전체평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5,900	6,000	5,600	6,100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http://www.alio.go.kr/>

- 2009년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는 5,900만원이며, 그 중에서도 기타공공기관의 직원 보수가 6,1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기업의 직원은 6,000만원,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5,600만원의 평균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보수 체계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보수체계는 연봉제 방식과 연봉제와 호봉제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연봉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회계기간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봉계약 기간 동안 당해 임·직원이 받는 임금 총액으로서 기본연봉·성과연봉·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함.
- 이때 성과연봉은 개인성과급으로서 개인의 근무성적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임.

- 부가급여는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말함.
- 연봉제는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통해 일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우수 인재 확보가 용이하며 임금체계 및 지급구조 단순화를 통해 임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적 자원의 낭비를 줄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개인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법 개발의 어려움이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의 시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연봉이 삭감될 경우 근무에 대한 사기 저하가 발생하여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직원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조직을 침체시킬 수 있음.
- 호봉제를 할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보수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아지거나 능력 있는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 **이러한 연봉제가 가지는 장점과 함께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현재 농식품부 산하 9개 공공기관 중에서 6개 기관이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6급 이상의 직원은 연봉제를 7급 이하의 직원은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음.
-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대상 직위별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적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차등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장의 경우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성과급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

〈표 5-24〉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현황

기관명	기관성격	보수 체계
기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타공공기관	호봉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타공공기관	연봉제
농수산물유통공사	준정부기관	연봉제(6급 이상 직원), 호봉제(7급 이하 직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기타공공기관	연봉제
축산물품질평가원	준정부기관	연봉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기타공공기관	연봉제
한국농어촌공사	준정부기관	연봉제
한국마사회	공기업	연봉제(임원), 호봉제(직원)
한국어촌어항협회	기타공공기관	연봉제

자료 : 전계서

■ 연봉제 운영

- 연봉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법정 수당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직급을 반영하여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함.
 -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기본연봉을 기본으로 차등 지급하는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과 개인 인센티브성과급을 말함.
 - * 성과연봉은 상여금에 개념으로 다음 년도 기본 연봉에 누적되어 계상되지 않음.
 - 법정수당은 급여 중에서 연봉 이외 근로기준법 및 기타 법령이 인정하는 수당과 부담금을 말함.

■ 기본연봉

- **기관장의 기본연봉 책정** (상근일 경우에 한함)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을 결정하도록 함.
 - *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 보고서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차관) 연봉과 연계하여 기관장의 연봉을 확정하도록 지침을 내림.

* 2010년 농림수산물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 기관장의 평균 기본연봉이 101,088천원임. 그리고 9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기관장 보수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원센터 기관장 연봉을 정무직 공무원 연봉 수준인 107,542천원으로 제안함.**

-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 후생비를 포함하도록 함.
- 기본가산급의 인상율은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하되 $\pm 10\%$ 내에서 인상율을 설정하도록 함.
 - * 기본가산급 :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률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함.
-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함.
 - * 누적방식 : 당해연도 기본연봉 = (전년도 기본연봉 + 기본가산급) \times (1 +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율)

예를 들어 전년도의 기본연봉이 5천만원이었고, 기본가산급 인상률이 10%,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율이 20% 였다고 하면, 당해연도 기본연봉은 어떻게 되는가? $(5,000만원 + 5,000만원 \times 10\%) \times (1 + 0.2) = 5,610만원$

- 기관장의 기본연봉 책정 (비상근일 경우)
 - 비상근 기관장의 연봉 책정방식은 상근 기관장의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초기 연봉액을 상근일 때 보다 낮게 책정함.
 - * 가축위생지원본부의 경우 본부장(이사장)이 비상근이지만 고정수당의 형태로 연 48,000천원이 지급되고 있음.
 - 가축위생지원본부의 사례를 근거로 지원센터의 기관장이 비상근일 경우 초기 연봉액을 48,000천원에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함.
- 지원센터장의 기본연봉 책정 (비상근 이사장이 있을 경우)
 - 상근기관장의 기본연봉 책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함.
 - 지원센터장의 기본연봉은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전무이사 또는 총괄본부장의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함.

*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전무이사의 평균 기본연봉이 81,987천원임. 따라서 지원센터장의 기본연봉을 82,000천원에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함.

〈표 5-25〉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전무이사의 연봉현황 (2010년)

기관	직위	기본연봉(천원)	수당(천원)	합계(천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무이사	67,476	9,999	77,475
축산물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원	전무	67,122	22,234	89,356
한국어촌어항협회	전무이사	96,348	-	96,34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	97,000	-	97,000
평균		81,987		90,045

주1 : 연봉은 2010년 기준

주2 : 수당은 실적수당을 제외한 고정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 : 전계서

○ **직원의 기본연봉 책정**

- 신규 임용된 직원의 최초 연봉은 직급별 연봉기준표에 따라 상한 연봉액과 하한 연봉액 사이에서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직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업무성과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정식**에 의해 연봉을 조정함.

- 지원센터의 직급별 연봉 기준표²⁰⁾는 아래와 같음.

〈표 5-26〉 직급별 기본연봉 기준표

직급	상한(천원)	하한(천원)
수석급	88,572	69,433
책임급	74,990	57,630
선임급	62,386	44,307
원급	42,900	27,800

- 기본연봉 = 전년도 기본연봉 + 기본연봉누적계수 × 기본연봉인상율

* 기본연봉누적계수 = 전년도 기본연봉 × 성과포인트

* 기본연봉인상률 = 기본연봉인상재원 ÷ 기본연봉누적계수의 합

- 평가등급 및 배분 : 인사규정상의 근평등급 및 인원배분을 기준으로 배분

〈표 5-27〉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성과포인트 예시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성과포인트	1.2	1.1	1.0	0.9	0.8

〈기본연봉 계산 예시〉

전년도에 5명의 직원이 각각 3,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올해 연봉인상재원이 1,500만원이라고 하면 각각의 기본 연봉은 얼마가 되는가?

(단위: 만원)

구분	전년도 연봉 (①)	성과평가 등급	성과 포인트(②)	기본연봉 누적계수 (③=①×②)	당해년도 기본연봉 (①+③×④)
갑	3,000	S	1.2	3,600	3,360
을	3,000	A	1.1	3,300	3,330
병	3,000	B	1.0	3,000	3,300
정	3,000	C	0.9	2,700	3,270
무	3,000	D	0.8	2,400	3,240
합계	15,000			15,000	16,500

※ 기본연봉인상률 = 기본연봉인상재원 ÷ 기본연봉누적계수의 합 = 1,500 ÷ 15,000 = 0.1 (④)

20) 지원센터와 유사한 직급체계를 가진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의 연봉 기준을 근거로 하여 작성함.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직급 기준〉

- 직원에 대한 연봉 책정을 위해서 먼저 직급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기관에 따라 직급 기준이 다르지만, 지원센터와 사업이 유사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직급기준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직급기준을 벤치마킹함.

직급	자 격 기 준
수석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사장이 정하는 당해분야 인정기준의 업무 경력을 17년 이상 보유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사장이 정하는 당해분야 인정기준의 업무 경력을 15년 이상 보유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사장이 정하는 당해분야 인정기준의 업무 경력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책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사장이 정하는 당해분야 인정기준의 업무 경력을 12년 이상 보유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사장이 정하는 당해분야 인정기준의 업무 경력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사장이 정하는 당해분야 인정기준의 업무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사장이 정하는 당해분야 인정기준의 업무 경력을 7년 이상 보유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사장이 정하는 당해분야 인정기준의 업무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사장이 정하는 당해분야 인정기준의 업무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한 자 • 석사학위를 보유한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성과연봉

-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급기준액 : 연봉월액 (기본연봉액/12)
 - 평가방법: 농식품부 장관의 책임 하에 자체 평가를 통해 성과급 지급을 결정
 - 집행방법 : 경영성과계약 및 업무평가에 따른 등급별 성과급 지급율(450~0%)을 기준으로 지급
 - 성과연봉 지급액=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율

〈표 5-28〉 기관장 성과 지급률 예시

경영평가등급		우수	보통	미흡
지급율	상한	450%	300%	150%
	하한	300%	150%	0%

자료 : 최길수, 지방공기업보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09.

- 개인 인센티브성과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급기준액 : 연봉월액 (기본연봉액/12)
 - 집행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총지급한도 : 개인별 연봉월액 총액 × 경영평가결과 지급률(300~0%)
 - 지급률 : 근무성적에 따라 5개 등급 이상 차등화 하여 개인별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 하되, 최고와 최저 등급 간 50%이상 격차 유지
 -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당해연도 경영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 성과연봉 지급액=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율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율 예시>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지급율	300%	200%	100%	50%	0%

■ 법정수당

-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속인적(屬人的)급여와 비속인적급여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부가급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수당은 직무수당, 보직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기술(자격)수당 등 임.

<참고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봉외 지급기준

구 분	지급액	지급기준
가족수당 (매월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40,000원 • 배우자의 부양가족 : 20,000원 ※ 셋째자녀부터는 10,000원 추가지급 	<p>〈배우자의 부양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 함 - 부양가족의 범위 • 만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만20세 미만의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나이제한 없음) ※ 장애의 정도 기준 :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구 분	지급액	지급기준
자녀학비 보조수당 (분기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 • 육성회비 또는 학교 운영지원비 ※ 입학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자 -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 지급 ※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액 또는 면제되는 경우 잔여액만 지급
중식보조비 (매월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매월지급)	- 시간외근무시간 계산방법, 인정시간,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지침으로 정함	
연차수당 (12월말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일액 × 미사용 연차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
직책수당 (매월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 500,000원 • 실, 팀(센터)장 3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제규정상 일정한 직위에 보직된 자 (직무대리 포함)
능력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00원/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능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기타 법률이 인정하는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준

4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예산

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추정 소요 예산

〈표 5-29〉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추정 소요 예산

단위: 억 원

사업명	분류	예산지출내역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센터 구축비	토지보상비	-	-	19.5	-	-	19.5	m2 당 15만원, 13,000m2
	설계 시공비	-	-	7.0	90.0	88.1	185.1	설계비 7억 공사비 합: 178.1억원
운영비	인건비	8.5	9.6	11.4	11.9	12.3	53.7	평균 5천~7천만원
	기타 운영비	3.4	8.4	11.8	12.6	14.2	50.4	임대료, 사무가구 구입비, 기업유치활동비 등
합계		11.9	17.4	49.7	114.5	114.7	308.7	

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인건비 예산

■ 2011년 인건비 추정

직급	인원수 (명)	1인당 기본연봉액 (천원)	1인당 법정수당 (천원)	(A) 임금 합계 (천원)	(B) 퇴직적립금 (천원)	(C) 4대보험료 (지원센터 부담금) (천원)	인건비 (천원) (A+B+C)
이사장	1	82,000	9,840	91,840	6,833	7,428	106,101
책임급	3	66,310	7,957	222,802	16,578	18,000	257,380
선임급	3	53,347	6,402	179,246	13,337	14,508	207,091
원급	6	35,350	4,242	237,552	17,675	19,224	274,451
합계	13	237,007	28,441	731,440	54,423	59,160	845,023

- 1인당 기본연봉액은 직급별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중간액에서 결정하도록 함.
- 1인당 법정수당은 농식품부 산하기관의 평균 법정수당액을 감안하여 기본 연봉액의 12%를 법정수당으로 결정함.
- 퇴직금은 기본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함.
- 4대 보험료는 법에 의해 지원센터가 부담하는 보험액으로 산정함.

■ 2012년 인건비 추정

직급	인원 (명)	1인당 기본 연봉액 (천원)	1인당 법정수당 (천원)	(A) 임금 합계 (천원)	(B) 퇴직 적립금 (천원)	(C) 4대보험료 (지원센터 부담금) (천원)	인건비 (천원) (A+B+C)
이사장	1	86,100	10,332	96,432	7,175	7,800	111,407
책임급	3	69,626	8,355	233,942	17,406	18,930	270,278
선임급	3	56,104	6,722	188,208	14,004	15,228	217,440
선임급*	1	53,346	6,402	59,748	4,446	4,836	69,030
원급	6	37,118	4,454	249,430	18,559	20,160	288,149
합계	14	392,204	36,264	827,759	61,589	66,960	956,304

* 2012년에 고용

- 전년대비 5%의 임금 상승을 가정함.

■ 2013년 인건비 추정

직급	인원수 (명)	1인당 기본연봉액 (천원)	1인당 법정수당 (천원)	(A)임금 합계(천원)	(B)퇴직 적립금(천원)	(C)4대보험료 (지원센터 부담금) (천원)	인건비 (천원) (A+B+C)
이사장	1	82,000	8,200	90,200	6,833	7,428	104,461
책임급	3	71,714	7,171	236,656	17,929	19,476	274,061
책임급*	1	57,630	5,763	63,393	4,803	5,220	73,416
선임급	3	57,695	5,770	190,394	14,424	15,660	220,478
선임급**	1	54,946	5,495	60,441	4,579	4,968	69,988
원급	6	38,231	3,823	252,325	19,116	20,808	292,249
원급*	3	27,800	2,780	91,740	6,950	7,560	106,250
합계	18	390,016	39,002	985,148	74,632	81,120	1,140,903

* 2013년에 고용 ** 2012년에 고용

- 전년대비 4%의 임금 상승을 가정함.
- 2013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직급별 연봉 하한액으로 함.
- 법정수당은 기본연봉의 10%로 가정함.
- 이사장(지원센터장)은 새로 취임함.

■ 2014년 인건비 추정

직급	인원수 (명)	1인당 기본연봉액 (천원)	1인당 법정수당 (천원)	(A) 임금 합계 (천원)	(B) 퇴직적립금 (천원)	(C)4대보험료 (지원센터 부담금)(천원)	인건비 (천원) (A+B+C)
이사장	1	85,280	8,528	93,808	7,107	7,728	108,643
책임급	3	74,583	7,458	246,122	18,646	20,268	285,036
책임급*	1	59,935	5,994	65,929	4,995	5,436	76,360
선임급	3	60,003	6,000	198,009	15,001	16,308	229,318
선임급**	1	57,144	5,714	62,858	4,762	5,172	72,792
원급	6	39,760	3,976	262,418	19,880	21,600	303,898
원급*	3	28,912	2,891	95,410	7,228	7,848	110,486
합계	18	405,617	40,562	1,024,554	77,618	84,360	1,186,532

* 2013년에 고용 ** 2012년에 고용

- 전년대비 4%의 임금 상승을 가정함.
- 법정수당은 기본연봉의 10%로 가정함.

■ 2015년 인건비 추정

직급	인원수 (명)	1인당 기본연봉액 (천원)	1인당 법정수당 (천원)	(A) 임금 합계 (천원)	(B) 퇴직적립금 (천원)	(C)4대보험료 (지원센터 부담금)(천원)	인건비 (천원) (A+B+C)
이사장	1	88,691	8,869	97,560	7,391	8,040	112,991
책임급	3	77,566	7,757	255,967	19,391	21,096	296,454
책임급*	1	62,333	6,233	68,566	5,194	5,652	79,412
선임급	3	62,403	6,240	205,930	15,601	16,956	238,487
선임급**	1	59,430	5,943	65,373	4,952	5,376	75,701
원급	6	41,351	4,135	272,914	20,675	22,464	316,053
원급*	3	30,068	3,007	99,226	7,517	8,172	114,915
합계	18	421,841	42,184	1,065,536	80,722	87,756	1,234,013

* 2013년에 고용 ** 2012년에 고용

- 전년대비 4%의 임금 상승을 가정함.
- 법정수당은 기본연봉의 10%로 가정함.

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경상 운영비 예산

■ 연도별 기타 운영비 추정 소요예산

- 연도별 기타 운영비 추정 소요예산은 AT Kearney(2009)가 제시한 센터 운영비 총액에서 세부적으로는 자산취득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여비로 구성됨.

계정과목	2011 (백만 원)	2012 (백만 원)	2013 (백만 원)	2014 (백만 원)	2015 (백만 원)	계(백만 원)
자산취득비	54.4	134.4	188.8	201.6	227.2	806.4
운영비	2,672.4	6,602.4	9,274.8	9,903.6	11,161.2	39,614.4
업무추진비	244.8	604.8	849.6	907.2	1,022.4	3,628.8
직무수행경비	190.4	470.4	660.8	705.6	795.2	2,822.4
여비	238.0	588.0	826.0	882.0	994.0	3,528.0
합계	3,400.0	8,400.0	11,800.0	12,600.0	14,200.0	50,400.0

* 계정과목은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 참조

■ 과목별 세부 내역

계정과목	세부 내역
자산취득비	차량, 운반구 및 공구, 기구 비품, 사무 가구 및 집기(PC, 프린터 등)
운영비	일반수용비(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 수선비, 광고료 및 광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위탁사업비(청소 용역, 장비유지관리), 기타 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정례회의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행사 경비 등), 업무비(업무협의, 간담회, 체육대회 등)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여비	국내 여비, 해외 여비

* 계정과목은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 참조

VI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방안 : 3대 R&D 센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1.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3대 R&D 센터와의 관계
2. Pilot Plant, 임대형공장의 운영방안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의 운영 방안
3. 산학연 협의회 구축 및 운영 방안

1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3대 R&D 센터와의 관계

가. 논의의 배경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3대 R&D 센터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3대 R&D 센터가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함과 동시에 최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상호 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임.
- 그래서 3대 R&D 센터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부속 연구기관의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자는 논의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별도로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설립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조직체계의 차이는 R&D 센터 역할과 기능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센터의 부설 R&D 기관 형태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음.
 - * **강한관계** : 이사장(지원센터장)이 각 R&D센터 소장에 대한 임명권과 R&D 센터의 인사권과 예산권·재정권을 가지고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통제하는 관계 (R&D 센터가 지원센터의 하나의 부서로 편입된 형태)
 - * **느슨한 관계** : 이사장(지원센터장)이 각 R&D센터 소장에 대한 임명권과 R&D 센터의 예산권을 가지되, 각 R&D 센터의 인사권과 재정권은 각 R&D센터 소장이 가지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 * **독립관계** : 이사장(지원센터장)이 R&D센터 소장에 대한 임명권, R&D 센터의 인사권, 예산권·재정권을 갖지 않고 지원센터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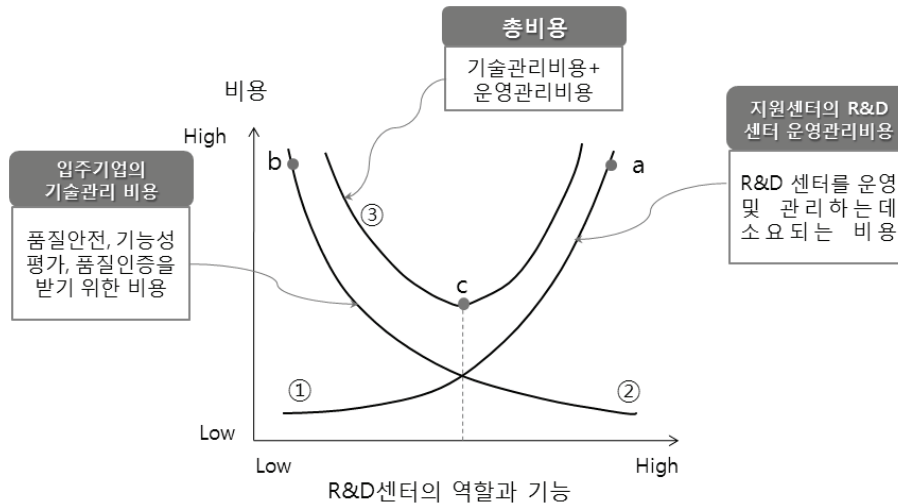
〈표 6-1〉 지원센터의 부설 R&D기관 형태로 관계 설정

구 분	R&D 센터장의 임명권	R&D 센터의			
		예산권	인사권	재정권	사업권
강한관계	○	○	○	○	○
느슨한 관계	○	○	X	X	X
독립관계	X	X	X	X	X

주 : ○(지원센터가 가짐), X(R&D센터가 가짐)

나. 3대 R&D 센터와의 관계

- 지원센터와 R&D센터와의 관계는 지원센터의 R&D센터 기능과 역할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R&D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지원센터는 R&D센터의 운영·관리비가 높아지게 됨.
 - 반대로 R&D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지원센터는 R&D센터의 운영·관리비가 낮아지게 됨.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R&D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품질안전관리, 기능성 평가, 품질인증 등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술관리비용이 낮아지게 됨.
 - 반대로 R&D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의 범위가 좁을수록 입주 기업들은 외부 민간 기관에게 이러한 기술관련 분야의 애로사항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관리비용이 높아지게 됨.
- 만약 R&D센터와 지원센터와의 관계가 강한 관계에서 R&D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가 넓으면 R&D센터의 운영·관리비가 높아지게 됨.
 - 또한 R&D센터와 지원센터와의 관계가 독립적인 관계에서 R&D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가 좁으면 입주기업의 기술관리비용이 높아지게 됨.
 - 따라서 R&D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적절한 범위와 비용 관점에서 R&D센터와 지원센터와의 관계가 느슨한 관계가 가는 것이 바람직함.
- 지금의 논의를 그림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그림 6-1] R&D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입주기업의 관리비용과 지원센터의 R&D 센터 운영·관리비용간의 역학관계 및 관계설정

- 종축은 R&D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나타내며, 횡축은 비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용에는 입주기업의 기술관리비용과 지원센터의 R&D센터 운영·관리 비용을 나타냄. 또한 기술관리비용과 R&D센터 운영·관리 비용을 합친 총비용을 의미하기도 함.
 - 그림의 ①은 지원센터의 R&D센터 운영·관리 비용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R&D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범위와 정(正)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R&D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많아지면 지원센터의 R&D센터 운영·관리 비용 증가).
 - 그림의 ②는 입주기업의 기술관리 비용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R&D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범위와 부(負)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R&D센터의 역할과 기능 많아지면 입주기업의 기술관리 비용 증가).
 - 그림의 ③은 지원센터의 R&D센터 운영·관리 비용과 입주기업의 기술관리 비용을 합친 총비용의 개념임.
 - 점 a는 지원센터의 R&D 운영·관리 비용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서 R&D센터와 지원센터와의 관계가 강한 관계에서 R&D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가 넓을 때 나타남.
 - 점 b는 입주기업의 기술관리 비용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서 R&D센터와 지원센터와의 관계가 독립적인 관계에서 R&D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가 좁을 때 나타남.
 - 점 c는 지원센터의 R&D 운영·관리 비용과 입주기업의 기술관리 비용의 합인 총비용이 가장 부분으로서 R&D센터와 지원센터와의 관계가 느슨한 관계에서 나타남.
-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지원센터와 R&D 센터와의 관계는 느슨한 관계 설정이 바람직함.

○ 지원센터와 R&D센터와의 관계대안 비교

구 분	1안	2안	3안
R&D 센터 역할의 범위	高	中	低
지원센터와의 관계	독립관계	느슨한 관계	강한 관계
지원센터의 관계 속에서 R&D 센터의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 운영 • R&D 센터장이 인사권, 예산권, 재정권 모두를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장이 R&D 센터장임명 • 지원센터를 통해 R&D 센터의 예산을 신청 • 지원센터는 정부로부터 R&D 센터의 예산지원을 받아 R&D 센터에 넘겨주는 방식 • R&D 센터장이 센터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짐 • 자율적인 사업 활동 수행 • 단, 사업계획 및 예산서, 사업실적, 그리고 결산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센터가 지원 센터부서의 형태로 운영 • 이사장이 R&D 센터장의 임명권, R&D 센터의 예산권, 인사권, 재정권 모두를 가짐 • 지원센터가 R&D 센터의 사업활동 통제 가능
조직도	<pre> graph TD SC[지원센터] --- RA((R&D 협의회 가칭)) RA --- RC[R&D센터] </pre>	<pre> graph TD SC[지원센터] --- G[기술기획본부] SC --- RC[R&D 센터] </pre>	<pre> graph TD SC[지원센터] --- G[기술기획본부] G --- RC[R&D 센터] </pre>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센터의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로 인해 창의적인 센터의 운영 가능 • R&D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조직구성과 사업수행 가능 • R&D센터의 책임경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센터의 어느 정도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로 사업 추진이 비교적 용이함 • 지원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총괄하고자 하는 공익적 노력의 구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방향 의도에 가장 맞게 R&D센터 운영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기관 설립을 위한 절차상의 복잡성이 존재함 • 기존 유관기관과의 갈등 초래 • 지원센터와 별개 기관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가능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가 R&D센터의 창의적 사업활동 제약 가능성 존재 • R&D 센터는 지원 센터로부터 행정지원의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일반관리비 지급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가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총괄에 비중을 두게 되면 R&D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수 있음 • 지원센터가 R&D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면 재정적 부담을 가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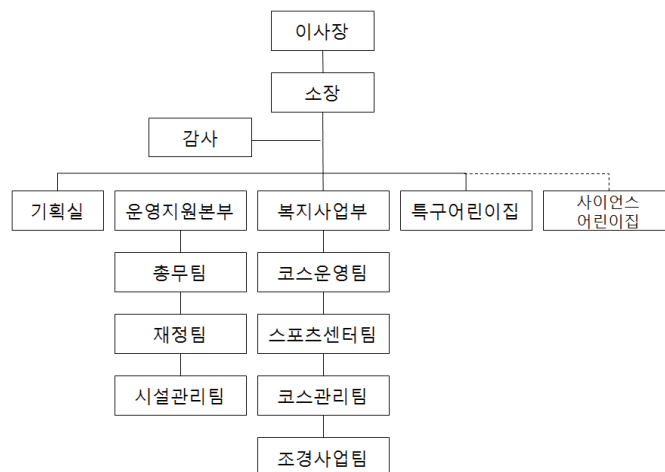
〈참고자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복지센터 운영 사례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복지센터의 기본현황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특구 입주기관 및 입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 센터를 부설기관으로 두어 직접 운영하고 있음.
- 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①연구단지 어린이집 운영, ②체육공원·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③입주기관의 조경관리용역사업, ④국유재산 수탁 운영관리, 그리고 ⑤기타 복지증진 사업 및 관련 수익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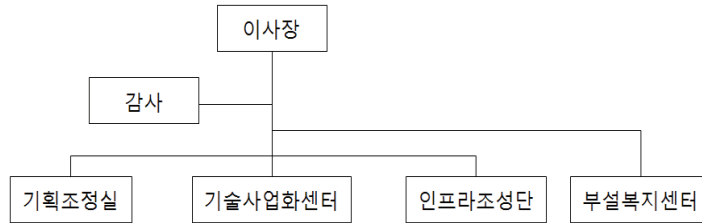
- 대덕특구내 종사자(연구원) 및 그 가족의 후생복지시설 운영관리
 - 대중 골프장(9홀), 골프연습장(93타석), 스포츠센터(2개소), 게스트하우스(80실)등
- 국유재산 위탁 관리
 - 종합복지관,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 특구내 “공동직장보육시설” 운영관리(2개소)
 - 대덕특구어린이집(정원 : 252명),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정원 : 300명)
- 대덕특구복지기금 과실사업(원로과학자생활안정금 등) 추진
- 대덕특구 입주기관 조경관리 용역사업
- 기타 복지증진사업 및 관련 수익사업 운영발굴

- 복지센터의 장은 상근이사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음.
- 2010년 3분기 현재 정직원 43명(정원은 54명), 비정규직 직원 47명, 총 90명이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음.



[그림 6-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부설 복지센터의 조직도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복지센터와의 관계



[그림 6-3]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복지센터와의 관계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복지센터는 느슨한 관계임.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이사장이 복지센터의 장(소장)을 임명하며, 소장은 복지센터의 내부인사권을 가지고 있음.
- 복지센터의 재정은 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는 독립체산제임. 단, 소장은 이사장의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함.
- 복지센터가 내부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독립적인 관계처럼 보이지만 지원본부의 이사장이 복지센터의 장의 임명권과 예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는 구속력이 있는 관계임.
- 지원본부가 복지센터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복지센터가 법령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 아니라 지원본부 정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임.
- 최근에는 지원본부의 이사장이 복지센터의 팀장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음.

2 Pilot Plant, 임대형공장의 운영방안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의 운영 방안

가. 임대형 공장의 운영 방안

- 임대형 공장은 식품 가공업,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에게 생산공간, 클러스터 시설 및 서비스 행정, 시설 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AT Kearney, 2009).
- 임대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은 시장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HACCP 기준의 식품 전용 생산공간과 기타 부대시설을 제공받으며, 기능성평가, 품질안전 지원, 식품특화기술개발, 기업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됨.

- 임대형공장은 지원센터의 부속 하드웨어 시설로 지원센터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게 됨.
- 지원센터의 임대형공장 운영방안은 크게 초기단계, 형성단계, 향후 발전단계, 글로벌 도약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초기단계

- 초기단계는 단계별 사업목표와 추진활동(안)에 의하여 2011년에서 2012년까지의 단계임.
 - 공장 규모와 시설을 확정하고, HACCP 기준에 따른 공장을 건설함.
- 임대형공장의 작업장은 식품 취급 공간과 식품 취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을 벽이나 방으로 구분해야하며,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이어야 함.
 - 배수 및 배관은 배수가 잘되어야 하고, 배수구 배수관 등은 역류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함.
 - 화장실 및 탈의실은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함.
- 위생설비는 환기시설관리, 방충·서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환기시설관리는 작업장 내에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방충방서 관리는 외부로 개방된 흡, 배기구에는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을 부착해야 함.
- 용수설비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함.

■ 형성단계

- 형성단계는 단계별 사업목표와 추진활동(안)에 의하여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단계임.
 -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내 기업지원팀에서 공장 건설 및 기업 유치업무를 진행함.
- 입주기업 유치 계획은 정기 및 비정기로 구분하여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입주기업 모집과 지원센터 홍보를 병행함.
 - 입주기업 모집공고 수단은 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소식지 및 지원센터 홈페이지, 일간신문 및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모집을 공고함.
- 기업의 가공공장 입주 시 입주계약의 주요사항은 시설의 주요 명세, 입주 부담사항,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주요 지원서비스 등임.

- 입주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입주신청서는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신청서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게 함.
 - 접수한 입주신청서는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기재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를 검토하여 결여된 사항은 심사 일정 통보 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공지함.
 - 입주신청대상은 식품산업관련 업체 등 임.
 -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내 기업지원팀에서 공장 건설 및 기업 유치업무를 진행함.

■ 향후발전 단계

- 향후발전 단계는 임대형공장이 설립되고 입주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2016년 ~ 2020년에 해당하는 시기로 입주기업을 평가하고 업체의 이주를 지원 및 관리하는 단계임.
 - 지원센터는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에 맞추어 평가를 진행함.
 - 기업체 평가기준은 재무구조, 경영능력,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입주기업의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클러스터 내의 타 시설과 연계하여 공장운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함.
 - 임시 운영하였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기업관리 팀, 공장관리 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함.
 - 기업관리팀은 기업의 입주 및 퇴거, 심사에 관련된 업무, 계약과 서비스 행정업무, 임대 기업 이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함.
 - 공장관리팀은 공장의 설비에 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부대시설을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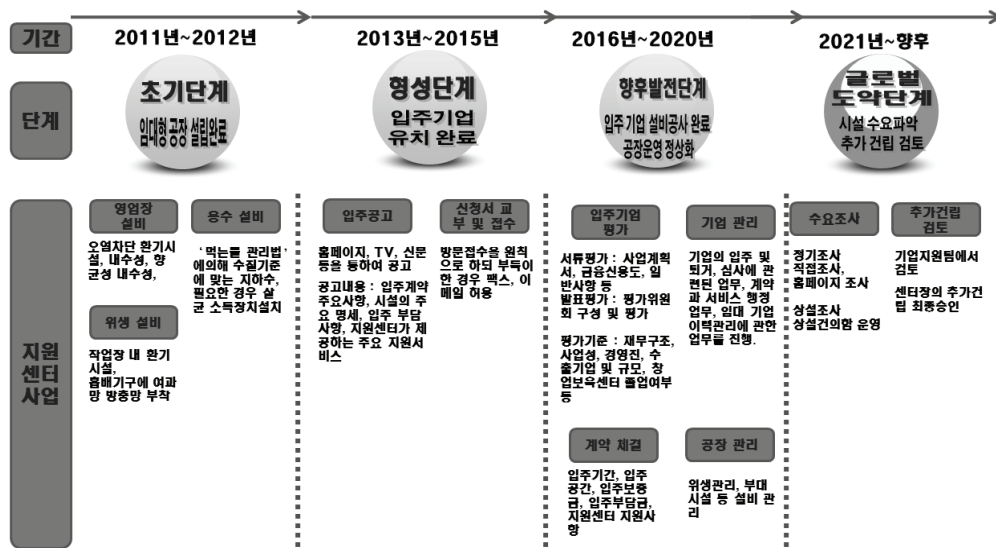
〈표 6-2〉 임대형 가공공장 입주업체 평가기준

대구분	평가기준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	- HACCP 인증 - 유망중소기업, 유망선진기술 기업 - 클러스터 내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연관 있는 기업 - 신기술 인증업체
재무구조	- 자기자본 - 부채비율 - 매출액 - 순이익
사업성	- 시장동향, 제품경쟁력, 채산성
경영진	- 경영자 자질, 업무수행 능력
수출기업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상시고용인원	- 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

자료 : AT KERNEY,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용역」, 2009 참조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매뉴얼」,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2010 참조

■ 글로벌 도약단계

- 글로벌 도약단계는 2021년~향후 기업수요에 맞는 추가적인 공장설립 및 필요설비를 검토함.
- 임대공장에 대한 초과수요 발생 시 입주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공장설립에 대하여 검토함.
- 임대공장에 입주한 기업들의 공장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필요설비에 대하여 지원을 검토함.
- 수요 및 만족도 조사는 지원센터 내 기업지원팀에서 실시하고 홈페이지 내 애로사항 게시판 이용과 건의함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수요 및 애로사항을 파악함.
-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추가적인 공장설립 및 필요설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림 6-4] 임대형 가공공장의 단계별 운영방안

나. 파일럿 플랜트 운영방안

- 파일럿 플랜트는 기업들의 생산라인 구축 테스트, 시제품 생산, 소량 생산, 개발연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설비를 제공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함 (AT Kearney, 2009).
- 시제품 생산 지원은 기업들이 신제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제품의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생산해야하는데, 이에 필요한 라인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생산라인 구축 테스트는 기업들이 본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범생산을 통해 필요한 공정 데이터 등의 정보를 획득해야하는데, 이에 필요한 라인과 설비를 제공하고

공정 분석, 설비 이용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함.

- 제품 개발 연구는 각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 설비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 없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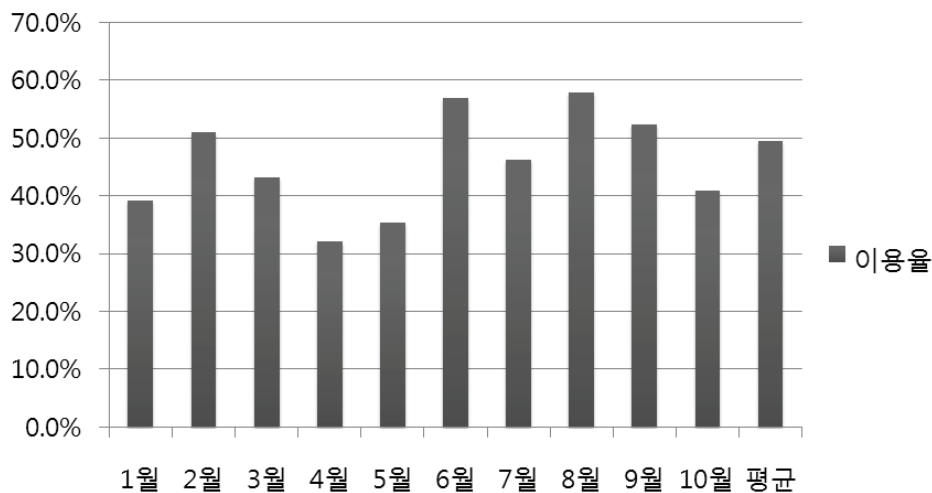
○ 기본설비 중 중요 설비는 구입하고, 기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설비는 임대 또는 임차를 통해 지원하도록 함.

○ 각 입주기업은 파일럿 플랜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입주기업의 파일럿 플랜트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파일럿 플랜트 시설을 예로 살펴볼 수 있음.

-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파일럿 플랜트 시설 이용률은 2010년 1월 ~ 2010년 10월까지 월평균 약 50%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파일럿 플랜트 이용은 전체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6-5]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파일럿 플랜트 월별 이용률 현황

■ 파일럿 플랜트 주체별 관리방안

○ 파일럿 플랜트의 관리는 지원센터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과 외부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아웃소싱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직접관리 방안의 장점.

- 국가식품클러스터 S/W사업과의 연계한 사업진행이 용이함.

-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응대가 가능하며 안전성 확보가 용이함.

- 시설관리상의 인력 통제가 용이하고 시설관리비용의 통제가 용이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직접관리 방안의 단점.
 - 시설관리 시 필요인원(전기기사, 소방 관리자 등)이 상주해야 함으로 업무량 대비 인원이 과하게 배치 될 수 있음.
 - 인건비 과다지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방안의 장점.
 - 계약 시 전체 계약비용으로 체결함으로 입찰과정을 통해 전체 시설관리비용 절감이 가능할 수 있음.
 - 시설관리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방안의 단점.
 -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목적과 관리의 부조화 발생 가능성 높음.
 - S/W관리와 H/W관리 이원화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웃소싱 업체 변동 시 인계업체의 업무 비협조로 인하여 인수업체의 업무파악이 늦어지는 등 인수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표 6-3〉 파일럿플랜트의 지원센터관리와 아웃소싱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지원센터 직접관리	아웃 소싱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와 H/W의 일괄관리를 통한 관리 효율성 증대 가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S/W 사업과 연계한 사업 진행용이 • 유사 시 신속한 응대 • 시설관리비용 통제가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비용 절감으로 인건비 절감 • 입찰을 통한 전체 관리비 절감 가능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 업무량대비 과다한 인원 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관리와 H/W관리 이원화의 비효율성 발생가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설립목적과 관리의 일관성 부족 우려 • 유사시 지휘통제의 어려움 • 인수인계의 어려움

■ 소결

- 법적 요건에 의하여 시설관리 담당 채용여부를 결정하며 파일럿플랜트의 관리규모 성장을 고려하여야 함.
- 시설관리 업무의 주체 결정은 파일럿플랜트 설립 시 논의가 필요하고 결정은 파일럿플랜트 준공 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파일럿플랜트는 지원센터의 부속 하드웨어 시설로 지원센터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부합 됨.
- 따라서 입주기업의 파일럿플랜트 이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생산지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클러스터 정책과 각종 사업의 일관성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직접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PILOT PLANT 주요설비

- 파일럿 플랜트 설비의 주요 설비는 먼저 공통적 범용 장비를 도입하고, 추가로 확장 장비를 도입해야함.
 - 입주할 기업들의 생산 품목 별 시설 장비를 도입해야함
- 전략 품목별 식품군 파일럿플랜트의 범용기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략품목²¹⁾을 구분하면 일반식품, R&D전략 품목, 한식전략품목, 기타품목으로 나눌 수 있음.
- 구분된 전략품목을 가공식품군, 건강기능식품군, 발효식품군으로 다시 구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품목 및 필요한 파일럿 플랜트 범용기기를 구분할 수 있음.

〈표 6-4〉 파일럿 플랜트의 일반식품 범용 장비

용도	범용장비
세척설비	분무세척기, 부유세척기, 초음파세척기 등
분쇄설비	볼밀, 해머밀, 편밀, 롤밀, 디스크밀, 콜로이드밀, 기류분쇄기, 분급기 등
혼합설비	원통혼합기, 이중원뿔 혼합기, 스크루혼합기, 리본혼합기, 버터칼믹스, 반죽기 등
유화설비	교반식 유화기, 고압균질, 콜로이드밀초음파 유화기
여과설비	필터프레스, 진공여과기, 원심여과기
건조설비	트레이건조기, 유동층건조기, 드럼건조기, 분무건조기, 동결건조기, 진공건조기 등
농축설비	코일증발기, 진공농축기, 추출기,
살균설비	레토르트 살균기, 고온-초고온 살균기
포장설비	원심분류기, 막분리기, 증류기, 추출기, 냉동기, 정제장치, 포장기, 과립기, sealer, 진공포장기, 스틱포장기, top sealer 등
유틸리티 설비	수처리시설, 보일러, 냉각탑, 에어 컴프레서 등
기타 장비	지계차, 호이스트, 수분등 분석장치, 계량저울, 압착기 등 건강기능성 식품에 필요한 장비(타정기, 믹서기, 캡슐충전기 등)

자료 : 푸드원텍, 「국가식품클러스터 H/W 효율적 배치방안 연구」, 2010

21)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계획」 용역과제 내부의견 참고.

〈표 6-5〉 전략 품목별 식품군 파일럿 플랜트 범용기기²²⁾

식품군	전략 품목	범용장비
건강기능 식품군 (R&D 전략 품목)	기능성 식품 기능성 소재 첨가물	발효기(5L), 배양기, 고속원심분리기, 연속식원심분리기, 필터프레스, 공급탱크(2000L), 저장탱크(2000L, 5000L), 배지조제탱크(500L), 교반탱크(600L), 이동탱크(300L), 크린스팀발생기, 한외여과장치, 균체파쇄기, 과립기, 유동층건조기, 혼합기, 분쇄기, 진동체, 밴드실링기, 스틱포장기, X-ray 검출기, 보일러, 향온향습기, 정제수시스템, 공기압축기, 냉동기, 공조기, 추출기(2t), 농축기, 심포니(1.5t), 호모믹서(500L), 진공건조기(500kg), 동결건조기, 열풍건조기(500kg), 리본믹서, 하이스피드믹서, 건강음료 포장시스템, 파우치 포장기, 병포장기, 타정기, 코팅기, 선별기, PTP포장기
발효 식품군 (한식 전략 품목)	주류 (전통주) 장류	발효조(30L, 300L, 1200L, 3000L), 발효기(5L), 동결건조기, 초저온냉동고, 냉동 컴프레서, 진공펌프, 동결건조기(20L, 100L, 300L), 냉동창고, 역삼투압순수 제조장치, 세포파쇄기, 한외여과기, 시료이송용 압력탱크, 발효보조탱크, 캡슐 포장기, 제균여과기, 효모세포 파쇄기, 저온저장실, 작업탱크(2000L), 원심분리기, 미세여과/한외여과장치, 여과장치, 저장탱크, 원심분리 농축기, 세포파쇄기, 수처리 여과장치, 압여기, 연속멸균기, 추출기 시스템, 강제박막농축기, 원심탈수기, 분무건조기, 탈염 및 농축용 역삼투 파일럿 장치, 여과장치보조탱크, 포터블 펌프, 진공포장기, 타정기, 액체충진기, 컨베이어벨트, 계수충진기, 다기능 원심전동 과립코팅기, 분말 자동포장기, 캡슐충전기, 습식분쇄기, 타블렛코팅기, 액체사면 은박포장기, 자동티백포장기, 티백랩포장기, 자동라벨부착기, 건식분쇄기, V형 혼합기, 과립제조기, 체진동기, 환제조기, 파우치 포장기교반식 유화기, 고압균질, 콜로이드밀초음파 유화기, NK 증자기(300Kg), 메주성형기, 고추장, 된장 혼합기(300Kg), 간장 여과, 포장기, 청국장환 제조기, 분쇄기

- 파일럿 플랜트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내에 기업지원팀이 파일럿 플랜트의 건물규모 및 위치, 기본설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획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파일럿 플랜트 이용료, 기타 행정관리, 설비 운영관리, 공정 관리, 시제품생산 관련 정보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파일럿 플랜트 운영은 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예약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내 기업지원팀이 예약시스템을 운영·관리함.
 - 파일럿 플랜트 이용은 이용시기보다 최소 10일 전에 예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 이용 시기에 해당 장비가 이미 예약되어있을 경우,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희망 이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이용의 경우 먼저 예약한 기업체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업체 간 합의를 통해서 중단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두 기업

22)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라남도 식품산업연구센터, 춘천바이오 산업진흥원, 순창장류연구소, 보유 생산 장비 참고 재정리.

체간 합의를 중재해야함.

- 장비사용료는 감가상각비, 전기료, 인건비, 유틸리티비, 기타 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정함.
- 외부 경쟁 시설의 장비 사용료를 조사한 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장비별로 가격 조정.
- 고가의 장비는 현실에 맞게 별도로 사용료를 조정하며, 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창업기업의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함.

〈참고〉 파일럿 플랜트 기기의 도입

- AT Kearney 자료에 의하면 먼저 도입해야 할 파일럿 플랜트 기기를 범용장비, 확장장비, 건강기능성 식품장비, 고가첨단장비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적인 기기는 다음과 같음.

〈도입이 필요한 PILOT PLANT 기기〉

분류	범용장비	확장 장비	건강 기능성 식품 장비	고가 첨단 장비
기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쇄기 - 혼합기 - 반죽기 - 유화기 - 여과기 - 건조기 - 농축기 - 살균기 - 원료포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튀김 후 처리 기기 - 식품 별 사출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정기 - 캡슐충전기 - 믹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압기 - 극 초단 전자파 기기 - 무선주파수 기기 - 초임계
비고	일반 범용 장비는 대부분의 식품의 원재료 가공 부분을 처리하는 용도임.	식품 별로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장비도 다양함.	건강 기능성 식품을 생산할 시, 범용 장비 외에 추가로 장비가 필요함.	고가의 첨단 장비는 일반식품 기업들이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임.

자료 : AT KERNEY,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용역」, 2009.

〈참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파일럿플랜트 시스템



■ 01. 발효라인

5ℓ , 30ℓ , 50ℓ , 300ℓ , 500ℓ , 2.5톤
발효조 및 기타 부속탱크류



■ 02. 회수, 정제라인

초임계추출장치, 한외여과장치, 균체파쇄기
필터프레스, 연속원심분리기, 진동막분리장치 등



■ 03. 건조, 분쇄 라인

동결건조기, 분무건조기, 진공건조기
건식분쇄기, 과육분쇄기 등



■ 04. 한방제품 라인

원액추출기, 저장교반탱크, 진공농축기
과립기, 환제조장치 등



■ 05. 자동포장 라인

캡슐충진기, 타정기, 분말과립포장기, 액체포장기
스틱포장기, 진공포장기 등

〈참고〉 순창군장류식품사업소 파일럿플랜트 현황

- | | |
|---------------------------|---------------------|
| 1. NK 증자기 : 300Kg/1회 | 2. 메주성형기 |
| 3. 발효실 : 1,000Kg/1회 | 4. 동결건조기 : 100Kg/1회 |
| 5. 고추장, 된장 혼합기 : 300Kg/1회 | 6. 간장 여과, 포장기 |
| 7. 청국장환 제조기 | 8. 분쇄기 |

3 산학연 협의회 구축 및 운영 방안

가. 산학연협의회 구축 방안

■ 산학연협의회 필요성

- 신기술 개발이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진 또는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대학/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원을 한 공간에 집적시킴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됨. 그러나 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주체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클러스터 효과를 얻을 수 없음. 또한 클러스터 내에 없는 필요한 기관들과도 교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클러스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혁신주체들간의 상호작용, 즉 네트워크 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음.
- 따라서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식품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및 연구원의 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클러스터 단지 내에 혁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을 상호연계 시키는 산학연 협의회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산학연협의회 역할

- 산학연 협의회는 식품산업 관련 업체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최근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등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
- 클러스터 입주기업들과 연구원,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정보를 포함한 상호 교류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기술, 인력, 연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 산학연협의회 구축방안

- 산·학·연 네트워킹 구축은 학회나 포럼 등을 통한 산·학·연 교류체계 뿐만 아니라, 자발적 학습조직 등의 모임을 장려하여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
- 산학연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킹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산학연합의회 회원은 클러스터 내외의 식품산학연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
 - 산학연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학연합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함
 - 협의회 운영위원 중에서 협의회장을 선출함
 - 협의회는 산학연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구상하고 결정함.
 - 협의회 주요사업 : 포럼 운영, 세미나 개최, 간담회 개최 등
 - 지원센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경비를 지원함.
- 포럼 중심의 네트워킹 구축은 학회나 포럼 등의 교류의 장을 통하여 네트워킹을 구축함.
- 국내외의 유명 포럼이나, 학회 등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유치하거나, 식품클러스터 고유의 포럼을 신설하는 사업이 필요함.
 - 지원센터에서 클러스터 주변에 위치한 기업체, 연구소, 학교, 정부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식품클러스터 고유의 정기적인 포럼을 신설 및 운영해야함.
 - 정기적인 포럼의 주제 및 장소를 정하고 포럼개최 비용을 지원센터에서 부담함으로써 정기적인 포럼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기업지원팀은 공식 네트워킹이 구축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식품클러스터 정기포럼 참여 가능 산·학·연은 다음과 같음.

〈표 6-6〉 정기포럼 참여가능 산학연

구분	기능	기관명	분야	
산	제품생산 재교육 현장지원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입주예정	
학	기초연구 미래기술연구 인력양성 지원기술	전북대학교	식품가공, 기능성, 유통·마케팅	
		원광대학교	한방소재, 기능성	
		군산대학교	수산식품가공	
		전주대학교	실용화연구	
		우석대학교	식품가공, 한방소재, 실용화	
		호원대학교	식품가공	
		전주기전대학	전문인력양성(식품가공)	
연	실용연구 실용기술 개발/지원 현장교육	지 자 체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안전성, 실용화, 유통·마케팅
			전북농업기술원	식품원료 육종, 생산, 가공
			순창장류연구소	식품가공, 실용화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식품가공
			보건환경연구원	안전성
			고창복분자시험장	식품원료(복분자) 육종 및 재배

구분	기능	기관명	분야	
연	실용연구 실용기술 개발/지원 현장교육	중앙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능성
			생명공학연구원	식품가공, 실용화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원료육종, 실용화, 안전성
			호남농업연구소	원료육종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가공, 실용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출시장
			농촌진흥청	원료육종, 한식 세계화
		연구소	바이오소재 및 산업화연구센터	식품가공
			기능성식품임상시험 지원센터	기능성(임상)
			바이오효능검색센터	기능성
			생리활성물질연구소	기능성(전임상)
			생체안전성연구소	안전성(전임상)
			디자인가치혁신센터	포장/디자인
			EM연구개발단	식품가공, 기능성
수산과학연구소	수산식품가공			
Kbio TEC 연구센터	식품가공			

자료 : ATKERNEY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용역」, 전라북도, 2009. 일부참조.

○ 포럼중심의 네트워킹 구축방안 제시 : ‘식품클러스터 산학연포럼’

- 격월로 R&D, 기술, 경영, 정책, 시장트렌드 등에 관해 연구원 혹은 대학의 전문가 초청 포럼 진행
- 산학연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포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을 선발 하여, 포럼운영에 대한 협의 및 방향 결정
- 포럼위원회에서 포럼 주제 및 강사 결정
- 지원센터는 강사 섭외 및 필요경비(강사료, 인쇄비, 홍보비 등) 지원

〈참고〉 포럼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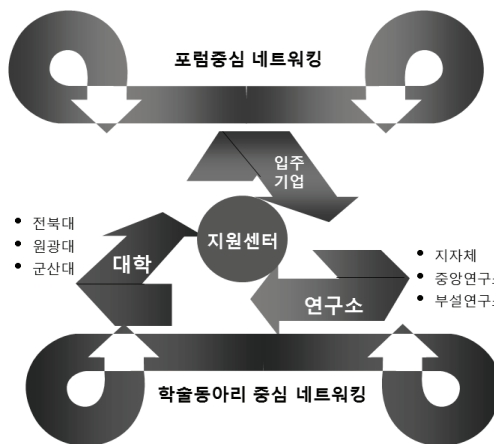
구분	대상후보군	상세내용
기존 컨벤션 유치	세계식품공학포럼(ICEF)	약 50개국 2,000명의 식품 분야 전문가 참석
	세계식품과학기술협회 포럼(IUFoST)	세계식품과학기술 협회 정례회의
	APEC FOOD SYSTEM	APEC산하 식량 관련 위원회
	CODEX	국제 식품의 규격 규정 회의(UN 산하)
신설 컨벤션	세계식품 CEO 경제포럼	세계 식품기업의 경영변화와 FTA 등 국제식품 무역환경 논의
	식품 클러스터 포럼	클러스터 관계자 대상으로 클러스터 운영방안, 새로운 R&D 발전 방향, 교류협력
	미래식품기술 포럼	세계적인 식품 관련 융합기술 연구사례 상용화 기능성식품 소재와 생산기술 및 유통마케팅 방안

자료 : ATKERNEY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용역」, 전라북도, 2009.

- 학습동아리 중심의 네트워킹 구축은 클러스터 내부의 산·학·연 구성원들 간 자발적인 교류 및 학습조직을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식품관련 주제에 대하여 학습하고, 공유하면서 인적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센터는 학습동아리 중심의 네트워킹 구축을 위하여 학습장소 제공 및 학습동아리 간 교류를 주선해야함.
- 학습동아리 중심의 네트워킹 구축은 초기 자발적 네트워킹 구축이 어려움에 따라 지원 센터 내 기업지원팀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초기 지원센터에서 실시 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는 다음과 같음.

〈표 6-7〉 학습동아리 중심의 네트워킹 구축방안

모임명(가칭)	성격	참여주체
식품 클러스터 화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클러스터 내 기관장과 식품클러스터 내 입주한 기업체간과의 소통과 화합의 모임. - 식품클러스터 성장을 위한 제안, 건의 및 협력 사항 등에 대해 논의 - 한 달에 한번 만남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자들의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기관장, 입주기업대표
트렌드 식품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기관의 소개 및 식품트렌드에 대한 강연을 듣는 학습 동아리 - 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학습과 소통의 장 역할 - 일주일에 한번 모임 개최를 원칙으로 함. 단, 일정에 따른 모임 개최 변경가능 	식품 전문가, 연구원, 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 기업체 임원 및 사원, 관련기관 등
식품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및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되어 각자 연구한 성과물을 공유 및 토론하는 연구회 - 격주에 한 번씩 연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단, 상황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식품 및 기타 각 분야별 전문가



[그림 6-6] 산학연 네트워킹 메뉴얼

〈사례〉 대덕특구 산학연 사례

대덕특구에서는 산학연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정보교류 및 공유, 학습을 통해 R&D 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확대 등 특구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음.

- 사월회는 특구 내 일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모임을 가지는 일본연구회로서 특구의 우수한 R&D 역량과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일본과 공동 R&D프로젝트 및 비즈니스 연계방안 등을 모색함.
- 수연회는 수요일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으로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기관의 소개와 함께 기술 트렌드, 산업 동향 등에 대해 강연을 듣고 특구의 현안사항이나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형태로 운영함.
- 이화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모임을 갖는 대덕특구 기관장 소통과 화합의 모임으로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함.

VII 장

각종 시설의 기획 및 관리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지원시설물의 효율적 배치방안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원시설물의 관리방안
3. 6대 H/W 지원시설물 외의 추가 필요 지원 시설물 검토 및 제시

VII

각종 시설의 기획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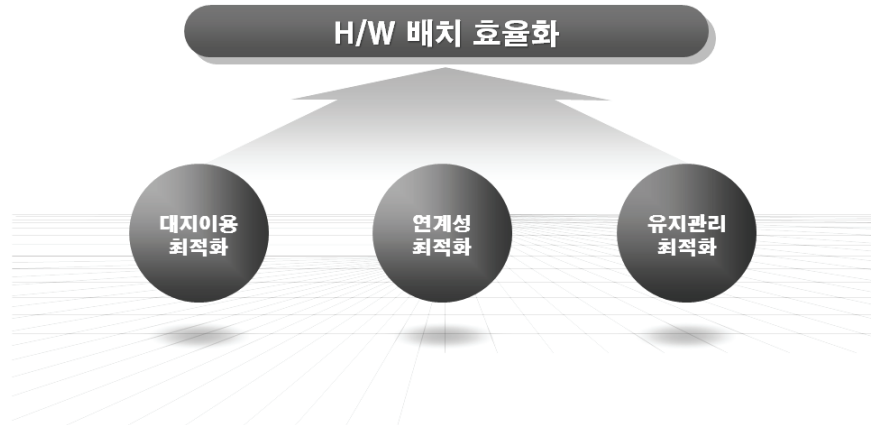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지원시설물의 효율적 배치방안

가. 6대 H/W 지원시설물의 효율적 배치

■ 배치의 비전 및 목표

- 6대 H/W의 배치는 기관 및 시설 배치의 최적화를 비전으로 하여 추진해야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할 6대 H/W는 대지 녹지용의 최적화, 입주할 H/W의 독립성 및 연계성의 최적화, 유지관리의 최적화라는 세부목표를 갖고 진행이 되어야함.
 - 대지이용 최적화는 대지의 활용성, 대지의 확장성을 최적화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함.
 - 대지의 확장성은 수평적 증축을 의미하며, 기존의 공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장 가능토록 구성, 기능적 공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증축이 가능토록 구성하는 것을 뜻함.
 - 대지의 활용성은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고 여가 공간기능과 함께 생산공단이나 주거지역 간의 완충공간 구성, 운동시설과 공용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뜻함.
 - H/W의 독립성 및 연계성의 최적화는 기관 및 시설의 독립성, 시설 및 기관의 연계성 등을 최적화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함.
 - 기관 및 시설의 독립성은 기관 및 시설의 기능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며, 공동 사용시설 이용 편의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뜻함.
 - 기관 및 시설의 연계성은 기관 및 시설의 연구, 실험기기, 실험시설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한 최적의 공간 구성으로서 시설 간 활용 및 이동노선 최소화를 뜻함.
 - 유지관리 최적화는 기기 운영관리의 최적화와 에너지 절감 및 유틸리티 최적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기기 운영관리의 최적화는 연구, 실험 공동기기 영역 배치를 최적화하여 운영관리 효율 최적화를 뜻함.

- 에너지 절감 및 유틸리티 최적화는 유틸리티 등 공급시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각 기관 및 시설간의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에너지절감 및 시설 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함.



[그림 7-1] 6대 H/W 지원시설물의 효율적 배치의 목표

■ 기관별 특성

- 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할 6대 시설 및 기관의 업무 및 기능에 맞는 배치를 실시하여, 최적의 기관배치를 실현해야함.
- 클러스터 내 기관 및 시설들의 기능 및 업무들은 다음과 같음.

<표 7-1> H/W 시설의 기능 및 역할

구분	역할	기능
클러스터 지원센터	행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획, 조성, 구축 총괄 - 식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 총괄 - 각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총괄 - 식품특화기술개발 및 관련 R&D관리 총괄 - 각 S/W 사업의 추진 및 총괄
식품기능성 평가센터	행정 검사	- 식품기능성평가(전임상 시험) - 기능성 성분표준화 - 협력체계구축 및 지원사업 운영 - 기능성소재 개발, 발굴
식품품질안전 지원센터	행정 검사	- 사전적 예방을 위한 검사 - 유연한 상황대응을 위한 비정형검사, 식품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컨설팅, 교육 - 지속적 품질안전 유지 - 품질보증

구분	역할	기능
식품패키징 지원센터	행정 검사	- 식품패키징 지원 제공 - 식품패키징 시험 실시 - 식품패키징 연구개발
Pilot Plant	검사 생산	- 제품개발, 연구 - 시제품 생산, 소량 생산 - 생산라인 구축테스트
임대형 공장	행정 생산	-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공간 및 부대시설 제공 - 임대형 공장 시설관리

-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중심지로서 각종 클러스터 내 입주한 기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사업,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종합지원 시설의 기능이 필요함.
 - 지원센터 공동연구 LAB 공간을 분할하여 민원지원기능을 극대화해야 하며, 회의실, 세미나실, 대외협력실, 대외실, 산학협력실 등 지원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함.
- 식품기능성평가센터는 동물실험, 성분분석, 규격분석 등 분석 기능을 수행하며, 협력, 지원을 위한 교육기능을 하는 기관임.
- 식품품질안전지원센터는 성분분석, 규격분석 등 분석기능을 수행하며, 유지, 지원을 위한 교육기능,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
- 식품패키징지원센터는 식품포장관련 지원을 위한 지도, 교육, 식품패키징 특성 연구를 위한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임.
- PILOT PLANT는 중소기업의 R&D 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연구시설 및 시제품생산 라인을 지원하는 시설임.
- 임대형 공장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을 제공하며, HACCP적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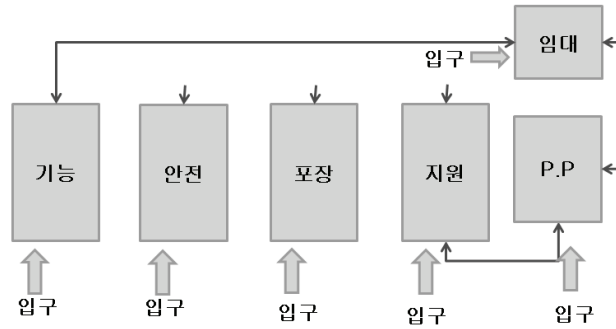
■ 기관별 배치특성

○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6대 시설 및 기관별 배치특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배치특성
클러스터 지원센터	- 식품클러스터 내 랜드마크 기능의 상징성 확보 - 식품클러스터 내외 기관 및 시설물 입주기업들의 접근성 확보 - 자연친화적 환경성 확보 - 사적 외부공간 확보
식품기능성 평가센터	-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인접 - 식품품질안전지원센터와 인접 - 운영 및 관리 효율성 고려 - PILOT PLANT와 인접
식품품질안전 지원센터	-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인접 - 식품기능성평가센터와 인접해야함 - PILOT PLANT - 임대형 공장과 인접
식품패키징 지원센터	-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인접 - 식품품질안전지원센터와 인접 - PILOT PLANT와 인접 - 접근이 용이한 도로와 인접한 쪽에 위치 - 물류센터 건설 시 물류센터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 - 독립건물 형태 유지 - 진동, 소음 등 낙하시험을 흡수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
Pilot Plant	- 실제 생산공장과 유사한 공간배치 - UTILITY 구성을 위한 지하공간 필요
임대형 공장	- 공단지역에 위치 - 식품기능성평가센터와 인접 - 식품품질안전지원센터와 인접 - PILOT PLANT와 인접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인접 - 전처리센터, 물류센터와 인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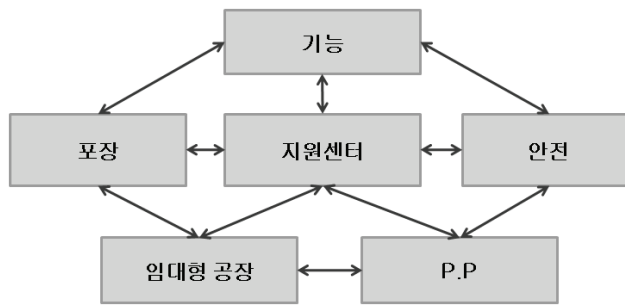
■ 배치방안

-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6대 시설 및 기관의 배치 방안은 크게 분산배치 및 통합배치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분산배치는 일렬형 및 방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통합배치는 일체형, 기능별 수평 집중형, 기능별 수직 집중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분산배치의 일렬형 배치는 각각의 기관 및 시설이 독립적으로 배치되는 방안임.
 - 분산배치의 일렬형 배치는 각 기관의 기능 및 독립성 유지하기가 용이하나,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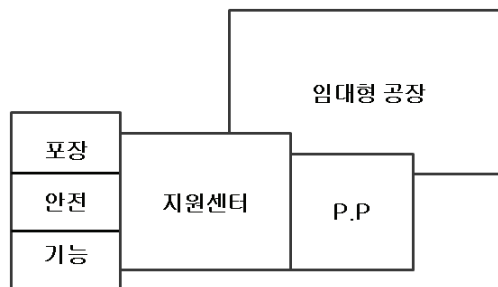
[그림 7-2] 일렬형 배치

- 분산배치의 방사형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나머지 기관 및 시설들이 지원센터를 둘러싸듯이 배치되는 방안임.
- 분산배치의 방사형 배치는 각 이동 동선이 일렬형 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 동선이 비교적 효율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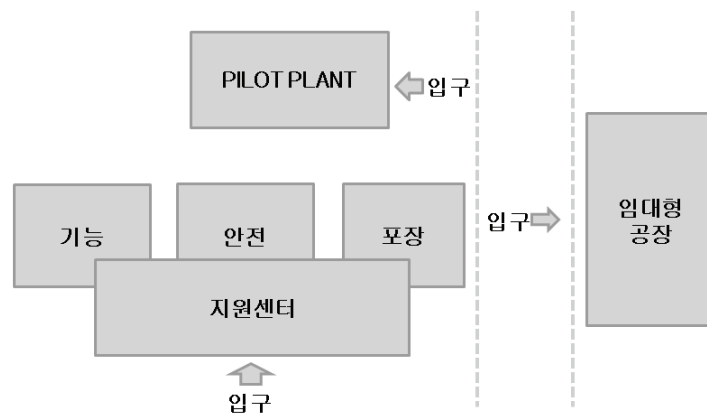
[그림 7-3] 방사형 배치

- 통합배치의 일체형은 식품클러스터 내 입주 할 6대 기관 및 시설이 하나의 건물에 배치되는 방안임.
- 통합배치의 일체형은 이동 동선 및 관리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복기능을 통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 및 기관의 특성 반영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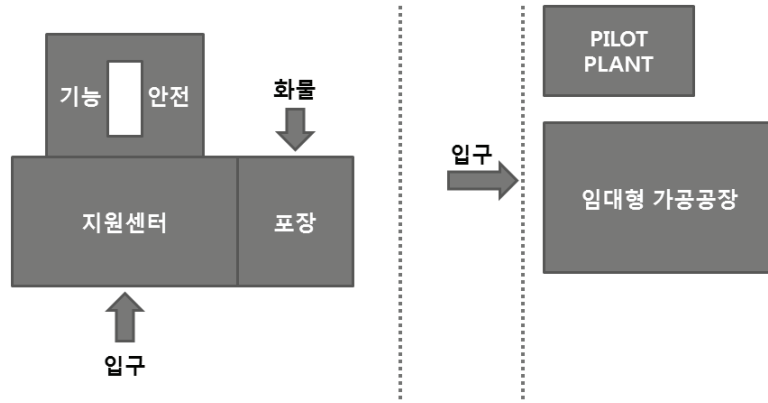
[그림 7-4] 일체형 배치방안

- 기능별 수평 집중형은 기관 및 시설을 기능별로 배치하는 방안으로 지원센터, 식품품질 안전지원센터, 식품패키징지원센터, 식품기능성 평가센터를 한곳에 집적시켜 임대형 공장, PILOT PLANT와 분리 시켜 배치함.
 - 기능별 집중형은 배치방안의 세부목표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시설 및 기관의 연계성을 최적화 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기관 및 시설의 기능별 독립성을 최적화 할 수 있음.
 - 대지이용계획의 확장성에서 수평증축은 주변여건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하드웨어 시설물 배치계획에 있어서 별도 건축물보다 독립성은 떨어지나 연계성은 향후 수평증축을 고려하면 동선이 길어져 다소 미흡할 수 있음.
 -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수평 확장은 유틸리티 공급에 불리할 수 있음



[그림 7-5] 기능별 수평 집중형 배치

- 기능별 수직 집중형은 기관 및 시설을 기능별로 배치하는 방안으로 지원센터, 식품품질 안전지원센터, 식품패키징지원센터, 식품기능성 평가센터를 한곳에 집적시켜 임대형 공장, PILOT PLANT와 분리 시켜 배치함.
- 수직 집중형은 수평 집중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대지이용계획의 확장성에서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고려함
 - 수직 집중형은 수직증축으로 기존 건축물의 유틸리티 사용이 편리하며, 주변의 부지 상황과 무관하게 건축을 할 수 있음
 - 공사기간에도 실사용이 가능하며, 수직 확장 후 건물의 기능 및 동선의 연계성은 연결 통로 설치가 가능함
 - 파일럿플랜트를 임대공장과 함께 공장지역으로 이동하여 향후(OEM 등)를 대비하며,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확장성을 고려함.



[그림 7-6] 기능별 수직 집중형 배치

■ 배치방안별 분석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할 6대 H/W는 대지 이용의 최적화, 입주할 H/W의 독립성 및 연계성의 최적화, 유지관리의 최적화라는 세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각 배치방안별 분석이 필요함.
 - 분산배치안은 시설 및 기관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방안임.
 - 통합배치안은 대지 활용성,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이나, 시설 및 기관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나, 통합배치 안에서의 기능별 수직 집중형은 시설 및 기관을 기능별로 분리 및 통합 배치하여 3대 최적화 목표를 달성하기 용이하며, 추 후 확장에 있어서도 용이함.

<표 7-2> 배치방안별 비교

배치기준		분산배치		통합배치		
		일렬형	방사형	일체형	기능별 수평집중형	기능별 수직집중형
대지이용 최적화	대지 활용성	△	△	○	○	○
	대지 확장성	△	△	○	△	○
H/W의 독립성 및 연계성의 최적화	기관 및 시설의 독립성	X	○	X	△	○
	기관 및 시설의 연계성	X	X	○	△	○
유지관리 최적화	기기 운영관리 효율성	X	X	○	○	○
	에너지 절감 및 유틸리티 효율성	X	X	○	○	○

자료 : (○)양호, 보통(△), 미흡(X)

가. 시설관리 조직 구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FOODPOLIS에 건립되어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소속된 건물 자산, 즉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지원 센터, 식품패키징지원센터, Pilot Plant,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진.

■ 시설관리 업무 분장

- 건축물 및 시설관리는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총무 시설 관리 담당자가 1차적으로 관리 책임을 지며 2차 책임자는 팀장으로 함.

■ 시설 관리 목적

- 관리 대상물을 화재와 내 외부로부터의 손상 또는 파손을 예방하여 시설 자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또한 시설자산에 의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직원의 편리성을 도모하며 낭비적 운영을 예방하여 에너지 절감

■ 시설관리 담당의 자격요건

- 시설물 관리규정에 준해 일정의 소방관련 자격증을 취득 한 자 1명, 전기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 한 자 1명, 가스관련 자격을 득 한 자 1명, 연구소 또는 공장에서 배출 되는 수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 관련 기사 1명, 환경관리 기사 1명, 보일러 기사 1명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자 이어야 함.
- 법에 의한 각종 자격증 보유 규정관련 하여 1인이 다수의 자격을 보유 할 시 법적 인원 수 조정 가능
- 연구소의 연구관련 기계장치를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엔지니어 배치 필요

나. 시설 관리 업무 내용

- 준공허가를 취득한 6대 H/W 지원 건축물과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건축물에 설비 된 전

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오페수, 방음 등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

- 연구소와 PILOT PLANT에서 배출되는 오페수 수거 및 처리
- 건축물의 증·개축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의 인허가 취득은 물론 시설의 증설 및 변경에 따라 설계도 변경 관리 및 신고 또는 인허가 취득
-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두어 각종 화재 경보 시설물 설치 설계도를 보관 및 화재 예방 시스템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대피 동선 상시 확보
- 위험물질(유류 가스 화학약품 등)의 이동경로 관리는 물론 보관 장소의 안전성 확보
- 건물의 외관 및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물의 복도 바닥 화장실 외벽 청소 실시
- 연구소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하여 정기적인 예비 발전기 점검 및 시 운전을 실시
- 난방 및 연구소를 위한 보일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
- 연구결과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소 출입 관련 인물을 관리 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 업무
-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구매한 모든 비품에 대하여 구매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 존재유무 및 파손 유무 점검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에 따른 긴급 연락망 구성 및 모의 테스트 실시
 - 직원의 직급과 주거위치를 고려하여 재난대처요령 매뉴얼 작성

다. 시설 관리 방안

-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시설물 관리를 아웃소싱 하더라도 지원센터 내 법적요구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시설물 관리 담당자 1인은 배치하여야 함. 시설의 전기 요구 용량과 열관리 규모가 소량일 시 직원 없이 아웃소싱이 가능하나 법적 기준을 능가 할 때, 분야별 선임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는 무조건 선임 하여야 함.
- 연구관련 기계장치 설비는 전문적인 시설관리 능력이 요구됨으로 6대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직접 관리

○ 장 점

- S/W와 H/W의 일괄관리를 통한 관리 효율성 증대 가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S/W사업과의 연계한 사업진행 용이
- 법적 기준에 의해 분야 별 직원이 선임되어야 한다면 모든 시설물의 인근에서 상시 관리가 가능하며 유사 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응대가 가능하며 안전성 확보가 용이
 - 직접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설물의 자산 가치 유지가 용이
- 시설관리상의 인력 통제가 용이하며 시설관리비용의 통제가 용이
 - 내부적으로 인사고과 시스템이 작동함으로써 보고 및 지휘체계가 명확하여 재난 발생이나 유사시 인력통제가 용이
 - 시설 유지 보수에 관련한 비용을 세세하게 항목별 편성하고 비용을 집행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보다 비용절감을 기대
- 직원의 주인의식과 애사심 고취로 원활하게 자산관리가 가능

○ 단 점

- 정규직으로의 채용은 많은 복지비용을 유발 시켜 인건비 상승으로 인사관리의 어려움 초래
- 법에 의거하여 업무량 대비 인원이 과하게 배치 될 수 있음. 곧 인건비 과다지출이 될 수 있음

■ 외부업체에 아웃 소싱

○ 장 점

- 클러스터 지원센터 직원이 아님으로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 복지비용 지출 억제가 가능하여 순수 인건비 관련비용 절감이 가능
 - 클러스터 직원처럼 복지비 지출 할 필요가 없음
 - 인사고과나 교육 등 용역업체가 실시하기에 직원 관리비용 절감
- 계약 시 전체 계약비용으로 체결함으로써 입찰과정을 통해 전체 시설관리비용 절감이 가능
 - 입찰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하면 계약 금액 다운이 가능
-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을 아웃소싱업체에 전가함으로써 심적 부담 해소

○ 단 점

- 식품클러스터 설립목적과 관리의 부조화 가능성 발생
- S/W관리와 H/W관리 이원화의 비효율성 발생

- 아웃소싱업체의 직원임으로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대한 애사심 결여로 지휘체계 확립이 어려우며 나아가 조직 체계 상 유사 시 동원하기가 어려움.
 - 계약 매뉴얼 상 교육 되지 않은 업무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신규업무 추가가 어려움. 즉 신규 업무 추가 요청 시 용역비용의 상승을 유발
 - 발주업체의 지위 남용으로 아웃소싱업체의 직원과 마찰이 잦을 가능성이 높음
- 직원의 주인의식 및 애사심 결여로 시설물 관리에 적극적이기보다는 피동적으로 자산 가치 유지에 다소 미흡 함.
 - 아웃소싱업체는 계약금액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기에 직원의 인사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열악한 복지 지원으로 소극적 관리가 이루어짐.
- 주어진 계약 금액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기에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구매비용을 축소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유지 보수에 저가의 부자재 사용으로 자산 가치 유지가 어려워 짐.
 - 아웃소싱업체의 원가절감이 곧 자산 가치 하락과 직결
-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이 완료될 시기에 시설관리는 허점을 보이고 인수인계 시 애로사항 발생
 - 인계업체는 무관심을 보임으로 인수업체는 인수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인수업체는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 가중

〈표 7-3〉 하드웨어 시설물 관리의 직접관리와 아웃소싱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지원센터 직접관리	아웃 소싱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와 H/W의 일괄관리를 통한 관리 효율성 증대 가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S/W 사업과 연계한 사업 진행용이 • 주인의식과 애사심 고취로 자산 관리의 용이 • 유사 시 신속한 응대 • 시설관리비용 통제가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비용 절감으로 인건비 절감 • 입찰을 통한 전체 관리비 절감 • 시설관리 심적 책임 해소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 업무량대비 과도한 인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관리와 H/W관리 이원화의 비효율성 발생 가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설립목적과 관리의 일관성 부족 우려 • 유사시 지휘통제의 어려움 • 애사심 결여로 소극적 자산관리 • 인수인계의 어려움 • 저가의 부자재 사용으로 자산가치 유지의 어려움

라. 제시 방안

- 법적 요건에 의하여 시설관리 담당 채용여부를 결정하며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관리규모 성장을 고려하여야 함.
 - 시설관리 분야(전기, 열관리, 오페수 관리 등)에 따라 타 업체로부터 파견 직원을 받을 수 있으니 검토 필요
- 클러스터 완성단계에 시설관리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나 인원보충은 발전단계에서 충원하여 시설설비 업체로부터 시설관리 업무를 인수하여 관리 매뉴얼 작업에 착수
 - 설비업체로부터 설비도면 확보는 물론 유사 시 응대 매뉴얼 논의 작성
 - 인원보충 시 선임조건을 반드시 준수
- 방화관리자는 무조건 채용하여야 함으로 예외로 하며 타 분야에 전문가를 선임 할 것인지 발전단계에서 확정 요망
 -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도면 확보 및 유사 시 응대 매뉴얼 작성
- 시설관리 업무를 직접채용 할 것인지 아웃소싱 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발전단계에서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6대 H/W 지원시설물 외의 추가 필요 지원 시설물 검토 및 제시

가. 공동집배송센터

■ 공동집배송 센터의 필요성

- 공동집배송센터는 식품산업의 특징, 기업들의 투자부담, 효율적인 물류 운영, 물류기능 중복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식품클러스터에 공동집배송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물류 기능을 공통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식품산업의 특징은 계절에 따라 식품 수요의 변동 폭이 크므로, 필요한 창고 공간이나 배송 능력이 계절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식품의 유통과정에서 보존이 특히 중요하므로, 냉동 및 냉장 등의 시설 투자비용이 타 산업 대비 큼.
 - 식품 기업은 특히 물류 시설에 대한 투자 부담이 타 산업의 기업 대비 크며, 특히 중

소기업의 창고와 물류 운송 설비와 인력에 대한 투자 여력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공동 집배송센터가 필요함.

- 실시간 재고와 입·출고 현황 관리 등에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물류 기술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비효율적인 물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핵심 역량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하여 물류 운영의 효율화를 이루어낼 필요성이 있음.
- 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은 식품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기능은 각 기업 간에 중복되는 것임. 따라서 공동물류 집배송센터를 운영하여 각 기업의 중복비용을 줄여주어야 함.

■ 공동집배송센터의 역할

- 공동집배송센터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수·배송, 제품보관, 국제물류, 물류정보 파악을 위한 설비를 제공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함.
- 공동집배송센터는 기본적으로 화주가 필요한 일부창고를 임차하여 제품과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입고, 재고, 출고 등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격한 수요 변동에 따른 기업들의 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입고, 재고, 출고, 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
- 납품처가 중복되는 복수의 기업에 대하여 공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수배송 관련 설비 및 인건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수배송 효율을 향상하고, 리드타임 단축과 재고 압축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입고, 재고, 출고, 배송 등의 물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에게 물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철저한 물류흐름 파악으로 인한 물류 배송 오류 방지 및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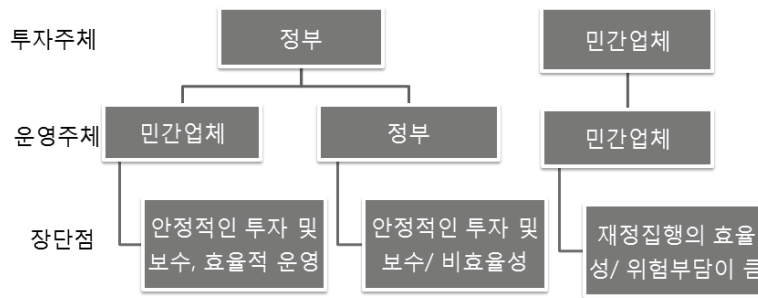
- 기본적으로 공동집배송센터는 냉동·냉장, 보관, 운송, 반송, 피킹, 정보처리 시설 등을 갖추어야함.
- 타겟기업과 취급 품목에 따라 물류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계별 시설 구축이 필요함.

〈표 7-4〉 공동집배송센터 기본 시설

냉동·냉장시설	보관 시설	운송장비
저온냉장고	FLOW RACK	전동지게차
CA 냉장고	DRIVEN RACK	핸드파렛트럭
예냉고	ARM RACK	전동파렛트럭
냉동고	MOBILE RACK	크레인
반송시설	피킹시설	정보처리시설
AGV	스태커크레인	스캐너
RGV	MOBILE RACK	바코드프린트
컨베이어	AR/RS	WMS
천정주행시스템		OMS
HAND LIFT		TMS
DOLLY		

자료 :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용역, ATKERNEY, 2009

-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물류 작업 공간 설계 시 이를 고려해야함.
 - 농수산물은 주로 기업의 원료나 외부의 대형 할인점에 공급되는 식자재로서 장기간 저장에 힘들기 때문에 재고는 최소한으로, 재고회전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함.
 -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규격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특성이 있음.
 - 가공식품은 농수산물에 비해 대체적으로 재고 회전율이 낮고, 품목에 따라 취급특성이 다름.
- 공동집배송 시설의 운영은 정부가 투자·운영하는 방법, 정부가 투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법,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나누어 볼 수 있음.
 - 정부가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안은 안정적인 투자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가 운영하는데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국가가 투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은 국가 예산으로 안정적인 투자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 민간이 투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국가 재정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는 이점이나, 민간 투자만은 위험부담이 큼.



[그림 7-7] 공동집배송 시설 운영방안

■ 공동집배송센터의 기대효과

- 식품기업들의 중복 투자를 피하고 물류 시설 등의 고정자산과 인원 비용 등의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 뿐 아니라 물류 아웃소싱을 통해 핵심역량에 집중을 기대할 수 있음.
- 급격한 수요 변동에 따른 창고 부족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입출고 및 재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의 배송기간의 단축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 철저한 물류 흐름 파악으로 물류 배송 오류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 물류의 전문화를 통해 물류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역량에 집중 할 수 있음.

나. 식품전처리 시스템

■ 식품전처리시설의 필요성

- 식품기업들의 전처리 식자재에 대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보다 투명한 유통구조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적정가격 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음.
- 센터를 통한 전처리 식자재 공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로 시장기능이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효율적인 수집과 분산기능을 통해 소규모 물량거래를 희망하는 식품기업까지도 취급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전처리 농산물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보장을 통한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식품기업에게 적정가격 구매가 가능한 시장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특히, 안전성 확보와 안전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해 짐에 따라, 안정적이고 규격화된 전처리 식자재 공급센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식품전처리시설의 역할

- 식품 전처리 시스템은 클러스터 내에 공동 전처리 시설을 갖추어, 식품 기업들에게 안전한 전처리 식재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식품 전처리 시스템은 HACCP 기준의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 전처리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클러스터 내·외 기업들의 전처리 비용 절감, 국내 농산물의 전처리를 통한 수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함.
- 식품 전처리 과정은 원물을 선별, 탈피, 세척, 건조, 절단, 포장 등의 작업으로 구성됨.
 - 식품 전처리 시스템은 각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원물을 제공받아 선별, 세척, 탈피, 건조, 절단 등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기업에게 제공하는 작업임.

■ 식품전처리시설의 주요기능

- 센터의 통합 수발주시스템과 공동물류시설 활용, 인증 및 안전성 관리의 주요기능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형성, 수집분산, 유통정보 제공 등 전처리 식자재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물류효율화를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출하처를 제공하고 전처리 식자재의 확보가 어려운 식품기업들에게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7-5〉 식품전처리시설의 주요기능

구 분	주요기능	주요기능해설
시 장 기 능 강 화	통합거래시스템	- 운영주체를 통한 통합거래시스템 운영
	가격형성	- 수요와 공급에 따른 안정적인 가격형성 기능
	수집분산	- 운영주체와 입주업체를 통한 수집과 분산 - 각 식품기업들에게 공급 기능 - 입주업체간 수시 거래 및 결품 보완
	정보제공	- 품목별 거래량, 품위별 가격정보 제공 - 생산 및 소비 정보의 제공
	판로확대	-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출하처 제공 - 전처리 식자재 확보가 어려운 중소 수요처에 안정적인 공급

구 분	주요기능	주요기능해설
통합물류기능	물류효율화	- 대량유통을 통한 효과적인 수집, 분산 - 통합운송체계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 규격출하를 통한 물류효율 증대
	가격안정(수급조절)	- 저장, 가공 등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 예약거래 등 탄력적인 거래방식
	인증관리	- 센터를 통한 생산-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 HACCP 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식품전처리시설의 구성

- 식품 전처리 시설은 전처리 과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HACCP 기준의 세척, 선별, 건조, 농축, 포장, 냉동, 냉장 설비 등을 갖추어야함.

〈표 7-6〉 식품전처리 시설의 설비

설비	기기	설비	기기	설비	기기
HACCP 시설	- 에어샤워 - 머리카락 이물 흡입기 - 앞치마 살균기 - 신발 세정기 - 방충 설비 - 개인 위생 복장 - 청결 및 일반구역 구분기기 - 중앙공조기기	세척 설비	- 3단 세척대 2라인 - 구근류 세척기 - 정수설비 - 이송컨베어	포장 설비	- 진공포장기 - 실링포장기 - 테이핑머신 - 팩포장기
		선별 설비	- 선별대 - 선별기 - 이물제거기 - X선이물제거기 - 금속검출기	건조 설비	- 온풍건조설비 - 냉동건조설비
실험 기자재	- 병원성 미생물 및 이화학 기기	분쇄 절단 설비	- 해머분쇄기 - 채소절단성형기3종 - 과일다이싱기2종	냉동, 냉장 설비	- 냉동기300HP - 급속경화터널 - 냉장창고
물류 장비	- 지게차 - 컨테이너 - 냉동탑차 - 냉장탑차	농축 설비	- 개인위생복장	기타 설비	- 배수설비 - 일반창고

자료 :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용역

■ 식품전처리시설의 운영방안

- 식품전처리 시설의 운영방안은 정부가 투자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안, 정부가 투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정부가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안은 안정적인 투자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가 운영하는데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가 투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은 국가 예산으로 안정적인 투자 및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 민간이 투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국가 재정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는 이점이나, 민간 투자만은 위험부담이 큼.

〈표 7-7〉 식품전처리시설 투자 및 운영주체

운영방안	정부투자 + 공사운영	정부투자 + 민간운영	민간투자 + 민간운영
장점	- 안정적인 투자 및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국가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 및 보수가 안정적이며, 운영의 효율도 높일 수 있음.	-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재정적 측면과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이점을 지님
단점	- 정부가 운영하는데 전문인력 어려움과 비효율 가능	- 국가예산이 투입됨	- 공공재의 성격을 띠어야 하는 시설을 민간이 소유함으로써 공익달성이 어려움

■ 식품전처리시설의 기대효과

- 식품기업들의 전처리 시설에 대한 과도한 중복 투자 및 안전, 위생적 관련 비용을 피하고 식재료의 대량 전문 처리 센터를 통해 전처리 비용 절감을 함으로써 원가 절약을 기대할 수 있음.
- 식품기업이 요구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전처리된 식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식품기업의 생산계획 및 마케팅 전략에 도움을 줌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에 준한 설비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과학적 위생관리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제공을 통해 동일한 고품질의 식자재 공급을 기대할 수 있음.
-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방법으로 생산되는 식자재 및 신선, 편이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가공 표준화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창업보육센터

■ 창업보육센터 필요성

- 식품산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영세함.

- 식품클러스터 내의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창업보육센터는 생산 시설 지원, 기업 지원서비스, 외부 네트워크, 창업보육 전문인력 지원 기능을 갖추에 따라 클러스터내의 건립이 필요함.
 - 클러스터 내 창업보육센터는 식품 R&D 전문성, 식품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효율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보육 전문성을 갖춘 보육 인력과 연구 장비, 기능성 평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음.
 - PILOT PLANT 등의 생산 시설 이용이 용이함.
- 식품특화기술의 성과확산 즉,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라는 측면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또다시 R&D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 창업보육센터 설립방안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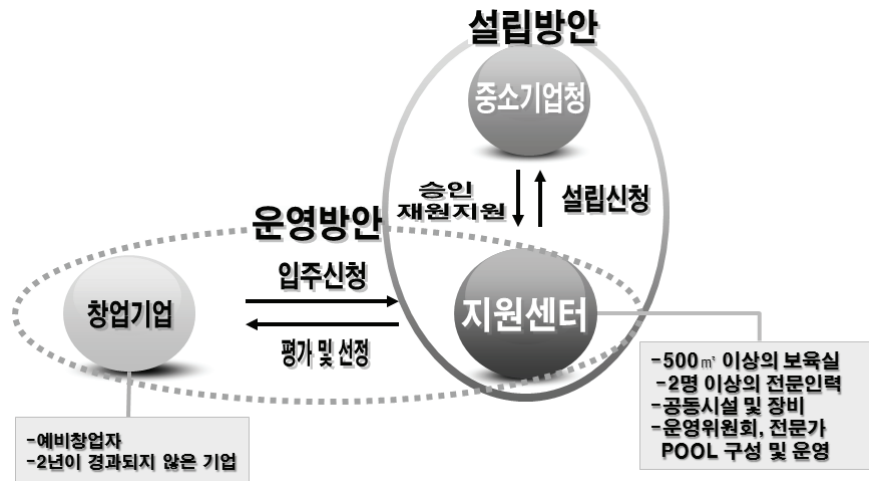
- 창업보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창업보육센터의 신규 설립지원은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함.
 - 지정요건은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입주 가능한 500㎡ 이상의 보육실을 갖추고 2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창업보육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지정한 센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정된 센터 사업자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보육 실시에 관한 실행계획서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실질성과 효과 증대를 위해 필요한 운영 전문인력과 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창업보육센터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전문매니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매니저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사업자의 내규로 정함.
 - 창업보육센터는 입주대상의 심사, 선정, 보육센터 운영성과 평가, 입주자 지원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관계자 및 소속기관 임,직원이 참여

23)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매뉴얼」,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2010 참조

- 하는 운영위원회 등을 설치 및 운영 함.
- 기업의 경영, 기술지도 지원을 상시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함.

■ 창업보육센터 재원

- 창업보육센터의 재원은 입주기업 부담금 및 발전기금, 중소기업청의 센터 설립비와 운영보조금 및 지자체 운영보조금, 기타 사업비지원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입주기업부담금은 보증금, 창업보육료, 관리비, 시설 및 장비 사용료로 나눌 수 있음.
 - 입주보증금 : 입주기간 동안 예치해 두는 예치금
 - 창업보육료 : 통상적으로 입주 면적에 따라 매월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 관리비 : 기본 관리비와 시설사용 관리비로 구분하여, 관리비는 면적당 부과, 시설사용 관리비는 실비로 부과함.
 - 장비사용료 : 복사기, 팩스 등 공용장비와 시설사용료로 각 센터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사용량에 따라 부과함.
- 보육사업 발전기금 : 입주기업의 보육 성과에 기인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형태로 마련함.
- 중소기업청 센터 설립비는 신규건립 및 확장건립을 내용으로 2009년 기준으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센터 건립규모 및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자금의 사용은 신규건립, 확장 및 입주기업의 시제품 생산공간 확충 등을 위한 건물 신축 또는 개 보수비용이며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 장비 확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 운영보조금(2010년도 기준)은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센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센터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4개 등급으로 운영비를 차등지원 함.
 - 당해 신규 지정된 센터에는 최초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음.
 -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센터 전문/일반매니저의 인건비 및 성과 인센티브, 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비, 입주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세미나개최 등 각종행사 관련 경비를 지원함.
- 지자체운영보조금은 센터 관할 시, 군, 구청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
 - 운영보조금 조성을 위해 관할 자치단체에 센터가 적극적인 설득을 기울여야함.



[그림 7-8] 창업보육센터 설립방안 및 운영방안

■ 창업보육센터 기능 및 역할

-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 선정, 창업기업 관리, 창업기업 지원의 기능을 함.
- 선정기능은 창업보육 및 모집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접수하고,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진행하며 입주기업 계약 및 퇴출을 결정함.
 -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구성 및 운영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입주 기업을 선정함.
 - 1차 심사 내용은 금융신용도, 사업성, 특허 및 법적 규제와 같은 법적 문제 등으로 심사가 이루어짐.
 - 2차 심사 내용은 창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시장동향 및 제품 경쟁력과 같은 사업성, 인력의 기술수준, 사업계획의 경제성과 같은 사항들을 평가하여 선정함.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다만 첨단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기관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 입주대상자는 예비창업자와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이 대상임.
-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의하여 반기별로 업무운영사항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며, 분쟁, 소송 등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관리기능은 재계약 심사, 졸업심사 업무로 이루어짐.

- 재계약 심사는 입주 후 3년, 5년 마다 실적평가를 통하여 재계약을 심사함.
- 입주 기업 중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졸업을 심사하고 졸업한 기업에게 투자유치와 임대형 공장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함.
- 지원기능은 클러스터 시설과 기업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지원,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한 지원, 창업기술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등으로 이루어짐.
- 클러스터 시설과 기업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보육센터 공동 시설 이용을 관리하고, 클러스터 내 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함.
-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창업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는 사업으로 벤처기업의 생존율을 제고 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세부사업으로 기술창업·경영 서비스, 기술시장정보 등의 사업이 있음.
 - 기술창업·경영서비스사업은 벤처기업의 기술·경영 전반에 관련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상담을 지원하고 식품클러스터에서 구성된 전문가POOL을 이용하여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
 - 기술 시장정보 사업은 식품산업 관련 사업화 유망기술, 국내외 논문·저널 등 맞춤형 시장분석자료 등 온·오프라인 정보를 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와 지원센터 내 자료실을 운영하여 제공하도록 함.

■ 창업보육센터 단계별 활동(안)

- 창업보육 ZONE을 지정하여 식품분야 창업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창업보육센터의 건립은 1단계(2013년 ~ 2015년) 초기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2단계(2016년 ~ 2017년) Post 창업보육센터 건립으로 단계를 나눌 수 있음.
- 1단계(2016년 ~ 2018년) 창업보육센터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초기 창업을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2-3년간 지원 및 관리함.
 -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혜택을 제공함.
 - 마케팅비용 지원 및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그리고 세미나 개최 등의 창업지원으로 초기 보육지원을 제공함.
- 2단계(2019년 ~ 2020년)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초기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들에게 2-3년간 성장 기회를 제공함.
 - 보다 규모화 된 시설에서 2단계 창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하여 창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육함.

- Post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면 임대형공장으로 이전을 장려함.

〈표 7-8〉 창업보육센터 단계별 지원내용

구분	1단계(2016년 ~ 2018년)	2단계(2019년 ~ 2020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창업을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2-3년간 지원/관리 •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혜택 제공 • 마케팅비용 지원 및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 세미나 개최 등의 창업지원으로 초기 보육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들에게 2-3년간 성장기회 제공 • 보다 규모화 된 시설에서 2단계 창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함 • 창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육함 • Post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면 임대형 공장으로서의 이전을 장려함

라. Business Center

■ Business Center 설립 추진 배경



- 급격한 아시아 식품시장의 성장에 따라 유럽 등 선진국에 구축된 식품클러스터와 같이 국내에서도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FOODPOLIS, 즉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 FOODPOLIS의 구축과 함께 지원 인프라인 배후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FOODPOLIS의 운영 및 지원시설로써 기능이 따라 주어야 하나, 하드웨어 구축의 우선순위에 따라 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배후 기반시설의 기능을 극히 일부분 보조할 수 있는 수준임.
- 이에 따라 FOODPOLIS 지원 인프라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Business

- Center를 설립함으로써 FOODPOLIS 내의 기본 인프라시설 제공은 물론 식품산업의 이미지 향상과 관광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익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Business Center를 FOODPOLIS의 하나의 기반시설로 사전 계획함으로써 기본적인 지원기능 및 기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Business Center설립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Business Center 기능

- FOODPOLIS 내의 Business Center는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한 곳에 집약시켜 놓은 시설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함.

1. 회의시설
2. 교육시설
3. 숙박시설
4. 식당
5. 체육시설
6. 오락시설 등



■ Business Center 역할

- Business Center는 크게 3가지 역할로 구분할 수 있음.
 - 마케팅: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제품을 대외적으로 마케팅하는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교육: FOODPOLIS 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술 세미나, 정책 설명회 등 기업 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교류활동의 장을 제공
 - 숙박: 식품 산업단지 내 식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에 의해 활발한 산업 활동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많은 산업 인력의 유입 예상 (예: 네덜란드 Food Valley의 경우 70여개 기업, 20여개 연구소, 1000여개 연관업체 입주 등)

■ Business Center의 기대효과

- Business Center의 기대효과는 인프라 구축 이미지 향상, 일자리 창출, 관광사업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내 IT 건물인 Business Center를 설립함으로써 FOODPOLIS의 전반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타 클러스터와의 경쟁력 강화
- 이미지 향상: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Business Center를 제공하여 많은 산업 인력 유입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Business Partner들에게 기존의 영세한 식품산업에 대한 홍보의 기회를 마련하고 첨단 식품산업으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
- 일자리 창출: Business Center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예: 외래순 클러스터: 61,000명 고용 효과 창출,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 100,000명 고용 효과 창출 등)
- 관광사업 활성화: Business Center 내 박람회,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 (예: 나파 밸리[미국]: 연간 관광객 19,000만명 유치)

■ 타 Business Center 사례 분석(유사 사례)

○ 대덕특구 내 비즈니스센터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대덕 비즈니스 허브센터는 연구개발-성과창출-재투자의 선순환 촉진 및 산·학·연 교류협력의 거점공간으로서 대덕특구 R&D성과 사업화 지원 종합서비스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음.
- 대덕 비즈니스 허브센터는 대지 4,557.5㎡에 연면적 28,539㎡(지하 4층, 지상11층)으로 총 45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특구 내 기업 성장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지원 환경 뿐 아니라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간의 특구사업 연계성 확보 및 체계적인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해운항만 비즈니스센터

- 2011년 울산항에 완공 예정인 해운항만 비즈니스센터(가칭)는 연면적 29,100㎡(지하 4층, 지상11층)으로 총 495여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특화 항만으로의 성장, 질 높은 항만행정서비스 제공, 화물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조직의 내실화 및 효율화 등의 효과 창출로 항만물류 비즈니스의 구심점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호암교수회관은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학술 연구 지원기관으로서 각종 숙박 시설, 각종 회의 및 세미나실 등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행사지원을 위한 Business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은 호암본관을 비롯하여 컨벤션센터, Guest House 3

개 동으로 운영 및 지원하고 있으며, 개관 이래 우수 어떠한 기관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 및 운영방식, Service에서의 질적 차별화를 호암교수회관의 최대 이념으로 삼아 각종 연구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

VIII장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대외 협력방안

1.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개발
2.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방안
3.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홍보방안

V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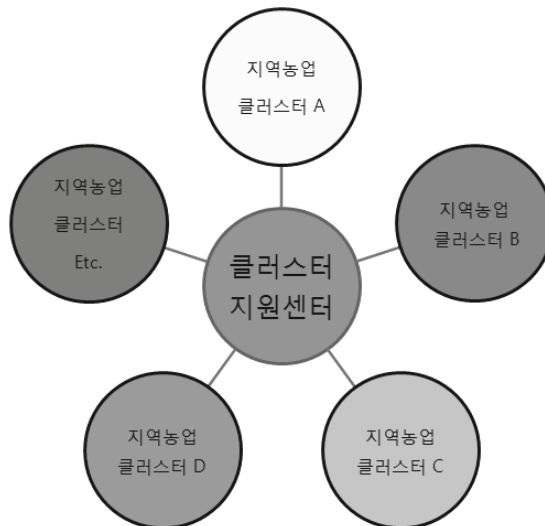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대외 협력방안

1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개발

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연계지원 방안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협력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역농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즉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농업 클러스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허브 역할을 하며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심점이 될 것으로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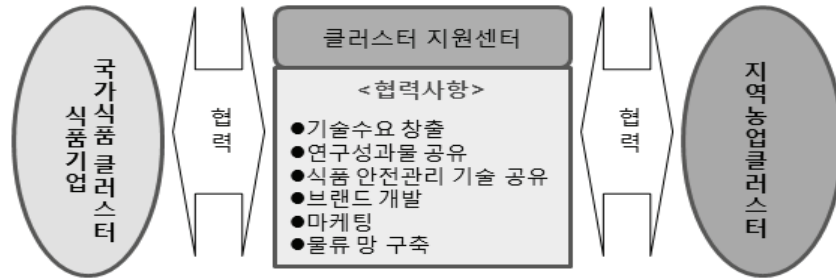
[그림 8-1]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허브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지역농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신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전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도록 함.

- 지역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신상품 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조성하도록 함.
- 신상품 출시 동향과 판매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경쟁력을 높임.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기술 수요조사 결과를 식품 클러스터 내 입주한 연구기관과 공유하여 기술 연구 성과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하여 연구 성과물 확산에 기여하고 클러스터 내 연구소의 성과물들을 타 지역농업클러스터로 확산시키도록 함. 또한 연구 과제를 지역 농업클러스터와 공동으로 발굴하여 결과물 도출할 수 있게 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역농업클러스터에 부족한 클러스터 운영 방법 전수와 지역에서 하기 어려운 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입주업체 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2) FOODPOLIS 식품기업과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연계방안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산관학 네트워킹 담당자는 FOODPOLIS의 식품기업과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네트워킹을 주도해야 함.
 - 식품 기업은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주도하에 지역농업클러스터의 기업과 협력하여 필요한 기술수요를 창출하고 기술개발을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연구 성과물을 공유함으로써 윈-윈이 가능함.
 -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기업은 기술수요 정보를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제공하고 지원센터는 클러스터 내 적합한 기술개발 관련 파트너를 지역농업 클러스터 내 기업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함.
 - 식품 기업은 지역농업클러스터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관련 정보 취득은 물론 식품관련 기술 공유가 가능함.
- 식품 기업과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네트워킹 역할로 공동 물류망과 판매망을 구축함.
 - 지역농업클러스터와 협력하여 공동브랜드 개발은 물론 마케팅 지원 활동이 가능함.
 - 지원센터가 식품 기업과 지역농업클러스터의 가교역할을 하여 협력업무 개발 및 공동 추진함.
- 식품 기업은 지역농업클러스터에 수준 높은 식품안전관리나 검사 체제를 제공하여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업의 식품 안전관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 FOODPOLIS에서 축적된 식품관련 노하우를 지역농업클러스터에 전수함.
 -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식품 경쟁력 향상은 국가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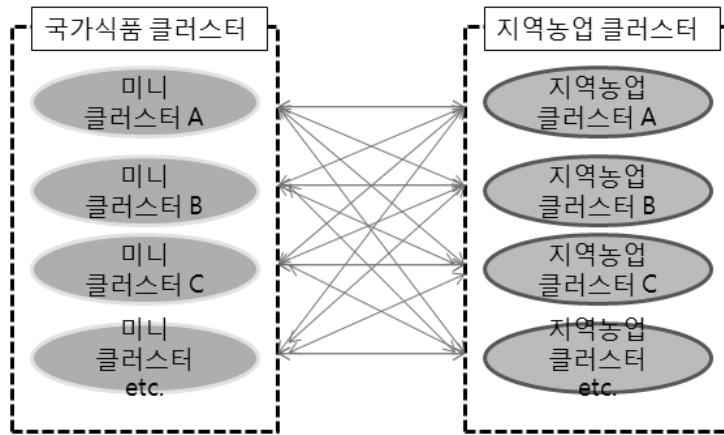
[그림 8-2] 식품기업과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연계방안

3) 연구기관과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연계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성과확산팀에 의한 연구 지원 및 신기술 연구에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참여시켜 시너지효과를 창출함.
- 국가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 대학연구소와 지역농업클러스터가 연계하도록 하여 새로운 분야의 R&D를 공동추진하고 이를 통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클러스터 지원센터는 R&D의 공동추진을 위해 연구 장소, 기자재 구입 등 새로운 공동연구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구축함.
- 연구소와 지역농업클러스터가 연계되지 못하더라도 지원센터에서는 클러스터 내 연구기관의 성과물들을 타 지역농업클러스터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가능성 있는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품목을 발굴하여 이를 연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4) 미니클러스터와 지역농업 클러스터 연계방안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미니클러스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하기에 적합한 지역 농업클러스터를 선별하여 양쪽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각 클러스터의 책임자를 초청하여 업체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주선하도록 함.
 - 클러스터 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클러스터의 업무영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
- 판매망 개척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지역농업클러스터에 유사한 특성을 가진 미니클러스터와 사업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분야 미니클러스터는 지역농업클러스터와 협동으로 신상품 개발 및 맞춤형 기술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그림 8-3] 국가식품클러스터 미니클러스터와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연계방안

5) 기타관련기관과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연계방안

- 국가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주도로 식품유관기업(포장, 기계, 검사 등)과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국가클러스터의 설비를 지역농업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식품관련 포장, 식품관련 기계, 식품 안전성 검사, 자문, 컨설팅, 경영지원 분야 등 지역 농업클러스터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성과가 국가클러스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국가클러스터의 지원센터와 지역농업클러스터의 MOU 협약을 통하여 클러스터 내 기술혁신 및 신제품(브랜드 등) 홍보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농업클러스터의 벤처환경 조성을 국가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벤처창업 지원 및 인큐베이팅 역할을 지역농업클러스터와 국가클러스터가 공동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

<표 8-1> 지역농업클러스터와 연계방안

구분	국가클러스터 내 식품기업	국가클러스터 내 연구소	국가클러스터 내 기타관련기관
지역농업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브랜드 개발 • 지원센터의 홍보 및 마케팅지원을 통하여 틈새시장 개척 •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에 지역농업클러스터의 기술수요정보를 지역농업클러스터에 기술정보 및 지원정보 제공 • 물류 및 판매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금 지원 및 신기술 연구에 의하여 시너지효과 기대 • 연구소와 지역농업클러스터의 공동 R&D 추진 및 결과 공유 • 국가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연구 장소, 기자재 구입 등 제반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클러스터의 설비를 지역농업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식품관련 포장, 식품관련 기계, 식품 안전성 검사, 자문, 컨설팅, 경영지원 분야 등 지역 농업클러스터에 관련 서비스 제공

구분	국가클러스터 내 식품기업	국가클러스터 내 연구소	국가클러스터 내 기타관련기관
지역 농업 클러 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관리의 경쟁력 확보 가능 • 지원센터에서는 양쪽에 득이 될 수 있는 방안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에서는 클러스터 내 연구소의 성과물들을 타 지역 농업클러스터로 확산 시키는 역할 • 가능성 있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품목을 발굴하여 이를 연구소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클러스터의 지원센터와 지역농업클러스터의 MOU 협약 • 지역농업클러스터의 벤처환경 조성을 국가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벤처 창업 지원 및 인큐베이팅 역할을 지역농업클러스터와 국가클러스터가 공동으로 진행

나. 클러스터 지원센터 자문 위원회 구성

1) 클러스터 지원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 매년 정기적으로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자문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자문 위원회 구성하도록 함.
 - 식품 클러스터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토대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학계 2명, 입주업체 대표 2명, 식품분야 전문가 2명, 농림수산식품부 1명, 지방자치단체 2명 총 9명으로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함.
 - 자문 위원회는 자문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외부 자문위원회가 원활히 가동 될 수 있도록 간사역할을 수행하며 개최 주최를 담당함.
- 외부 자문 자문위원회는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2) 자문 보고서 반영

- 외부인사의 자문을 통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자문 보고서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목표를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업무 개선에 반영함.

다.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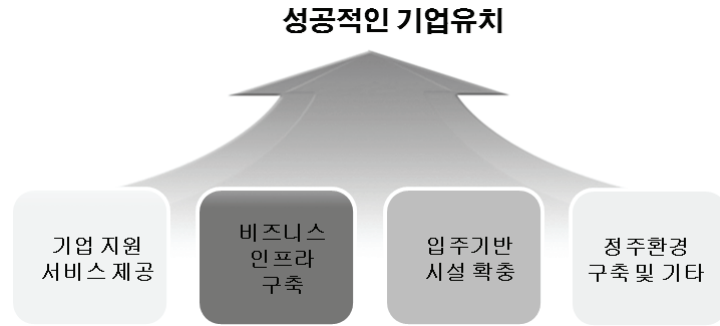
- 성공적인 FOODPOLIS로 성장하기위하여 기업유치는 당면한 최대 과제임. 따라서 기업을 클러스터에 유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및 기업유치 관련 조직 구성이 필요

함.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금융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투자유치 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 인허가 사항 관련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함.
 - 금융기관 인사의 참여로 입주희망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함.
 - 투자유치 협의회는 간사 역할은 투자유치 협의회가 진행함.
- 인센티브를 개발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투자유치 지원 협의회”에서 토론을 거쳐 인센티브가 개발 되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인센티브 개발은 피해야 함.
- 기업을 클러스터에 유인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은 중요하지만 기업 서비스 지원, 질 좋은 정주환경 조성, 기업 이주에 따른 이주 인력 흡수방안도 중요함.

1)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

- 기업의 입주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용지의 지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입주 결정기업에 맞춤형 서비스, 즉 패키지 형 기업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비싼 용지는 클러스터 입주 매력을 저하시킴.
 -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찾아내고 입주 완료 할 때 까지 “투자유치 지원 협의회”가 입주기업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유치에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함.
- 투자유치 지원 협의회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공동 개발하여 기업 입주를 장려하고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 상담
 - 용지 취득에 따른 각종 취득세 지방세 교육세 등 조세를 중장기 단계별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재정 지원책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함.
 - 입주 기업에 금융기관, 보증기금 기관들을 알선하여 입주에 따른 자금운영 부담을 해소함.
 - 클러스터 단지를 품목 또는 산업 별로 구획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입주에 기여함.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저리 용자를 지원하도록 함.



[그림 8-4] 성공적인 기업유치 방안

2)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 클러스터 입주업체의 원재료, 부자재, 상품 이동 관련 원활한 물류망을 구축함.
 - FOODPOLIS에서 가까운 군산 공항과 새만금 항구까지의 도로를 확충하여 수출입의 물류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원활한 국내 물류 시스템을 위하여 FOODPOLIS로부터 육상(도로망 및 철도) 배송체계 구축이 필요함.
 - 수출입 과정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리드타임을 축소함.
- 클러스터 내 법률사무소를 유치하여 입주기업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
- 해외 바이어나 입주 희망 기업이 FOODPOLIS 방문 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FOODPOLIS 홍보관을 운영함.
- 입주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수출촉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 함.
 - 입주기업이 수출 관련 문의 시 신속히 응대하여 수출 장려, 또는 수출 절차와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창구역할을 함.

3) 입주 기반시설 확충

- 입주기업의 사업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 또는 클러스터 내에 소방 시설 확충이 필요함.
 - 각종 공장의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 시설 확보는 필수 조건임.
 - 각종 시설 배치 시 유사시에 소방차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소방도로를 확보함.
- 변전소를 클러스터 내에 설치하여 각종 기업의 전기 수요에 부응하도록 함.
 - 사무실 유지를 위한 적은 전기 용량부터 대용량인 산업용 전기를 요하는 가공공장까지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 전력공사와 클러스터 내 변전소 설치를

협의하도록 함.

-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 할 수 있는 정화시설 제공함.
 - 오·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이 쉽게 이주결정을 내리고 입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오·폐수 처리시설 설비 및 허가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함.

4) 정주여건 구축

- 고베 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예로, 정주여건은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클러스터의 기업 이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임. 잘 정비된 정주환경은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만 열악한 정주환경은 기업들이 이주를 꺼리고 결국 클러스터 성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정주환경은 클러스터 단지 외부에 조성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 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장기적인 정주여건 조성 플랜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함.
- 주거 여건으로 클러스터 주변 가까운 거리에 입주기업인 또는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제공과 싱글이나 가족 단위의 주거 시설이 중요함. 나아가 자녀를 위한 보육 시설이나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함. 초중고 시설은 우수 인력 유치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병원 시설, 금융기관, 교통 시설, 문화시설, 공원 시설, 관공서를 유치하여 주민에게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 아이부터 어른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있는 문화공간을 유치하여 도심지와 차이 없는 삶의 질 보장이 관건 임. 멀티플렉스 영화관, 다양한 쇼핑 공간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전문점 등), 골프장, 도서관 등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은 삶의 질과 직결됨.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센터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클러스터 인접 지역에 종합병원을 개설하여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전용 병원을 지정하여 해외기업유치에 기여하도록 함.

5) 기타 시설

-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 시 상업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업용지 할당을 검토하고 입주기업의 직원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함. 상업용지는 희망기업에 분양하고 건축이 이루어지면 숙박을 할 수 있는 미니 호텔, 피트니스 센터, 레스토랑, 커피

숍, 간단한 쇼핑시설 등이 유치되도록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8-2〉 기업유치 프로세스

단계		프로세스
1단계	관련업체 리스트 작성	• 기업유치담당자는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며 기업의 담당자와 연락처를 파악
2단계	대상업체를 카테고리별로 구분	• 대상업체를 식품 가공산업, 식품 가공설비 기업, 원재료 가공기업, 패키징 관련기업, 연구기관, 금융기관, 기타 서비스 기업으로 구분
3단계	타겟 기업 설정	• 기업유치 담당자는 기업관련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겟 기업 설정
4단계	담당자의 타겟기업 방문	• 기업유치 담당자는 타겟 기업을 방문하여 1차 설명회 실시
5단계	해당기업 초청	• 방문했던 기업을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초청하여 견학을 시키고 2차 브리핑과 질의응답 실시
6단계	입주상담	• 초청기업의 입주관련 문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응답하며 입주 인센티브를 설명하여 입주 유도
7단계	입주결정 및 윈스톱 서비스 제공	• 입주를 결정한 업체에게 입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비스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윈스톱으로 제공

- 투자유치 협의회는 입주업체의 문의사항 및 애로사항 해소 역할을 함으로 입주절차를 간소화함.

라. 국제적 FOODPOLIS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입주업체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고, FOODPOLIS 자체를 국제적인 식품 클러스터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함.
 - 2018년부터 입주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을 구축함.
 - 중장기 계획은 FOODPOLIS 이미지 구축,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입주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원재료 소싱 지원 차원에서 수립
 - 중기계획(2018 ~ 2020)은 준비단계 로 장기계획(2021 ~)은 정착단계로 설정함.

1) 중기 계획 (2018 ~ 2020)

■ 사업 비전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토대 마련

■ 사업 목표

- 해외 클러스터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FOODPOLIS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품목별 또는 산업별 통합 브랜드 개발
- 국내외 수출 또는 수입을 위한 체계적인 물류망 구축
-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주요 방안

- 해외에서의 FOODPOLIS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해외 홍보를 담당할 전문가를 영입 배치하여, 기존의 국내 홍보 담당자와 적극 협력하도록 함.
 - 이 계획은 홍보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여러 지역에 일관성 있는 홍보 및 광고를 하기 위한 언어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를 배치해야 함.
 - 식품 안전성을 국제기준으로 상향시켜 해외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개선하도록 함.
- FOODPOLIS에서 생산 되는 상품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통합 브랜드를 개발 하여 입주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하도록 함.
 - 통합 브랜드 개발과 관련한 브랜드 공모전을 실시하여 관심을 유발하고, 입주업체에 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
- 국제적인 FOODPOLIS로 성장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업무가 필요함.
 - 시장 개척을 위하여 MOU체결을 한 클러스터와 협력하여, 대학기관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입주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하여 해외 상법 또는 국제법 관련 법률 전문가와 국가별 마케팅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의 해외 수출 및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률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입주 기업에 해외진출 컨설팅을 실시함.
 -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수입 절차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함.
 - 수출 국가 별 규격 및 인증 획득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 글로벌 소싱을 지원 할 수 있는 입주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을 대표하여 품목 또는 산업별 수출 촉진 협의회를 구성 하여 수출 기업을 지원함.
 - 수출 촉진 협의회는 입주기업 중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수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알선하고, 협의회는 클러스터 지원센터, 입주기업,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입주기

- 업에게 수출 컨설팅을 제공함.
- 매월 정기적으로 수출 촉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 물류망을 구성함.
 - 새만금 지역 내 항구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입주업체의 물적 유통이 원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즉, 지방자치단체는 항구조성 지역의 일부를 FOODPOLIS 입주업체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을 위하여 군산 공항을 수출입 전용 공항으로 활용을 검토해야 함. 그리고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항공 운송비를 항공업체와 협력하여 상품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주업체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킴.
 - 입주기업에서 생산되는 전 상품에 RFID 부착을 적극 권장하여 수출 시 물류 효율성을 제고시킴.

2) 장기 계획 (2021 ~)

■ 사업 비전

- 세계 초일류 FOODPOLIS로 정착

■ 사업 목표

-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주요 방안

- 해외의 KOTRA, 대사관,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로 FOODPOLIS의 입주업체와 해외 클러스터 현지 입주 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
 - 해외 기술 수요에 대한 정보습득을 통하여 국내 연구기관과 연결
 - FOODPOLIS 입주기업과 해외 기관과의 MOU 체결 주선
- 해외 기관을 통한 해외 시장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관련 정보를 국내에 확산시키고, 식품클러스터관련 정보를 국내에 전달함.
- 입주 기업에 각종 정보제공 및 마케팅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을 지원함.
 - 입주 업체와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함.
- 해외에서 발생하는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 해주는 창구역할

2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방안

가. 추진목적

1) 추진배경

-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함.
- FOODPOLIS의 국내외 이미지 구축과 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조기에 정착한 국내외 클러스터와의 협력이 필요함.

2)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 목적

- 제휴 또는 협력을 통하여 조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착
 - 성공적으로 정착한 클러스터와 협력함으로써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
- 해외 클러스터와 제휴 시 클러스터에 입주한 해외 우수 기업유치가 용이
 - 지리적, 정책적으로 연구소 등을 분산 하고자 하는 해외 업체의 유치가 용이함.
 - 지리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게 귀중한 정보 제공함.

3) 해외 클러스터의 교류 협력 사례

- 스웨덴 덴마크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와 일본 홋카이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음.
- 스웨덴 덴마크 메디콘 밸리와(Medicon Valley)와 일본 고베 의료산업 클러스터가 있음,
 - 제휴당시 양쪽은 서로 직원을 파견하였으나, 서로 교류내용이 부재하여 현재 파견 직원은 철수한 상태 임.
- 일본 고베 의료산업 클러스터와 한국의 대구광역시와 있음,
 - 대구특별시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대비하여 고베시와 제휴를 추진하는 중임.
- 일본 고베 의료산업 클러스터는 중국과 제휴하고 있음.

나. 교류 협력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1) 클러스터 지원센터 조직 내 명확한 업무분장

- 클러스터 지원센터 조직 내 교류 협력을 전담하는 조직(대외협력팀)을 구성하거나,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국내외 성공적인 클러스터 운영 노하우 습득에 주력함.
 - 국내외 클러스터의 지원센터의 역할을 벤치마킹함.
 - 입주업체와 지원센터와의 관계수립 및 유지 노하우를 벤치마킹함.
- 교류 협력을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홍보효과는 물론 해외 기업유치 업무를 기업유치 담당자와 협력함.
 - 해외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우수기업의 정보를 제공받음.
- 국내 기업의 해외 클러스터 진출에 협조할 수 있게 함.
- 국내외 클러스터 교류의 목표는 단계 별 수립하며 교류업무 담당자의 역할 또한 단계 별 설정. 특히, 클러스터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는 이상 국제교류의 협력은 필수 구성요건으로 사료 됨.
 - 제 1단계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위한 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노하우 습득에 주력하도록 함.
 - 제 2단계 : 글로벌화를 목표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해외 홍보에 주력하도록 함.
 - 제 3단계 : 해외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함.

2) 국제 교류가 가능한 인력 확보

- 국제교류 업무가 포함되는 만큼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인력 확보가 중요함.
 - 기본적으로 외국어 구사가 능통한 인력이 필요함.
- 국내외 클러스터 운영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인력이 필요함.

3) 예산 확보

- 해외 클러스터와 안정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예산이 필요함.
 - 단기간 국제 교류에 의해 결과가 나오기보다, 장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결과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함.
 - 국제교류의 단계별 목표에 준해 예산 편성이 필요함.

다. 교류 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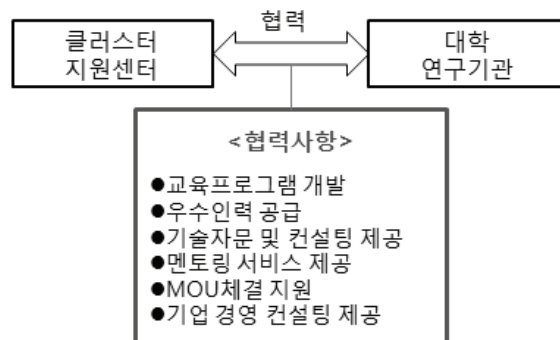
1)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내외 클러스터와 MOU체결

- 해외 클러스터와 교류를 추진하기에 앞서 교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휴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 클러스터 선별이 필요함.
 - 네트워킹을 벤치마킹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유럽의 덴마크 “외레순 식품 클러스터”, 네덜란드 “푸드밸리”, 이탈리아 “에르벳”이 적합함.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인위적으로 조성된 클러스터이므로 이와 유사한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서 “고베 의료 산업도시”가 적합함.
 - 해외 클러스터는 전반적으로 클러스터 지원센터라는 기관 또는 기구가 부재하여 벤치마킹하려면 “고베 의료 산업도시”가 적합하다고 사료됨.
 - 해외 클러스터 내 입주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럽 대륙의 클러스터와 교류가 필요함.
 - 국내의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적합함.
- 해외 클러스터와 제휴 시 반드시 식품 클러스터가 아니더라도 국제 교류 목적에 따라 다른 성격의 클러스터와도 교류 협력 추진이 필요함.
- 해외 클러스터의 벤치마킹 또는 교류내용에 따라 해외 클러스터를 선별하고 국제 교류를 추진하거나 제휴 협정함. 국내외 제휴를 위한 주요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음.
 - 덴마크 스웨덴 :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식품)
 - 네덜란드 : 푸드밸리 (Food Valley) 재단(식품)
 - 이탈리아 : 에르벳(ERVET (식품))
 - 일본 : 고베의료 산업도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지바현 식품 클러스터(식품)
 - 대전 : 대덕연구 개발 특구 지원본부(IT)

2)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방안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입주 기업들과 연구기관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입주기업의 기술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서 기술 개발과 관련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 연구개발 협력강화로 입주업체의 기술 개발 의뢰 과정의 단축 및 사업화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 함.
 - 기술 자문 및 컨설팅 필요시 연구기관에 의뢰함.
-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식품공학, 식품 영양, 생명공학, 경영 등의 분야에서 입주기업이 MOU 체결하여 협력하도록 직·간접으로 지원함.
 - 국내 대학의 관련학과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입주 업체에 제공해 입주업체의 파트너 찾기에 기여하도록 함.
 - 업종별 입주업체 리스트를 만들어 각 대학 기관에 송부함.

- 입주업체가 해외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을 희망할 때 정보 및 언어부분을 지원 하여 원활한 교류협력이 되도록 함.
 - 일본 츠쿠바의 NARO와 MOU 체결을 지원함.
- 전북 소재 대학과 식품관련 (바이오, 식품 영양, 기능성 식품 등)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주업체에게 우수한 전문 인력을 공급함.
 - 대학과 협력하여 식품 관련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또는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



[그림 8-5]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사항

3) 한국 주재 대사관, KOTRA, 한국식품공업협회, 해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력

- 해외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해외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KOTRA와 해외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와 협력이 필요함.
 - 입주 기업의 수출 판매망 개척에 협조함.
- 해외 교류협력 담당자는 주요 국가의 해외 주재기관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 해외 주재 자국의 기관과 협조
 - 해외 교류 협력 담당자는 해외 주재 기관과 담당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함.
 - 해외 기업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
 - 국가 기관의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함.
 -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입주업체에 원재료 작황 현황과 정보를 제공함.
- 해외 주요 기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해외에 홍보하는 매개체 역할을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홍보전략 상 주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4) 국내 외국 대사관의 인적활용

-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대사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출범 후 초기에 대사관 설명회 또는 만찬회 등을 개최함.
 - 정기적으로 대사관 초청 간담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홍보와 우호적 이미지를 구축함.
 - 해외 교류 담당자의 업무 분장에 주재 대사관 관계 구축 업무를 포함해야함.
- 대사관 및 자국의 해외 주재 기관들이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정보를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중계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5)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연계방안

- 예비 창업자와 입주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 업체 또는 예비 벤처 창업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업체를 지원함.
 - 자금 조달 지원이 클러스터 활성화의 중요 업무 중 하나로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금융기관과 입주 업체사이의 중재역할을 수행함.
 -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간접 지원하며 직접 파이낸스 컨설팅을 제공함.
- 입주업체의 자금 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컨설팅 같은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지원이 필요함.

6) 기타 공공기관, 협회, 학회와 유대관계 형성

- 연구 개발업무를 지원하기위하여 클러스터는 학회 및 협회를 중심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연구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 기술기획 평가원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클러스터 내 연구소를 간접 지원함.
 - 입주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 클러스터 내 연구소와 매칭되지 않는다면, 유대관계를 통하여 외부 연구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유대관계 형성은 장기적으로 필요함.

라. 교류 협력 내용

1) 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방법

- 클러스터 지원센터 또는 클러스터 운영을 맡고 있는 기관 및 유사 기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과 접목시킴.
 - 각종 의사결정 과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운영에 고려함.
 -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각종 정보와 운영 노하우는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적극 활용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업무영역 지정 및 입주 업체와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벤치마킹함.
 -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참고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응용함.
- 해외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자국 내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이해하므로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입지구축에 도움이 됨.

2)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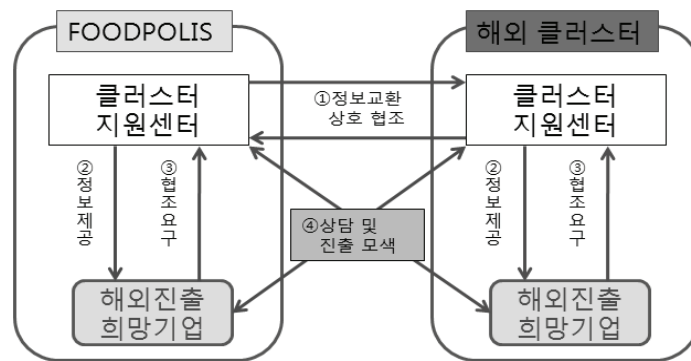
-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 및 기능에 추가,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산학관의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데 초기에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나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노하우를 습득함.
 - 입주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에 도움을 줌.
 - 클러스터의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함.
 - 마케팅 지원 활동, 신상품 개발 지원, 연구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벤치마킹을 통해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신규 업무 개발을 용이하게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소, 기업 등이 해외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경우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해외 클러스터에 입주한 업체사이에 중계역할을 하여 사업파트너 찾기를 용이하게 함.

3) 상호 기업유치 협력

- 교류를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홍보효과는 물론 이미지 구축으로 기업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구축함.

- 해외 클러스터와 MOU를 통하여 상호 입주업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
 - 해외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입주기업에 대한 기본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잠정적 해외 진출 기업 리스트를 확보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기업유치 담당자는 해외 클러스터에 입주 해 있는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요구사항 또는 정보 파악이 용이하며, 이를 바탕으로 FOODPOLIS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상담을 진행함.
 - 해외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벤치마킹하여 해외기업 유치에 응용, 즉,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 서비스 개발이 용이함.



[그림 8-6] MOU를 통한 해외기업 유치 Process

- 국내 기업이 해외진출을 계획 할 때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해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가 별 사업진출 절차 대행을 협조함.

4)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환

- 해외 클러스터가 어떻게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인력을 조달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 가능하며 국내 인력의 해외 파견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함.
 - 클러스터 내 연구 인력 양성 프로그램 또는 인력 조달 방법을 국제교류를 통하여 벤치마킹하여 원활한 인력의 수급을 조절함.
 - FOODPOLIS 입주업체의 해외 파견 연수 프로그램을 해외 클러스터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직원의 동기 부여는 물론 우수 인력을 양성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협력하는 대학과 협조하여 해외 우수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 개설 및 비용을 지원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와 해외 클러스터가 상호 연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국내 업체의 해외 우수인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함.
- 기업의 해외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협조함.

5) 기 타

-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클러스터의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적 이벤트 즉, 학술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공동 개최하여 연구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함.
- 클러스터 내 입주한 업체의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에 협력하도록 함.

마. 기대효과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조기 정착

-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정착과 클러스터 지원센터 자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업무를 분장함. 나아가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의 조기 개선이 가능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이미지 제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위상 정립이 가능하며 국내외 소비자에게 우호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음.
- 각종 이벤트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론매체에 노출 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업체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기술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음.

■ 해외 기업유치가 용이

- 해외 클러스터와 제휴를 통한 이미지 구축과 기업유치를 위한 서비스 패키지의 효과적인 홍보로 해외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임.
-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우수 인력 의 확보를 염려하는 해외 기업들의 걱정을 해소하여, FOODPOLIS에 기업 이주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이 운영되도록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자금조달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세계의 클러스터 간 경쟁에서 우위 확보

- 클러스터 간 기업유치 등 다방면에서 경쟁이 치열해 지고, 국제 교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3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홍보방안

가. 홍보목적

- “FOODPOLIS”의 국내외 이미지 구축을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브랜드력 향상으로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입주업체의 기업 및 상품 브랜드력을 향상시키게 함.
 - 클러스터 내에서 개발 된 기술 및 상품의 인지도를 제고
 -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홍보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담당자를 배치함.
-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함.
 - 클러스터 조성 초기 단계의 기업유치는 주요 핵심 과제임. 그러므로 홍보는 기업유치를 좌우할 수 있음.

나. 홍보 전략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단계와 발전단계에 따라 홍보 전략은 차별화가 필요 함. 홍보 전략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실행을 원칙으로 함.
 - 1단계(2011 ~ 2012년)는 이미지 제고, 2단계(2013 ~ 2015)는 기업 유치, 3단계는 입주기업 홍보 및 제품홍보에 중점을 둠.
- 홍보전략 1단계는 전반기에 FOODPOLIS의 조성계획 위주의 영상 홍보물 제작, 국내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둠. 후반기에는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의 분양 홍보에 중점을 둠.
 - 국제 심포지움 참가 및 개최를 통하거나 대중매체 광고를 통하여,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FOODPOLIS의 우호적 이미지 향상시킬 수 있게 함.
 - 입주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부지 분양을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PR로 기업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2단계는 1단계의 홍보 전략을 지속함과 동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자 결정된 업체를 알리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과 관련 대중매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방법을 강구함.
 - 입주 확정된 기업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유치 유발효과에 중점을 둠.
- 3단계는 FOODPOLIS 인지도 제고를 위한 클러스터 운영관련 홍보와 기업유치 및 입주업체들의 공동 브랜드 홍보에 중점을 둠. 그리고 클러스터의 글로벌화에 부응하여 해외 이미지 증대는 물론 해외기업 유치를 위하여 해외 광고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클러스터 입주업체의 기술 성과물 확산에 대한 사례는 물론 입주 후, 성공적인 기업의 성장과정을 클러스터 입주 성공사례로 언론에 소개함.
 - 중소기업의 판매망 확보 차원에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광고함.
 -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국내외 업체의 입주 홍보는 물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기본으로 홍보를 강화함.

구분	1단계 (2011 ~ 2012)	2단계 (2013 ~ 2015)	3단계 (2016 ~)	
FOODPOLIS 이미지 제고	→			
FOODPOLIS 조성계획	→			
기업유치 홍보	→			
부지 분양 홍보	→			
입주예정 업체 홍보		→		
입주업체 홍보			→	
입주업체 제품 홍보			→	
박람회 및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			

[그림 8-7] 단계별 홍보 계획

다. 단계별 홍보 방안

1) 1단계 (2011 ~ 2012) 방안

■ 외국 대사관과 외국기업 관련자 초청

-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대사관과 해외 기업인을 초청하여, 준비된 가이드 책자와 함께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며, 인적 네트워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도록 함.
 - 2011년 홍보담당자는 국내 외국 대사관 및 외국기업의 명부를 작성하여, 초청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함.

- 중앙정부 차원의 FOODPOLIS 건립에 대한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FOODPOLIS의 신뢰도 증진은 물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알려 해외 기업유치에 기여하도록 함. 이를 계기로 각국의 대사관 및 외국 기업 주재원을 클러스터의 홍보도우미로 기대할 수 있음.
- 준공 전 실시하여 준공 후에도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 하여 FOODPOLIS의 성과홍보의 장으로 마련함.
-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 FOODPOLIS 부지 분양 및 해외 기업에 대한 법적 인센티브, 단계별 국가식품클러스터 비전을 제시하여 해외기업을 유인동인을 홍보해야 함.
- 국내 주재하는 해외 기업인을 통하여 경영 애로사항 및 클러스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청취하고, FOODPOLIS 운영에 반영하며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자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

■ 국내 식품관련 관계자, 대학, 연구 기관을 초청하여 설명회 개최

- 국내 식품관련 기업체를 선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과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함.
 - 입주에 따른 인센티브, 부지 분양 및 매입과정 절차를 설명하여 기업에게 입주 동기를 부여함.
 -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식품 가공 기계연구소 및 생산업체도 초청함.
- 대학 연구소와 민간 연구 기관 등을 초청하여,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R&D와 관련한 업무과정 및 지원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

■ 각종 FOODPOLIS 자료 제작

- 클러스터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즉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가 필요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기본으로 구축하고, 해외 사용자를 위하여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서비스 함. 홍보물은 이미지 구축과 기업유치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함.
 - FOODPOLIS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TV 및 인터넷에 방송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세계 유수의 식품 클러스터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원하여 언론에 노출함.
 - 세계 식품산업관련 잡지 및 국내 주요 잡지에 광고함.

- 홍보책자를 한글 영문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하여 국내 공공기관 및 해외 주재 기관에 비치하고 국내 외국 대사관 및 기업에 송부하도록 함. 나아가 해외의 기업에도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함.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홍보

- 해외 클러스터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웹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함.
 -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는 정부기관과 상호 연계하고, 해외 클러스터와 공조하여 홍보함. 향후 입주 희망업체 또는 입주 결정 업체와 연계하여 홍보함.
 - 각종 사이트와 연계 된 홍보로 접속자 증대를 유도하게 함.

■ 각종 협찬

-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진행 할 것인지 고려하여 세계에서 주목받는 각종 박람회 또는 국제적 대회를 협찬하여, FOODPOLIS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함.
- 스포츠나 드라마 협찬도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장기적 협찬은 홍보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실시함.

2) 2단계 (2013 ~ 2015) 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식과 비전 선포식

- 준공식에 중앙정부의 고위급 인사(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초청하여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여, 대중매체에 FOODPOLIS 노출을 극대화하도록 함.
 - 준공식에 입주기업 및 국가의 유관기관 및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분위기를 고취시킴.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국내외 대중매체의 관심을 유도함.
- 준공식 일정에 맞추어 국내 주재 외국 인사 초청과 세계 우수 언론인 초청으로 해외 언론에 노출을 유도함.

■ 기업 방문 홍보

- 국내외 우수 식품기업을 방문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홍보

3) 3단계 (2016 ~) 방안

■ 각종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화를 도모하는 단계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클러스터 또는 식품 산업관련 컨퍼런스에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 참가하도록 격려 및 지원이 필요함.
 - 클러스터 내 연구자들에게 컨퍼런스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해외에 홍보하도록 함.
 - Food Valley, ERVET,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등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을 통한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 성과물 확산 사례 발표회

- 입주기업의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여, 기업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성과물 확산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의 관심을 유도함.
 - 산·관·학 네트워킹에 의한 연구 성과물 확산 사례를 논문 주제로 하여, 국내외 저널에 발표함.

■ 저널 출판 지원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적극 지원하여 다수의 연구 결과물이 국내외 저널에 출판 되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FOODPOLIS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함.
 - 학계가 FOODPOLIS의 성공 기업을 케이스 스터디로 논문 발표하도록 장려 및 지원함.

■ 해외 미디어 노출

- 해외 우수 언론을 초청하여 특별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및 뉴스를 제공함.
- 해외 유명 연예인 또는 스포츠 인사를 초청하여 언론 노출을 유도함.

부 록

1. 지원센터 법인형태에 대한 검토 자료
2. 지원센터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검토 자료
3. 특수법인 형태에 대한 검토 자료
4. 임대형 가공공장 설비

〈참고자료 1〉

지원센터 법인형태에 대한 검토 자료²⁴⁾

-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조직구성은 사업의 공공성, 추진주체 등을 고려하여 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되는 법인으로 구성해야 함.
- 법인의 설립목적과 구성요소,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 이외에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일반법인, 특수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법인의 구분〉

법인의 구분		내 용
법인형태	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 국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과 민법 등 사법상의 법인 • 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법인목적	영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수익사업의 영위, 이익 배당, 재산분배 등을 통해 이윤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려함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이 이에 속하며 구성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재단법인은 인정되지 않음
	비영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함 •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이 이에 속함
구성요소	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 • 민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율을 받는 영리 사단법인이 있음
	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 수산정보센터 설립 방향에 관한 연구, p.96 인용.

- 법인형태 검토에서 우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업성을 대표하는 주식회사와 공공성을 대표하는 공기업 그리고 이들의 혼합형태인 제3섹터 방식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함.

1. 사단법인(社團法人)

-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이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을

24)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 “수산종합정보센터 설립방향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인용하여 재구성함.

인정받은 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집단이 본체인 점에서 재산이 실질상의 본체인 재단법인과 구별됨.

- 사단법인은 인적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함.
- 사단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므로, 그 기관을 통하여 스스로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법률효과도 법인 자신에게 귀속되며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영리법인인 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나,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함.
- 영리사단법인은 상행위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4가지 형태가 있음.
-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다음의 절차를 거쳐 법인을 설립하게 됨.
 - ①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 ② 주무관청의 허가
 -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자 법인격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혹은 인격 없는 사단이라 부름.
- 사단법인의 기관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가 있으며 이중에서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감사는 필요기관은 아님.

2. 재단법인(財團法人)

-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하지 않고, 그것을 독립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해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하며, 재산이 실질상의 본체인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구별됨.
-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함.

- 재단법인은 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특수 법인화한 것이 많음.
-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①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
 - ②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 ③ 주무관청의 허가
 -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설립절차상 사단법인과 차이점은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에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름.
- 재단법인의 운영은 사원이 없고 따라서 사원총회도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처럼 자율적·탄력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주로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고정된 조직과 목적 하에서 행하여짐.
- 이사가 업무를 진행하고 법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사가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은 이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으며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법인의 구성요소에 있으며 이밖에 설립행위, 의사결정기관 등에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분 류		사 단 법 인	재 단 법 인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성격		회원을 기초로 하는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 향상 등 도모	출연자산을 기초로 하는 지원단체 성격이 강하며 주로 연구사업, 지원사업 수행
설립근거		민법 32조	좌동
본질적 차이		자율적 법인 : 사원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타율적 법인 :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
설립행위		①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작성 ② 설립행위는 합동행위	① 재산의 출원과 정관작성 ② 1인이 하는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기관 의사결정		이사, 감사, 사원총회	이사, 감사, 정관에 정한 목적
필수기관	사원총회	최고의사결정기관	해당 없음
	이사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함	좌동
임의기관	감사	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	좌동

분 류	사 단 법 인	재 단 법 인
정관변경	총회의결의+주무관청허가	①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고 있을 때 한함 ② 명칭·주소지는 일정 경우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않아도 변경가능 ③ 목적달성 불가시 : 주무관청허가-변경가능
해산사유	① 양법인에 공동되는 사유: 존립 기간의 만료, 목적달성·달성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② 특유의 해산사유: 사원이 한사람도 없게 된 경우, 총회의 해산결의	양법인에 공동된 사유 외에 특유한 해산사유 없음

자료 : 전계서.

환경부(2007),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공익법인과 구별〉

- 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
- 따라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이 아님.

3. 주식회사(株式會社)

- 회사기업의 형태인 주식회사는 법인성이 가장 강한 사단으로, 영리법인의 대표적인 형태임.
- 주식회사의 특징으로 자본의 증권화 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유한책임, 지분양도의 용이성이 그 대표적인 특징임.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① 발기인의 모집
 - ② 정관의 작성
 - ③ 정관에 따라 주식인수를 하고 출자금의 불입
 - ④ 법원에 설립등기

- 주식회사의 기관
 - ① 주주와 주주총회
 - ②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 ③ 감사
 - ④ 감사인

4. 공기업과 제3섹터

■ 공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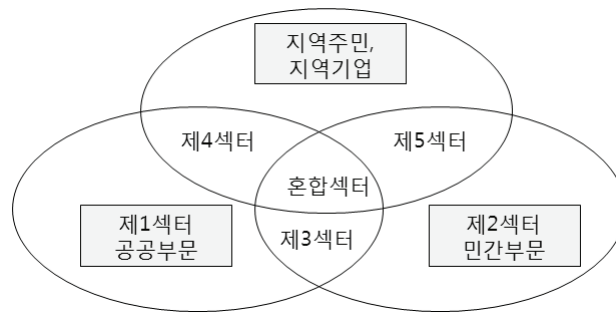
- 공기업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익 내지 행정상의 목적으로 출자와 동시에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로 출자와 경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기업성과 공익성을 함께 가지게 됨.
- 공기업의 종류(조직형태에 따른 분류)
 - 정부기업 : 공기업이 정부부처의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철도, 통신, 양곡관리, 조달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음.
 - 공사 :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기업으로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에 비해 운영이 더 자유롭고 통제가 약한 편이며 행정 부서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율이 적용되지 않음.
 - 직접투자회사 (정부가 50% 이상 투자) :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중에서 정부의 투자지분이 50% 이한인 기업을 말하며 정부가 비록 50% 이하를 출자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분이 소액주주들에 의해 분산되어 있으면 정부의 통제권이 매우 강력함.
 - 간접출자회사 : 정부투자기관이 다시 출자한 기업으로서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됨.

■ 제3섹터 (the third sector)

- 제3섹터란 공기업의 한 유형으로서 공사혼합기업 또는 민·관 공동 출자사업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지방공사제도를 도입·설명하는 과정에서 제3섹터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지방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본의 제3섹터제도와 여건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3섹터 공기업지방공사” 설립을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75조)을 근거로 1990년 대부터 추진해 오고 있음.

- 즉 공공부문인 제1섹터와 민간부문인 제2섹터와 결합된 형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섹터의 계획성과 민간섹터의 효율성이라는 각각의 장점을 결합하고자 하는 경영방식임.



〈제3섹터의 구분〉

〈공공섹터, 제3섹터, 민간섹터 유형별 장·단점 비교〉

유형		장 점	단 점
공공섹터		공익사업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신용도가 높음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속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운용상의 제약도 있음
제3 섹 터	공익법인 (재단·사단)	소정의 사업을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운영재원·사업목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분야·규모에 제약이 있음
	영리법인 (주식회사)	공공의 계획성과 민간의 유연성을 겸비한 사업운영이 가능함	단기간에 수익확보가 어렵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쉬움
민간섹터		수익사업의 운영에 높은 기동성·유연성을 가짐	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분야의 사업화는 실시하기 어려움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8),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장기적 운영방안, p.5에서 인용

- 제3섹터의 분류는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제3섹터 유형〉

유형	경영주체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방공사형	공공주도	영리·비영리	- 지역개발 : 공항, 부두정비 - 지역진흥 : 1차 산품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주식회사형	민간주도	영리	- 지역진흥 : 관광, 리조트 사업 - 사업추진 : 재개발사업, 시설운영 - 기획개발 : 연구개발, 지역산업지원
재단법인형	민관공동	비영리	- 공공사업 : 환경, 위생, 복지, 문화, 예술, 체육, 위락 등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 수산정보센터 설립 방향에 관한 연구, p.103 인용.

지원센터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검토 자료

■ 공공기관 지정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²⁵⁾.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 정부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해당기관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
 - 해당기관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 2007년 4월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기본법」, 「정부산하기관기본법」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공공기관’이란 개념을 도입했고, 다양한 공공기관의 유형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단순화시킴.
-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의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액의 비중에 의해 구분되는데,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됨.
-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가운데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85% 이상이면 시장형 공기업이며, 그 외는 준시장형 공기업이 됨.

25)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라 하며, 그 외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 함.

〈공공기관의 분류〉

구분		분류기준	기관예시	운영방안
공기업 (24개)	시장형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정원 50인 이상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자체수입/총수입 85% 이상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수준 자율보장 • 내부 견제 시스템 강화
	준시장형 (1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정원 50인 이상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자체수입/총수입 50% 이상 85% 미만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확대하되, 일부 공공성 감안 외부감독 강화
준정부 기관 (80개)	기금관리형 (1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정원 50인 이상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 또는 위탁관리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위탁집행형 (6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정원 50인 이상 •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처 정책과 연계성 확보
기타공공기관 (19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출연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업무 효율성 중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9 공공기관관련 I: 공공기관총론, 2009, p.2 의 내용을 보완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공공기관의 형태는 기타공공기관임.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법에 의한 경영공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자회사와의 거래 내역 및 인력 교류 현황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함)

-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포함)
 -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 감사원의 시정요구 조치사항 또는 국정감사의 시정 요구 조치사항
- 이러한 경영공시는 알리오(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 www.alio.go.kr)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주요사업, 수입지출현화, 요약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5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특수법인 형태에 대한 검토 자료

-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을 갖추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의 총합체를 가리키며 공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평등한 법관계로서의 공법에 근거하여 창설되는 법인임.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무분권 공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무의 수행이라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법에 의하여 창설한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의 총합체로서의 법인임.²⁶⁾
-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민·상법이 아닌 특별한 개별행정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가리켜 “특수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²⁷⁾.
 - 따라서 특수법인은 일반법인과 다른 법적 근거·절차·기능·지위 등을 갖게 되며, 행정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가짐²⁸⁾.
- 민법이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통상 일반 법인이라 한다면 특수법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²⁹⁾
 - 개별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서 즉 국가의사에 의하여 직접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음.
 - 출자, 출연금, 보조금 등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 정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등으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 정부위탁 업무가 아닌 고유 업무의 내용도 비영리성, 공공성, 공익성을 갖고 있음.
- 따라서 특수법인이란 개별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어 대체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공익적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 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들은 행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짐.³⁰⁾

26) 이광윤, 『정부조직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제처, 2006.11., p.35.

27) 특수법인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개념이고 행정법의 모국이라 일컬어지는 프랑스법의 개념에서는 영조물법인에 해당함. 영조물법인의 전통적 개념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법상의 법인체를 말함. 국가가 제공하여야 할 사업인 공공서비스는 국가 자신이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할 수도 있으나 그 사업 목적에 맞는 특별한 조직으로서의 영조물 법인을 창설하여 이 법인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이광윤(2006), p.36).

28) 상계서, p.39.

29) 김명식, 특수법인의 법적지위와 법률관계, 고시계, 2001.10, p.34.

- 특수법인은 본질상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 중에서 효율성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수행토록 한 것이므로 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의 재정상의 특권과 행정상의 특권을 갖게 됨³¹⁾.
 - 또한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됨.
-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 2에 의해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원센터의 사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지원센터의 관리·감독기관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는 특수법인이 됨.

〈농식품부가 관리·감독하는 특수법인 현황〉

명칭	설립목적	지도 감독과	준용하는 법인의 성격	설립 근거 법령
한국마사회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	축산정책과	-	한국마사회법 제18조
대한수의사회	수의기술 창달과 우의업무 발전 도모로 축산진흥 및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동물방역과	사단법인	수의사법 제23조
낙농진흥회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구조의 개선 및 품질향상을 통해 낙농업과 관련산업발전에 이바지	축산경영과	사단법인	낙농진흥법 제5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 개량의 촉진을 통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축산경영과	재단법인	축산법 제36조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안전위생과	사단법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2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축산경영과	사단법인	도축장구조조정법 제3조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 및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수산개발과	사단법인	어촌어항법 제57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정책수립 및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과학기술정책과	재단법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30) 상계서, p.34.

31) 상계서, p.37.

명칭	설립목적	지도 감독과	준용하는 법인의 성격	설립 근거 법령
한국원양산업 협회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원양정책과	사단법인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질병청정화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동물방역과	사단법인	가축전염예방법 제9조
농업기술실용 화재단	농업 R&D 성과를 농업경영체, 농식품기업 등에 확산·전파하여 농산업의 규모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농촌진흥청	재단법인	농촌진흥법 제14조의 2

자료 : 농식품부, 법제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농식품부가 관리·감독하는 특수법인의 설립 근거 법령 조문〉

기관명	관련 법령	법령 조문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법	제18조 (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제19조(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법	제23조 (설립)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삭제 제24조 (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위탁) ①삭제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경비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보건향상과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낙농진흥회	낙농진흥법	제5조 (낙농진흥회의 설립) ①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 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려는 자로 구성한다. ③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7조 (「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기관명	관련 법령	법령 조문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법	<p>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 등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⑧ 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가공처리법	<p>제9조의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기준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기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기준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정기검사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축산물위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원에 대하여 제4항의 사업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⑦ 기준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⑧ 기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도축장구조조정법	<p>제3조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설립) ①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명	관련 법령	법령 조문
도축장구조 조정 추진협의회	도축장구조 조정법	4. 총회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협의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⑦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어촌어항 협회	어촌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① 어촌 및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림수산물 기술기획 평가원	농림수산물 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수산물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원양 산업협회	원양산업 발전법	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원양산업지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농림수산물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⑥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 예방법	제9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①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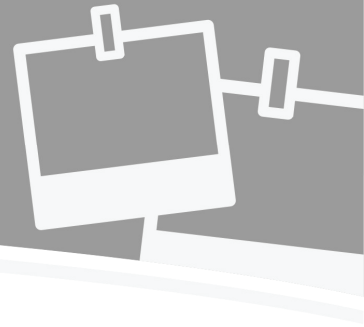
기관명	관련 법령	법령 조문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 예방법	<p>④방역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의 예방접종·약물목록·임상검사 및 검사시료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교육·양성 <p>4의2.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p>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 예방법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p> <p>⑤방역본부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⑦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p> <p>⑧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농촌진흥법	<p>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2.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활용 지원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업무 6.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7.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p>⑤ 실용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⑦ 제4항의 출연 또는 지원과 제6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국가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⑨ 제8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임대형 가공공장 설비

- 임대형공장의 설비 요건은 크게 영업장설비, 위생설비, 용수설비로 나누어 볼 수 있음.³²⁾
- 영업장설비는 작업장, 배수 및 배관, 출입구, 채광 및 조도, 화장실 및 탈의실 바닥 및 벽/천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작업장 관리는 식품 취급 공간과 식품 취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을 벽이나 방으로 구분해야하며,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이어야 함.
 - 배수 및 배관 관리는 내수성, 내열성, 내약품성, 항균성, 내부식성 등의 적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함.
 - 배수 및 배관은 배수가 잘되어야 하고, 배수구 배수관 등은 역류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함.
 - 출입구는 구역별 복장 착용을 위한 세척, 건조, 소독설비 등을 구비해야함.
 - 선별 및 검사구역 작업장 등은 조도 540lux 이상을 유지해야함.
 - 화장실 및 탈의실은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함.
 -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해야함.
 - 바닥 및 벽, 천장, 창 등은 내수성, 내열성, 내약품성, 항균성, 내부식성 등의 적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함.
- 위생설비는 환기시설관리, 방충·방서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환기시설관리는 작업장 내에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방충방서 관리는 외부로 개방된 흡, 배기구에는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을 부착해야 함.
- 용수설비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함.
- 저수조, 배관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3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 5조 식품제조·가공업소의선행요건'에서 공간 설비에 대한 조건을 발췌하여 임대형 공장의 설비 요건으로 선정함.

참고 문헌



- ATKEARNEY(2009),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세부실행계획 및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용역」, 전라북도, 전북생물산업진흥원.
- Maccani Paola (2007), "ERVET" Regional Economic Policy" 금융저널 5월호
- 국회예산처(2009), 「2009 공공기관편람 I: 공공기관총론」.
- 김명식(2001), “특수법인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 「고시계」10월호, pp.33~54.
- 김성민(2009), 「우리나라 식품클러스터 정책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태연, 이철우, 이종호 (2009), “외레순 식품 클러스터 산·학·관 협력체계와 지원기관의 역할 연구” 식품 유통연구 제 26권 제 4호
- 김호외(2007), 「(사례연구를 통한)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방향」, 농림부.
-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 전라북도 생물 산업 진흥원 (2009) “유럽 우수식품 클러스터 벤치마킹”
- 리베르다스 컨설팅, (2007), “산업클러스터 국제비교조사 (생명과학 분야) 보고서”
- 문경일 배상빈(2009), 「경제 클러스터」, 휴먼싸이언스.
- 보건복지가족부(2008),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본부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복득규(2002), 「산업클러스터의 국내외 사례와 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서울시장개발연구원(1998),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장기적 운영방안」.
- 오승은(2004), “일본의 특수법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6권 4호, pp.135~158.
- 이관윤(2006), 「정부조직법제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제처.

이기중(2008), 「국가습지센터 설립을 위한 설치방안 마련」, 환경부,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한국도시공학학회.

이성근외(2008), 「구미/창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조택(2005), 「정부산하기관 관리체계 개선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중소기업청(2002),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2009), 「2009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식품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익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2007), 「2007 한국 산업클러스터 백서」, 산업자원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 「수산종합정보센터 설립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대경제연구소(2010), “식품전문인력 양성체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ERVET(2010), www.ervet.it

고베시 (2010) www.city.kobe.lg.jp

고베의료산업도시 (2010) www.city.kobe.lg.jp/information/project/iryo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www.alio.go.kr

대덕연구개발특구 포털 www.ddi.or.kr

외혜순 푸드 네트워크 (2010) www.foodoresund.com/

요시아키 즈카모토 (2004), “Industrial Cluster Plan: The Trump Card in 클러스터 웹 (2010) <http://www.cluster.gr.jp>

지바현 (2010) www.pref.chiba.lg.jp

푸드밸리 (2010) www.foodvalley.nl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www.e-cluster.net

이 보고서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정희 교수)가 농림수산식품
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수립과 추진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031-670-4818)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